

사회복지시설 표준운영비 모델개발

김미숙 변용찬 강혜규
박태영 이상일 임유경 박애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 출 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의 수탁연구과제 「사회복지시설 표준운영비 모델개발」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3년 4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박 순 일

머리말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운영비용은 대부분 국고에서 조달하고 있다. 그런데 국고는 시설들이 생활인의 삶의 질을 확보하는데 활용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점을 안고 있다. 우선 사회복지에 제공되는 정부보조금은 그 규모가 비현실적으로 낮아 생활인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기에는 미흡하다. 아울러 현 국고보조금의 예산지원은 입소인원에 비례하여 제공되고 있어, 시설의 대규모화를 조장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예산 지원시기는 재정이 필요한 사업의 초기에 하는 경우가 드물어 예산 집행 상에 어려움이 따른다. 아울러 예산사용에 있어서 항목간 전용이 용이하지 않아 융통적인 예산활용을 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로서 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시설운영비 모델이 제시되어야 한다. 즉, 표준적인(바람직한) 시설 운영 모형을 설정하고, 이러한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현재의 시설의 운영현실과 보다 바람직한 모형을 함께 고려하여, 시설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현재 설치·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 관련 현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현실을 반영한 표준운영비 모형을 시범적으로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 집행 현실을 파악하는 것은 향후 표준적인 시설운영 모형을 정립하고 이에 따른 표준운영비 개발에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즉, 본 연구는 보다 과학적인 운영비 산출을 위한 하나의 근거 자료로 활용되고, 현재의 정부보조금 지원 기준을 재검토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하여 현재의 최저 생활보장에서 최적생활보장으로 시설 보호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본 연구원의 김미숙 부연구위원의 책임하에 변용찬 연구위원, 강혜규 책임연구원, 이상일 책임연구원, 임유경 주임연구원, 박애리 연구원에 의해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6종의 사회복지시설을 다루고 있는 바, 각 시설 유

형별 연구·집필은 모자복지시설, 부랑인복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김미숙, 장애인복지시설 변용찬, 노인복지시설 강혜규, 아동복지시설 임유경 등이 담당하였다. 보고서 각 장의 집필진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	(김미숙)
제2장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방식의 현황과 문제점	(김미숙, 변용찬, 강혜규, 임유경)
제3장 사회복지시설의 운영현황	(김미숙)
제4장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세입·세출 분석	(김미숙, 변용찬, 강혜규, 임유경, 박애리)
제5장 외국의 사회복지시설 지원제도	(박태영, 이상일, 임유경)
제6장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표준운영비 산출	(김미숙, 변용찬, 강혜규, 임유경)
제7장 결론: 시설 운영비 지원제도 개선방안	(김미숙, 변용찬)

본 연구를 위해서 실태조사 설문을 작성해 준 사회복지시설장과 총무님들께 감사를 표한다. 또한 일본의 시설운영 사례를 집필해 주신 박태영 교수님께도 감사를 표한다. 그리고 본 보고서가 작성되는 과정에서 유익한 조언을 해 주고 원고를 검독해 준 이삼식 책임연구원과 이현주 책임연구원께 감사하고 있다.

끝으로 본 보고서는 연구진의 의견이지 본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03년 4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박 순 일

목 차

제1장 서론	58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58
제2절 연구내용	59
제3절 연구방법	60
제4절 연구의 한계점	63
제2장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방식 현황	64
제1절 시설의 일반현황	64
제2절 예산지원 방식	66
제3절 정부예산 지원기준	73
제3장 사회복지시설 운영 현황과 문제점	106
제1절 운영자(체)	106
제2절 시설거주자	113
제3절 시설종사자	120
제4절 시설운영비: 보조금	126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지도·감독	136
제6절 예산 지원방식의 문제점	141
제4장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세입·세출 분석	147
제1절 아동복지시설	147
제2절 노인복지시설	189
제3절 장애인복지시설	210

제4절 모자복지시설	229
제5절 정신요양시설	249
제6절 부랑인복지시설	271
제7절 사회복지시설의 세입·세출 종합	284
제5장 외국의 사회복지시설 지원제도	289
제1절 일 본	289
제2절 영 국	309
제3절 미 국	316
제4절 시사점	321
제6장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표준운영비 산출	323
제1절 개요: 표준운영비 산출의 공통기준	323
제2절 시설유형별 표준운영비 산출	329
제7장 결론: 시설 운영비 지원제도 개선방안	376
참고문헌	383
부 록	386

표 목 차

〈표 1-3- 1〉 설문조사항목: 시설(장)	60
〈표 1-3- 2〉 설문조사항목: 시·군·구 담당공무원	61
〈표 1-3- 3〉 사회복지시설 설문조사 현황	62
〈표 1-3- 4〉 시군구 공무원 설문조사 현황	63
〈표 2-1- 1〉 사회복지 생활시설별 거주자 및 종사자 수(2000~2003년)	65
〈표 2-1- 2〉 사회복지시설 예산 현황	66
〈표 2-2- 1〉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시설회계 세입항목	67
〈표 2-2- 2〉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시설회계 세출항목	69
〈표 2-2- 3〉 노인시설 입소비용	70
〈표 2-2- 4〉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입소비용(보조시설)	72
〈표 2-2- 5〉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입소비용(기타 민간시설)	72
〈표 2-3- 1〉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와 설치목적	73
〈표 2-3- 2〉 아동복지시설 및 보호아동 현황(2001년말 현재)	74
〈표 2-3- 3〉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국고 보조금의 구성	75
〈표 2-3- 4〉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국고 보조 현황	76
〈표 2-3- 5〉 2003년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법정기준과 국고지원 기준 비교	77
〈표 2-3- 6〉 2002년과 2003년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직종별 국고지원기준 비교 ..	78
〈표 2-3- 7〉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1인당 부가급여액	79
〈표 2-3- 8〉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시설의 설치목적·비용부담·이용대상	81
〈표 2-3- 9〉 노인복지시설 유형별 시설·거주자·직원 수(2001. 12. 30 현재)	82
〈표 2-3-10〉 노인복지시설 보호 예산 현황	83
〈표 2-3-11〉 노인복지주거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84
〈표 2-3-12〉 노인복지시설 관리운영비 지원항목	85
〈표 2-3-13〉 2003년 보장시설수급자 1인당 급여기준	86
〈표 2-3-14〉 장애인복지시설의 유형 및 설치목적	87
〈표 2-3-15〉 장애인 생활시설 유형별 현황(2001년 8월 현재)	89

〈표 2-3-16〉 장애인 생활시설 유형별 입소 현황(2001년 8월 현재)	90
〈표 2-3-17〉 장애인생활시설 및 장애인유료복지시설(법정배치기준)	91
〈표 2-3-18〉 2003년 장애인생활시설 직원수 예산지원기준	93
〈표 2-3-19〉 모자복지시설의 유형 및 설치목적	94
〈표 2-3-20〉 모자복지시설 수 및 보호기간	95
〈표 2-3-21〉 모자복지시설 현황(2001년 6월말 현재)	95
〈표 2-3-22〉 모자복지시설 예산단가	96
〈표 2-3-23〉 모자복지시설 관리운영비 지원항목	96
〈표 2-3-24〉 2002년 모자복지시설 지원항목별 지원단가	97
〈표 2-3-25〉 모자보호시설 종사자 법적 배치기준 (2002년 현재)	98
〈표 2-3-26〉 모자자립시설 종사자 법적 배치기준(2002년 현재)	98
〈표 2-3-27〉 미혼모시설 종사자 법적 배치기준(2002년 현재)	98
〈표 2-3-28〉 일시보호시설 종사자 법적 배치기준(2002년 현재)	99
〈표 2-3-29〉 정신보건시설의 유형 및 설치목적	100
〈표 2-3-30〉 정신보건시설의 유형 및 질환자	100
〈표 2-3-31〉 입소환자 1인당 연간 관리운영비 지원액	101
〈표 2-3-32〉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102
〈표 2-3-33〉 부랑인복지시설 현황(2002년 1월말 현재)	103
〈표 2-3-34〉 부랑인복지시설의 예산	103
〈표 2-3-35〉 부랑인복지시설 지원단가	104
〈표 2-3-36〉 부랑인복지시설 종사자 배치 기준	104
〈표 3-1- 1〉 시설 운영주체	106
〈표 3-1- 2〉 법인의 설립주체	107
〈표 3-1- 3〉 시설장 성별	107
〈표 3-1- 4〉 시설장 연령	108
〈표 3-1- 5〉 시설장 학력	109
〈표 3-1- 6〉 시설장 전공	109
〈표 3-1- 7〉 시설장의 자격증 유형	110
〈표 3-1- 8〉 시설장 종교	111

〈표 3-1- 9〉 시설장과 법인대표 관계	111
〈표 3-1-10〉 시설장 경력	112
〈표 3-2- 1〉 시설별 거주자수	113
〈표 3-2- 2〉 성별 거주자	114
〈표 3-2- 3〉 연령별 거주자	114
〈표 3-2- 4〉 장애정도별 거주자	115
〈표 3-2- 5〉 도움 필요 정도별 거주자	116
〈표 3-2- 6〉 퇴소사유별 퇴소자	117
〈표 3-2- 7〉 시설별 실비 거주자 여부	118
〈표 3-2- 8〉 실비거주자가 없는 이유	118
〈표 3-2- 9〉 시설별 실비거주자 1인이 내는 월평균 비용	119
〈표 3-3- 1〉 시설별 법정 및 실재 종사자수	121
〈표 3-3- 2〉 시설별 종사자수 대비 거주자	121
〈표 3-3- 3〉 종사자수 대비 적정거주자	122
〈표 3-3- 4〉 시설별 추가로 필요한 종사자수 분석 결과	123
〈표 3-3- 5〉 종사자 1인당 대비 적정거주자	123
〈표 3-3- 6〉 시설별 종사자 1인당 대비 적정거주자 분석 결과	124
〈표 3-3- 7〉 시설별 교대제 운영 방식	125
〈표 3-3- 8〉 바람직한 교대제 운영 방식	126
〈표 3-4- 1〉 정부보조금 지원 빈도	127
〈표 3-4- 2〉 순수지방비보조금 지원 빈도	128
〈표 3-4- 3〉 시설별 정부보조금 지급시기	129
〈표 3-4- 4〉 시설별 순수지방비 지급시기	130
〈표 3-4- 5〉 시설별 희망하는 보조금 지급액 평균 인상율	131
〈표 3-4- 6〉 현행 정부보조금 지급액 및 희망 정부보조금 지급액	132
〈표 3-4- 7〉 현행 정부보조금 지급방식	133
〈표 3-4- 8〉 희망하는 보조금 집행방식	134
〈표 3-4- 9〉 세출 항별 과부족 정도	135
〈표 3-4-10〉 예산 부족 정도가 큰 지출목 우선순위(시설수 중심)	135

〈표 3-4-11〉 예산이 남는 지출목 우선순위(시설수 중심)	136
〈표 3-5- 1〉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회복지생활시설 수	137
〈표 3-5- 2〉 지원하고 있는 조건부 신고시설 현황	138
〈표 3-5- 3〉 지원하고 있는 미신고 시설 현황	138
〈표 3-5- 4〉 예산 전용 허용 여부	139
〈표 3-5- 5〉 예산 전용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	139
〈표 3-5- 6〉 향후 정부보조금 운용 방침	140
〈표 3-5- 7〉 시설유형별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시설 수	140
〈표 3-5- 8〉 자체 지원한 예산 규모	141
〈표 3-6- 1〉 복지시설별 거주자 1인당 연간 지원 단가	143
〈표 3-6- 2〉 외국의 장기요양시설 인력기준 비교	144
〈표 3-6- 3〉 사회복지시설의 인력 지원 기준 비교(2003년 기준)	145
〈표 3-6- 4〉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비 비교	146
〈표 4-1- 1〉 아동복지시설 종류별 평균 세입 규모(2001년 기준)	148
〈표 4-1- 2〉 세입항목별 세입이 있는 아동복지시설 비율	149
〈표 4-1- 3〉 아동복지시설 평균 세입의 항목별 구성비	150
〈표 4-1- 4〉 아동복지시설의 보조금 출처별 세입 규모	151
〈표 4-1- 5〉 아동복지시설의 인건비, 생계비, 관리운영비 세입 규모	153
〈표 4-1- 6〉 지역규모별 아동복지시설 분포	155
〈표 4-1- 7〉 아동복지시설의 소재지 규모별 평균 세입 총괄	156
〈표 4-1- 8〉 아동복지시설 종류 및 시설 소재지 규모별 평균 세입	157
〈표 4-1- 9〉 시설 소재지 규모별 거주자 1인당 평균 세입 총괄	159
〈표 4-1-10〉 아동복지시설 종류 및 시설 소재지 규모별 1인당 평균 세입 · 160	
〈표 4-1-11〉 아동복지시설 종류 및 시설 소재지 규모별 1인당 평균세입의 항목별 구성비 · 161	
〈표 4-1-12〉 아동복지시설 종류별 평균 거주자 수(2001년 현재)	163
〈표 4-1-13〉 거주자 규모별 아동복지시설 비율	163
〈표 4-1-14〉 아동복지시설 거주자 규모별 평균 세입 총괄	164
〈표 4-1-15〉 아동복지시설 종류 및 거주자 규모별 평균 세입	166
〈표 4-1-16〉 아동양육시설 거주자 규모에 따른 법인전입금 구성비	167

〈표 4-1-17〉 시설 거주자 규모별 거주자 1인당 평균 세입 총괄	169
〈표 4-1-18〉 아동복지시설 거주자 규모별 거주자 1인당 평균 세입 규모 ..	170
〈표 4-1-19〉 아동복지시설 종류 및 거주자 규모별 1인당 평균세입의 항목별 구성비	171
〈표 4-1-20〉 아동복지시설 평균 세출의 항목별 구성비	173
〈표 4-1-21〉 아동복지시설 거주자 1인당 평균 세출의 항목별 구성비	174
〈표 4-1-22〉 아동복지시설의 소재지 규모별 평균 세출 총괄	176
〈표 4-1-23〉 아동복지시설 종류 및 시설 소재지 규모별 평균 세출	177
〈표 4-1-24〉 시설 소재지 규모별 거주자 1인당 평균 세출 총괄	178
〈표 4-1-25〉 아동복지시설 종류 및 시설 소재지 규모별 거주자 1인당 평균 세출	180
〈표 4-1-26〉 아동복지시설 종류 및 지역 규모별 1인당 평균세출의 항목별 구성비	181
〈표 4-1-27〉 아동복지시설의 규모별 평균 세출 총괄	183
〈표 4-1-28〉 아동복지시설 종류 및 시설 규모별 평균 세출	184
〈표 4-1-29〉 아동복지시설의 규모별 거주자 1인당 평균 세출 총괄	185
〈표 4-1-30〉 아동복지시설 종류 및 시설 규모별 거주자 1인당 평균 세출 ..	186
〈표 4-1-31〉 아동복지시설 종류 및 거주자 규모별 1인당 평균세출의 항목별 구성비 ..	188
〈표 4-2- 1〉 노인시설 종류별 평균 세입 규모	190
〈표 4-2- 2〉 노인시설 종류별 거주자 1인 기준 세입 규모	192
〈표 4-2- 3〉 노인시설종류별 평균 보조금 수입 규모	193
〈표 4-2- 4〉 노인시설종류별 평균 인건비·생계비·관리운영비 규모	194
〈표 4-2- 5〉 지역별 노인시설 분포 및 평균 거주자 수	195
〈표 4-2- 6〉 지역별 노인무료양로시설 평균 세입 규모	196
〈표 4-2- 7〉 지역별 노인무료요양시설 평균 세입 규모	198
〈표 4-2- 8〉 거주자규모별 노인시설 분포 및 평균 거주자 수	199
〈표 4-2- 9〉 노인무료양로시설 규모별 평균 세입 규모	200
〈표 4-2-10〉 노인무료요양시설 규모별 평균 세입 규모	201
〈표 4-2-11〉 노인시설 종별 세출항목별 비율	203
〈표 4-2-12〉 노인시설 종별 1인 기준 세출 규모	204
〈표 4-2-13〉 지역별 노인무료양로시설 평균 세출 규모	206
〈표 4-2-14〉 지역별 노인무료요양시설 평균 세출 규모	207

〈표 4-2-15〉 노인무료양로시설 규모별 평균 세출 규모	208
〈표 4-2-16〉 노인무료요양시설 규모별 평균 세출 규모	209
〈표 4-3- 1〉 장애인시설 종류별 평균 세입 규모	212
〈표 4-3- 2〉 장애인시설 항목별 평균 세입비율	213
〈표 4-3- 3〉 장애인시설 1인당 평균 세입규모	214
〈표 4-3- 4〉 장애인시설 종류별 평균 인건비·생계비·관리운영비 규모	214
〈표 4-3- 5〉 지역 및 거주자규모별 장애인시설 분포	216
〈표 4-3- 6〉 장애인시설 지역별 평균 세입 규모	217
〈표 4-3- 7〉 장애인시설 지역별 1인당 평균 세입 규모	218
〈표 4-3- 8〉 장애인시설 거주자 규모별 평균 세입 규모	220
〈표 4-3- 9〉 장애인시설 거주자 규모별 1인당 평균 세입 규모	221
〈표 4-3-10〉 장애인시설 거주자 규모별 평균 보조금 구성비	222
〈표 4-3-11〉 장애인시설 시설 당 평균 세출규모	223
〈표 4-3-12〉 장애인시설 1인당 평균 세출규모	224
〈표 4-3-13〉 장애인시설 시설 당 평균 인건비 대 운영비 비율	224
〈표 4-3-14〉 장애인시설 지역별 평균 세출 규모	225
〈표 4-3-15〉 장애인시설 지역별 1인당 평균 세출 규모	226
〈표 4-3-16〉 장애인시설 거주자 규모별 평균 세출 규모	227
〈표 4-3-17〉 장애인시설 거주자 규모별 1인당 평균 세출 규모	228
〈표 4-4- 1〉 모자복지시설 종류별 평균 세입 규모	230
〈표 4-4- 2〉 모자복지시설 항목별 평균 세입비율	231
〈표 4-4- 3〉 모자복지시설 1인당 평균 세입규모	232
〈표 4-4- 4〉 모자복지시설 종류별 평균 인건비·생계비·관리운영비 규모	233
〈표 4-4- 5〉 지역 및 거주자 규모별 모자복지시설 분포	235
〈표 4-4- 6〉 모자복지시설 지역별 평균 세입 규모	236
〈표 4-4- 7〉 모자복지시설 지역별 1인당 평균 세입 규모	237
〈표 4-4- 8〉 모자복지시설 거주자 규모별 평균 세입 규모	239
〈표 4-4- 9〉 모자복지시설 거주자 규모별 1인당 평균 세입 규모	240
〈표 4-4-10〉 모자복지시설 거주자 규모별 평균 보조금 구성비	241

〈표 4-4-11〉 모자복지시설 시설당 평균 세출규모	242
〈표 4-4-12〉 모자복지시설 1인당 평균 세출규모	243
〈표 4-4-13〉 모자복지시설 시설당 평균 인건비 대 운영비 비율	243
〈표 4-4-14〉 모자복지시설 지역별 평균 세출 규모	244
〈표 4-4-15〉 모자복지시설 지역별 1인당 평균 세출 규모	245
〈표 4-4-16〉 모자복지시설 거주자 규모별 평균 세출 규모	247
〈표 4-4-17〉 모자복지시설 거주자 규모별 1인당 평균 세출 규모	248
〈표 4-5- 1〉 시설 종류별 평균 세입 규모	250
〈표 4-5- 2〉 정신요양시설의 세입 항목별 평균세입의 구성비	251
〈표 4-5- 3〉 정신요양시설 1인당 평균 세입규모	253
〈표 4-5- 4〉 인건비·생계비·관리운영비 규모	254
〈표 4-5- 5〉 지역별 정신요양시설 규모별 분포	254
〈표 4-5- 6〉 정신요양시설 지역규모별 평균 세입규모	256
〈표 4-5- 7〉 정신요양시설의 지역 규모별 1인당 평균 세입규모	257
〈표 4-5- 8〉 정신요양시설 종류별 평균 거주자 수(2001년말 현재)	258
〈표 4-5- 9〉 거주자 규모별 정신요양시설 분포	258
〈표 4-5-10〉 정신요양시설 거주자 규모별 평균 세입 규모	260
〈표 4-5-11〉 정신요양시설의 거주자 규모별 1인당 평균 세입 규모	261
〈표 4-5-12〉 정신요양시설의 항목별 평균세출의 구성비	263
〈표 4-5-13〉 정신요양시설의 인건비와 운영비 평균 비율	263
〈표 4-5-14〉 정신요양시설의 1인당 평균세출 구성비	264
〈표 4-5-15〉 정신요양시설의 지역별 평균세출 규모	265
〈표 4-5-16〉 정신요양시설 지역별 평균 1인당 세출 규모	267
〈표 4-5-17〉 정신요양시설 규모별 평균세출 규모	269
〈표 4-5-18〉 정신요양시설 거주자 규모별 평균 1인당 세출 규모	270
〈표 4-6- 1〉 부랑인복지시설 평균 세입 규모	272
〈표 4-6- 2〉 부랑인복지시설 평균 인건비·생계비·관리운영비 규모	273
〈표 4-6- 3〉 부랑인복지시설 세입비율 및 1인당 평균 세입규모	274
〈표 4-6- 4〉 지역별 부랑인복지시설 분포	274

〈표 4-6- 5〉	부랑인복지시설 지역별 평균 세입 규모	275
〈표 4-6- 6〉	부랑인복지시설 지역별 1인당 평균 세입 규모	276
〈표 4-6- 7〉	부랑인복지시설 거주자 규모별 평균 세입 규모	277
〈표 4-6- 8〉	부랑인복지시설 거주자 규모별 평균 1인당 세입 규모	278
〈표 4-6- 9〉	부랑인복지시설 거주자 규모별 평균 세입 구성비	279
〈표 4-6-10〉	부랑인복지시설 세출비율 및 1인당 평균 세출규모	280
〈표 4-6-11〉	인건비와 운영비 평균 비율	280
〈표 4-6-12〉	부랑인복지시설 지역별 평균 세출 규모	281
〈표 4-6-13〉	부랑인복지시설 지역별 평균 1인당 세출 규모	282
〈표 4-6-14〉	부랑인복지시설 거주자 규모별 평균 세출 규모	283
〈표 4-6-15〉	부랑인복지시설 거주자 규모별 평균 1인당 세출 규모	283
〈표 4-7- 1〉	시설별 시설당 평균 세입 규모	284
〈표 4-7- 2〉	시설별 평균 세입 1인당 단가	285
〈표 4-7- 3〉	시설별 시설당 평균 세출 규모	286
〈표 4-7- 4〉	시설별 평균 1인당 세출 단가	287
〈표 4-7- 5〉	시설별 평균 정부지원 단가	288
〈표 5-1- 1〉	조치제도와 지원비제도와 비교	292
〈표 5-1- 2〉	지원비제도와 개호보험제도와 비교	293
〈표 5-1- 3〉	감안사항 정리표(시설보호 지원비의 경우)	296
〈표 5-1- 4〉	지체부자유자갱생시설 직원 배치	299
〈표 5-1- 5〉	신체장애자요호시설의 지원액(월/1인/엔)	303
〈표 5-1- 6〉	지적장애자입소갱생시설의 지원액(월/1인/엔)	304
〈표 5-2- 1〉	민간 및 자원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불 (1977/8년도)	311
〈표 5-2- 2〉	영국의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비기여 사회보장 지출추이	312
〈표 5-2- 3〉	영국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지출추이, 1997-98	315
〈표 5-3- 1〉	사회복지서비스 조직의 자원 구성	318
〈표 5-3- 2〉	재원의 출처별 감축된 재원의 규모(조직당 평균금액)	320
〈표 5-3- 3〉	재원감축이 조직의 운영에 미치는 영향	321
〈표 6-1- 1〉	표준운영비 산출 항목	324

〈표 6-1- 2〉 표준운영비 산출에 포함된 시설 유형	325
〈표 6-1- 3〉 표준운영비 산출 항목별 산출 공식	328
〈표 6-2- 1〉 아동복지시설의 표준운영비 산출을 위한 모형 설정 기준	330
〈표 6-2- 2〉 아동양육시설 모형별 법정종사자 배치 기준	331
〈표 6-2- 3〉 아동양육시설 법정종사자 배치 기준	332
〈표 6-2- 4〉 아동양육시설의 운영비 단가 산출	333
〈표 6-2- 5〉 아동양육시설 표준운영비 산출을 위한 단가 요약	334
〈표 6-2- 6〉 거주자 40인 아동양육시설의 표준운영비	336
〈표 6-2- 7〉 거주자 60인 아동양육시설의 표준운영비	337
〈표 6-2- 8〉 거주자 120인 아동양육시설의 표준운영비	338
〈표 6-2- 9〉 아동양육시설 규모(모형)별 표준운영비 항목 구성비	340
〈표 6-2-10〉 노인복지시설의 표준운영비 산출을 위한 모형 설정 기준	341
〈표 6-2-11〉 노인양로시설 모형별 종사자 배치기준	341
〈표 6-2-12〉 노인양로시설 표준운영비 산출을 위한 단가 요약	342
〈표 6-2-13〉 거주자 30인 노인양로시설 표준운영비	343
〈표 6-2-14〉 거주자 50인 노인양로시설 표준운영비	344
〈표 6-2-15〉 거주자 80인 노인양로시설 표준운영비	345
〈표 6-2-16〉 노인무료양로시설 규모(모형)별 표준운영비 항목 구성비	346
〈표 6-2-17〉 장애인복지시설의 표준운영비 산출을 위한 모형 설정 기준 ..	347
〈표 6-2-18〉 정신지체인시설 모형별 종사자 배치기준	348
〈표 6-2-19〉 정신지체인시설의 운영비 세출 현황(현원 기준)	349
〈표 6-2-20〉 정신지체인시설 표준운영비 산출을 위한 단가 요약	349
〈표 6-2-21〉 거주자 50인 정신지체인시설 표준운영비	350
〈표 6-2-22〉 거주자 100인 정신지체인시설 표준운영비	351
〈표 6-2-23〉 거주자 150인 정신지체인시설 표준운영비	352
〈표 6-2-24〉 정신지체인시설 규모(모형)별 표준운영비 항목 구성비	353
〈표 6-2-25〉 모자보호시설의 표준운영비 산출을 위한 모형 설정 기준	354
〈표 6-2-26〉 모자보호시설 모형별 종사자 배치기준	355
〈표 6-2-27〉 모형별 모자보호시설 운영비(현원 기준)	355

〈표 6-2-28〉 모자보호시설 표준운영비 산출을 위한 단가 요약	356
〈표 6-2-29〉 거주자 40인 모자보호시설 표준 운영비	357
〈표 6-2-30〉 거주자 60인 모자보호시설 표준운영비	358
〈표 6-2-31〉 거주자 120인 모자보호시설 표준 운영비	359
〈표 6-2-32〉 모자보호시설 규모(모형)별 표준운영비 항목 구성비	360
〈표 6-2-33〉 정신요양시설의 표준운영비 산출을 위한 모형 설정 기준	360
〈표 6-2-34〉 정신요양시설의 모형별 종사자 배치기준	361
〈표 6-2-35〉 정신요양시설의 운영비 단가 산출	362
〈표 6-2-36〉 정신요양시설 사업비 단가	362
〈표 6-2-37〉 거주자 60인 정신요양시설 표준 운영비	363
〈표 6-2-38〉 거주자 180인 정신요양시설 표준 운영비	364
〈표 6-2-39〉 거주자 350인 정신요양시설 표준 운영비	365
〈표 6-2-40〉 정신요양시설 규모(모형)별 표준운영비 항목 구성비	366
〈표 6-2-41〉 부랑인복지시설의 표준운영비 산출을 위한 모형 설정 기준 ..	367
〈표 6-2-42〉 부랑인복지시설 모형별 법정 종사자 배치수	367
〈표 6-2-43〉 부랑인복지시설의 운영비 단가 산출	368
〈표 6-2-44〉 부랑인복지시설 사업비 단가	369
〈표 6-2-45〉 거주자 60인 부랑인복지시설 표준 운영비	370
〈표 6-2-46〉 거주자 180인 부랑인시설 표준 운영비	371
〈표 6-2-47〉 거주자 1,600인 부랑인복지시설 표준 운영비	372
〈표 6-2-48〉 부랑인복지시설 규모(모형)별 표준운영비 항목 구성비	373
〈표 6-2-49〉 사회복지시설 규모별 1인당 표준운영비 비교	374
〈표 6-2-50〉 사회복지시설 1인당 표준운영비 단가와 정부지원단가 비교 ..	374

그림 목 차

[그림 6-1-1] 시설 규모에 따른 시설 모형 설정 과정	325
--	-----

요 약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부지원 수준이 비현실적이어서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미흡하며, 예산지원방식이 입소인원에 비례하는 등 비합리적이어서 소규모시설은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시설의 대규모화를 초래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로서 표준적인(바람직한) 시설 운영모형을 설정하고, 이러한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현재의 시설 운영현실과 보다 바람직한 모형을 함께 고려하여, 시설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함.
- 본 연구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 관련 현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현실을 반영한 표준운영비 모형을 시범적으로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2. 연구 내용

-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사회복지 생활시설에 대한 운영비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분석함.
 - 둘째, 외국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급방식을 고찰하여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함.
 - 셋째, 실태조사와 사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표준운영비를 산출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함.

3. 연구 방법

□ 본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음.

- 첫째는 정부자료와 기존의 문헌을 중심으로 시설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 보고, 미국, 일본, 영국 등의 사회복지시설 관련 문헌을 고찰하고자 함.
- 두 번째는 사회복지생활시설 전수를 대상으로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 음. 총 885개 시설 중 조사에 응한 시설은 591개소로 응답률은 66.8%임. 또 한 시도 및 시군구 담당공무원 총 246명에게 설문을 배포하여 총 132부를 회수하여 설문 회수율은 53.7%임.

4. 연구의 한계점

□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

- 첫째, 원래 표준운영비란 시설 거주자가 적정한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고, 각 항목에 대한 적정액을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추계하여 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상적인 항목에 대한 검토를 하기보다는 현실 수준을 기반으로 표준운영비를 시범적으로 산출하였음.
- 둘째, 법정 인력배치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적정한 인력배치 규모와 종사 자 유형을 바탕으로 인건비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는 본 연구에서 는 기존의 법정 배치기준을 기반으로 인건비를 산출하였음.

II. 생활시설 운영비 지원방식과 문제점

1. 시설 일반현황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생활시설은 2000년 874개소, 2001년 864개소, 2002년 878개소였던 것이 2003년에는 952개소로 증가하였음.

- 2003년 현재 사회복지시설에 약 9만5천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2만5백여명의 종사자가 있음. 한 시설당 평균 거주자 수는 100명 정도임. 시설당 거주자의 수가 가장 적은 시설은 모자복지시설로서 평균 54.6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다음이 노인시설로서 평균 58.2명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2003년 현재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고 있는 예산은 338,766백만원으로서 시설당 평균 3억 6천만원 정도임.

2. 예산지원 방식

- 시설 예산지원은 각 시설의 국고보조금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예산회계법」 및 개별법 및 사업 안내에 따름.
 - 생활시설에 대한 예산은 정부보조금의 형태로 지원되고 있으며, 이는 생계비, 인건비, 관리운영비 등 크게 3개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인건비 각 요보호대상별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직원 배치기준에 근거하여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음.
 - 관리운영비로서 시설의 세출에서 생계비와 인건비를 제외한 시설운영비가 여기에 해당됨. 이밖에 지방자치체에서 지급되는 순수지방보조금도 있음.

Ⅲ.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현황

1. 운영자(체)

- 시설의 운영주체로는 사회복지법인이 가장 많은 82.6%이고, 사회복지법인 외의 비영리단체는 12.9%이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2.9%로 소수임.
 - 법인의 설립주체는 개인이 가장 많은 46.8%이고, 그 다음은 기독교(개신교) 27.6%, 천주교 13.4%로 개인과 기독교와 천주교 법인이 대부분임.

- 시설장의 특성을 보면, 성별로는 남자와 여자의 분포가 거의 비슷한 50%전후이고, 연령은 40대가 가장 많은 28.3%이고, 평균 시설장 연령은 54.2세임. 학력은 대졸이 가장 많은 34.5%이고, 시설장의 전공은 사회복지가 가장 많은 46.4%임. 소지한 자격증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이 가장 많은 73.3%이었고, 시설장의 종교는 개신교가 가장 많은 61.7%이고, 종교가 없는 시설장은 6.8%에 불과함. 시설장으로써의 경력은 전체평균은 11.4년으로 나타남.

2. 시설거주자

- 시설 거주자는 평균 96.0명임. 거주자 수가 가장 많은 것은 부랑인시설로 평균 260.5명이고, 그 다음은 정신요양시설로 203.9명이며, 장애인시설은 90.7명, 아동시설 74.6명, 노인시설 69.2명, 모자복지시설 68.1명의 순임.
- 시설 실비거주자 비율은 있다는 경우가 전체의 약 1/3임(30.7%). 시설별로 볼 때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정신요양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인 92.6%가 실비 거주자가 있고, 그 다음은 장애인시설로 전체의 55.2%임. 그 다음은 노인시설 30.9%(본 연구에서 유료노인시설은 제외함), 아동시설 1.3% 등임. 모자복지시설과 부랑인복지시설은 실비거주자가 전무함.
 - 실비 거주자가 시설에 내는 월평균 비용은 시설간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전체적으로 볼 때 1인당 평균 253,300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음. 월평균 비용이 가장 높은 시설은 노인시설로 471,300원이며, 장애인시설 163,900원, 정신요양시설 155,600원, 아동시설은 가장 낮은 108,500원임.

3. 시설종사자

- 종사자 규모는 법정 종사자 충족률은 89.4%로 법정 종사자수보다 실제 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수가 밑도는 것으로 파악됨.
- 다음으로 종사자 1인당 거주자 수를 조사한 결과, 종사자 1인당 평균 거주자수는 전체적으로 평균 6.8명으로 나타남.

- 추가 필요 종사자를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필요를 나타낸 종사자는 생활보조원·생활재활교사·보육사와 생활지도원·사회재활교사로 각 7.0명, 3.1명 이임. 또한 취사원 1.9명, 간호사 1.8명, 촉탁의사 1.5명, 세탁부 1.5명, 청능훈련사 1.5명 등 각종 직종에서 2명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함.
- 종사자 대비 적정 거주자수를 조사한 결과, 생활보조원 등은 직원 1인당 9.8명, 생활지도원은 34.0명, 촉탁의사는 1인당 62.8명, 간호사는 35.9명이 적당하고, 사무원 56.5명, 취사원은 34.3명이 적당하다고 응답함.
- 교대제 운영방식을 조사한 결과, 이를 운영하지 않는다는 시설이 40.9%로 가장 많아, 현재 정부에서 실시하는 2교대제가 잘 실천되지 않고 있음.

4. 시설운영비: 보조금

가. 보조금 지원 빈도 및 시기

- 정부보조금 지원빈도는 인건비, 생계비, 관리운영비 모두 시설의 차이 없이 매월 지원 받는 비율이 가장 높음(각 80.5%, 92.2%, 75.2%). 분기로 받는 경우는 관리운영비에서 많고, 생계비는 90% 이상이 매월 지급 받고 있음.
- 정부보조금 지급시기를 알아본 결과, 인건비는 50.2%가 집행 진행도중에 받고, 집행사유 발생초기에 지급받는 시설은 25.9%에 불과함. 더구나 집행사유 종료 후에 인건비를 받는 시설도 23.9%나 됨.
- 순수지방비 지급시기를 살펴본 결과, 인건비는 시설의 과반수가 집행 진행도중에 받는다고 응답함. 생계비는 과반수가 집행도중에 받는다고 응답함. 관리운영비는 47.5%가 집행 진행도중에 받는다고 응답하여 이 기간에 국고 및 지방비로부터 비용을 지급 받는 시설의 비율보다 2.5%가 낮음.

나. 희망하는 보조금 수준

- 보조금 인상을 희망하는 항목을 조사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인상이 필요하

다고 지적함. 인상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프로그램비로 현행보다 42.6% 인상을 요구하고, 다음으로는 시설증개축비로 39.4%, 관리운영비 35.1%, 인건비 32.1%, 생계비 22.9%를 인상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음.

- 거주자 1인당 지원받는 정부보조금과 희망하는 보조금액을 살펴본 결과, 현행 거주자 1인당 정부보조금 지급액은 연간 2,073,600원이고, 희망 정부보조금은 2,921,400원으로 평균 830,300원을 더 인상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음.
- 현행 보조금과 희망 보조금 간 차이를 알아본 결과, 차이가 가장 큰 시설은 부랑인시설로 1.3백만원임. 다음은 장애인시설로 1백만원, 아동시설 95만원, 정신요양시설 64만원, 노인시설 57만원, 모자복지시설 53만원의 순임.

다. 보조금 집행 방식

- 현행 정부보조금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가장 많은 응답은 생계비, 인건비, 관리운영비를 ‘별도로 집행한다’(80.5%)이고, 통합 집행하는 시설은 8.9%, 인건비와 관리비 통합집행 시설은 3.3%로 소수에 불과함.
- 희망하는 정부보조금 집행방식을 알아본 결과, 가장 많은 응답은 인건비는 따로 두고 생계비와 관리운영비를 같이 집행하는 것으로 37.5%이고, 비슷한 비율인 34.7%가 생계비, 인건비, 관리운영비를 통합해서 집행하는 것임.

라. 세출항목 중 과부족 항목

- 세출 항목 중 부족함을 많이 지적한 항목은 인건비, 사무운영비, 시설비, 사업운영비, 특별사업비 등임. 지출목에서는 연료비, 공공요금, 급여, 제세공과금, 수용 및 수수료, 퇴직금 등임. 반면 부식비, 일반의류비 등은 적정하거나 남는 편이라는 시설이 다른 목에 비해서 많음.
- 예산이 남는다고 지적한 항목 중 가장 큰 것은 주식비로서 18개 시설이 지적하였고, 다음은 부식비로, 런닝·팬티비, 운영비, 일반의류비 등의 순임

5.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지도·감독

- 시설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설에 대한 예산지원과 관련된 지도·감독 방식을 조사한 결과 전용을 허용하지 않는다가 48.2%로 가장 많음. 전용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보조금 유용을 막기 위해서’가 가장 많은 65.2%임.
 - 향후 정부보조금 운용방침으로는 1년 이내에 관간 전용을 허용할 것(47.1%)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음. 전용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응답도 31.4%임.
 -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시설수를 시설유형에 따라 파악한 결과, 아동복지시설이 가장 많은 44개소였고, 그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24개소, 정신요양시설 11개소, 노인시설 9개소 등임.
 - 지원 예산의 규모는 132개 지자체 1개소당 평균 1천1백만원으로 집계되었음. 각 지자체별로는 시도가 가장 많은 1억6천3백만원 정도이고, 시 1천5십만원, 군 4백6십만원, 구 1백6십만원의 순임.

6. 예산 지원방식의 문제점

- 거주자 인원비례방식
 - 시설의 유형과 수용자의 특성(장애정도, 연령 등)에 따라 차등을 두고는 있으나 대체로 종별 수용자 1인당 일정금액을 수용자의 수에 비례하여 지원하고 있음. 거주자수에 비례하여 지원하는 예산지원방식으로 인하여 소규모시설 일수록 운영이 어렵고, 대형시설은 상대적으로 운영에 여유가 있는 등 시설 대형화의 한 요인이 되고 있음.
- 예산 전용문제
 - 재무·회계규칙에는 예산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예산전용이 어려워 효율적인 지출이 어려운 실정임.
 - 의류 등 피복비나 쌀 등 주식비 또는 부식비 등은 후원물품으로 많이 접수

가 되는 까닭에 예산상 여유가 있는 반면에 난방비 등은 급작스러운 석유류나 가스의 가격인상으로 인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종사자 배치기준의 시설 종별 특수성 반영 미흡

- 정부보조금 내역 중 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모든 시설에 공통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시설관리운영비의 경우 시설종별로 수용자 1인당 지원액에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시설 종별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이는 시설 종별 수용자의 특성과 종사자 배치기준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임.
- 또한 종사자 수의 부족으로 첫째, 거주자의 개별보호가 어려움. 둘째,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의 부족으로 의료재활에 어려움이 있음. 셋째, 생활지도원의 부족으로 사회복귀에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시설 종별로 종사자 지원기준을 재검토하고 프로그램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시설종별 예산지원 단가 차이의 보정이 필요함.

운영비 지원 기준에 대한 형평성 미흡

- 따라서 시설 종별로 종사자 지원기준을 재검토하고 프로그램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시설종별 예산지원 단가 차이의 보정이 필요함.

교대제 문제

-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인건비 문제로 인해서 2교대제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음. 종사자의 사기와 거주자의 삶의 질을 위해서 인건비 지원을 통한 교대제 개선이 수반되어야 함.

정부보조금 지급시기 문제

- 거의 모든 항목에서 정부보조금 지급시기는 사업종료후나 사업진행 중에 지급되고 있어,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향후에는 사업초기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원활한 사업수행을 지원해야 함.

IV.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세입·세출 현황

1. 아동복지시설

가. 세입

- 2001년말 현재 아동양육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등 150개 아동복지 생활시설의 세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 시설의 평균 세입은 585,355천원임.
- 세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보조금 세입은 국고가 245,655천원으로 54.4%를 차지하고 지방비는 33.5%(151,106천원), 순수지방비는 12.1%(54,745천원)를 차지하고 있음.
- 150개 아동복지시설의 경상보조금 평균 세입은 412,204천원으로 나타남. 시설 종류별로 보면, 아동양육시설이 433,845천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은 아동일시보호시설(402,123천원), 아동보호치료시설(361,532천원), 아동직업훈련시설(241,342천원), 자립지원시설(41,068천원) 등의 순임.
 - 경상보조금 세입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인건비로서 전체 세입 중 56.6%(233,195천원)임.
- 지역규모별로 전체 세입을 분석한 결과, 대도시의 세입이 758,286천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중소도시(468,704천원), 군지역(448,542천원)의 순임.
 - 지역규모별 거주자 1인당 평균세입은 대도시 시설이 8,550.4천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중소도시(7,264.3천원), 군지역(7,055.6천원)의 순임.
- 시설을 전체 응답시설의 분포에 따라 3등분하여 대(72인 이상), 중(51~71인 이하), 소(50인 이하)로 구분, 시설 규모별 세입을 산출한 결과, 대규모 시설의 세입이 944,292천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중규모(481,385천원), 소규모(321,130천원)의 순임.

- 거주자 규모별 거주자 1인당 세입 규모를 산출한 결과 거주자 1인당 세입 규모가 가장 큰 시설은 중규모 시설(8,046.2천원)이고, 다음은 소규모 시설(7,980.1천원), 대규모 시설(7,248.6천원)의 순임.

나. 세출

- 2001년말 현재 아동양육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등 150개 아동복지 생활시설의 세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아동복지시설 1개소당 평균 세출은 573,891천원임. 이러한 세출은 2001년도 시설 1개소당 세입 평균 585,356천원에 미달하는 규모임.
 - 아동복지시설의 세출을 거주자 1인당 세출 금액으로 환산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 아동복지시설의 1인당 세출은 7,522천원으로서 이는 거주자 1인당 세입 7,753천원보다 약 231천원 적은 금액임.
- 시설 소재지 규모에 따른 평균 세출은 대도시의 총 세출이 742,434천원으로 중소도시(456,433천원), 군지역(445,643천원)에 비해 현저하게 높음.
 - 절대적인 금액으로는 대도시 지역 시설의 평균 인건비가 365,295천원으로 중소도시(223,789천원), 군지역(185,973천원)으로 월등하게 높다는 점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원인이 있음.
 - 시설 소재지 규모별 세출을 거주자 1인당 단가로 환산하여 분석한 결과 대도시 시설의 거주자 1인당 평균 세출은 8,139천원으로 중소도시(7,138천원)와 군지역(6,990천원)보다 현저하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시설 규모에 따른 평균 세출을 분석한 결과, 대규모 시설의 세출이 936,322천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시설 규모별 세출을 거주자 1인당 단가로 환산한 결과, 소규모 시설의 거주자 1인당 평균 세출은 7,482천원, 중규모 7,927천원, 대규모 7,172천원으로 중규모 시설의 1인당 세출이 가장 높고, 대규모 시설이 가장 적음.

2. 노인복지시설

가. 세입

- 무료양로시설(61개소), 무료요양시설(60개소), 전문요양시설(26개소), 실비양로시설(3개소), 실비요양시설(9개소) 총 159개소의 실태를 분석함.
 - 총세입 규모는 무료양로시설 320,101천원, 무료요양시설 537,082천원, 전문요양시설 881,455천원, 실비양로시설 210,910천원, 실비요양시설 334,899천원으로 평균 세입규모에 있어 큰 차이를 보임.
 - 1인당 평균 세입총액은 무료양로시설 6,453천원, 무료요양시설 8,635천원, 전문요양시설 11,033천원, 실비양로시설 5,433천원, 실비요양시설 6,409천원임.
- 무료양로시설과 무료요양시설을 시설 소재지역별로 대도시(특별·광역시·시·구), 중소도시(9개 도의 시·구), 군지역(16개 시·도의 군)으로 구분하였는데, 각각 42개소, 64개소, 41개소가 해당됨.
 - 무료양로시설의 세입은 대도시 409,473천원, 중소도시 301,707천원, 군지역 268,251천원으로 차이를 보임. 중소도시지역에 소재한 양로시설의 1인당 세입액이 가장 크며, 군지역, 대도시지역의 순으로 나타남.
 - 무료요양시설의 총세입액은 대도시 618,519천원, 중소도시 515,668천원, 군지역 464,195천원으로 나타남. 무료요양시설의 거주자 1인 기준 세입규모는 중소도시가 가장 크고, 대도시 지역이 군지역 보다 크게 나타남.
- 시설종별로 집단을 3분하고 대, 중, 소규모의 시설로 구분한 결과, 무료양로시설의 규모별 총세입은 소규모(40인 이하)시설 219,673천원, 41~60인의 중규모시설은 301,132천원, 61인 이상 대규모시설은 443,492천원임. 거주자 1인 기준 금액은 규모가 큰 시설의 1인당 세입금액이 가장 적음.
 - 무료요양시설의 규모별 총세입액은 소규모 342,575천원, 50~69인의 중규모 441,329천원, 70인 이상 대규모는 842,155천원으로 나타남. 거주자 1

인 기준, 소규모 9,053천원, 중규모 8,064천원, 대규모 8,640천원으로 거주자 규모를 감안하면 소규모시설의 세입액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나. 세출

- 전체 노인시설의 총 세출은 495,738천원이며, 무료양로시설(61개소) 348,635천원, 무료요양시설(60개소) 518,950천원, 전문요양시설(21개소) 880,595천원, 실비양로시설(3개소) 193,555천원, 실비요양시설(9개소) 326,939천원임.
 - 거주자 1인당 평균 세출총액은 실비시설 거주자에 대한 지출규모가 무료·전문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는데 이는 거주자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건비, 사무운영비, 시설비 사업운영비, 교육비, 사업비 등의 합계만으로 비교할 때도 유사한 결과를 보임.
- 무료양로시설의 지역별 세출금액은 대도시(412,364천원), 중소도시(367,164천원), 군지역(264,193천원)의 순이며, 무료요양시설의 경우도 대도시(610,631천원), 중소도시(508,427천원), 군지역(419,316천원)의 순임.
 - 무료양로시설의 1인당 세출금액은 중소도시시설 거주자에 대한 세출총액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군지역, 대도시 순이었음.
 - 무료요양시설의 거주자 1인 기준은 중소도시의 세입액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대도시-군지역의 순으로 양로시설과는 차이를 보임.
- 거주자 규모에 따라 3개의 범주로 구분한 분석에서는 양로시설의 경우 총 세출규모는 소규모시설은 220,772천원, 중규모시설은 390,440천원, 대규모시설은 425,891천원으로 나타남.
 - 거주자 1인 기준의 지출금액의 크기는 중규모시설-소규모시설-대규모시설 순으로 나타남.
- 요양시설은 세출총액이 소규모시설 336,389천원, 중규모시설 419,156천원, 대규모시설 813,721천원 등으로 나타남. 모든 항목에서 대규모 시설은 소규

모나 중규모시설에 비해 2배 이상의 세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사업비의 경우 큰 차이를 보임.

- 그러나 거주자 1인을 기준으로 보면, 소규모시설에서 1인당 세출금액이 가장 컸고, 대규모시설, 중규모시설의 순임.
- 양로 및 요양시설을 종합해 보면, 중규모시설은 차이가 있으나, 두 경우 모두 대규모보다는 소규모시설의 거주자 1인당 세출 규모가 크게 나타남.

3. 장애인복지시설

가. 세입

- 장애인시설의 총수입을 살펴보면 118개소 시설 평균 920,545천원이었음.
 - 지체장애인 시설이 19개소 평균 967,193천원, 시각·청각·언어 장애인시설 1개소 평균 635,038천원, 정신지체인 시설 48개소 평균 914,912천원, 중증장애인요양시설 40개소 평균 983,661천원이었음.
- 입소비용의 규모는 평균 10,820천원이고, 중증장애인요양시설은 평균 15,066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정신지체인 시설로서 평균 9,493천원이었음.
 - 시설 당 사업수입 평균은 571천원이고, 지체장애인시설이 평균 1,797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증장애인요양시설이 11천원으로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년도수입은 시설 당 평균 3,677천원이었음.
- 보조금 수입 중 인건비의 시설 당 평균 국고지원액은 332,685천원이고, 지방비는 153,201천원, 순수지방비는 56,152천원 등임. 생계비의 국고지원액은 66,074천원, 지방비 25,807천원, 순수지방비 9,097천원임. 관리운영비의 국고지원액은 54,659천원, 지방비 25,717천원, 순수지방비 10,161천원임.
- 시설의 세입을 전체 대비 비중으로 살펴본 결과, 세입의 비중이 가장 많은 것은 보조금으로 86.0%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은 후원금으로 4.3%, 그리고 전입금 4.2%의 순이었음.

- 지역별 세입규모는 대도시 시설 당 평균이 1,050,707천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중소도시 887,674천원, 군 지역 774,294천원의 순임.
 - 지역별 1인당 세입 규모를 보면 군 지역이 가장 많은 12,236천원, 다음은 대도시로 11,899천원이고, 중소도시는 10,093천원임.
- 시설 규모에 따라 보면, 111명 이상의 대규모 시설의 세입이 가장 많은 1,442,289천원이고, 다음이 중규모 시설 901,253천원, 69인 이하의 소규모 시설 659,459천원임.
 - 1인당 평균 세입은 소규모 시설이 가장 많은 14,542천원이었고, 그 다음은 중규모 시설로 9,944천원, 1인당 세입이 가장 적은 시설은 대규모 시설로 8,789천원으로 나타나,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나. 세출

- 장애인시설의 세출규모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861,601천원으로 조사되었음. 이는 세입 920,545천원보다 약간 적은 금액임.
 - 시설별로는 중증장애인요양시설이 가장 많은 913,585천원이고, 그 다음이 지체장애인시설로 890,966천원, 정신지체인 시설 865,201천원, 시각·청각·언어 장애인 시설은 가장 적은 606,140천원임.
 - 1인당 평균 세출규모를 살펴보았더니, 전체 평균은 10,848천원이었고, 세출 규모가 가장 많은 시설은 중증장애인요양시설로서 11,987천원으로 나타났음. 그 다음은 지체장애인시설로 11,738천원, 시각·청각·언어 장애인 시설 10,534천원, 정신지체인 시설 9,619천원의 순이었음.
- 시설 소재지별로 세출은 대도시가 971,631천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중소도시 828,094천원, 군 지역 741,103천원의 순임.
 - 1인당 세출 규모는 총계를 볼 때 군지역 시설의 평균이 가장 높은 11,495천원이고, 다음은 대도시 11,000천원, 중소도시 9,316천원의 순임.

- 시설규모별 세출은 111명 이상의 대규모 시설이 가장 많은 1,352,924천원이었고, 그 다음이 중규모 시설인 70명~110명 규모의 시설로 868,900천원이었고, 가장 세출이 적은 시설은 69인 이하 소규모 시설로 595,765천원이었음.
- 1인당 세출 규모에 있어서는 소규모 시설이 가장 높은 13,141천원이었고, 그 다음은 중규모시설로 9,603천원, 1인당 세출이 가장 낮은 시설은 대규모 시설로 8,362천원으로 조사되었음.

4. 모자복지시설

가. 세입

- 모자복지시설의 총수입을 살펴보면 42개소 시설 평균 238,185천원이었음.
 - 모자보호시설(23개소) 277,253천원, 모자자립시설(3개소) 9,077천원, 모자일시보호시설(8개소) 119,999천원, 미혼모시설(8개소) 329,970천원이었음.
- 입소비용의 규모는 533천원이고, 사업수입 평균은 315천원으로 파악되었음.
 - 보조금 수입 중 인건비는 국고로부터의 시설당 평균 지원액은 54,234천원이고, 지방비 22,017천원, 순수지방비 6,397천원 등임. 생계비의 국고로부터의 시설당 평균 지원액은 38,508천원, 지방비 12,445천원, 순수지방비 3,897천원임. 관리운영비의 국고로부터의 시설당 평균 지원액은 20,085천원, 지방비 9,934천원, 순수지방비 3,312천원임.
- 모자복지시설 1인당 세입평균은 4,703천원이고, 지역별 1인당 세입 규모는 군지역이 가장 많은 5,467천원, 다음은 대도시로 5,453천원이고, 중소도시 3,198천원으로 가장 낮은 규모를 보이고 있음.
- 시설의 규모별로 보면, 거주자 100명 이상의 대규모 시설의 세입이 가장 많은 262,588천원이고, 그 다음이 중규모 시설로 245,642천원임. 세입이 가장 적은 시설은 40인 이하의 소규모 시설로 199,074천원이었음.

나. 세출

- 모자복지시설의 세출규모는 전체적으로 233,591천원이고, 이는 세입 238,185천원보다 약간 적은 금액임. 1인당 평균 세출규모 살펴보았더니, 전체 평균은 4,483천원임.
- 인건비와 운영비(판공비와 운영비를 합한 것) 액수를 비교하였더니 전체적으로는 인건비 대 운영비의 비율이 80대 20으로 나타났음.
- 시설 소재지별로 세출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더니, 세출이 가장 많은 것은 대도시로 266,101천원이었고, 그 다음은 군지역으로 229,203천원이었음.
 - 중소도시에 소재한 모자복지시설의 평균 세출은 181,751천원이었음.
 - 1인당 세출 규모는 총계는 군지역 시설이 가장 높은 5,560천원이고, 다음은 대도시 시설로 5,181천원임. 중소도시 시설은 가장 낮은 2,952천원이었음.
- 시설규모별 세출은 101명 이상의 대규모 시설이 가장 많은 259,463천원이고, 그 다음이 중규모 시설인 41~100명 규모 시설로 244,422천원이고, 가장 세출이 적은 시설은 40인 이하의 소규모 시설로 185,398천원임.
 - 1인당 세출 규모는 소규모 시설이 가장 높은 6,824천원이고, 다음은 중규모 시설 4,474천원, 대규모 시설 1,906천원의 순임.

5. 정신요양시설

가. 세입

- 정신요양시설과 사회복지시설 54개소의 총 세입평균은 935,556천원으로 정신요양시설이 1,074,334천원, 사회복지시설이 평균 241,668천원으로 조사됨.
 - 항목별로 살펴보면, 입소비용으로 정신요양시설이 높은 평균 84,432천원이고 사회복지시설은 18,833천원임. 시설 당 사업수입 평균은 1,804천원으로 사회복지시설이 8,469천원으로 정신요양시설 451천원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시설 종별 세입항목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정신요양시설의 전체 세입 항목 중 84.1%,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73.4%를 차지함. 반면 법인 전입금에 의한 수입은 사회복지 시설이 6.0%로 정신요양시설 0.9%에 비해 다소 높았으나 보조금 수입의 비율과는 많은 차이를 보임.
 - 시설종류별 세입항목을 1인당 평균으로 살펴보면, 정신요양시설에 비해 사회복지시설의 1인당 평균 세입규모가 높게 나타남.
- 시설 소재지별 분포를 보면, 정신요양시설은 군 지역 비율이 62.2%(28개 시설)로 가장 높은 반면 사회복지시설은 대도시가 66.7%(6개 시설)임.
 - 시설 소재지별 세입규모를 살펴보면,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대도시의 세입 규모가 가장 많았으며 군 지역, 중소도시 순으로 대도시의 경우 1,205,230천원, 군 지역의 경우 1,053,776천원, 중소도시가 999,029천원으로 나타남.
- 거주자 규모별 평균 세입규모를 살펴보면, 사회복지시설은 모두 130명 이하의 소규모 시설로 분류하여 보조금 수입에 의한 비율이 73.4%로 가장 높고, 정신요양시설은 231명 이상 시설의 보조금 비율이 가장 높은 87.1%, 131~230명 시설이 81.2%, 130명 이하 시설이 80.3%를 차지함.

나. 세출

- 54개 정신요양시설의 세출 규모는 세출규모에 비해 다소 적게 나타남. 정신요양시설이 45개소 시설평균 1,060,808천원이었고, 사회복지시설이 9개소 242,036천원으로 전체 평균 924,346천원으로 나타남.
- 시설 종별 세출항목을 보면, 정신요양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모두 인건비 비율이 각각 35.6%와 53.1%로 월등히 높음.
 - 시설종류별 1인당 세출을 보면, 정신요양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모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36.7%와 56.6%로 가장 높고 특히 정신요양시설의 생계비 및 의료비 등 사업운영비에 관한 세출비율이 높았음.

- 지역별 세출규모를 보면,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대도시에 소재 한 시설은 총 9개 시설로 총 세출 평균이 가장 많은 1,224,023천원이었고 다음이 군 지역 28개 시설로 1,046,762천원, 중소도시가 8개 시설로 926,353천원을 나타냄.
- 거주자 규모별 세출을 살펴보면, 231명 이상의 시설이 가장 높은 시설평균 1,431,810천원의 세출규모를 나타냈고 다음이 131~230명 시설이 927,574천원, 130명 이하의 시설이 559,503천원이었음.
 - 130명 이하 시설이 인건비로 인한 세출비율이 가장 높은 43.6%를 나타냈고 사무운영비와 사업운영비에서 230명 이상 대규모 시설이 가장 높은 9.7%와 35.4%이고 시설비는 130~230명 시설이 가장 높은 21.3%를 차지하였음.
 - 교육비와 사업비 그리고 기타 항목에서 130명 이하의 소규모 시설이 각각 0.1%, 1.0%, 5.0%로 가장 높게 나타남. 따라서 130명 이하의 시설의 인건비가 차지하는 세출비율이 가장 높았고 130~230명 시설과 230명 이상 시설의 교육비로 인한 세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6. 부랑인복지시설

가. 세입

- 부랑인복지시설의 총수입은 22개소 시설 평균이 1,019,736천원이었음.
 - 항목별로는 입소비용은 없었고, 사업수입은 시설당 평균 10,520천원으로 파악되었음. 과년도 수입 시설당 평균은 758천원이었음.
 - 보조금 수입 중 인건비의 국고지원액은 195,034천원, 지방비 96,626천원, 순수지방비 59,657천원임. 생계비의 국고지원액은 215,475천원, 지방비 88,294천원, 순수지방비 35,394천원(8개소)임. 관리운영비의 국고지원액은 80,919천원, 지방비 42,941천원, 순수지방비 23,193천원임.
- 부랑인복지시설 세입 중 비중이 가장 많은 것은 보조금 수입으로 88.6%이고, 전입금 4.0%, 후원금 2.6%, 잡수입 1.8% 등임.

- 거주자 1인당 평균 세입을 항목별로 살펴보았더니 보조금 수입이 1인당 4,066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후원금 수입으로 207천원, 전입금 192천원, 잡수입 120천원 등임.
- 부랑인복지시설의 세입을 시설이 소재한 지역별로 살펴보았더니, 대도시 시설당 평균이 3,150,556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군지역으로 647,529천원, 중소도시 444,912천원의 순이었음.
- 1인당 세입은 전체 평균은 4,712천원이었음.
 - 지역별로는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고, 군지역 4,796천원, 중소도시 4,766천원, 대도시 4,402천원으로 대도시 시설의 1인당 세입 단가액이 가장 낮음.
- 거주자 규모별 세입에 있어서는 거의 모든 항목이 거주자 수에 비례한 것을 알 수 있음.
 - 대규모 시설의 시설당 세입 평균이 5,611,166천원이었고, 그 다음이 중규모 시설로 689,849천원, 소규모 시설은 가장 적은 366,709천원임.
 - 1인당 세입을 시설 규모별 보면, 소규모 5,802천원, 중규모 4,185천원, 소규모 3,512천원의 순으로 소규모시설이 1인당 세입이 가장 많았음.
 - 항목별로 살펴보면 인건비의 경우 소규모 시설에서 비중이 높았고, 생계비는 대규모시설에서 비중이 다른 시설에 비해 매우 높았음. 관리운영비는 비슷한 수준이나 대규모 시설이 약간 더 높았음.

나. 세출

- 부랑인복지시설의 세출규모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1,008,082천원으로 조사되었음. 이는 세입 1,019,736천원보다 약간 적은 금액임.
- 항목별 소계를 보면 인건비는 시설당 평균 373,381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판공비 2,998천원, 사무운영비 133,888천원, 시설비 103,940천원, 사업운영비 362,629천원, 교육비 94천원, 사업비 12,815천원 등임.

- 세출 비중을 보면 인건비가 가장 많은 37.0%이고, 그 다음이 사업운영비로 36.0%를 차지하고 있음. 사무운영비는 13.3%, 시설비는 10.3% 등임.
- 1인당 평균 세출 규모는 4,674천원으로 나타났음.
- 지역별 세출을 살펴보면 대도시가 가장 많은 3,106,975천원(4개소)이고, 그 다음은 군지역으로 639,332천원(9개소), 중소도시 443,990천원(9개소) 등임.
- 1인당 평균 세출은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데, 중소도시 시설에서 4,765천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이 군지역 4,719천원, 대도시 4,369천원임. 따라서 지역별로 차등적인 예산 지원이 그다지 필요한 것은 아님을 시사함.
- 시설규모별 세출은 501명 이상 대규모 시설이 가장 많은 5,530,706천원이고, 그 다음이 중규모시설인 101~500명 규모의 시설로 682,899천원이었고, 가장 세출이 적은 시설은 100인 이하의 소규모 시설로 365,200천원이었음.
- 1인당 평균 세출액을 보면 소규모시설이 가장 많은 5,761천원이었고, 중규모시설 4,150천원, 대규모시설 3,470천원으로 파악되었음.

7. 시설의 세입세출 종합

가. 세입

- 시설의 평균 시설당 세입 규모를 비교하여 살펴보았더니, 세입이 가장 많은 것은 부랑인복지시설로 시설당 10억원에 가까웠음. 다음은 정신요양시설로 9억3천만원, 장애인시설 9억2천만원, 아동시설 5억8천만원, 노인시설 4억9천만원이고, 모자복지시설은 2억3천만원 수준으로 가장 낮음.
- 시설당 세입이 가장 많은 시설은 장애인시설로 1인당 평균 10,152천원에 이르고 있었음. 그 다음은 아동시설로 7,847천원, 노인시설 7,118천원이었음.
- 나머지 시설의 1인당 단가는 비교적 낮아, 정신요양시설 4,588천원, 부랑인복지시설 3,915천원, 모자복지시설 3,430천원으로 나타났음.

나. 세출

- 시설당 평균 세출이 가장 많은 시설은 부랑인복지시설로 1억원에 이르고 있었고, 그 다음은 정신요양시설로 9억2천만원이었음.
 - 다음으로 장애인시설 8억9천만원, 아동시설 5억5천만원, 노인시설 4억9천만원이고, 모자복지시설은 세입규모가 가장 적은 2억3천만원의 수준이었음.
- 세입과 세출을 비교했을 때 노인시설과 모자복지시설을 제외하고 모든 시설에서 세입이 세출보다 많았음.
 - 이러한 결과만으로 시설의 세입이 충분한가에 대한 논의를 할 수는 없고, 다만 시설들이 세입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려고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 시설당 평균 1인당 세출 단가를 계산하였더니, 세출단가가 가장 높은 곳은 세입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시설로 9,909천원이고, 다음은 아동시설로 7,490천원, 노인시설 7,164천원의 순임. 나머지 시설들은 1인당 세입단가와 마찬가지로 1인당 세출 규모도 적은 것으로 나타나, 정신요양시설 4,533천원, 부랑인복지시설 3,879천원, 모자복지시설 3,430천원이었음.
- 이와 같은 시설당 및 1인당 차등적인 세입, 세출액은 거주자의 특성이 반영되어 초래된 것이기도 하지만, 부랑인시설이나 정신요양시설의 경우처럼 보호가 필요하지만 국가의 지원이 충분치 않아 초래된 결과라고 볼 수 있음.

V. 외국의 사회복지시설 지원제도

1. 일 본

-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의 표준운영비를 산출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시설 보호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의 구조개혁을 위한 기반정비라는 의미에서 큰 의의를 가짐.

- 일본 사회복지 개혁 중 한가지가 사회복지서비스를 조치제도에서 지원비제도로 바꾸고, 2003년 4월부터 장애인복지영역에서 이를 실시함.

가. 조치제도와 지원비제도

- 일본의 사회복지시설은 그 대상에 따라 조치제도와 지원비제도, 개호보험제도 등과 연결되어 있음.
 - 아동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아직 조치제도에 머물러 있지만, 장애인복지시설은 2003년부터 지원비제도로 바뀌게 되고, 노인보건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이미 2000년 개호보험의 실시로 사회보험방식으로 바뀌었음.
- 일본의 조치제도는 조치위탁의 형태로 장점은 사회자원이 부족한 시대에 행정이 책임을 지고 대상자를 보호하고 균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임.
 -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최저수준의 생활보다는 다소 경제적인 부담을 하더라도 양질의 서비스를 자신이 선택하여 이용하고 싶다는 구조로 바뀌고 있는 현 시점에서 조치제도는 적절하지 못한 제도로 비판받아 왔음
- 조치제도의 단점을 개선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 지원비제도임.
 - 지원비제도의 강점은 공적 비용을 이용자에게 지원하여 서비스의 선택권을 이용자에게 주고,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여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경쟁원리를 도입하려는 것임.

나. 지원비제도의 개관

- 지원비제도의 의의는 첫째 이용자 스스로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고, 둘째, 행정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급부하는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서비스 구매자 내지는 소비자로서의 권리성이 커진다는 것임. 셋째, 이용자가 서비스를 선택함으로써 경쟁원리가 작동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

- 지원비 지급결시 감안사항은 장애인에게 지원비의 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후생노동성이 정한 사항을 감안하여 재가서비스는 지급량과 지급기간을, 시설서비스는 장애정도구분과 지급기간을 정하고 있음.
- 상담지원체제의 충실 및 서비스이용에 관한 알선·조정, 요청
 - 장애인이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으려면 장애인 주변에 서비스 선택을 위한 적절한 상담이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 있어야 함.
- 지정 기준의 주된 내용
 - 지정 기준은 직원, 설비, 운영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며, 생활시설과 통원시설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음.
- 계약에 있어서 기본적인 사고
 - 지원비제도에서는 원칙적으로 이용자 본인과 사업자간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음.

다. 지원비 기준

- 지원비 기준액은 시설훈련 등(시설보호) 지원비와 재가생활지원비(재가보호), 재가생활지원비(주간보호), 재가생활지원비(단기입소), 재가생활지원비(지역생활원조)로 구분함.
- 지원비의 결정요소는 장애정도(구분A(重症), 구분B(中症), 구분C(輕症)), 정원규모, 지역, 장애특성에 따라 차등적인 지원을 함.

라. 이용자 부담분 기준

- 이용자 부담 수준은 조치제도에서의 수준과 같도록 설정함.
- 이용자 본인 부담분은 대상수입액에 따라 40계층으로 구분한 부담분이 설정되어 있음.

마. 지원비제도의 과제

- 지원비제도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과제는 복지 영역에 시장경쟁원리의 도입으로 나타날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하는 것, 서비스 공급 측의 참가조건을 완화하는 것과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 서비스의 가격 메커니즘이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서비스 내용이나 질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정가격이 설정되는 것, 공적인 체계로 다양화하는 이용자의 욕구에 대응하는 것 등임.

2. 영국

가. 서 론

- 영국의 사회복지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지불방식에 기초하고 있음.
 - 첫째는 중앙정부가 조직하고 재정지원하는 급여체제(Benefit System)이고, 둘째는 지방차원에서 지방정부나 자원기관(voluntary organisation)을 통해 조직화되어 보호자(carer)에게 “반(혼합)지불”되는 방식(at “semi-paid” rates)임.
- 기관에 대한 지원금(Agency Payments)은 대체적으로 이용자에 대한 생활비(숙식비bed and breakfast accommodation 등)가 포함되어 있고, 정부보조금(Grants)은 지역에 따라 그 내역이 틀린데 여러 가지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지출로 구성됨(사회복지 수급자에 대한 상담비용, 지역사회개발비 등).
 - 아동시설 및 성인시설에 대해 정부가 지불한 금액의 대부분은 지원금(Agency Payments) 지불로 되어 있고, 지역사회보호나 데이케어의 경우는 정부보조금(Grants)이 지원금보다 두 배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던 것이 1990년 초반에 들어서면, 지방정부에게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니드를 사정(assessment)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구매하며, 또한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지만 구매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돈(Direct Payments)을 지불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됨.

- 이처럼 사회보장 급여가 시설 이용료로 지불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부의 사회보장 부담과 민간 및 복지시설 수가 급격히 증가함.
- 1999년 현재 영국에는 24,800개의 residential care home과 6,100개의 nursing home이 있으며, 각각 345,000명과 196,000명의 이용자가 각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됨. 이중 민간 및 자원복지시설(independent sector)이 90%의 시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이러한 과정에서 영국 정부의 역할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원을 지원하는 역할에서, 이용자의 니드를 사정하고 민간시설들을 평가·감독하며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계약자로서 역할하는 추세로 변화하여 왔음.

나.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비 제도

- 영국정부의 급여체계(Benefit System)는 주로 피보호자(care-recipient)에게 지불되도록 하고 있으나, 단 두 가지 급여만은 비공식적인 보호자(informal carer)에게 지불될 수 있음.
 - 그 중 첫째는 장애인보호수당(Invalid Care Allowance: ICA)인데, 이것을 보호자가 수급하려면 피보호자가 반드시 보호대기수당(Attendance Allowance)의 현재 수급자여야만 보호자는 ICA를 보호에 대한 보수로 받을 수 있음.
 - 보호자에게 지불되는 두 번째의 급여는 보호자 할증금(Carer Premium)이라 불리우는 것임. 이는 보호자가 자산조사에 의한 공적부조 수급자인 경우에 지불되는데, 보호자는 자산조사에 의한 수급자격자인 경우에 ICA, 공적부조와 보호자 할증금을 동시에 모두 수급 가능함.
- 지방정부가 노인을 위해 제공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는 대체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우선 가정에 머물면서 보호를 요하는 노인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재택서비스(home help나 home care 등)를 제공할 수 있으며, 혹은 지방정부를 대신

해 민간이나 자원복지부문에서 서비스(시설 혹은 재택)를 제공하도록 알선 (arrangement)을 해줄 수도 있음.

- 이때 중요한 것이 개별 노인이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받아야 할지 지방정부에서 니드를 사정하는 욕구조사인데, 이에 따라 보호계획(care plan)을 수립하게 됨.
- 지방정부는 개별 노인의 재정에 대한 조사(financial assessment)도 실시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시설 이용 비용을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됨.

다. 노인복지 시설의 이용료

□ 정부의 시설 민영화에 따라 정부는 시장에 의해 공급되지 않던 보건 및 복지 서비스가 적정한 유사시장(Quasi-market) 가격에 의해 책정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왔음.

- 이러한 가격의 책정을 위해서는 시설 이용자의 건강에 대한 사정(health assessment), 어떤 서비스가 적정할 것인가에 대한 사정 등이 필요함.
- 장기보호(long-term care)를 위한 사정에서 대략적으로 책정된 무료 너싱케어(free nursing care)의 추산가격은 서비스 필요의 정도에 따라 고(High - 주당 £ 110), 중(Medium - 주당 £ 70), 하(Low - 주당 £ 35)로 나누어짐
- 우선 ‘고’의 경우는 매우 복잡한 의료 및 재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중’은 표준화된 시설보호로도 되는 경우, ‘하’는 재택 보호(home care)가 가능한 경우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체적인 비용의 산정은 어떤 시설에서 보호를 받을 것인가에 따라, 또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서비스 비용의 수준(Levels of pay)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리적 장소 혹은 지방 정부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게 됨.
- 어떤 경우는 시장가격에 준하는 이용료가, 또 어떤 경우에는 지방정부가 체결할 계약 기준에 따라 정해짐.

- 영국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서비스 이용료를 이용자로 하여금 지불케 하므로써 얻게된 제도적 장점은, 이로 인해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감(accountability)을 높여주었다는 점임.

3. 미국

가. 시설 보호 인구

- 미국은 1950년대 이후 시설보호사업의 문제점으로 비인권적인 처우, 비용의 비효율성, 재정지원방식 등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면서 지역사회보호체제로 전환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함.
- 1990년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미국에는 약 천만의 인구(모든 연령대를 포함한 전체 인구의 5% 정도)가 건강상 혹은 장애문제로 인해 일상생활상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음.
 - 이들 중 대다수는 지역사회에서 보호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고, 대부분의 케어는 친구나 친지, 이웃에 의해 제공되고 있음.

나. 정부의 재정지원 방식

- 최근 미국 정부의 사회복지 조직에 대한 재정지원은 주나 지방정부로 이전되고 있음. 연방정부의 보조금은 지원방식에 있어서 유연성을 갖도록 하였으나, 공공부문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방법 및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를 결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음. 그리하여 현재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지원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 먼저, 주정부가 재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가 운영하는 기관, 비영리 기관 등에 할당해 주면, 이들은 하위 단위의 시설 등과 하청과 같은 형식의 계약을 수립하여 이들 시설에 재원을 할당해 주는데, 이러한 재원은 작은 시설들에게는 가치있는 재원이 되고 있음.

- 이처럼 현재 미국에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방식은 존재하지 않고 다양하게 분할된 서비스가 제공(various fragmentary provision)되고 있음. 또한 공공부문에서 제공(public provision)되는 서비스에 일관된 분배의 원칙이 결여되어 있음.

다. 시설의 자원 구성 및 변화 동향

- 2001년도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시설 및 기관(이후 조직)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이들 조직의 자원은 개인기부금, 재단의 재정지원, 정부의 재정지원, 법인 기부금, 서비스 이용료, 캘리포니아 메디케어, 메디케어 등으로 구성됨.
 -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자원은 정부재원(44.3%)이고, 다음은 재단재정지원(19.9%)임. 서비스 이용료도 19.7%나 차지하고 있음.
 - 이러한 자원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조직의 비율을 보면, 개인기부금 지원을 받는 조직이 89.8%로 가장 많고, 재단의 재정지원을 받는 조직이 86.0%,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조직이 72.4% 등임.
-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사례를 통해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사회복지서비스를 공급하는 시설의 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다음과 같음.
 - 경기가 침체되면서, 개인기부금의 변화는 규모에 따라서 차이를 보였는데, 중규모 시설 중 38.5%가 재정지원 감축을 경험했고, 다음은 소규모(30.6%), 대규모(22.5%) 조직의 순으로 나타남.
 - 재단의 재정지원은 대도시지역 사회복지조직 중 35.5%, 중소도시 중 25.0%, 그리고 농어촌 중 11.6%에서 감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규모별로 보면, 대규모 조직의 대부분이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중규모 조직 중에서는 29.4%, 소규모 조직 중에서는 18.3%가 이를 경험함.
 - 정부지원금은 대도시 28.6%, 중소도시 26.3%, 농어촌 15.6%가 감축을 경험

하였고, 조직규모별로 보면, 대규모 조직 중 41.9%, 중규모 시설 중 21.9%, 소규모 조직 중 14.3%가 채용감축을 경험함. 법인기부금의 경우는 대도시 소재 조직 중 43.1%, 농어촌 중 40.7%, 중소도시 17.1%인 것으로 나타남. 규모별로 보면, 중규모 중 48.4%, 대규모 35.1%, 소규모는 26.3%의 순임.

- 전체적으로 볼 때, 가장 많은 감축이 나타난 재원은 정부지원금(조직당 평균148,100달러)으로 나타났음. 그리고 다음은 재단지원금(68,100달러)이고, 개인기부금(33,500달러)이나 법인기부금(18,200달러)은 상대적으로 적음.
- 재정변화가 조직의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시설이 34.1%로 가장 많고, 다음은 시설 직원의 봉급인상계획 취소 25.6%, 주요 직원 감축 22.8%, 클라이언트에 대한 기타 서비스 축소 또는 취소 17.4%, 클라이언트에 대한 주요한 서비스 축소 13.6%, 신규클라이언트 입소 제한 또는 중단 12.5%, 직원봉급 감축 8.0% 등의 순임.

이러한 미국의 사례를 보면, 채용 감소는 서비스 제공하는 직원의 인원 및 처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 내용의 축소도 동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즉, 채용의 축소는 시설 거주자 및 이용자의 삶의 질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음.

VI.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표준운영비 산출

1. 개요: 표준운영비 산출의 공통기준

가. 산출 항목 및 산출 기준

1) 산출 항목

본 연구는 현재 집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 실태를 바탕으로 현실을 반영한 운영비를 재산정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는 바, 표준운영비 산출

을 위해 포함하여 고려하고자 하는 세부 운영비 항목들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의 시설회계 항목 중 세출회계를 기준으로 함.

- 이러한 시설회계는 크게 사업비(직접비)와 사무비(간접비)로 구분되고, 사업비는 운영비, 교육비, 사업비로, 사무비는 인건비, 운영비, 판공비로 구분됨.

〈표 VI-1〉 표준운영비 산출 항목

관	항		목
	기존	본 연구	
사업비 (직접비)	운영비	생활비	생계비, 수용기관경비, 피복비, 의료비, 장의비, 의료 재활비, 직업재활비, 자활사업비, 기타(특별위로금, 월동대책비, 복지비)
	교육비	교육비	수업료, 학용품비
	○○사업비	프로그램비	○○사업비
사무비 (간접비)	인건비	인건비	급여, 상여금, 일용직급, 제수당,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부담금, 기타 후생경비
	운영비	운영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연료비
	판공비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정보비, 회의비

2) 산출 기준

- 대표시설의 선정: 본 연구에서는 각 시설유형별로 분석을 위한 사례(시설) 수가 충분한 대표적인 1가지 시설만을 선정하여 표준운영비를 산출함.
 - 아동복지시설 중 아동양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무료양로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중 정신지체장애인시설, 모자복지시설 중 모자보호시설, 정신요양시설 중 정신요양시설, 부랑인복지시설을 선정함.
- 시설 규모에 따른 운영비 차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거주자 수에 따라 3등분되는 지점을 찾아,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로 분류함.

- 각 유형의 시설 규모(대, 중, 소)별로 평균 거주자 수를 산출하는데, 이 때 거주자 수는 보통 소수점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소수점으로 산출된 평균거주자 수를 평균거주자 수와 가장 인접한 10자리 '정수'로 대체하여, 각 시설 유형에 따른 규모(대, 중, 소)별 표준거주자를 설정함.

- 물가상승률 반영: 본 조사결과 산출된 세출관련 통계치는 모두 2001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바, 보다 현실적인 표준운영비를 추정하기 위하여 본 조사 결과 산출된 통계치에 물가상승분(1.063)을 적용함.

나. 항목별 산출 기준

- 종사자 인건비 산출기준: 본 표준운영비 산출에 포함되는 비용단가는 2001년 사회복지시설 세출의 평균값을 활용하고 있는 바, 종사자 인건비 또한 200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책별 급여 기준을 활용함.

<표 VI-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

직책	호봉	2001년 인건비
시설장	15호봉	1,793
사무국장(총무)	8호봉	1,333
과장, 사회복지사, 사회재활교사, 간호사, 영양사, 각종 교사, 치료·훈련사	4호봉	1,114
생활보조원, 사무원	4호봉	1,041
기능직, 취사, 세탁	4호봉	898
관리인	4호봉	980
축탁의사	4호봉	1,392

- 표준운영비 산출 항목별 산출 공식: 표준운영비 산출에 포함되는 산출 항목, 즉, 직접비(생활비, 교육비, 프로그램비)와 간접비(인건비, 운영비, 업무추진비)의 산출 공식은 다음의 <표 VI-3>과 같음.

〈표 VI-3〉 표준운영비 산출 항목별 산출 공식

산출항목		산출 공식	
직 접 비	생활비	공식 세부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실태조사결과에 근거하여 대·중·소로 구분한 시설 규모별 거주자 현원 1인당 연간 생활비 평균값 • B: 대중소로 구분한 시설 규모별 모형에 따른 시설 거주자 수 • C: 2001~2003년 물가상승지수 1.063
		공식	• $A \times B \times C$
	교육비	공식 세부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실태조사결과에 근거하여 대·중·소로 구분한 시설 규모별 거주자 현원 1인당 연간 교육비 평균값 • B: 대중소로 구분한 시설 규모별 모형에 따른 시설 거주자 수 • C: 2001~2003년 물가상승지수 1.063 • D: 거주자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 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가중치 적용(시설 유형별로 선택적 적용, 예: 1.25)
		공식	• $A \times B \times C \times D$
	프로그램비	공식 세부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실태조사결과에 근거하여 대·중·소로 구분한 시설 규모별 거주자 현원 1인당 연간 교육비 평균값 • B: 대중소로 구분한 시설 규모별 모형에 따른 시설 거주자 수 • C: 2001~2003년 물가상승지수 1.063 • D: 거주자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 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가중치 적용(시설 유형별로 선택적 적용, 예: 1.1)
		공식	• $A \times B \times C \times D$
간 접 비	인건비	공식 세부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200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월보수 국고보조기준에 따른 직책 및 근무연수별 인건비(기본급과 수당 등이 통합된 총액 인건비 기준)로서 시설장 15호봉, 총무 8호봉, 기타 직원 4호봉 인건비 적용 • B: 월보수로 산정하였으므로 연간 인건비 산정을 위해 12개월 적용 • C: 시설유형별 법정종사자 배치기준에 따른 각 직책별 필요 종사자 수 • D: 2001~2003년 물가상승지수 1.063
		공식	• $A \times B \times C \times D$
	운영비	공식 세부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실태조사결과에 근거하여 대·중·소로 구분한 시설 규모별 연간 운영비 평균값 및 평균 거주자 수(예: 42.1인, 65.3인, 122.5인)를 산출한 후, 운영비 평균값을 거주자 규모별 모형(예: 40인, 60인, 120인)에 비례하여 제조정한 값 • B: 2001~2003년 물가상승지수 1.063
		공식	• $A \times B$
	업무추진비	공식 세부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직접비(생활비, 교육비, 프로그램비) • B: 간접비(인건비, 운영비) • C: 업무추진비 가중치 0.02(2%) 적용
		공식	• $(A+B) \times C$
연간표준운영비	공식	직접비(생활비, 교육비, 프로그램비)+간접비(인건비, 운영비, 업무추진비)	
1인당 보호비	공식	연간표준운영비 ÷ 시설 거주자 수	

2. 시설유형별 표준운영비 산출

가. 아동복지시설

□ 앞에서 제시한 산출기준 및 공식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의 규모(모형)별로 표준운영비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각 모형별 연간표준운영비와 거주자 1인당 보호비용은 모형1(40인 시설)의 경우는 각각 303,770천원, 7,594천원, 모형2(60인 시설)은 각각 490,109천원, 8,169천원, 모형3(120인 시설)은 795,954천원, 6,633천원임.
- 1인당 단가로 환산한 보호비용은 중규모(모형2)-소규모(모형1)-대규모(모형3) 시설의 순으로 나타났음.
- 또한 각 모형별 세부항목의 비율을 보면, 직접비는 규모가 큰 시설일수록 증가하고, 간접비는 감소함을 볼 수 있음. 특히 인건비의 경우, 다른 시설과는 달리, 중규모 시설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표 VI-4> 아동양육시설 규모(모형)별 표준운영비 항목 구성비

(단위: 천원, %)

구분		모형1 (40인 시설)		모형2 (60인 시설)		모형3 (120인 시설)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직접비	생활비	64,418	21.2	107,469	21.9	199,376	25.0
	교육비	18,230	6.0	35,478	7.2	46,400	5.8
	프로그램비	11,740	3.9	14,523	3.0	27,502	3.5
	소계	94,388	31.1	157,470	32.1	273,278	34.3
간접비	인건비	175,357	57.7	284,382	58.0	432,314	54.3
	운영비	28,069	9.2	38,647	7.9	74,755	9.4
	업무추진비	5,956	2.0	9,610	2.0	15,607	2.0
	소계	209,382	68.9	332,639	67.9	522,676	65.7
연간표준운영비		303,770	100.0	490,109	100.0	795,954	100.0
1인당 보호비용		7,594		8,168		6,633	

나. 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시설(노인무료양로시설)의 규모(모형)별로 표준운영비를 산출한 결과, 각 모형별 연간표준운영비와 거주자 1인당 보호비용은 모형1(30인 시설)의 경우는 각각 220,829천원, 7,361천원, 모형2(50인 시설)은 각각 295,364천원, 5,907천원, 모형3(80인 시설)은 419,053천원, 5,238천원임.
- 1인당 단가로 환산한 보호비용은 소규모(모형1)-중규모(모형2)-대규모(모형3) 시설의 순으로 나타났음.
 - 또한 각 모형별 세부항목의 비율을 보면, 직접비는 규모가 큰 시설일수록 증가하고, 간접비는 감소함을 볼 수 있음.

〈표 VI-5〉 노인무료양로시설 규모(모형)별 표준운영비 항목 구성비

(단위: 천원, %)

구분		모형1 (30인 시설)		모형2 (50인 시설)		모형3 (80인 시설)	
		금액	백분율	금액	백분율	금액	백분율
직접비	생활비	52,587	23.8	74,410	25.2	119,481	28.5
	프로그램비	1,595	0.7	2,551	0.9	3,742	0.9
	소계	54,181	24.5	76,961	26.1	123,223	29.4
간접비	인건비	135,520	61.4	176,288	59.7	240,936	57.5
	운영비	26,798	12.1	36,324	12.3	46,755	11.2
	업무추진비	4,330	2.0	5,791	2.0	8,217	2.0
	소계	166,648	75.5	218,403	73.9	295,831	70.6
연간표준운영비		220,829	100.0	295,364	100.0	419,053	100.0
1인당 보호비용		7,361		5,907		5,238	

다.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시설(정신지체인시설)의 규모(모형)별로 표준운영비를 산출한 결과, 각 모형별 연간표준운영비와 거주자 1인당 보호비용은 모형1(50인 시

설)은 각각 533,801천원, 10,676천원, 모형2(100인 시설)은 각각 871,121천원, 8,711천원, 모형3(150인 시설)은 1,196,117천원, 7,974천원임.

- 1인당 단가로 환산한 보호비용은 소규모(모형1)-중규모(모형2)-대규모(모형3) 시설의 순으로 나타났음.
- 또한 각 모형별 세부항목의 비율을 보면, 직접비는 규모가 큰 시설일수록 증가하고, 간접비는 감소함을 볼 수 있음.

〈표 VI-6〉 정신지체인시설 규모(모형)별 표준운영비 항목 구성비

(단위: 천원, %)

구분		모형1 (50인 시설)		모형2 (100인 시설)		모형3 (150인 시설)	
		금액	백분율	금액	백분율	금액	백분율
직접비	생활비	83,329	15.6	163,702	18.8	232,478	19.4
	교육비	1,993	0.4	3,986	0.5	5,979	0.5
	프로그램비	21,547	4.0	43,147	5.0	64,721	5.4
	소계	105,896	19.8	210,835	24.2	303,178	25.3
간접비	인건비	366,072	68.6	574,887	66.0	785,566	65.7
	운영비	51,366	9.6	68,317	7.8	83,920	7.0
	업무추진비	10,467	2.0	17,081	2.0	23,453	2.0
	소계	427,905	80.2	660,285	75.8	892,938	74.7
계		533,801	100.0	871,121	100.0	1,196,117	100.0
1인당 보호비용		10,676		8,711		7,974	

라. 모자복지시설

- 모자복지시설(모자보호시설)의 규모(모형)별로 표준운영비를 산출한 결과, 각 모형별 연간표준운영비와 거주자 1인당 보호비용은 모형1(40인 시설)의 경우는 각각 147,795천원, 3,695천원, 모형2(60인 시설)은 각각 208,357천원, 3,473천원, 모형3(120인 시설)은 341,522천원, 2,846천원임.

- 1인당 단가로 환산한 보호비용은 소규모(모형1)-중규모(모형2)-대규모(모형3) 시설의 순으로 나타났음.
- 또한 각 모형별 세부항목의 비율을 보면, 직접비는 규모가 큰 시설일수록 증가하고, 간접비는 중규모-소규모-대규모시설의 순임.

〈표 VI-7〉 모자보호시설 규모(모형)별 표준운영비 항목 구성비

(단위: 천원, %)

구분	모형1 (40인 시설)		모형2 (60인 시설)		모형3 (120인 시설)		
	금액	백분율	금액	백분율	금액	백분율	
직접비	생활비	67,564	45.7	82,212	39.5	176,288	51.6
	교육비	6,431	4.4	9,647	4.6	19,293	5.6
	프로그램비	5,192	3.5	8,279	4.0	19,223	5.6
	소계	79,187	53.6	100,138	48.1	214,805	62.9
간접비	인건비	50,361	34.1	79,865	38.3	79,865	23.4
	운영비	15,350	10.4	24,268	11.6	40,155	11.8
	업무추진비	2,898	2.0	4,085	2.0	6,696	2.0
	소계	68,608	46.4	108,219	51.9	126,717	37.1
연간표준운영비	147,795	100.0	208,357	100.0	341,522	100.0	
1인당 보호비용	3,695		3,473		2,846		

마. 정신요양시설

- 정신요양시설의 규모(모형)별로 표준운영비를 산출한 결과, 각 모형별 연간 표준운영비와 거주자 1인당 보호비용은 모형1(60인 시설)의 경우는 각각 375,208천원, 6,253천원, 모형2(180인 시설)은 각각 800,903천원, 4,449천원, 모형3(350인 시설)은 1,257,086천원, 3,592천원임.
- 1인당 단가로 환산한 보호비용은 소규모(모형1)-중규모(모형2)-대규모(모형3) 시설의 순으로 나타났음.

- 또한 각 모형별 세부항목의 비율을 보면, 직접비는 대규모 시설에서 가장 크고, 간접비는 소규모 시설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음.

〈표 VI-8〉 정신요양시설 규모(모형)별 표준운영비 항목 구성비

(단위: 천원, %)

구분		모형1(60인 시설)		모형2(180인 시설)		모형3(350인 시설)	
		금액	백분율	금액	백분율	금액	백분율
직접비	생활비	85,019	22.7	321,643	40.2	495,943	39.5
	교육비	1,116	0.3	3,348	0.4	11,627	0.9
	프로그램비	34,658	9.2	2,105	0.3	10,231	0.8
	소계	120,793	32.2	327,096	40.8	517,943	41.2
간접비	인건비	213,523	56.9	376,595	47.0	566,226	45.0
	운영비	33,536	8.9	81,508	10.2	148,410	11.8
	업무추진비	7,357	2.0	15,704	2.0	24,649	2.0
	소계	254,415	67.8	473,807	59.2	739,285	58.8
연간표준운영비		375,208	100.0	800,903	100.0	1,257,086	100.0
1인당 보호비		6,253		4,449		3,592	

바. 부랑인복지시설

- 부랑인복지시설의 규모(모형)별로 표준운영비를 산출한 결과, 각 모형별 연간표준운영비와 거주자 1인당 보호비용은 모형1(60인 시설)의 경우는 각각 308,260천원, 5,138천원, 모형2(180인 시설)은 각각 621,433천원, 3,354천원, 모형3(1,600인 시설)은 4,782,187천원, 2,989천원임.
- 1인당 단가로 환산한 보호비용은 소규모(모형1)-중규모(모형2)-대규모(모형3) 시설의 순으로 나타났음.
- 또한 각 모형별 세부항목의 비율을 보면, 직접비는 대규모 시설에서 현저하게 크고, 간접비 중 인건비의 비율은 대규모시설에서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음.

〈표 VI-9〉 부랑인복지시설 규모(모형)별 표준운영비 항목 구성비

(단위: 천원, %)

구분	모형1(60인 시설)		모형2(180인 시설)		모형3(1,600인 시설)		
	금액	백분율	금액	백분율	금액	백분율	
직접비	생활비	87,442	29.5	236,496	39.6	2,418,538	50.7
	교육비	100	0.0	299	0.1	2,658	0.1
	프로그램비	4,939	1.7	14,817	2.5	131,710	2.8
	소계	92,481	31.2	251,613	42.2	2,552,600	53.5
간접비	인건비	153,531	51.8	236,930	39.7	1,247,269	26.1
	운영비	44,749	15.1	96,265	16.1	876,790	18.4
	업무추진비	5,815	2.0	11,696	2.0	93,539	2.0
	소계	204,095	68.8	344,891	57.8	2,217,598	46.5
연간표준운영비	296,567	100.0	596,504	100.0	4,770,503	100.0	
1인당 보호비용	4,943		3,314		2,982		

VI. 결론 : 시설운영비 지원 개선방안

1. 시·군·구 단위 시설운영비 부담제도 폐지

시설운영비용의 일부를 시·군·구에서 부담함에 따라 지역 내 대형 시설이 존재하고 있는 일부 시·군·구의 경우 부담이 과중한 실정이며, 재정이 열악한 시·군·구의 경우 지역 내 시설설치의 기피 등이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생활보호법 제36조 제1항 제4호를 개정하여 시·군·구에서 부담하는 시설운영비의 부담을 폐지하는 대신 동 비용을 시·도가 부담토록 함.

2. 민간자원의 활용 확대

일정기간 동안 그리고 일정시간 이상 지속적·정기적으로 봉사한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카드를 발급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서비스 이용 시 할인혜택

및 우선권 등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정부의 재정지원 방식 변경

- 시설의 소규모화를 통해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입소자들이 건전하게 보호·육성될 수 있도록 거주자 인원 비례방식의 현행 정부보조금 지원방식을 바꾸어 일정 규모이하 시설에는 기본 운영경비를 정액 지원하고, 일정 규모 이상 시설에는 체감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체감운영비의 지원을 통해 소규모 시설의 운영난을 완화하고 시설의 대규모화를 방지하여야 할 것임.

4. 예산항목의 조정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부지원금의 항목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예산지원 방식을 바꾸어 수용인원 규모별로 필요경비를 산정 한 후 총액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함.
- 향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방식은 가능한 한 예산항목을 직접비와 간접비 혹은 인건비와 운영비 등 크게 2개 내지 3개 항목으로 하여 지원하되, 시설의 규모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5. 이용자의 권리 보장: 바우처제도 검토

- 기존의 재정지원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재정지원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시설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바우처(voucher)제도임. 바우처제도를 우선 시범적으로 몇몇 시설에 적용해서 실시할 것을 제안함.

6. 예산지원 시기의 적정화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부지원금 지원시기는 실태조사 결과 매우 늦은 것으

로 파악되었음.

- 생계비, 운영비 등 시설 운영을 위해 예산 지출이 제때에 있어야 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보조금 지급시기를 가급적 사업시행초기에 하도록 함.

7. 운영비 지원의 개선

- 현 시설의 관리운영비는 인원수에 비례해서 지원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소규모 시설은 운영비가 부족하고, 대규모 시설은 운영비가 많아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임.
 - 따라서 운영비에 대한 지원 뿐 아니라 생계비 지원에 있어도 규모의 경계를 고려하여 적절한 비용이 산출되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시설유형별 및 규모별로 표준화된 운영비 모형이 개발되어야 함.
 - 모형의 개발을 위해서는 시설별로 적절한 종사자수와 아울러 시설에 있어서 필요한 항목에 대한 적절한 시장가에 대한 연구도 수반되어야 함. 따라서 이러한 후속연구를 통해서 보다 현실을 반영한 시설의 운영비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8. 인건비 지원 기준 상향조정

- 현재 시설에서는 법정 종사자대로 고용하는 시설이 거의 없음. 그 이유는 시설에 제공되는 인건비가 충분하지 않아서임.
 - 따라서 현행 인건비 지원단가를 현실에 맞게 제고함. 최소한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종사자들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9. 향간 전용의 완화

- 우리 나라의 국고보조금은 인건비, 운영비, 생계비로 분리하여 지급되고 있어 목간의 탄력적인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생계비의 경우는 비용

이 남으나, 운영비의 경우는 모자라는 현실임.

- 시설에서 거주자의 삶의 질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는 추세에 있는 생계비를 모자라는 운영비로 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할 때, 거주자를 위한 시설운영이 될 수 있을 것임.

10. 정부의 지원단가 조정

- 본 실태조사 결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부지원금 수준은 매우 비현실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었음.
 - 지원단가가 추계되는 것도 항목별로 세분화한 후 이를 일인당 단가로 계산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음.
 - 생계비는 인원수대로 지원하되, 운영비는 인원수가 아닌 시설 대중소의 규모별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리고 지원비용은 현실적인 수준에 맞추어 시설에서 거주자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통해서 삶의 질이 보장되는 수준으로 점차 제고되어야 함.
 - 향후에는 관항목의 구성항목에 대한 재검토와 각 목별 실질 단가를 산출하여 시설생활인을 위한 최저생계비가 계측되어야 할 것임. 이를 토대로 시설생활인의 최저생활은 보장할 수 있는 지원액이 책정되어야 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증대되고 그 내용이 다양화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설의 운영비는 주로 정부보조금을 통해 확보하고 있으나, 지원액 수준이 비현실적이어서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미흡하다. 또한 예산지원방식이 입소인원에 비례하는 등 비합리적이어서 소규모시설은 상대적으로 불리하고 시설의 대규모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그간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시설 거주자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에 목적을 두기보다는 정부의 보조금 지급 기준에 의거하여 지원된 예산에 맞추어 시설을 운영하는데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시설의 운영비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와 검토없이,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운영비가 지원됨에 따라, 시설 규모, 거주자 특성(연령, 장애, 성별 등) 그리고 시설의 소재지 특성 등 시설의 운영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특성이 시설 유형에 따라 다르게 배치되는 종사자 배치기준 등에 일부 반영되어 있지만, 거주자 수에 따른 규모의 경제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직접비나 간접비 중 운영비 등의 부분은 이러한 특성에 따른 차별성을 거의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로서 앞서 언급한 특성들을 고려한 시설운영비 모델이 제시되어야 한다. 즉, 표준적인(바람직한) 시설 운영 모형을 설정하고, 이러한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현재의 시설의 운영현실과 보다 바람직한 모형을 함께 고려하여, 시설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현재 설치·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 관련 현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현실을 반영한 표준운영비 모형을 시범적으로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 집행 현실을 파악하는 것은 향후 표준적인 시설운영 모형을 정립하고 이에 따른 표준운영비 개발에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즉, 본 연구는 보다 과학적인 운영비 산출을 위한 하나의 근거 자료로 활용되고, 현재의 정부보조금 지원 기준을 재검토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하여 현재의 최저 생활보장에서 최적생활보장으로 시설 보호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내용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복지 생활시설이 시설의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데 소요되는 표준시설운영비에 대한 모델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시설운영비 지원방식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알아본다. 시설운영비의 구성 항목, 지원기준 및 수준, 시설별 지원단가, 종사자 배치기준 등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한 문제점을 살펴본다.

둘째,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운영비 실태를 파악한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시설거주자, 종사자, 세입 및 세출 등 운영비와 관련된 현황을 파악한다. 시설간 비교를 통해서 운영비 규모, 지원방식, 지원시기 등에 대한 비교한다. 정부지원금 지원시기와 관항목 간 전용여부를 살펴본다. 아울러, 시설 유형별 세입·세출 실태를 살펴본다. 세입과 세출의 규모, 시설 소재지 및 시설 거주자 규모에 따른 세입과 세출의 규모 및 비중 등의 실태를 검토한다.

셋째, 외국 사회복지시설 운영비와 관련된 현황을 고찰하여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외국 중 사회민주주의 국가인 영국, 자유주의적 복지를 지향하는 미국, 최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방식을 변화시킨 일본 등의 사례를 통해서 선진국의 시설지원 동향을 살펴본다.

넷째, 실태조사와 사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표준운영비를 산출할 수 있는 모델을 바탕으로 운영비를 산출한다.

제 3 절 연구방법

본 연구의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문헌고찰로서 사회복지시설의 현황, 종사자 배치기준, 생활인원, 지원 기준 등에 대한 정부자료와 기존의 문헌을 중심으로 시설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한 외국 중 미국, 일본, 영국의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와 관련된 내용을 고찰하였다.

〈표 1-3-1〉 설문조사항목 : 시설(장)

대분류	중분류	항 목
시 설 일반사항	시설 소재지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지역
	운영주체 관련	시설의 운영주체
		법인의 설립주체
	시설장 일반사항	성, 연령, 학력, 전공, 자격증, 종교 경력, 법인대표와의 관계
거 주 자 관련사항	거주자 수	총 거주자 수(2001년)
	거주자 일반사항	성, 연령, 장애정도별, 도움필요여부별, 유형별 퇴소자 수
	실비거주자	실비거주자 여부 및 수, 실비 비용
종 사 자 관련사항	종사자 수	법정 직원 수, 실제 근무직원 수, 종사자수 대비 거주자 수
	교대제 관련	2교대제 실시여부, 바람직한 2교대제
	직원관련	필요한 직원 수, 직원 1인당 적정 거주자 수
세입·세출 관련사항	세입	거주자부담금수입, 사업수입, 과년도수입, 보조금수입, 차입금, 전입금, 이월금, 잡수입 등
	세출	사무비, 재산조성비, 사업비, 전출금, 과년도 지출, 상환금, 잡 지출, 예비비, 이월금 등
	지원시기	정부보조금 지원빈도, 지원시기
		항목별 정부보조금 증액필요 비율
관항목 전용여부	정부보조금 전용여부	
	희망하는 보조금 운영방식	

두 번째는 사회조사로서 사회복지생활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내용은 시설의 일반사항, 거주자 관련사항, 종사자 관련사항, 세입세출사항 등을 조사하였다(표 1-3-1 참조). 시설 일반사항으로 시설 소재지, 운영주체, 시설장 일반사항인 성, 연령, 학력, 전공, 자격증, 종교 등을 파악하였다. 거주자 관련사항으로는 거주자 수, 성, 연령분포, 장애정도, 도움이 필요한 정도, 유형별 퇴소자 수 등과 실비거주자 여부 및 실비 비용을 알아보았다. 종사자와 관련하여서는 종사자 수(법정 직원수, 종사자 대비 거주자수), 교대제 관련하여 2교대제 실시여부, 바람직한 교대제 형태 등을 살펴보았고, 시설에 필요한 직원수, 직원 1인당 적정 거주자 수도 살펴보았다. 세입 및 세출과 관련해서는 재무회계규칙을 기준으로 시설의 규모를 관·항·목별로 알아보았다. 이와 함께 정부보조금의 지급시기와 예산 전용여부도 제시하였다.

조사대상시설은 아동시설 273개소, 노인시설 239개소, 장애인시설 200개소, 모자복지시설 62개소, 정신요양시설 74개소, 부랑인복지시설 37개소로 총 885개소 전수이다. 회수된 설문지는 591개소로 설문 회수율은 66.8%이다¹⁾. 아울러 시·군·구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을 총 246명에게 설문지를 우편으로 배포하여 총 132부를 회수하였다. 설문 회수율은 53.7%이다(표 1-3-2 참조). 조사내용은 각 시·군·구의 시설예산 전용 허용여부, 교대제 지도방식, 특별예산 지원사업 등을 알아보았다(표 1-3-2 참조). 대상시설의 분포는 <표 1-3-3>에 제시하였다.

<표 1-3-2> 설문조사항목 : 시·군·구 담당공무원

대분류	중분류	항목
시설 관련	시설 수	시설 유형 및 유형별 시설 수
		조건부신고시설 및 미신고 시설 수
세입, 세출관련	전용여부	정부보조금 전용 허용여부
		전용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
종사자관련 사항	교대제	2교대제 지도방식
지원 사업	자체지원사업 여부	지원시설 유형
		사업명, 사업량, 사업단가, 사업예산

1) 회수율이 매우 높은 편은 아니므로,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때 주의를 요한다.

〈표 1-3-3〉 사회복지시설 설문조사 현황

(단위: 개소, %)

시설종류		보건복지부 2002년 통계	발송한 설문지	회수된 설문지		회수율
				수	비율	
아동 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238	238	148	89.2	62.3
	아동직업훈련시설	5	5	3	1.8	
	보호치료시설	6	6	3	1.8	
	아동자립지원시설	13	13	6	3.6	
	아동일시보호시설	9	9	3	1.8	
	아동종합시설	2	2	3	1.8	
	소계	273	273	166	28.1	
노인 복지시설	노인무료양로시설	93	93	63	38.0	70.7
	노인무료요양시설	89	89	65	39.2	
	노인무료전문요양	41	41	26	15.7	
	실비양로시설	4	4	3	1.8	
	실비노인요양시설	14	14	9	5.4	
	소계	239	239	166	28.1	
장애인 복지시설	지체장애인시설	35	35	21	16.5	65.5
	시각장애인시설	11	11	5	3.9	
	청각언어장애인	13	13	7	5.5	
	정신지체장애인	70	70	51	40.2	
	장애인요양시설	71	71	43	33.9	
	소계	200	200	127	21.5	
모자 복지시설	모자보호시설	39	39	23	54.8	67.7
	모자자립시설	12	12	3	7.1	
	모자일시보호	3	3	8	19.0	
	미혼모시설	8	8	8	19.0	
	소계	62	62	42	7.1	
정신요양 시설	정신요양	55	55	46	83.6	74.3
	사회복귀시설	19	19	9	16.4	
	소계	74	74	55	9.3	
부랑인 복지시설	부랑인복지시설	37	37	23	3.9	62.2
시설유형미상		-	-	12	2.0	-
계		885	885	591	100.0	66.8

주: 시설유형미상이란 세입세출은 응답하였으나 시설유형에는 응답을 하지 않은 시설을 말함.

발송한 수보다 회수된 수가 많은 이유는 시설유형이 다르기 때문으로 판단됨.

〈표 1-3-4〉 시군구 공무원 설문조사 현황

(단위: 명, %)

구분	발송한 설문지	회수된 설문지	회수율
수	246	132	53.7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시설 전문가와 실무자, 정책결정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 지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제 4 절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원래 표준운영비란 시설 거주자가 적정한 삶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항목을 선정하고, 각 항목에 대한 적정액을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추계하여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상적인 항목에 대한 검토를 하기보다는 현실 수준을 기반으로 해서 가장 적절한 표준운영비를 산출하였다. 즉 기존의 지원 내역이나 단가를 기반으로 현실에서 적용가능 한 표준운영비를 산출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법정 인력배치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적절한 인력배치 규모와 종사자 유형을 바탕으로 인건비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는 본 연구에서 다루기에는 광범위한 주제이고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요하는 작업이다. 대신 기존의 법적 배치기준을 기반으로 인건비를 산출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향후에는 시설 거주자에게 필요한 기본항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적절한 인력배치기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서 보다 바람직한 표준운영비 산정이 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작업을 위한 준비단계로서 현 실태에 기반해서 가장 적절한 운영비를 산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제 2 장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방식 현황

제 1 절 시설의 일반현황

최근 우리나라 사회복지생활시설 수는 증가추세에 있다. 2000년에는 총 874개소가 있었는데, 2001년에는 864개소로서 약간 감소하다가, 다시 2002년에는 878개소, 2003년에는 952개소로 증가하였다(표 2-1-1 참조).

시설 유형별로 보면 2003년 이전에는 아동복지시설의 수가 가장 많았는데, 2003년부터는 노인복지시설의 수가 증가하여 가장 많은 수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은 아동복지시설로 274개소이다. 그 밖에 장애인복지시설은 218개소, 모자복지시설은 62개소, 정신요양시설은 56개소, 부랑인복지시설은 36개소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거주자 수는 약 9만5천명이고, 종사자는 2만 5백여명이다. 또한 시설당 평균 거주자 수는 약 1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당 거주자의 수가 가장 적은 시설은 모자복지시설로서 평균 54.6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다음이 노인시설로서 평균 58.2명이다. 시설당 거주자 수가 가장 많은 시설은 부랑인복지시설로 평균 291.7명이고, 정신요양시설도 289.2명으로 시설당 평균 거주자 수가 많은 편이다.

종사자 1인당 거주자 수 비율은 장애인시설이 종사자가 평균 2.1명의 장애인을 돌보고 있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노인시설로서 종사자 1인당 평균 3.0명의 거주자를 돌보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부랑인 시설의 경우 종사자 1인이 평균 16.7명,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종사자 1인이 평균 14.6명을 돌보고 있으며, 모자복지시설의 경우 평균 10.3명의 입소인원을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설 종별로 시설의 규모 및 종사자 1인당 거주자 수에 있어서 차이가 나고 있었다.

〈표 2-1-1〉 사회복지 생활시설별 거주자 및 종사자 수(2000~2003년)
(단위: 개소, 명)

구 분	시설 수	입소인원	종사자 수	시설당 거주자수	종사자 1인당 거주자수	
2000년	계	874	77,759	13,025	89.4	5.9
	아 동	269	17,720	3,176	65.9	5.8
	노 인	250	13,907	3,166	55.6	4.4
	장 애 인	196	17,257	4,814	88.0	3.6
	모 자	59	3,137	269	53.2	11.7
	정신요양	55	12,676	970	230.5	13.1
	부 랑 인	45	13,062	630	290.3	20.7
2001년	계	864	83,071	16,494	96.1	5.0
	아 동	272	19,201	3,170	70.6	6.1
	노 인	226	12,111	3,478	53.6	3.5
	장 애 인	210	19,177	7,977	91.3	2.4
	모 자	57	3,147	275	55.2	11.4
	정신요양	64	16,724	985	261.3	17.0
	부 랑 인	35	12,711	609	363.2	20.9
2002년	계	878	84,468	18,331	96.2	4.6
	아 동	276	19,260	3,683	69.8	5.2
	노 인	240	13,775	4,433	57.4	3.1
	장 애 인	212	19,418	8,200	91.6	2.4
	모 자	59	3,257	295	55.2	11.0
	정신요양	55	16,047	1,090	291.8	14.7
	부 랑 인	36	12,711	630	353.1	20.2
2003년	계	952	95,535	20,537	100.4	4.7
	아 동	274	18,808	3,683	68.6	5.1
	노 인	306	17,814	5,989	58.2	3.0
	장 애 인	218	18,829	8,800	86.4	2.1
	모 자	62	3,387	328	54.6	10.3
	정신요양	56	16,197	1,107	289.2	14.6
	부 랑 인	36	10,500	630	291.7	16.7

주: 2000년 부랑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는 보건복지부 내부자료(2001)를 참조함.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의 보건복지지표, 2001에서 재구성(2000년도 수치);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02, 2003(2001~2003년도 수치).

2003년 현재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고 있는 예산은 338,766백만원으로서 시설당 평균 3억 6천만원 정도이다. 예산이 가장 많이 지원되는 시설은 장애인시

설로 83,270백만원이고, 그 다음은 노인시설로 72,070백만원이다. 정신요양시설은 25,895백만원이고, 부랑인복지시설은 12,484백만원이며, 모자복지시설은 지원 예산이 가장 적은 4,626백만원이다.

거주자 1인당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2003년 현재 거주자 1인당 평균 예산액이 가장 많은 곳은 노인전문요양시설로 9백1십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장애인 시설로 1인당 예산 지원액이 6백7십만원이다. 아동시설은 4백8십만원, 미혼모시설 2백3십만원, 정신요양시설 2백3십만원이다. 부랑인복지시설은 1인당 예산이 가장 적은 1백8십만원에 불과하다.

〈표 2-1-2〉 사회복지시설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천원)

구분	예산액(백만원)			1인당 지원액(천원)		
	2001년	2002년	2003년	2001년	2002년	2003년
계	233,972	275,536	338,766	-	-	-
아 동	47,498	53,203	60,253	3,737	4,161	4,829
노 인	38,199	49,286	72,070	2,875	-	-
장 애 인	74,461	83,390	85,270	5,848	6,448	6,770
모 자	4,117	4,839	5,362	-	-	-
정신요양	16,896	18,635	25,895	1,459	1,678	2,310
부 랑 인	10,485	12,058	12,484	1,269	1,459	1,843

주: 예산액은 운영비와 인건비를 합한 것임.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02, 2003.

제 2 절 예산지원 방식

가. 근거법과 지원항목

시설 예산지원은 각 시설의 국고보조금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예산회계법」 및 개별법 및 사업 안내에 따른다. 생활 시설에 대한 예산은 정부보조금의 형태로 지원되고 있으며, 이는 생계비, 인건비, 관리운영비 등 크게 3개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

회, 2001) (표 2-2-4, 표 2-2-5 참조). 한편 국고 보조금을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누기도 하는데, 직접비에는 생계비, 교육비를 포함하고, 간접비에는 인건비 관리(시설)운영비, 기타지원사업을 포함한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1).

〈표 2-2-1〉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시설회계 세입항목

관	항	목	정의
입소비용 수입	입소비용 수입	입소비용	입소자로부터 받은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수입을 종류별로목을 설정함.
사업수입	사업수입	사업수입	시설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수입을 종류별로 목을 설정함
과년도 수입	과년도 수입	과년도수입	전년도에 세입 조정된 수입으로서 금년도에 수입으로 확정된 것
보조금 수입	보조금 수입	경상보조금 수입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상보조금
		자본보조금 수입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본보조금
		기타 보조금 수입	기타 사회복지사업기금 등에서 받은 보조금
	후원금 수입	후원금 수입	국내외 민간단체로부터 받은 기부금(보조금), 기타 개인 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각종 기부금, 결연 후원금, 위문금, 찬조금과 자선바자회 등으로부터 얻어지는 수입
차입금	차입금	금융기관차입금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기타차입금	개인·단체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전입금	전입금	법인전입금	법인으로부터의 전입금(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은 제외함)
이월금	이월금	전년도이월금	전년도 불용액으로서 이월된 금액
		이월사업비	전년도에 종료되지 못한 이월사업비
잡수입	잡수입	불용품매각대	비품·집기·기계·기구 등과 기타 불용품의 매각대
		기타예금이자수입	기본재산예금외의 예금이자수입
		기타잡수입	기타 재산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 등과 다른 과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자료: 원요한, 『사회복지시설론: 이론과 실무』, 서울: 자산출판사, 1998, p218.

생계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한 생계보호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주·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특별위로비 등이 포함된다. 인건비는 「아

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자복지법」, 「정신보건법」, 「부랑인복지시설운영규칙」 등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직원 배치기준에 근거하여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 관리운영비는 시설의 세출에서 생계비와 인건비를 제외한 시설운영비가 해당된다.

이밖에 지방자치제에서 지급되는 순수지방보조금도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1). 보통 서울의 경우 국고 대 지방비의 비율은 50 대 50이고, 지방의 경우는 70대 30이다.

생계비는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 급여 기준은 2001년 현재 주식비 월 30,450원, 부식비 일 1,606원, 연료비 일 91원, 피복비 연간 114,280원, 월동대책비 연간 16,480원, 특별 위로비 연간 32,768원, 그리고 장제비 구당 500,000원으로서 거주자 1인당 월 평균 급여수준은 94,881원이다.

인건비는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직원 배치 기준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 예산 지원기준이 법정 배치기준에 미흡한 실정이다. 사회복지시설 직원인건비 국고보조금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봉급표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표에 따라 지급한다. 인건비에는 급여, 상여금, 제수당, 퇴직금,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등이 포함된다.

관리운영비는 건물유지비, 난방연료비, 제세공과금, 차량유지비 등을 항목을 포함한다. 장애인 시설의 경우 시설당 3,000만원의 기본 운영비 지원과 시설 장애인 1인당 451천원(2002년 기준)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장애인이 아닌 기타 시설인 경우 거주자수에 비례하여 지원하고 있다. 노인시설인 경우 1인당 관리운영비는 양로시설이 연간 537,130원, 요양시설 685,160원, 치매요양시설은 연간 거주자 1인당 903,210원의 관리운영비를 지원하게 된다. 관리운영비는 건물유지비, 수용기관경비, 공공요금, 난방연료비, 의약품비, 차량유지비, 위생재료비, 특별급식비, 화재보험가입, 산재보험가입, 환경부담금, 고용보험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기타지원사업에는 시설의 신축 및 증개축비와 장비보강비를 포함한다.

〈표 2-2-2〉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시설회계 세출항목

관	항	목	정의
사무비	인건비	급여	시설직원에 대한 기본봉급
		상여금 일용잡급 계수당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의료보험료 국민연금등 사회보험부담금 기타후생	시설직원에 대한 기말·정근수당 일급또는 단기가 채용하는 임시직 급여 시설직원에 대한 계수당 시설직원 퇴직급여제도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 시설직원의 의료보험료 시설직원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부담금 시설직원의 상용피복비·건강진단비·급량비·기타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직책보조비 회의비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시설 직원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 후원회 등 각종 회의의 다과비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운영비	여비	시설직원의 국내·외출장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연료비	사무용품비, 인쇄비, 잡기구입비, 도서구입비, 공과료, 수수료, 등기료, 운송비, 통행료, 주차료, 소규모수선비, 포장비 등 우편료, 전신전화료, 전기료, 상하수도료, 가스료, 오물수거료 제세(법인세, 자동차세등), 협회가입비, 화재·자동차보험료 차량유류대, 차량정비유지비, 차량소모품비 보일러 및 난방시설연료비	
재산 조성비	시설비	시설비	시설 신·중축비 및 부대경비, 기타 시설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유지비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토지·건물·기타자산 취득비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수선비, 기타 시설물 유지 관리비
사업비	운영비	생계비 수용기관경비 피복비 의료비 장의비 의료재활비 직업재활비 자활사업비 기타	주·부식비, 특별부식비, 장유비, 월동김장비 입소자를 위한 수용비(치약, 칫솔, 수건구입비 등) 입소자의 피복비 입소자의 보건위생 및 시약대 입소자의 사망자의 장제비 입소자의 재활훈련비 입소자의 직업훈련재활비 입소자의 자활을 위한 기자재구입비 입소자를 위한 기타 운영비
		교육비	수업료 학용품비
	○○ 사업비	○○ 사업비	사업수입에 대응하는 각 프로그램별 사업비용
	전출금	전출금	법인회계로의 전출금
과년도 지출	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과년도 미불금 및 과년도 사업비의 지출
상환금	부채상환금	원금상환금	차입금 원금 상환금
		이자지불금	차입금 이자 상환금
	반납금	반납금	
잡지출	잡지출	잡지출	시설이 지출하는 보상금, 사례금, 소송경비 등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자료: 원요한, 『사회복지시설론: 이론과 실무』, 서울: 자산출판사, 1998, p.219.

예산전용관련해서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제16조)에 의거 편성된 시설예산의 관간의 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동일 관내의 향간의 전용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용하여야 한다. 목간전용은 시설장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나. 사회복지시설의 입소비용

시설의 세입으로서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소비용이 있다. 입소비용은 시설의 유형에 따라 차등적으로 책정되어 있고, 시설에 따라서는 입소비용이 없는 시설도 있다.

1) 아동복지시설

입소비용은 없다.

2) 노인복지시설

월별 비용 수납한도액은 노인복지법 제46조제5항 및 동 법시행규칙 33조제2에 명시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수납 한도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 시설의 입소자 1인에 대하여 지원하는 시설운영비에 생계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월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아래표와 같은 금액과 같다.

〈표 2-2-3〉 노인시설 입소비용

(단위: 원/1개월)

시설유형	양로시설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무료	실비	무료	실비	
한도액	270,000	270,000	324,000	324,000	619,000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2003

노인시설의 경우 월 비용수납한도액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예외인정대상은 치매 및 중풍 등 전문요양시설 입소대상의 중증질환자의 요양에 실제로 소요되는 기저귀, 카타터 등의 위생재료비이다. 예외 수납범위는 월 수납한도액의 30% 범위 이내로 한다. 수납조건은 산출내역을 명시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필한 후 수납하도록 되어 있다. 시·도지사는 실비시설의 운영개선 및 입소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월 비용수납한도액 예외 수납신고가 있는 경우, 입소자의 상태·예외산출 내역을 검토 후 수납해야 한다(2003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참조).

3)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실비입소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장애인으로 입소가 필요하여 실비를 납부하고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기로 결정된 자이다.

실비입소 대상의 범위는 시설정원의 30% 범위 이내의 인원이다. 시설 정원의 70% 이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입소시켜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이 기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입소비율을 조정 및 시행할 수 있다.

수납한도액은 실비로 입소하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1인당 월 176,000원 범위 내에서 비용을 수납할 수 있으며, 입소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의 생활능력에 따라 176,000원 범위 내에서 차등 수납할 수 있다.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하여는 월 10,000원 이하, 중증 장애인에 대하여는 월 20,000원 이하의 추가비용을 수납 받을 수 있다.

위 수납 한도액을 초과하여 수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실비입소비용을 수납한 때에는 비용수납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시설의 세입 및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한다(2003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참조).

4) 모자복지시설

입소비용은 없다.

5) 정신요양시설

정신요양시설의 비용한도액은 180,000원이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의 이용 및 입소자에 대한 비용수납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수납한도액의 100분의 130의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되어 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이용 및 입소비용수납한도액(1인/1월)은 다음 표와 같다(보건복지부고시 제97-20호 참조).

〈표 2-2-4〉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입소비용(보조시설)

시설종류	구분	비용수납한도액	비고
정신질환자생활훈련시설	이용	39,500	식대별도
	입소	156,100	식대포함
정신질환자작업훈련시설	이용	44,500	식대별도
	입소	161,100	식대포함
정신질환자종합훈련시설	이용	44,500	식대별도
	입소	161,100	식대포함
정신질환자주거시설	입소	161,500	식대포함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고시 제97-20호」.

〈표 2-2-5〉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입소비용(기타 민간시설)

시설종류	구분	비용수납한도액	비고
정신질환자생활훈련시설	이용	129,000	식대별도
	입소	365,000	식대포함
정신질환자작업훈련시설	이용	117,400	식대별도
	입소	317,300	식대포함
정신질환자종합훈련시설	이용	129,000	식대별도
	입소	365,000	식대포함
정신질환자주거시설	입소	257,700	식대포함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고시 제97-20호」.

6) 부랑인복지시설

입소비용은 없다.

제3절 정부예산 지원기준

가. 아동복지시설

1) 아동복지시설의 현황

우리나라 「아동복지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는 생활시설로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과 이용시설로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등이 있고 이들 시설의 설치목적은 다음의 <표 2-3-1>과 같다.

<표 2-3-1>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와 설치목적

시설종류	설치목적
아동양육시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소년부지원에서 보호 위탁된 아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만15세이상의 아동과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후 일정기간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일반가정에 아동을 보호하기 곤란한 일시적 사정이 있는 경우 아동을 단기간 보호하며 가정의 복지에 필요한 지원조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상담소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 연극, 영화, 과학실험전시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기타 각종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아동복지관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자료: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2001년말 현재, 이들 시설 중 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양육시설, 보호치료시설, 직접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일시보호시설, 종합시설은 모두 273개소가 설치·운영 중이고, 이곳에서 생활하는 아동은 모두 18,808명이다. 이를 시설 유형별로 보면, 아동양육시설이 238개소(17,437명)로 가장 많다. 나머지 시설은 전국적으로 각각 10개소 내외이고, 보호하고 있는 아동 수도 각각 500명 이내이다.

〈표 2-3-2〉 아동복지시설 및 보호아동 현황(2001년말 현재)

(단위: 명, 개소)

구분	계(현원)		양육시설		보호치료		직업훈련		자립지원		일시보호		종합시설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시설	인원
계	273	18,808	238	17,437	6	367	6	367	13	252	9	380	2	193
서울	47	3,441	33	2,821	1	48	3	125	3	69	5	185	2	193
부산	23	2,726	20	2,605	1	75	-	-	1	16	1	30	-	-
대구	22	1,105	18	1,005	1	45	1	19	2	36	-	-	-	-
인천	8	677	8	677	-	-	-	-	-	-	-	-	-	-
광주	10	774	8	685	-	-	-	-	1	27	1	62	-	-
대전	15	696	12	510	1	121	1	35	1	30	-	-	-	-
울산	1	112	1	112	-	-	-	-	-	-	-	-	-	-
경기	28	1,941	26	1,838	-	-	-	-	-	-	2	103	-	-
강원	10	564	10	564	-	-	-	-	-	-	-	-	-	-
충북	9	688	8	658	-	-	-	-	1	30	-	-	-	-
충남	16	869	15	861	-	-	-	-	1	8	-	-	-	-
전북	18	1,156	16	1,088	1	56	-	-	1	12	-	-	-	-
전남	23	1,569	21	1,528	1	22	-	-	1	19	-	-	-	-
경북	14	969	14	969	-	-	-	-	-	-	-	-	-	-
경남	24	1,208	23	1,203	-	-	-	-	1	5	-	-	-	-
제주	5	313	5	313	-	-	-	-	-	-	-	-	-	-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2)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국고 보조

(1) 국고 보조금의 구성 및 규모

정부는 이들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를 국고로 지원하고 있다. 이 중 인건비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직종별 지원기준 및 사회복지

시설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예외적으로 아동전용시설의 경우에는 이용료를 받지 않는 시설인 경우에만 인건비를 지원한다.

운영비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성되는데, 최근에는 이들 경비를 통합하여 총액기준으로 지원함으로써 시설에서 예산집행의 탄력성 및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운영비는 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등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보호를 받는 아동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다.

〈표 2-3-3〉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국고 보조금의 구성

구분	세부항목	
인건비	아동복지시설의 유형별 종사자 배치 및 지원기준에 의거하여 근무하는 종사자의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등	
운영비	직접비	생계비(주부식비, 간식비, 피복비), 연료비, 의료비, 아동정서교육비, 전산화교육비, 위생비, 프로그램운영비, 학교준비물, 학용품비, 이용자병원후송여비, 장의비, 수업료, 중고생교통비, 개별통장입금 등
	간접비	수용비, 인건비, 기관운영비, 회의비, 자산취득비, 기능보강사업비, 차량유지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운송비, 여비, 수수료 등 잡지출 등

자료: 보건복지부, 「2003년도 아동복지사업안내」, 2003을 재구성

국고 보조금 중 시설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 대상의 규모는 지난해 3,836명이던 것이 2003년 올해에는 4,378명으로 약 542명이 확대되었는데, 이는 보육사 2교대제 실시, 종사자 대비 아동 수 기준의 상향조정, 종사자 배치 직종의 확대 등에 의해 나타난 결과이다. 또한 국고 지원을 받는 아동 수는 18,808명으로 지난해 19,260명에 비해 약 460여명이 감소하였다.

2003년 현재 이들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국고 지원 예산 총액은 64,944백만원으로 지난해 57,742백만원에 비해 7,202백만원이 증가되었다. 이러한 예산 규모는 전체 아동복지사업예산(84,297백만원)의 77.0%를 차지하고 있고, 2003년의 아동복지사업예산 증가분 7,210백만원도 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에 의해 나타난 결과이다.

〈표 2-3-4〉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국고 보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02년	2003년	증(△감)	증감율	주요 증감내역	
아동복지사업예산(A)	77,087	84,297	7,210	9.4		
시설 지원 예산 (B)	계	57,742	64,944	7,202	12.5	
	인건비·운영비	53,203	60,253	7,050	13.3	지원시설수 : 274개소 1인당 지원단가(예산상) - 4,161 → 4,829천원/년 수용인원 : 19,260 → 18,808명 종사자 : 3,689 → 4,060명
	시설기능보강비	4,539	4,691	152	3.3	아동시설 신축 : 1개소 증·개축 : 20개소 개보수 : 40개소 오페수시설 : 1개소 장비보강 : 25개소
(B/A)×100	74.9	77.0	99.9	-		

자료: 보건복지부, 「2003년도 아동복지사업안내」, 2003을 재구성

(2) 국고 보조금의 지원기준

아동복지시설의 국고 보조금 지원기준은 종사자 인건비와 아동보호에 필요한 운영비로 구성된다.

먼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는 법에 의한 종사자 배치기준에 의거하여 채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인건비에 대한 국고지원은 법정 배치기준과는 차이가 있다. 즉, 국고지원 기준이 법정지원 기준에 못 미치고 있어, 이러한 지원 기준 이외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은 지방비로 지원하거나, 시설에서 자부담하여야 하므로 지방비와 자부담금이 확보되지 못한 경우에는 법정기준에 미달하는 종사자가 아동의 보호를 담당할 수밖에 없다.

〈표 2-3-5〉 2003년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법정기준과 국고지원 기준 비교

직종	법정기준	국고지원기준
시설장	시설당 1인	10인 이상 시설당 1인
총무	30인 이상 시설당 1인	30인 이상 시설당 1인
상담지도원	양육, 일시보호시설: 필요인원 자립지원시설: 시설당 1인	일시보호시설당 1인
임상심리상담원	50인 이상 양육, 일시보호시설: 1인 보호치료, 직업훈련, 단기보호시설: 시설당 1인	보호치료시설당 1인
보육사	0~2세까지 아동 3인당 1인 3~6세까지 아동 7인당 1인 7세 이상 아동 10인당 1인 직업훈련, 보호치료 20인당 1인	3세미만 5인당 1인 3~12세 10인당 1인 12세이상 12인당 1인 직훈,보호치료 20인당 1인 자립지원시설당 1인(관리인) 전용시설당 1인 (이용료를 징수하지 않은 시설)
생활복지사	50인 이상 양육, 일시보호시설: 1인 직업훈련, 보호치료시설: 시설당 1인 전용시설: 필요인원	3세 이상 아동 70인 이상 양육시설: 1인 직업훈련, 보호치료시설: 시설당 1인 전용시설: 1인(이용료 비징수 시설)
간호사	30인 이상 시설당 1인(자립시설 제외)	아동 70인 이상 시설당 1인(단, 3세 미만 아동 30인 이상 시설당 1인)
직업훈련교사	직업훈련, 보호치료시설 필요인원	직업훈련, 보호치료 아동 20인당 1인
조리원	30인 이상 시설 1인(자립시설 제외)	시설당 1인(자립시설 제외)
위생원	30인 이상 양육 및 일시보호시설 1인	50인 이상 시설당 1인(단, 3세 미만 아동 30인 이상 시설당 1인)
보안요원	보호치료시설당 2인(40인 이상 보호치료시설은 4인)	보호치료시설당 2인(40인 이상 보호치료 시설은 4인)
영양사	50인 이상 시설: 1인	50인 이상 시설: 1인

자료: 보건복지부, 「2003년도 아동복지사업안내」, 2003을 재구성

2003년도 국고지원기준은 2002년도에 비해 다소 개선되어, 임상심리상담원과 영양사 등에 대한 지원기준이 신설되었고, 보육사에 대한 지원기준도 3세 이상 아동 12인당 1인으로 일괄 적용하던 것을 3~12세는 10인당 1인, 12세 이상은 종전의 12인당 1인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표 2-3-6〉 2002년과 2003년도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직종별 국고지원기준 비교

구분	2002년도		2003년도	
	인원(명)	기준	인원(명)	기준
시설장	261	10인 이상 시설당 1인	262	좌동
총무	262	30인 이상 시설당 1인	262	좌동
상담지도원	52	일시보호시설당 1인	52	좌동
임상심리상담원	-	-	6	보호치료시설당 1인
보육사 (관리인/사무원)	2,357 (685)	3세 미만 5인당 1인 3세 이상 12인당 1인 직훈, 보호치료 20인당 1인 자립지원시설당 1인 전용시설당 1인	2,542 (1,227)	3세 미만 5인당 1인 3~12세 10인당 1인 12세 이상 12인당 1인 기타 시설 좌동
생활복지사	100	직훈, 보호치료시설 당 1인 3세 이상 아동 70인 이상 양육시설당 1인 전용시설 시설당 1인	100	좌동
간호사	138	70인 이상 시설당 1인 (단, 3세미만 30인이상 시설당 1인)	138	좌동
조리원	260	시설당 1인	260	좌동
위생원	174	50인 이상 시설당 1인 (단, 3세 미만 30인 이상 시설당 1인)	174	좌동
직업훈련교사	25	직훈, 보호치료시설 아동 20인당 1인	25	좌동
보안요원	29	보호치료시설당 2인(40인 이상 4인)	29	좌동
영양사	178	-	178	50인 이상 시설당 1인
보육사2교대		3세 미만 5인당 1인	보육사에 포함	좌동 3~12세 10인당 1인

주: 보육사 인원의 ()는 2교대 인원을 말함.

자료: 보건복지부, 「2003년도 아동복지사업안내」, 2003을 재구성

다음으로 아동복지시설의 운영비는 보호아동에 대한 보호단가를 말하는데, 이러한 보호단가는 생계보호 및 교육보호를 위한 급여와 부가급여(관리운영비)로 구성되는데, 이 중 생계 및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시설수급자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지급된다.

생계급여는 시설수급자 1인당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을 산정(부표 1 참조)하여 현금으로 시설의 장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교육급여에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이 포함되는데, 초·중·고생에 따라 차이가 있다.

다음으로 부가급여(관리운영비)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3세 미만 양육시설의 경우, 2002년도에 아동 1인당 월 56,150원이던 것이, 2003년도에는 61,770원으로 증가되는 등 전체적으로 10%가 인상되었다.

〈표 2-3-7〉 아동복지시설 보호 아동 1인당 부가급여액

(단위: 원)

시설종류	2002년도 단가	2003년도 단가
3세 미만 양육시설	56,150	61,770
3세 이상 양육시설	77,020	84,720
보호치료시설·직업훈련시설	121,840	134,020
자립지원시설	24,470	26,920
일시보호시설	54,860	60,350

나. 노인복지시설

1)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및 설치현황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복지시설은 네 가지 유형으로서, 노인복지법 제31조에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4가지 유형으로 노인시설을 구분하고 있다.²⁾ 이 가운데 노인의 장기 거주를 목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이 해당된다(표 2-3-8).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양로시설과 노인복지주택이 있으며, 비용부담 정도에 따라 양로시설은 무료, 실비, 유료, 노인복지주택은 실비, 유료의 구분이 이루어지

2) 노인여가복지시설로는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노인재가복지시설로는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고 있다. 또한 노인의료복지시설로서는 요양시설과 전문병원이 포함되는데, 요양시설은 양로시설과 마찬가지로, 무료, 실비, 유료시설과 전문, 유료전문시설로 구분된다.³⁾ 비용부담의 경우 일반양로시설과 요양시설은 거주자가 전혀 부담하지 않거나 저렴한 요금을 부담하게 되며, 실비시설은 저렴한 요금 부담, 유료시설은 소요비용 일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시설의 보호대상자로서는 양로시설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 이상 노인(유료시설의 경우 60세 이상), 요양시설은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 노인(유료시설의 경우 60세 이상)으로 그 대상을 정하고 있다.

시설의 이용대상으로는 65세 이상인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노인 혹은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노인이 아닌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상이 되며, 양로시설의 경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인, 노인요양시설 및 전문요양시설의 경우는 노인성질환,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 대상이 된다(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이들 시설에는 실비대상자의 입소도 가능한데, 시설 입소인원이 정원의 95%미만인 경우에는 95%에 달할 때까지 실비입소대상자도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입소가 가능하며, 이는 실비 입소대상자의 입소인원이 시설정원의 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실비시설의 이용대상은 본인 및 그 배우자와 부양의무자의 월소득 합산액을 가구원수로 나눈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2003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평균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하인 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인을 원칙으로 하되, 부부가 함께 입소하는 경우에는 그 이하의 자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⁴⁾

3) 무료시설은 입소자가 전혀 비용을 부담하지 않거나 일부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4) 2003년 1인당 월평균 소득액 827천원(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2,863천원/평균 가구원수 3.46명, 2002년 3/4분기 통계청 발표자료 근거)

〈표 2-3-8〉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시설의 설치목적·비용부담·이용대상

시설종류	설치목적	비용부담	이용대상	
노인 주거 복지 시설	양로시설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 부담	생활보장대상노인이거나 65세 이상의 자 중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 지 못하는 자	
	실비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 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	저렴한 요금 부담	실비보호대상자(1)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5세이상의 자
	유료양로시설		소요비용 일체의 입소자 부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실비노인 복지주택	주거의 편의·생활지 도·상담 및 안전관 리 등 일상생활의 편의 제공	일정소득이하 노 인에게 저렴한 비 용으로 분양·임대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65세이 상의 자
	유료노인 복지주택		유료로 분양·임대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노인 의료 복지 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 식·요양 기타 일상 생활에 필요한 편의 를 제공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 부담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 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실비노인 요양시설		저렴한 요금 부담	실비보호대상자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5세 이상의 자
	유료노인 요양시설		소요비용 일체의 입소자 부담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
	노인전문 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중증 질환노인을 입소시 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 부담	제1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치 매·중풍 등 중증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유료노인 전문요양시설		소요비용 일체의 입소자 부담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 을 필요로 하는 60세 이상의 자
	노인전문병원 시설	주로 노인을 대상으 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	-	노인성질환으로 치료 및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이거나 임종을 앞둔 환자

주: 실비보호대상자란 본인 및 그 배우자와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전년도(본인 등에 대한 소득조사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를 말한다)의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하인 자를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부, 2003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2003.

2002년 현재 노인시설 수는 노인주거복지시설 126개소(양로시설 93개소, 실비양로시설 4개소, 유료양로시설 25개소, 유료노인복지주택 4개소), 노인의료복지시설 162개소(노인요양시설 89개소, 실비노인요양시설 14개소, 유료노인요양

시설 11개소, 노인전문요양시설 41개소,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7개소), 노인여가복지시설 43,486개소(노인복지회관 114개소, 경로당 43,372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322개소(가정봉사원파견시설 143개소, 주간보호시설 142개소, 단기보호시설 37개소)가 있다.

〈표 2-3-9〉 노인복지시설 유형별 시설·거주자·직원 수(2001. 12. 30 현재)

구 분	시설수 (개소)	거주자		직원(명)	
		정 원	현 원		
노인주거 복지시설	양로시설	93	6,465명	4,726명	747
	실비양로시설	4	174명	131명	30
	유료양로시설	25	2,526명	1,257명	329
	실비노인복지주택	0	0세대	0세대	0
	유료노인복지주택	4	1,004세대	364세대	51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89	6,634명	5,541명	1,678
	실비노인요양시설	14	1,134명	875명	263
	유료노인요양시설	11	495명	234명	162
	노인전문요양시설	41	3,605명	3,106명	1,567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7	480명	391명	230
	노인전문병원	0	0명	0명	0
노인여가 복지시설	노인복지회관	114	-	-	1,313
	경로당	43,372	-	-	-
	노인교실	0	0명	0명	-
	노인휴양소	0	0명	0명	-
재가노인 복지시설	가정봉사원파견시설	143	-	13,586명	7,743
	주간보호시설	142	-	2,600명	627
	단기보호시설	37	-	477명	185

자료: 보건복지부, 2001.12월 기준.

2) 노인복지시설관련 예산 현황

노인복지시설 지원 예산을 살펴보면, 2002년 96,713백만원, 2003년 133,470천 원으로, 전체 노인보건·복지예산 3,897억6천3백만원(2002년), 4,077억 6천7백만원(2003년)의 각각 24.8%, 32.7%를 차지하고 있다(표 2-3-10).

<표 2-3-10> 노인복지시설 보호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02 예산		2003 예산		증(△)감
	사업량 및 단가	금액	사업량 및 단가	금액	
노인보건복지사업예산		389,763		407,767	18,004
노인시설보호예산		96,713		133,470	36,757
사할린 한인특별지원금	571세대/150천원/세대,월	1,361	570세대/150천원/세대,월	1,406	45
시설운영비		49,299		72,084	22,785
- 양로시설	4,746명/3,128천원	10,092	4,583명/4,039천원	12,576	2,484
- 실비양로시설	4개소/24백만원/개소	48	4개소/2,020천원/인	196	148
- 일반요양시설	5,634명/5,069천원/명	19,510	6,816명/5,322천원/명	24,654	24,654
- 전문요양시설	3,395명/8,710천원/명	19,485	5,341명/9,145천원/명	32,956	32,956
- 실비요양시설	13개소/24백만원/개소	151	930명/2,661천원/명	1,687	1,687
- 사할린동포입소시설난방비지원	1개소/26,715천원	14	1개소/29,387천원	15	1
시설기능보강		46,053		59,980	16,223
- 양로시설 개축	840평/1,094천원/평	1,516	474평/1,094천원/평	856	△660
- 양로시설 개보수	1,110평/1,805천원/평당	1,002	640평/1,805천원/평	578	△424
- 양로시설장비보강	-	-	3개소/20,000천원/개소	30	30
- 편의시설설치비	17개소/20백만원/개소	170	3개소/41,667천원/개소	63	△107
- 노인복지회관 신축	308평×21개소/811천원/m ²	5,202	303평×10개소/811천원/m ²	2,457	△2,745
- 노인공동작업장	27개소/6백만원/개소	49	16개소/6백만원/개소	29	△20
- 요양시설신축	1,960평/1,094천원/m ²	4,043	2,240평/1,094천원/m ²	4,043	-
- 요양시설증·개축	1,440평/1,094천원/m ²	3,246	2,376평/1,094천원/m ²	4,289	1,043
- 요양시설 개보수	853평/1,805천원/평당	769	13개소	763	△6
- 편의시설 설치비	15개소/20백만원/개소	150			△150
- 요양시설장비보강	27개소/80백만원/개소	880	8개소/160백만원/개소	640	△240
- 전문요양시설신축	12,025평/1,094천원/m ²	24,035	14,620평/1,094천원/m ²	26,391	2,356
- 전문요양시설증개축	1,421평/1,094천원/m ²	2,565	700평/1,094천원/m ²	1,264	△1,301
- 전문요양시설개보수	250평/1,805천원/평당	226	6개소/25,876천원/개소	156	△70
- 전문요양시설장비보강	20개소/400백만원/개소	2,200	34개소	3,986	1,786
- 실비요양시설 신축			28개소/1,094천원/개소	14,152	14,152
- 실비요양시설 증개축			1개소	115	115
- 실비요양시설 개보수			3개소	170	170

주: 이 밖에 재가노인지원 예산은 2002년 281,315백만원, 2003년 256,882백만원으로 24,433백만원 감소했으며, 치매요양전문병원 예산은 2002년 11,035백만원, 2003년 17,415백만원으로 6,380백만원 증액되었음.

자료: 보건복지부, 2003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2003.

전체 예산은 2002년에 비해 4.6% 증가한 반면, 시설 지원예산은 3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요양시설의 시설운영비와 기능보강비가 대폭 증액된 데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노인복지시설 국고 보조 기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구성 및 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양로, 노인요양 및 전문요양시설(무료시설) 등 무료노인복지시설 운영비의 국고와 지방비 부담 비율은 서울의 경우 50:50, 지방의 경우 70:30으로 정하고 있다.

〈표 2-3-11〉 노인복지주거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구분	국고 지원기준	법정배치기준					
		노인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30인 이상	10~30인	10인 미만	30인 이상	10~30인	10인 미만
시설장	1인	1인	1인	1인	1인	1인	1인
총무	1인	1인	1인	-	1인	1인	-
생활복지사 ¹⁾	1인	1인		-	1인		
의사 또는 촉탁의사	1인 (요양시설)	1인	-	-	1인	1인	-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인	입소자 50인당 1인 ⁵⁾	1인	-	입소자 25인당 1인 ⁶⁾	1인	1인
물리치료사	1인(요양시설)				1인 ⁷⁾	1인	-
생활지도원 ²⁾	1	입소자 20인당 1인	입소자 20인당 1인	1인	입소자 7인당 1인	입소자 7인당 1인	1인
사무원 ⁴⁾	-	1인(입소자 100인 이상)	-	-	1인(입소자 100인 이상)	-	-
영양사	1인	1인(입소자 50인 이상)	-	-	1인(입소자 50인 이상)	-	-
조리원	1인	입소자 50인당 1인	1인	-	입소자 50인당 1인	1인	-
위생원 ³⁾	1인	입소자 50인당 1인	1인	-	입소자 50인당 1인	1인	-
관리인 ⁴⁾	-	-	-	-	-	-	-

- 주: 1) 생활복지사: 입소자에 대하여 건강유지·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지도하는 자
 2) 생활지도원: 입소자에게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생활복지사 또는 시설의 장을 보조하는 자로서, 노인전문요양시설의 경우 입소자 3인당 1인 배치
 3) 위생원: 유료 및 전문요양시설의 경우 세탁물전량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미배치 가능
 4) 유료양로시설에는 10인 이상 시설의 경우 사무원과 관리인을 각각 시설당 1인 배치
 5) 유료양로시설에는 40인당 1인 배치
 6) 2인 이상시 1인은 간호사
 7) 입소자 100인 초과시마다 1인 추가

첫째, 종사자 인건비로서,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기준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부담금,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퇴직적립금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2003년 시설종사자 국고지원기준을 보면, 시설장, 총무(사무국장), 위생원(세탁부), 간호사(양로 시설당 1인, 요양 50인당 1인), 영양사(입소인원 50인 이상 시설당 1인), 생활지도원(양로 25인당 1인⁵⁾, 요양 10인당 1인, 전문치매요양 5인당 1인), 조리원(취사부)(시설당 1인, 입소인원 50인 초과시설 2인), 의사·물리치료사(요양시설당 1인), 생활지도과장(생활지도원)(정원 100인 이상 시설당 1인) 등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생활지도원, 조리원, 위생원은 법정기준과 국고지원기준에 차이가 있으며, 법정기준에 따라 배치할 경우 시설 규모에 따라 인건비 총당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관리운영비로서, 국고와 지방비를 포함하여 입소자 1인에 대해 연간 지급되는 금액은 양로시설의 경우 592,190원, 요양시설의 경우 755,390원, 전문요양시설의 경우 995,790원으로 정하고 있다. 노인복지 거주시설의 관리운영비 지원은 거주자 수에 비례하여 산출된 금액이며, 그 항목으로는 건물유지비, 수용기관경비, 공공요금, 난방연료비, 의약품비, 차량유지비, 위생재료비, 특별급식비, 화재보험가입, 환경부담금 등에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표 2-3-12〉 노인복지시설 관리운영비 지원항목

시설종별	공통항목
양로시설	건물유지비, 수용기관경비, 공공요금, 난방연료비, 의약품비, 차량유지비, 위생재료비, 특별급식비, 화재보험가입, 환경부담금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자료: 보건복지부, 2003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2003.

셋째, 실비입소자에 대한 지원으로는 입소자 1인당 연간 양로시설의 경우 403,930원, 요양시설의 경우 532,240원을 정하고 있다.⁶⁾

5) 노인양로시설의 경우 2003년 1월부터 생활지도원 2교대근무를 시행하도록 함.

넷째, 입소노인이 병원에 입원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설운영비로 계속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다섯째, 보장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지원기준에 따라 주부식비, 피복비, 위로금, 장제비 해산비 등이 지급되고 있는데, 1인당 급여기준은 <표 2-3-13>과 같다.

<표 2-3-13> 2003년 보장시설수급자 1인당 급여기준

구 분		지급기준 (편성기준)	집행기준 (양곡할인구입시설)	비고 (양곡할인시 조정내역)	
위로금	(송년위로금)	-	(30,000원/1인)	연말 지급	
	(생일축하금)	-	(30,000원/1인)	생일 때 지급	
	특별위로금	17,500원/연2회	20,000원/연2회	설, 추석 5일전 지급	
주·부식비	주식비 - 백미	990원/일	450원/일	50% 할인구입시 540원 절감	
	- 정맥	85원/일	85원/일		
	부식비	1,700원/일	(1,900원/일)		부식비 200원 인상
	취사연료비	97원/1일	97원/1일		수급자수에 따라 차등 ¹⁾
	월동대책비 (생일파티준비금)	17,500원/1인 -	17,500원/1인 (17,000원/1인)		10월(수급자수에 따라 차등) ²⁾
피복비	일반피복비	5,900원/월	5,900원/월	매월지급	
	런닝·팬티비	9,300원/분기	9,300원/분기	매분기말(3, 6, 9, 12월) 지급	
	동내의 (신발비)	13,000원/년 -	13,000원/연1회 (30,000원/1인)	10월 지급	
	기 타	해산비 장의비	인당 구당	200,000원 500,000원	

주: 1) 취사연료비는 시설수급자수에 따라 차등 지급: 100원(100인 미만), 97원(100~300인), 95원(300인 이상)

2) 월동대책비는 시설수급자수에 따라 차등 지급: 18,000원(100인 미만), 17,500원(100~300인), 17,000원(300인 초과)

3) 정부양곡 50% 할인구입을 시행하는 시설에서 추가지급 가능 급여는 송년위로금(30천원), 생일축하금(30천원), 부식비(일 200원), 생일파티준비(17천원), 신발비(30천원) 등이며, 정부양곡을 할인구매하지 않는 시설은 추가지급이 불가능하므로 보장시설의 장은 정부양곡 할인구매를 적극 시행

6) 실비시설의 월별 비용 수납한도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 시설의 입소자 1인에 대하여 지원하는 시설운영비에 생계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월을 기준으로 양로시설 270천원, 요양시설 324천원, 전문요양시설 619천원으로 무료시설과 실비시설이 동일한 한도액을 갖고 있음.

한편 실비노인복지시설의 지원 기준을 살펴보면, 입소인원 1인당 연간 실비 노인양로시설 2,019,670원, 실비노인요양시설 2,661,225원(서울 50%, 지방 70%)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무료시설의 지원내역을 준용하되, 무료시설 지원단가의 50%를 지원하는 것이다.

여섯째, 시설 기능보강 지원예산으로서, 시설의 신축, 증축, 개보수 및 장비구입 등을 위해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원기준은 국고보조 내시내역에 근거하고 있다.

다. 장애인복지시설

1) 장애인복지시설의 현황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은 크게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그리고 장애인유료복지시설로 나뉘어진다.

장애인생활시설에는 크게 장애유형별 생활시설과 중증장애인요양시설, 그리고 장애영유아생활시설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장애유형별 생활시설은 다시 지체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시설,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시설, 그리고 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을 위한 시설로 구분할 수 있다. 구체적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기능을 제시하면 다음의 <표 2-3-14>와 같다.

<표 2-3-14> 장애인복지시설의 유형 및 설치목적

시설유형		설치목적
장애인 생활 시설	장애유형별 생활시설	장애유형이 같거나 또는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그들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의료·교육·직업·심리·사회 등 재활서비스와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항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입소하게 하여 상담·치료 또는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영유아 생활시설	6세 미만의 장애영유아를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보호함과 동시에 그 재활에 필요한 의료·교육·심리·사회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표 2-3-14〉 계속

시설유형	설치목적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교육·직업·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장애인을 입원 또는 통원하게 하여 상담, 진단·판정, 치료 등 의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장애인을 일정기간 보호하여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 지역 사회 재활 시설	스스로 사회적응이 곤란한 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전문인력에 의한 지도와 보호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내 소규모 주거시설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의 체력증진 또는 신체기능회복 활동을 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 수련시설	장애인의 문화·취미·오락활동 등을 통한 심신수련을 조장·지원하고 이와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
장애인 심부름센터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 및 외출 보조 기타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수화통역센터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점자도서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열람하게 하는 시설
점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간행물 및 녹음서를 출판하는 시설
장애인 직업활동시설	직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인에게 주기능으로 작업활동·일상생활훈련 등을 제공하여 기초작업능력을 습득시키고, 부기능으로 직업평가 및 사회적응훈련 등을 실시하는 시설
장애인 보호작업시설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주기능으로 직업 훈련 및 일거리 등을 제공하여 보호적 조건에서 생산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고, 부기능으로 직업알선 등을 실시하는 시설
장애인 근로작업시설	직업능력은 있으나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주기능으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생산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부기능으로 직업 알선 등을 실시하는 시설
장애인 직업훈련시설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주기능으로 직업평가·사회적응훈련 및 직업훈련 등을 일정기간 실시하여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부기능으로 직업알선 및 사후지도 등을 실시하는 시설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주기능으로 장애인생산품의 판매활동 및 유통을 대행하고, 부기능으로 장애인생산품에 관한 상담·홍보·판로개척 및 정보제공 등을 실시하는 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로서 장애인에게 필요한 치료, 상담, 훈련 등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2001년 8월 현재 장애인 생활시설유형별 설치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이 표에 의하면, 장애인 생활시설은 모두 200개가 있으며, 이 가운데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이 71개소로 가장 많으며, 다음이 정신지체인을 위한 시설로서 70개소가 있다. 한편, 지체장애인 생활시설은 35개소, 시각장애인 시설은 11개소, 그리고 청각·언어장애인 시설은 13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15> 장애인 생활시설 유형별 현황(2001년 8월 현재)

(단위: 개소)

구분	계	지체	정신지체	시각	청각·언어	요양
계	200	35	70	11	13	71
서울	28	4	8	2	1	13
부산	17	6	6	1	2	2
대구	10	4	2	-	-	4
인천	10	2	3	1	1	3
광주	9	2	3	1	1	2
대전	7	1	2	1	1	2
울산	3	-	1	-	1	1
경기	31	1	13	-	3	14
강원	9	1	4	1	-	3
충북	14	1	4	2	1	6
충남	10	2	3	-	-	5
전북	13	3	5	1	1	3
전남	11	3	3	1	1	3
경북	14	3	4	-	-	7
경남	12	2	7	-	-	3
제주	2	-	2	-	-	-

보건복지부, 『2001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2002.

한편 이러한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거주자는 모두 17,33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200개 시설의 정원이 19,625명인 것을 감안하면, 시설 충원율은 88.3%이었다. 한편 시설 유형별로는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6,619명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이 정신지체인시설로서 6,358명이 생활하고 있었다.

〈표 2-3-16〉 장애인 생활시설 유형별 입소 현황(2001년 8월 현재)

(단위: 명)

구분	계		지체		정신지체		시각		청각·언어		요양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계	19,625	17,331	3,406	2,889	6,817	6,358	1,019	688	1,120	777	7,263	6,619
서울	3,505	2,922	595	407	855	822	215	145	62	43	1,778	1,505
부산	1,737	1,377	466	424	741	615	95	18	144	124	291	196
대구	1,320	1,302	596	562	337	344	-	-	-	-	387	396
인천	776	613	154	120	271	255	76	48	50	18	225	172
광주	762	700	132	147	232	241	100	47	128	92	170	173
대전	702	640	120	108	335	294	70	70	40	32	137	136
울산	280	255	-	-	30	14	-	-	60	38	190	203
경기	3,129	2,697	30	31	1,308	1,121	-	-	216	100	1,575	1,445
강원	619	542	119	106	180	161	100	67	-	-	220	208
충북	1,677	1,511	160	103	496	475	210	166	180	141	631	626
충남	1,038	1,028	189	178	482	488	-	-	-	-	367	362
전북	957	808	235	170	332	268	50	44	160	149	180	177
전남	816	756	178	149	265	287	103	83	80	40	190	197
경북	1,210	1,116	257	198	410	409	-	-	-	-	543	509
경남	1,007	994	175	186	453	494	-	-	-	-	379	314
제주	90	70	-	-	90	70	-	-	-	-	-	-

자료: 보건복지부, 『2001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2002.

2)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국고보조

(1) 국고보조금의 구성

정부는 이들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를 국고로 지원하고 있다. 이 중 인건비는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기준 및 장애인 생활시설 직원 인건비 보조기준에 의하여 지원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장애인 생활시설 직원 봉급표 및 직원 수당표에 의거하여 지원되고 있다.

한편 장애인 생활시설 관리 운영비는 생활장애인보호비, 시설관리비, 의료재활사업비, 직업재활사업비, 교육재활사업비, 사회·심리재활 사업비, 직원 교육훈련 여비로 구성되어 있다.

(2)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는 법에 의한 종사자 배치기준에 의거하여 채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약간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중증장애인요양시설 및 장애영유아생활시설의 경우, 생활재활교사(생활보조원)를 법에서는 시설 거주자 3인당 1인 이상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예산지원기준에는 시설 거주자 4.7인당 2인을 지원하고 있어 법정기준과 부합되고 않고 있다.

2002년과 2003년의 예산지원기준은 변동은 없지만, 직종의 명칭이 2003년에는 취사원이 조리원으로 세탁원이 위생원으로 바뀌었다.

<표 2-3-17> 장애인생활시설 및 장애인유료복지시설(법정배치기준)

구분	장애인생활시설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장애영유아생활시설
시설의 장	1인	1인	1인
총무	1인	1인	1인
의사 또는 축탁의사	1인 이상 (시설장이 의사인 경우에는 의사를 따로 두지 아니한다)	2인 이상 (다만, 1인은 내과전문 의를 두어야 한다)	2인 이상 (다만, 1인은 소아과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사회재활 교사	1인 이상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의 경우에는 점자해독이 가능한 자,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시설의 경우에는 수화통역이 가능한 자이어야 한다)	1인 이상	1인 이상
간호사	1인 이상	1인 이상 (입소장애인이 매50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을 추가한다)	1인 이상 (입소장애인이 매50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을 추가한다)

〈표 2-3-17〉 계속

구분	장애인생활시설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장애영유아생활시설
물리 치료사	1인 이상 (시각장애인 및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시설의 경우를 제외하며, 입소장애인이 매 30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을 추가한다)	장애인생활시설과 같음	장애인생활시설과 같음
작업 치료사	1인 이상 (시각·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시설의 경우와 다른 전문요원이 이를 겸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장애인생활시설과 같음	장애인생활시설과 같음
언어 치료사	1인 이상 (청각·언어·정신지체·자폐장애인을 위한 시설에 한한다)	1인 이상	1인 이상
보행 훈련사	1인 이상 (시각장애인을 위한 시설에 한한다)		
청능 치료사	1인 이상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시설에 한한다)		
영양사	1인 (거주자 50인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장애인생활시설과 같음	장애인생활시설과 같음
사무원	1인 이상 (거주자 100인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장애인생활시설과 같음	장애인생활시설과 같음
생활 보조원	입소장애인 8인당 1인 이상 (다만, 시각장애인 및 정신지체장애인을 위한 시설의 경우에는 입소장애인 4인당 1인 이상 이어야 한다)	입소장애인 3인당 1인 이상	입소장애인 3인당 1인 이상
조리원 (취사원)	1인 이상 (거주자가 매50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을 추가한다)	장애인생활시설과 같음	장애인생활시설과 같음
위생원 (세탁원)	1인 이상 (거주자가 매50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을 추가한다)	장애인생활시설과 같음	장애인생활시설과 같음
관리기사	1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자료: 보건복지부, 『2003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2003.

〈표 2-3-18〉 2003년 장애인생활시설 직원수 예산지원기준

(단위: 명)

직종명	2002년		2003년	
	인원	지원기준	추정인원	지원기준
계	8,143	-	8,400	-
원장	211	시설당 1명	215	(변동없음)
총무	211	시설당 1명	215	(변동없음)
사무원	71	생활장애인 100인 이상 시설당 1명	72	(변동없음)
시설관리기사	11	생활장애인 200인 이상 시설당 1명	9	(변동없음)
사회재활교사	211	시설당 1명	215	(변동없음)
영양사	211	시설당 1명	215	(변동없음)
간호사	222	시설당 1명, 중증·아동장애인 150인 이상 1명 추가	227	(변동없음)
물리치료사	175	중증·정지·지체장애인 30인 이상 시설당 1명	187	(변동없음)
언어치료사	12	청각·언어장애인 시설당 1명	12	(변동없음)
보행훈련사	10	시각장애인 시설당 1명	10	(변동없음)
생활재활교사	6,053	중증, 영유아장애인 4.7명당 2명	6,260	(변동없음)
		아동장애인 8명당 2명		
		정지, 시각장애인 10명당 2명		
		지체, 청각·언어장애인 20명당 2명		
취사원(조리원)	358	시설당 1명, 생활장애인 50인 이상 1명 추가	366	(변동없음)
세탁원(위생원)	221	시설당 1명, 생활장애인 200인 이상 1명 추가	224	(변동없음)
축탁의사	166	중증·아동장애인 30인 이상 시설당 1명	173	(변동없음)

자료: 보건복지부, 『2003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2003.

장애인생활시설의 관리운영비는 시설 거주자의 급식 등 보호비와 시설관리비, 그리고 각종 재활사업비로 구성되어 있다.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비 기준이 다른 유형의 생활시설과 다른 점은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당 기본지원으로서 개소당 3천만원과 함께 생활장애인 기준 1인당 451천원의 가중지원이 있다는 점이다.

라. 모자복지시설

1) 모자복지시설의 종류

모자복지시설의 중요성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욕구의 증대와 함께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혼의 증가로 인한 가족해체의 급증, 미혼모 발생 등으로 모자복지시설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 모자복지시설은 설립초기에는 요보호여성만을 대상으로 복지를 제공하던 것이 점차 일반여성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향후 모자복지시설의 중요성은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더욱 증대할 전망이다.

여성을 위한 복지시설은 여성생활시설과 이용시설로 구분된다. 이 중 여성생활시설(법에서는 모자복지시설로 지칭)은 모자복지법 제19조에 의거하여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일시보호시설, 미혼모시설의 4종으로 되어 있으며, 이용시설로는 여성복지관과 모자가정상상담소의 2가지 종류가 있다. 각 시설의 설립목적은 아래와 같다.

〈표 2-3-19〉 모자복지시설의 유형 및 설치목적

시설유형		설치목적
생활 시설	모자보호시설	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정을 일시 또는 일정기간 수용하여 생계를 보호하고 퇴소 후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모자자립시설	자립이 어려운 모자가정에 대하여 일정기간 주택편의만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일시보호시설	배우자(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정신적 학대로 인하여 아동의 건전양육 또는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또는 일정기간 그 모와 아동 또는 모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미혼모시설	미혼여성이 임신을 하였거나 출산을 하였을 경우 안전하게 분만하게 하고 심신의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일정기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이용 시설	여성복지관	모자가정 및 미혼여성에 대한 각종 상담을 실시하고 생활지도 및 생업지도, 탁아 및 직업보도를 행하는 등 모자가정 및 미혼여성의 복지를 위한 편의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모자가정상상담소	모자가정에 대한 조사, 지도, 시설입소 등에 관한 상담업무를 수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002년 현재 여성시설 수는 모자보호시설 39개소, 모자자립시설 3개소, 모자일시보호시설 10개소, 미혼모시설 8개소가 있다.

〈표 2-3-20〉 모자복지시설 수 및 보호기간

시설유형	시설수	대 상	보호기간
모자보호시설	39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	3년(+2년)
모자자립시설	3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	3년(+2년)
모자일시보호시설	10	학대받는 모와 아동	2월(+2월)
미혼모시설	8	미혼의 임신여성	6월(+6월)

자료: 보건복지부, 『2002년도 여성복지사업안내』, 2002.

〈표 2-3-21〉 모자복지시설 현황(2001년 6월말 현재)

구 분	시설수 (개소)	거주자(명)		직원 (명)		운영주체		
		정 원	현 원	정 원	현 원	자치 단체	사회 복지 법인	재단 법인
모자보호시설	39	1,041세대	2,586명 (943세대)	195	180	-	36	3
모자자립시설	3	56세대	138명 (53세대)	4	1	1	2	-
모자일시보호시설	10	363명	263명	50	45	2	7	1
미혼모시설	8	345명	278명	72	56	-	3	5

자료: 보건복지부, 『2002년도 여성복지사업안내』, 2002.

2) 모자복지시설 지원예산

시설의 예산은 2002년에는 65억4천5백만원이었는데 2003년에는 71억7천6백만원으로 약간 증가하였다. 시설예산은 시설운영비, 퇴소자 자립정착금, 시설기능보강비(신축비, 증·개축비, 개·보수비, 기자재)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시설예산비가 증가 원인은 연간 시설지원단가 상승, 시설퇴소자 증가(288세대에서 345

세대로), 시설 증가(미혼모시설 1개소)에서 기인한다. 시설 지원단가는 모자보호 시설의 경우 1인당 2,081천원에서 2,185천원으로 상승하였고, 미혼모시설은 1인당 4,523천원에서 4,750천원으로 상승하였다.

모자복지시설의 관리운영비는 거주자수를 반영하여 지원한다. 관리운영비의 지원항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3-22〉 모자복지시설 예산단가

(단위: 천원)

사업명	사업량 단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사업량	예산	사업량	예산	사업량	예산
합계			6,528		6,545		7,176
모자복지시설			4,903		5,105		5,681
- 모자복지시설 운영비			4,521		4,839		4,991
- 퇴소자 자립정착금(모자보호)	세대	288	382	288	266	345	690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비	개소	40	1,625	34	1,440	30	1,495
- 신축비	개소	1	676	-	-	1	
- 중·개축비	개소	1	430	3	928	2	
- 개·보수비	개소	23	431	22	420	15	
- 기자재		15	88	9	92	12	

자료: 2002년 통계 - 보건복지부, 『2002년도 여성복지사업안내』, 2002.
2003년 통계 - 보건복지부, 『세입·세출, 예산개요』, 2002. 12.

〈표 2-3-23〉 모자복지시설 관리운영비 지원항목

시설종별	공통항목	종별 지원항목
모자보호시설	수용기관경비, 공공요금, 난방연료비, 건물유지비, 차량유지비, 화재보험료(대인·대물), 법정부담금	의료비, 약품비, 학용품비, 부교재, 교양도서비(중·고생), 아동교통비(중·고생), 아동급식비, 프로그램운영비
모자일시보호시설		의료비, 약품비, 학용품비, 부교재·교양도서비(중·고생), 아동교통비(중·고생), 아동급식비, 전문가상담비
미혼모시설		의료비, 약품비, 미혼모특수치료비, 미혼모급식비, 프로그램운영비
모자자립시설	건물유지비, 수용기관경비, 화재보험료	-

자료: 보건복지부, 『2002년도 여성복지사업안내』, 2002.

〈표 2-3-24〉 2002년 모자복지시설 지원항목별 지원단가

(단위: 원)

항 목 별	2001단가	2002단가	비 고
수용기관경비(수용비/인, 년)	30,000	35,000	16.7%인상
건물유지비(m) : 2000단가 적용	-	-	
공공요금(인/년)	35,000	40,000	14.2%인상
난방연료비			
- 모자(세대/일)	2,000원/150일	2,500원/150일	25%인상
- 미혼모시설(4인/일)	2,000원/180일	3,000원/180일	50%인상
차량유지비(대/년)	1,843,000	1,843,000	
약품비(인/년)	2,000	3,000	50%인상
의료비(인/년)	30,000	33,000	10%인상
학용품비(인/년)			
- 초등학생	16,000	16,000	
- 중학생	27,000	27,000	
- 고등학생	28,500	28,500	
부교재·교양도서비(인/년)	60,000	60,000	
교통비(인/240일)	600	600	
아동급식비(인/365일)	600	600	
미혼모 특수치료비	200,000	200,000	
미혼모간식비(인/365일)	1,000	1,200	20%인상
프로그램운영비(인/월)			
- 모자보호·모자일시 아동보호 프로그램	5,000	5,500	10%인상
- 미혼모시설	15,000	15,000	
도서구입비(시설당)	220,000	220,000	
인성변화교육비(시간당)	70,000	70,000	
- 초과시(시간당)	30,000	30,000	
전문가상담비(년/시설당)	400,000	400,000	
화재보험료(대인·대물, 년/시설당)	300,000	300,000	

자료: 보건복지부, 『2002년도 여성복지사업안내』, 2002.

3) 모자복지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모자복지시설의 종사자 법적 배치기준은 모자복지법시행규칙(제10조제1항)에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시설의 유형에 따라서 다르다. 모자보호시설은 세대수를 기준으로 시설장, 총무, 상담지도원, 사무원 또는 생활지도원, 경비원을 표에 제

시된 것처럼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모자자립시설은 1세대 이상의 경우 시설장과 상담지도원을 각 1인씩 두도록 하고 있다. 미혼모시설은 인원수를 보호기준으로 10인 미만, 10~30인 미만, 30인 이상으로 구분하여 시설장, 총무, 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 영양사, 조리원, 상담지도원, 사무원 또는 생활지도원, 경비원 등을 각각 차등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표 2-3-25〉 모자보호시설 종사자 법적 배치기준 (2002년 현재)

구분	시설장	총무	상담지도원	사무원 또는 생활지도원	경비원
20세대 이상	1인	1인	1인	1인	1인
10~20세대 미만	1인	-	1인	1인	-
10세대 미만	1인	-	1인	-	-
비 고	사무원 또는 생활지도원은 입소정원이 5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자료: 보건복지부, 『모자복지법시행규칙』, 2002.

〈표 2-3-26〉 모자자립시설 종사자 법적 배치기준(2002년 현재)

구 분	시설장	상담지도원
1세대 이상	1인	1인(입소세대가 상시 5세대 이하인 경우를 제외함)

자료: 보건복지부, 『모자복지법시행규칙』, 2002.

〈표 2-3-27〉 미혼모시설 종사자 법적 배치기준(2002년 현재)

구분	시설장	총무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영양사	조리원	상담 지도원	사무원 또는 생활지도원	경비원
30인 이상	1인	1인	1인	1인	1인	3인	1인	1인
10~30인 미만	1인	1인	1인	-	1인	1인	-	-
10인 미만	1인		-	-	-	1인	-	-
비 고	영양사, 사무원 또는 생활지도원은 입소정원이 5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자료: 보건복지부, 『모자복지법시행규칙』, 2002.

〈표 2-3-28〉 일시보호시설 종사자 법적 배치기준(2002년 현재)

구분	시설장	총무	영양사	조리원	상담 지도원	사무원 또는 생활지도원	경비원
10인 이상	1인	1인	1인	1인	1인	1인	1인
10인 미만	1인		-	1인	-	-	-
비 고	영양사, 사무원 또는 생활지도원은 입소정원이 50인 이상, 조리원, 경비원은 2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주: 동일 사업자가 동일 구역 안에서 2개소 이상의 모자복지시설을 병설·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별 종사자를 각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입소정원 또는 입소세대를 기준으로 두어야 하는 종사자를 제외한 다른 종사자는 겸입할 수 있다.

자료: 보건복지부, 『모자복지법시행규칙』, 2002.

마. 정신요양시설

1) 정신요양시설 수

우리나라의 정신질환 평생유병율은 30.9%로 보고되고 있어(이충경 외, 2001), 국민의 3명 중 1명 꼴로 일생의 어느 시기에 정신 질환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즉, 누구든지 인생의 위기에서 스트레스를 겪게 되고 때때로 이러한 스트레스의 경험은 여러 가지 개인적, 유전적, 환경적 요인에 의해 정신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 차원에서 가벼운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 및 치료하고 예방하는데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불필요한 장기입원 억제 및 입소환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적절한 정신 보건시설 관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시설로는 정신병원과 정신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지역 정신보건센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정신보건법 제10조 및 15조, 의료법 제30조 등에서 규정). 이러한 시설의 총수는 약 900개, 정신병상 수는 약 60,000개로 보고되고 있다(서동우 외, 2001: 12).

〈표 2-3-29〉 정신보건시설의 유형 및 설치목적

시설유형	설치 목적
정신보건센터	정신질환자, 가족 및 지역주민 대상 정신질환 예방, 정신질환자 발견·상담·진료 의뢰·사후관리 및 인식개선 사업 등 수행
사회복지시설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 치료·요양 후 퇴원(소)한 정신지roh한자 대상 사회복지훈련 실시
정신의료기관	급성정신질환자를 그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전문정신병원, 종합병원 정신과, 병원정신과, 정신과의원 등
정신요양시설	만성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

자료: 보건복지부, 『정신보건사업안내』, 2003에서 재구성

2) 거주자 관련사항

정신요양시설의 입소정원은 거주자용 거실별 실제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3.3㎡로 나눈 값으로 하되, 거실 1실의 실제 바닥면적이 33㎡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실의 입소정원은 10인으로 본다(신설허가되는 정신요양시설의 입소정원은 300인 이하로 제한). 시·도지사는 지역별 정신요양시설의 수, 입소를 희망하는 정신질환자의 수와 입소의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 입소정원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정신질환자를 입소하도록 할 수 있다.

〈표 2-3-30〉 정신보건시설의 유형 및 질환자

(단위: 개소, 병상, 명)

구 분	정신보건센터	사회복지시설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기관수	64	86	911	55
병상/정원/이용자수	17,434/년	1,689(입소) 2,234/월(이용)	51,852	13,970

자료: 보건복지부, 『정신보건사업안내』, 2003

<표 2-3-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 현재 정신의료기관은 752개소, 정신요양시설 55개소, 사회복지시설 49개소 등이 있다. 서동우 외(2001)는 정신보건시설 입소환자를 정신의학적 증상,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기능, 사회지지체계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 형태를 재분류한 연구에서 입원환자를 재배치할 경우 약 1만 병상의 정신병상이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였다.

3) 정부의 운영비 지원

시도별 운영비 지원내역을 보면, 2002년 예산은 사업비계가 26,928,150천원이며 이중 국고보조금과 지방비가 각각 18,634,911천원과 8,293,239천원을 차지한다. 국비와 지방비 비율은 서울이 국비 50%, 지방은 국비 70%이다. 예산 지원의 기준으로는, 입소·이용시설의 경우 인건비, 관리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종사자의 인건비 기준표나 시설장이 수립한 집행계획(관리운영비로는 건물유지비, 공공요금, 수용경비, 차량유지비, 난방비, 교육여비 및 물품구입비 등 포함), 이용인원을 고려한 프로그램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직원배치기준은 시설장은 전임이어야 하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시설 종사자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 치료사 등 면허 또는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다. 입소환우별 관리운영비 년 1인당 지원액은, 서울의 경우 환자수 400명일 때 495,000원이다.

<표 2-3-31> 입소환자 1인당 연간 관리운영비 지원액

(단위: 원)

구분	환자수	운 영 비		
		계	국 비	지방비
서울	400명 이상	495,000	247,500	247,500
지방	100인 이하	605,000	423,500	181,500
	101~200명	577,500	404,250	173,250
	201~300명	550,000	385,000	165,000
	301~400명	522,500	365,750	156,750
	400명 이상	495,000	346,500	148,500

주: 국비 - 서울 50%, 지방 70%

4) 수용인원 및 종사자 배치기준

정신요양시설의설치기준및운영등에관한규칙 시행('98. 6. 13)후 신설허가되는 정신요양시설의 입소정원을 300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시·도지사는 지역별 정신요양시설의 수, 입소를 희망하는 정신질환자의 수와 입소의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소정원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신질환자를 입소하도록 할 수 있다.

정신요양시설의 종사자 배치기준은 다음 표에 제시된 것과 같다.

〈표 2-3-32〉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구분	종사자 수	
	법적 배치기준	예산지원 기준
시설장(원장)	1인	시설당 1인
총무(사무국장)	1인	시설당 1인
정신과전문의	1인 이상	시설당 1인
간호사	입소자 40인당 1인	거주자 68인당 2인 (2교대 실시분 포함)
보조원(생활지도원)	입소자 25인당 1인	거주자 32인당 2인 (2교대 실시분 포함)
영양사	1인 이상	시설당 1인
사무원	1인 이상	시설당 1인
정신보건전문요원	1인 이상	-
취사원(조리원)	2인 이상	시설당 2인
세탁원(위생원)	1인 이상	시설당 1인
경비원	2인 이상	시설당 1인

주: 1) 시설장이 정신과전문의·간호사·영양사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의 면허(자격)중 1이상의 면허(자격)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면허(자격)중 소지자의 업무 겸직 가능. 다만,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과 간호사의 면허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중 하나만 겸직 가능

2) 시설장외의 종사자가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 또는 간호사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 겸직 가능

자료: 보건복지부, 『2003년도 정신보건사업안내』, 2003.

바. 부랑인복지시설

부랑인 시설은 일정한 주거나 생업수단 없이 거리에서 배회하거나 생활하는 18세 이상의 부랑인의 보호 및 자활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의미한다(부랑인복지시설설치·운영규칙). 2002년 9월 현재 부랑인 시설은 총 37개소로, 시설생활자는 11,011명 종사자는 841명으로 나타난다(보건복지부, 2003).

〈표 2-3-33〉 부랑인복지시설 현황(2002년 1월말 현재)

구 분	시설수 (개소)	거주자(명)		직 원(명)		운영주체(개소)		
		정 원	현 원	정 원	현 원	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수	37	10,849	11,152	841	841	1	25	11

자료: 보건복지부, 『2002년도 부랑인시설현황』, 2002년 및 2003년 『부랑인 복지사업안내』를 재구성

1) 부랑인복지시설 지원예산

2002년 부랑인복지시설 지원예산은 14,456백만원(36개소, 12,711명 기준)이고 2003년도 예산은 2002년도에 비해 2.3% 증가하여, 14,794백만원(37개소, 10,500명 기준)이다.

〈표 2-3-34〉 부랑인복지시설의 예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2002예산(A)	2003예산(B)	증감(B-A)	증감율
계	14,456	14,794	338	2.3
운영지원	12,059	12,484	425	3.5
기능보장	2,397	2,310	△87	△3.6

자료: 보건복지부, 『2003년 보건복지예산개요』, 2003.

2002년 부랑인복지시설 거주자 1인당 지원단가는 1,459천원/인·년이고, 2003년 지원단가는 1,849천원/인·년이다.

〈표 2-3-35〉 부랑인복지시설 지원단가

(단위: 백만원)

구분		2002년	2003년
시설지원예산	운 영 비	12,059	12,484
	기능보강비	2,397	2,310
	소계	14,456	14,794
시설당 지원단가		402	400
인원별 지원단가		1,459천원/인.년	1,849천원/인.년

자료: 보건복지부, 『2002, 2003년 부랑인 복지사업안내』, 2002년, 2003년

2) 부랑인복지시설 종사자 배치기준

2003년 현재 부랑인 복지시설 종사자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2-3-36〉 부랑인복지시설 종사자 배치 기준

구분	법적 배치기준			2003년도 예산지원 기준
	상시 30인 이상인 시설	상시 10인 이상 30인 미만인 시설	상시 10인 미만인 시설	시설 공통
시설장	1인	1인	1인	1인 (원장)
총무	1인	-	-	1인 (사무국장)
상담지도원	1인 이상	-	-	1인(500인 초과시 1인 추가)
생활복지사	거주자 50인당 1인	1인	-	40인당 1인
의사(축탁)	1인 이상	-	-	필요로 하는 시설만 배치
간호사/조무사	1인 이상	-	-	거주자 200인당 1인
생활지도원	거주자 50인당 1인	1인	1인	거주자 50인당 1인
영양사	1인 (거주자 50인 이상인 시설에 한함)	-	-	1인 (50인 이하시설 제외)
조리원	1인 (거주자 50인 이상인 시설에 한함)	-	-	-
사무원	1인 이상	-	-	1인
경비원	1인 이상	-	-	1인
설비기사	1인 이상	-	-	-
자활지도교사	1인 이상	-	-	-

자료: 보건복지부, 『2002, 2003년 부랑인 복지사업안내』, 2003년.

법적 기준에 비해서 2003년도 종사자 지원기준은 30인 시설을 기준으로 볼 때 미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산인원을 기준으로 할 때, 원장, 사무국장, 사무원, 경비원, 상담부장, 영양사는 시설당 1인을 두도록 하고 있다. 생활복지사는 거주자 40인당 1인, 간호사는 거주자 200인당 1인을 둔다. 생활지도원은 거주자 50인당 1인, 영양사는 시설당 1인(거주자 50인 이하 제외), 촉탁의사는 현재 필요로 하는 시설만 배치(근무시간: 월4회 1일 8시간 근무) 하고, 월지급액은 1,535천원(국비+지방비)이다.

부랑인복지시설에 지원되는 운영비는 생계비와 시설운영비로 구성된다. 이 중 생계비는 2003년도 현재 기준 1일 3,070원이며, 시설운영비는 100인 이하 월 50,020(600,240/년), 250~300인 시설기준시 월 41,690(500,280/년), 1,500인 이상 월 33,750 (405,000/년)이다.

제 3 장 사회복지시설 운영 현황과 문제점

제 1 절 운영자(체)

가. 운영체의 특성

시설의 운영주체로는 사회복지법인이 가장 많은 82.6%이었고, 사회복지법인 외의 비영리단체는 12.9%에 불과하였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2.9%로 소수이었다. 시설별도 별 차이 없이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3-1-1〉 시설 운영주체

(단위: 개소, %)

항목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정신요양	부랑인	전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7 4.4	5 3.1	1 0.8	3 7.5	-	-	16 2.9
사회복지법인	132 83.0	137 83.1	107 85.6	28 70.0	45 88.2	16 69.6	461 82.6
사회복지법인 외 비영리	18 11.3	20 12.5	15 12.0	9 22.5	5 9.8	5 21.7	72 12.9
기타	2 1.3	2 1.3	2 1.6	-	1 2.0	2 8.7	9 1.6
전체	159 100.0	160 100.0	125 100.0	40 100.0	51 100.0	23 100.0	558 100.0

주: 빈도가 5 이하의 셀이 20% 이상이어서 통계치는 제시하지 않았음.

다음으로 법인의 설립주체를 조사한 결과, 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인의 경우는 개인이 가장 많은 46.8%이었고, 그 다음은 기독교(개신교) 27.6%, 천주교 13.4%로 개인과 기독교와 천주교 법인이 대부분이었다. 시설별도 별 차이 없이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3-1-2〉 법인의 설립주체

(단위: 개소, %)

항목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정신요양	부랑인	전체
불교	3 2.0	12 7.5	-	-	2 3.7	2 9.1	19 3.5
원불교	1 0.7	8 5.0	-	-	1 1.9	1 4.5	11 2.0
개신교	58 38.2	34 21.3	30 25.9	13 33.3	11 20.4	5 22.7	151 27.6
천주교	15 9.9	27 16.9	18 15.5	5 12.8	1 1.9	7 31.8	73 13.4
개인	67 44.1	64 40.0	63 54.3	19 48.7	34 63.0	6 27.3	253 46.8
학교	-	2 1.3	1 0.9	-	-	-	3 0.6
의료기관	1 0.7	-	-	-	-	-	1 0.2
기타	7 4.6	13 8.1	4 3.4	2 5.1	5 9.3	1 4.5	32 5.9
전체	152 100.0	160 100.0	116 100.0	39 100.0	54 100.0	22 100.0	543 100.0

주: 빈도가 5 이하의 셀이 20% 이상이어서 통계치는 제시하지 않았음.

나. 시설장의 특성

다음에서는 시설장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우선 성 분포를 보면 남자와 여자의 분포가 거의 비슷한 50% 전후였다.

〈표 3-1-3〉 시설장 성별

(단위: 개소, %)

항목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정신요양	부랑인	전체
남자	86 51.8	69 42.1	67 52.8	16 39.0	37 68.5	14 60.9	289 50.3
여자	80 48.2	95 57.9	60 47.2	25 61.0	17 31.5	9 39.1	286 49.7
전체	165 100.0	169 100.0	126 100.0	38 100.0	54 100.0	23 100.0	575 100.0

주: $\chi^2 = 15.179, p = .010$.

시설별로는 차이를 보였는데, 남자시설장이 많은 시설은 아동, 정신요양, 부랑인시설이었다. 특히 정신요양시설은 남성시설장이 68.5%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여성 시설장의 비율이 높은 시설은 모자복지시설 61.0%, 노인시설 57.9%의 분포이었다.

시설의 장의 연령 분포는 40대가 가장 많은 28.3%이고, 그 다음은 60대, 24.4%, 50대, 23.7%의 순이었다. 평균 시설장 연령은 54.2세나 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시설장의 연령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반면 20-30대 시설장은 11.6%이고, 70대 이상의 시설장도 12.0%에 달하고 있었다.

〈표 3-1-4〉 시설장 연령

(단위: 개소, %)

항목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정신요양	부랑인	전체
20~30대	13 7.9	29 18.0	11 8.8	3 7.3	7 13.0	3 13.0	66 11.6
40대	34 20.6	47 29.2	45 36.0	9 22.0	18 33.3	8 34.8	161 28.3
50대	34 20.6	33 20.5	35 28.0	12 29.3	14 25.9	7 30.4	135 23.7
60대	49 29.7	38 23.6	22 17.6	12 29.3	13 29.3	5 21.7	139 24.4
70대 이상	35 21.2	14 8.7	12 9.6	5 12.2	2 3.7	0 0	68 12.0
전체	165 100.0	161 100.0	125 100.0	41 100.0	54 100.0	23 100.0	569 100.0
평균연령	58.6	51.9	52.9	56.0	51.0	50.8	54.2

주: $\chi^2 = 44.690$, $p = .001$; 평균: 54.29세.

시설별로는 아동 및 모자복지시설의 시설장의 연령이 다른 시설보다 높아, 각 58.5세와 56.0세에 이른다. 모든 시설의 시설장의 연령이 50세를 넘고 있다.

시설장의 학력은 대졸이 가장 많은 34.5%이고, 그 다음은 대학원졸로 25.1%에 해당된다. 고졸이하의 시설장도 20.0%나 되고 있다. 현재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 중인 시설장은 7%에 이른다.

〈표 3-1-5〉 시설장 학력

(단위: 개소, %)

항목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정신요양	부랑인	전체
고졸이하	37 22.4	28 17.7	18 14.4	11 26.2	13 24.5	6 26.1	113 20.0
전문대졸	12 7.3	33 20.9	13 10.4	7 16.7	6 11.3	4 17.4	75 13.3
대졸	70 42.4	45 28.5	45 36.0	12 28.6	15 28.3	8 34.8	195 34.5
대학원졸	36 21.8	39 24.7	41 32.8	10 23.8	11 20.8	5 21.7	142 25.1
대학재학	8 4.8	6 3.8	4 3.2	0 0	3 5.7	0 0	21 3.7
대학원재학	2 1.2	7 4.4	4 3.2	2 4.8	5 9.4	0 0	21 3.7
전체	165 100.0	158 100.0	125 100.0	42 100.0	53 100.0	23 100.0	566 100.0

주: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이어서 통계치는 제시하지 않았음.

〈표 3-1-6〉 시설장 전공

(단위: 개소, %)

구분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정신요양	부랑인	전체
없음	26 16.1	13 10.6	11 9.3	6 15.4	8 17.0	5 23.8	69 13.6
사회복지	69 42.9	64 52.0	53 44.9	19 48.7	23 48.9	8 38.1	236 46.4
의학, 간호학	7 4.3	9 7.3	3 2.5	1 2.6	2 4.3	1 4.8	23 4.5
인문사회계열	36 22.4	19 15.4	36 30.5	4 10.3	7 14.9	2 9.5	104 20.4
종교관련	27 16.9	26 20.3	17 14.5	8 22.2	3 6.4	5 23.8	86 16.9
이공계열	9 5.6	4 3.3	9 7.6	2 5.1	2 4.3	0 0	26 5.1
예체능계열	3 1.9	2 1.6	4 3.4	0 0	3 6.4	0 0	12 2.4
기타	3 1.9	13 10.2	13 11.1	2 5.6	1 2.1	2 9.5	34 6.7
전체	161 31.6	123 24.2	118 23.2	39 7.7	47 9.2	21 4.1	509 100

주: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이어서 통계치는 제시하지 않았음.

시설장의 전공은 사회복지가 가장 많은 46.4%이고, 그 다음은 인문사회계열로 20.4%이다. 종교관련 전공도 16.9%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노인시설이나 부랑인 복지시설은 종교관련 전공이 많은 편으로 나타났다.

시설장이 소지한 자격증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이 가장 많은 73.3%이었고, 2급은 10.4%이었다. 나머지는 매우 소수만이 소지하고 있었다.

〈표 3-1-7〉 시설장의 자격증 유형

(단위: 개소, %)

구 분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정신요양	부랑인	전체
사회복지사 1급	140 86.4	116 70.3	82 68.9	32 80.0	30 57.7	10 47.6	410 73.3
사회복지사 2급	12 7.4	22 13.3	10 8.4	6 15.0	5 9.6	3 14.3	58 10.4
사회복지사 3급	0 0	1 0.6	1 0.8	0 0	0 0	0 0	2 0.4
의사	3 1.9	3 1.8	2 1.7	0 0	0 0	1 4.8	9 1.6
간호(조무)사	4 2.5	11 6.7	6 5.0	3 7.5	3 5.8	2 9.5	29 5.2
영양사	1 0.6	1 0.6	1 0.8	1 2.5	1 1.9	0 0	5 0.9
각종치료사	1 0.6	2 1.2	2 1.7	0 0	0 0	0 0	5 0.9
없음	2 1.2	13 7.9	9 7.6	1 2.5	10 19.2	7 33.3	42 7.5
기타	16 9.9	13 7.9	27 22.7	2 5.3	12 23.1	3 14.3	73 13.1
전체	162 29.0	165 29.5	119 21.3	40 7.2	52 9.3	21 3.8	559 100

주: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이어서 통계치는 제시하지 않았음.

시설장의 종교는 개신교가 가장 많은 61.7%이고, 천주교 19.8%로 기독교가 전체의 80%를 넘고 있다. 불교는 8.6%, 원불교 2.3%에 불과하다. 종교가 없는 시설장은 6.8%에 달한다.

〈표 3-1-8〉 시설장 종교

(단위: 개소, %)

구분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정신요양	부랑인	전체
불교	7 4.3	24 15.3	7 5.6	2 4.9	5 9.6	3 14.3	48 8.6
원불교	1 0.6	9 5.7	0 0	0 0	1 1.9	2 9.5	13 2.3
개신교	121 73.8	75 47.8	80 63.5	32 78.0	31 59.6	7 33.3	346 61.7
천주교	23 14.0	35 22.3	33 26.2	6 14.6	7 13.5	7 33.3	111 19.8
없음	11 6.7	11 7.0	6 4.8	1 2.4	7 13.5	2 9.5	38 6.8
기타	1 0.6	3 1.9	0 0	0 0	1 1.9	0 0	5 0.9
전체	164 100.0	157 100.0	126 100.0	41 100.0	52 100.0	21 100.0	561 100.0

주: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이어서 통계치는 제시하지 않았음.

〈표 3-1-9〉 시설장과 법인대표 관계

(단위: 개소, %)

구분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정신요양	부랑인	전체
법인대표본인	35 21.3	25 15.2	12 9.6	8 20.0	20 36.4	2 9.1	102 17.9
직계존비속	33 20.1	24 14.6	23 18.3	5 12.5	13 23.6	3 13.6	101 17.7
혈연	27 16.5	21 12.8	15 11.9	5 12.5	4 7.3	2 9.1	73 12.8
지인	15 9.1	14 8.5	15 11.9	2 5.0	3 5.5	2 9.1	51 8.9
피고용인	22 13.4	37 22.6	34 27.0	11 27.5	9 16.4	5 22.7	118 20.7
기타	32 19.5	43 26.2	27 21.4	9 22.5	6 10.9	8 36.4	126 22.1
전체	164 100.0	164 100.0	126 100.0	40 100.0	55 100.0	22 100.0	571 100.0

주: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이어서 통계치는 제시하지 않았음.

시설장과 법인대표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더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형태는 기타로 22.1%나 되고 있다. 이것이 어떠한 형태를 띠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본고에서는 알 수 없으므로, 추후 이에 대한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 기타를 제외하면, 시설장이 피고용인 경우가 가장 많은 20.7%이었고, 그 다음 이 시설장이 법인대표본인인 경우로 17.9%, 직계존비속 17.7%, 혈연, 12.8%로 나타났다. 즉 시설장이 법인과 친인척인 경우가 30% 정도나 됨을 알 수 있다.

시설장으로써의 경력은 전체평균은 11.4년으로 나타났다. 시설별로는 아동시설 시설장의 경력이 가장 많은 17.8년이었고, 모자복지시설 11.6년, 장애인 및 정신요양 약 9년으로 나타났다. 아동시설의 경우 시설장으로써 근무한 경력이 21년 이상 된 경우도 35.9%나 되었다. 이는 아동시설의 설립기간이 타시설보다 더 오래된데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노인시설이나, 부랑인 시설은 시설장으로써의 경력이 5년 이하인 경우가 다른 시설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평균 경력에 있어서도 노인시설과 부랑인복지시설의 시설장으로써의 경력은 짧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1-10〉 시설장 경력

(단위: 개소, %)

항목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정신요양	부랑인	전체
1년 이하	15 9.6	41 28.1	25 22.1	7 17.5	12 23.5	3 15.0	103 19.6
2-5년	29 18.6	39 26.7	30 26.5	13 32.5	12 23.5	9 45.0	132 25.1
6-10년	24 15.4	32 21.9	27 23.9	3 7.5	2 3.9	3 15.0	91 17.3
11-20년	32 20.5	22 15.1	19 16.8	9 22.5	19 37.3	4 20.0	105 20.0
21년이상	56 35.9	12 8.2	12 10.6	8 20.0	6 11.8	1 5.0	95 18.1
전체	156 100.0	146 100.0	113 100.0	40 100.0	51 100.0	20 100.0	526 100.0
평균	17.8	7.8	9.1	11.6	9.4	6.8	11.4

주: $\chi^2 = 85.841$, $p = .000$.

제 2 절 시설거주자

가. 전체 시설거주자 특성

시설 거주자는 평균 96.0명이다. 시설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거주자 수가 가장 많은 것은 부랑인복지시설로 평균 260.5명이었고, 그 다음은 정신요양시설로 203.9명이었다. 장애인시설은 90.7명, 아동시설 74.6명, 노인시설 69.2명, 모자복지시설 68.1명의 순이었다. 시설유형별로 묶어서 살펴본 결과 시설전체로 볼 때 거주자가 30~69인 사이가 가장 많은 47.0% 이었다. 그 다음은 70~99인 사이로 19.0%가 해당한다.

〈표 3-2-1〉 시설별 거주자수

(단위: 개소, %, 명)

구분	시설유형						전체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정신요양	부랑인	
30명 미만	9	19	6	7	4	1	48
	5.6	11.7	5.6	19.5	7.4	4.3	8.5
30~70명 미만	92	95	47	22	5	5	268
	57.1	58.3	37.3	56.1	9.3	21.7	47.0
70~100명 미만	44	33	25	2	1	3	108
	27.3	20.2	19.8	4.9	1.9	13.0	19.0
100~150명 미만	12	9	32	4	10	7	74
	7.5	5.5	25.4	9.8	18.5	30.4	13.0
150명 이상	4	7	15	3	34	7	70
	2.5	4.3	11.9	9.8	63.0	30.4	12.5
전체	161	163	126	41	54	23	568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평균	74.6	69.2	90.7	68.1	203.9	260.5	96.0

주: 빈도가 5 이하의 셀이 20% 이상이어서 통계치는 제시하지 않았음.

시설의 성별 분포는 전체적으로 남자가 54%로 여자 46%보다 약간 더 많았다. 시설별로는 노인시설은 여자노인이 73%로 남자노인보다 훨씬 더 많았고 반면 부랑인복지시설은 남자 76% 여자 24%로 남성이 더 많았다. 모자복지시설은 시설의 특성상 여성(70%)이 더 많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표 3-2-2〉 성별 거주자

(단위: %, 명)

시설유형	남자 거주자		여자 거주자		총 거주자	
	비율	평균 인원	비율	평균 인원	비율	평균 인원
아 동	56.4	46.0	43.6	35.5	100.0	81.6
노 인	27.3	17.4	72.7	46.4	100.0	63.8
장 애 인	58.7	52.5	43.3	37.0	100.0	89.7
여 성	30.2	20.2	69.8	46.6	100.0	66.8
정신요양	60.6	127.2	39.4	82.6	100.0	209.7
부 랑 인	76.3	215.1	23.7	66.9	100.0	282.0
전 체	54.2	53.9	45.8	45.5	100.0	99.5

주: 본 문항에 대해 무응답하거나 응답내용이 부실한 설문지는 제외하고 활용가능한 자료만 분석에 사용한 바, 전체 시설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은 아님.

연령별 분포는 모든 연령층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청장년층인 30대에서 40대의 비율이 높았다.

〈표 3-2-3〉 연령별 거주자

(단위: 명, %)

구분		만2세 이하	3-7	8-13	14-19	20-29	30-39	40-49	50-59	60-64	65-69	70-79	80세 이상	총수
		아 동	평균	30.0	16.0	27.9	31.9	5.4	10.0	-	-	1.0	-	3.0
	비율	26.3	12.6	21.9	25.1	4.2	7.9	-	-	1.0	-	2.4	1.6	100.0
노 인	평균	-	-	-	-	-	-	-	1.7	3.5	9.1	23.9	27.1	65.3
	비율	-	-	-	-	-	-	-	2.6	5.4	13.9	35.6	41.5	100.0
장 애 인	평균	10.6	8.9	14.3	21.2	31.9	24.0	13.2	7.4	3.0	2.9	31.7	39.0	208.1
	비율	5.1	4.3	6.9	10.2	15.3	11.6	6.3	3.5	1.5	1.4	15.2	18.7	100.0
여 성	평균	3.2	11.5	17.2	13.6	5.2	14.5	10.9	2.8	1.0	1.0	-	-	80.8
	비율	4.0	14.2	21.2	16.9	6.5	17.9	13.4	3.4	1.2	1.2	-	-	100.0
정신요양	평균	-	-	-	1.3	12.0	50.1	74.5	46.6	16.6	8.4	5.5	2.5	217.4
	비율	-	-	-	0.6	5.5	23.0	34.3	21.4	7.6	3.9	2.5	1.2	100.0
부 랑 인	평균	-	-	2.0	4.8	20.6	43.3	75.9	76.2	23.9	16.0	12.8	6.2	281.5
	비율	-	-	0.7	1.7	7.3	15.4	27.0	27.1	8.5	5.7	4.5	2.2	100.0
전 체	평균	21.4	13.6	21.8	24.7	18.0	31.5	40.1	29.8	9.0	9.2	21.1	24.4	264.8
	비율	8.1	5.2	8.2	9.3	6.8	11.9	15.2	11.3	3.4	3.5	8.0	9.2	100.0

주: 본 문항에 대해 무응답하거나 응답내용이 부실한 설문지는 제외하고 활용가능한 자료만 분석에 사용한 바, 전체 시설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은 아님.

시설별로 연령분포상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아동시설은 19세 미만의 아동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단 30세 이상도 소수 있었고, 60세 이상의 노인도 소수 있었다. 노인시설은 50세 이상의 거주자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80세 이상의 비율이 가장 많은 41%나 되었다. 이는 시설의 고연령화를 시사하고 있고, 일반 노인에 비해 시설노인의 연령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장애인시설은 모든 연령대가 골고루 존재하고 있는데, 아동에서 청장년, 노인 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 20대, 30대, 70대, 80대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더 많았다. 모자복지시설은 고연령자는 거의 없고, 아동과 10대 및 30~4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정신요양시설은 아동은 없었고, 청장년층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부랑인복지시설도 정신요양시설과 거의 같은 추이를 나타내고 있었는데, 차이점은 정신요양시설보다 노인층이 약간 더 많았는데 있다.

장애정도별로 거주자의 분포를 살펴보았더니 중증장애인 42%, 경증장애인 20%로 전체의 60% 이상이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3-2-4〉 장애정도별 거주자

(단위: %, 명)

시설유형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장애없는 거주자		총 거주자	
	비율	평균 인원	비율	평균 인원	비율	평균 인원	비율	평균 인원
아 동	8.5	9.4	6.5	4.9	87.1	96.8	100.0	111.1
노 인	17.2	11.3	20.1	13.9	61.5	40.2	100.0	65.4
장 애 인	74.0	88.1	9.6	8.7	18.7	22.3	100.0	119.1
여 성	2.3	1.4	2.4	1.6	95.0	57.0	100.0	60.0
정신요양	45.0	165.1	18.1	36.8	45.0	164.9	100.0	366.8
부 랑 인	27.0	51.3	31.1	81.0	30.4	57.9	100.0	190.2
전 체	41.9	64.7	20.5	19.6	45.4	70.1	100.0	154.4

주: 본 문항에 대해 무응답하거나 응답내용이 부실한 설문지는 제외하고 활용가능한 자료만 분석에 사용한 바, 전체 시설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은 아님.

시설별로는 아동시설의 경우 장애없는 거주자가 대부분인 87%이었고, 노인

시설은 37% 정도가 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시설은 80% 이상이 장애가 있었고, 장애가 없는 거주자도 19%에 이르고 있었다. 모자복지시설은 95% 이상이 장애는 정상인이었다. 정신요양시설은 중증장애인의 비율이 45%로 매우 높았고, 부랑인복지시설은 장애인이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장애정도에 따른 분포를 통해서 볼 때, 시설의 전원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비장애인인데 장애인시설에 거주하는 경우나, 장애인인데 부랑인복지시설같은 비장애인시설에 거주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거주자의 도움 필요정도에 있어서는 전체 거주자의 28%만이 도움이 필요없는 거주자이고, 대부분은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약간 도움이 필요한 경우 20%, 많은 도움이 필요한 거주자 28%, 혼자 생활이 불가능한 거주자 23%의 분포이다. 특히 장애인시설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거주자가 다른 시설에 비해서 더 많고, 부랑인복지시설도 장애인시설보다는 덜 하지만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거주자가 많은 편이다. 반면, 정신요양시설 및 모자복지시설은 도움이 없이 생활이 가능한 거주자가 더 많다.

〈표 3-2-5〉 도움 필요 정도별 거주자

(단위: %, 명)

시설유형	도움없어도 되는 거주자		약간 도움 필요한 거주자		도움 많이 필요한 거주자		혼자 생활불가능한 거주자		총 거주자	
	비율	평균 인원	비율	평균 인원	비율	평균 인원	비율	평균 인원	비율	평균 인원
아 동	25.9	47.1	16.9	30.7	31.9	57.8	25.4	46.1	100.0	181.6
노 인	25.4	17.6	21.9	15.1	26.5	18.3	26.1	18.0	100.0	69.0
장 애 인	16.0	22.1	18.8	26.0	32.6	45.0	32.6	45.1	100.0	138.1
여 성	38.6	51.9	16.6	22.4	32.2	43.3	12.6	17.0	100.0	134.6
정신요양	42.7	124.8	18.1	53.1	24.3	71.1	14.9	43.6	100.0	292.5
부 랑 인	23.4	67.0	30.2	86.5	28.2	80.7	18.3	52.3	100.0	286.5
전 체	27.9	40.6	20.3	29.6	28.4	41.4	23.4	34.0	100.0	145.5

주: 본 문항에 대해 무응답하거나 응답내용이 부실한 설문지는 제외하고 활용가능한 자료만 분석에 사용한 바, 전체 시설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은 아님.

총 퇴소자수 연인원 평균은 72명이었는데, 유형별로는 기타의 유형이 가장 많은 46%, 가정복귀자 22%, 타시설 전원자 12%, 사망자 11%, 무단 이탈자 9%의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가정복귀자수는 모자복지시설이 가장 많은 72%이었고, 사망자 수는 노인시설로 39%에 달하였다. 무단 이탈자는 아동시설이 11%였고, 전원조치된 수의 비율은 아동시설과 장애인시설이 30%를 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시설의 유형에 따라 퇴소자의 특성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표 3-2-6〉 퇴소사유별 퇴소자

(단위: %, 명)

시설유형	가정복귀자		사망자		무단이탈자		전원 조치자		기타		총 퇴소자	
	비율	평균 인원	비율	평균 인원	비율	평균 인원	비율	평균 인원	비율	평균 인원	비율	평균 인원
아 동	28.6	12.5	4.0	1.7	10.5	4.6	37.4	16.3	19.5	8.5	100.0	43.7
노 인	18.5	5.3	39.5	11.4	6.2	1.8	18.9	5.4	16.9	4.9	100.0	28.8
장 애 인	20.2	3.9	15.4	3.1	7.3	1.4	31.3	6.0	24.9	4.8	100.0	19.2
여 성	72.5	89.6	0.8	1.0	1.9	2.3	5.3	6.6	19.6	24.2	100.0	123.7
정신요양	39.6	26.6	5.4	3.6	3.4	2.3	11.8	7.9	39.9	26.9	100.0	67.2
부 량 인	13.3	53.0	2.9	11.4	5.0	19.9	4.1	16.4	74.6	296.3	100.0	397.0
전 체	21.8	16.4	11.2	8.5	8.9	6.7	12.3	9.24	45.7	34.42	100.0	72.3

나. 실비거주자 특성

시설 실비거주자 비율은 있다는 경우는 전체의 약 1/3에 해당한다(30.7%). 시설별로 볼 때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정신요양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인 92.6%가 실비 거주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장애인시설로 전체의 55.2%에 해당한다. 그 다음은 노인시설 30.9%(본 연구에서 유료노인시설은 제외하였음), 아동시설 1.3%이다. 모자복지시설과 부랑인복지시설은 실비거주자가 전무하다.

〈표 3-2-7〉 시설별 실비 거주자 여부

(단위: 개소, %)

항목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정신요양	부랑인	전체
있다	2 1.3	50 30.9	69 55.2	-	50 92.6	-	171 30.7
없다	153 98.7	112 69.1	56 44.8	40 100.0	4 7.4	21 100.0	386 69.3
전체	155 100.0	162 100.0	125 100.0	40 100.0	54 100.0	21 100.0	557 100.0

주: $\chi^2= 222.536, p=.000$.

실비 거주자가 없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이유는 ‘무의무탁자만 받는 것이 원칙’이라는 응답으로 52.8%를 차지한다. 나머지는 ‘정원이 꽉 차서’ 11.3%, ‘입소신청자가 없어서’ 9.9% 등 소수에 불과하다. 시설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3-2-8〉 실비거주자가 없는 이유

(단위: 개소, %)

항 목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정신요양	부랑인	전체
입소신청자가 없어서	25 17.2	10 8.8	1 1.9	-	1 25.0	-	37 9.9
입소절차 복잡해서	7 4.8	6 5.3	4 7.5	1 2.7	-	-	18 4.8
정원이 꽉 차서	-	23 20.2	18 34.0	-	1 25.0	-	42 11.3
이용료 수납 어려움	1 0.7	1 0.9	4 7.5	-	-	-	6 1.6
관리의 어려움	-	3 2.6	3 5.7	-	-	-	6 1.6
무의무탁자만 받는 것이 원칙이어서	81 55.9	57 50.0	23 43.4	16 43.2	2 50.0	18 90.0	197 52.8
기타	31 21.4	14 12.3	-	20 54.1	-	2 10.0	67 18.0
전체	145 100.0	114 100.0	53 100.0	37 100.0	4 100.0	20 100.0	373 100.0

주: 빈도가 5 이하의 셀이 20% 이상이어서 통계치는 제시하지 않았음.

실비 거주자가 시설에 내는 월평균 비용은 시설간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전체적으로 볼 때 1인당 평균 253,300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다.

〈표 3-2-9〉 시설별 실비거주자 1인이 내는 월평균 비용

(단위: 천원, 개소)

구분		월평균 비용	표준편차	사례수
아동	아동양육	182.0	-	1
	아동자립지원	35.0	-	1
	소계	108.5	103.9	2
노인	노인무료양로	366.8	73.9	9
	노인무료요양	394.2	130.8	11
	노인무료전문요양	609.7	71.3	18
	실비양로	346.7	23.1	3
	실비노인요양	464.8	230.6	9
	소계	471.3	165.8	50
장애인	지체장애인	161.9	28.3	7
	시각장애인	153.5	37.5	4
	청각, 언어장애인	190.6	175.8	5
	정신지체장애인	157.8	38.3	28
	요양	168.6	41.4	20
	소계	163.9	57.8	64
정신요양	정신요양	163.0	35.7	42
	사회복귀	117.0	60.2	8
	소계	155.6	43.3	50
전체		253.3	175.2	166

주: 1) ANOVA분석 결과: F= 110.778, p=.000

2) 입소비용 범정기준

- 아동시설: 입소비용 없음.
- 노인시설: 양로시설은 월 270,000원, 요양시설 324,000원, 전문요양시설 619,000원임.
- 장애인시설: 1인당 월 176,000원. 생활능력에 따라 차등 수납. 추가비용: 정신지체장애인은 월 10,000원 이하, 중증 장애인 월 20,000원의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음.
- 모자복지시설: 입소비용 없음.
- 정신요양시설: 180,000원임.
- 부랑인복지시설: 입소비용 없음.

시설별로 볼 때 월평균 실비비용이 가장 높은 시설은 노인시설로 1달 평균 471,300원을 내고 있었고, 장애인시설 163,900원, 정신요양시설 155,600원, 아동시설은 가장 낮은 108,500원 이었다. 참고로 법적 기준에 의하면 실비비용은 아동시설, 모자복지시설, 부랑인복지시설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노인시설은 시설의 유형에 따라 입소비용이 다르다. 양로시설은 월 270,000원, 요양시설 324,000원, 전문요양시설 619,000원이다. 장애인시설은 1인당 176,000원인데, 장애인이나 보호자의 생활능력에 따라 차등해서 수납한다. 이때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는데, 장신지체장애인은 10,000원, 중증장애인은 20,000원의 추가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정신요양시설의 경우는 1인당 월 180,000원의 비용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볼 때, 현재 시설에서 받고 있는 입소비용은 법적 기준과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시설의 경우 2개소에서 무료가 아닌 유로로 받고 있었고, 노인시설은 양로시설, 요양시설 등이 기준보다 다소 높게 받고 있었다. 장애인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은 법적 기준에 가깝게 비용을 받고 있었다. 모자복지시설과 부랑인복지시설은 실비비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제 3 절 시설종사자

가. 종사자 규모

종사자 규모를 조사한 결과, 법정 및 실제 종사자 수는 약간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전체적인 충족률은 89.4%를 나타내어 법정 종사자수보다 실제 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수가 밀도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부랑인복지시설 만은 법정 직원수(16.5명)보다 실제 직원이 더 많은 17.5명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부랑인 시설이 직원이 많아서라기보다는 법정 직원수가 낮게 책정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3-3-1〉 시설별 법정 및 실재 종사자수

(단위: 명, 개소, %)

시설유형	법정직원수		실재 근무 직원 수		충족률
	평균인원	응답시설수	평균인원	응답시설수	
아 동	17.7	147	14.8	162	83.6
노 인	20.9	139	17.7	160	84.7
장 애 인	41.0	102	38.9	113	94.9
여 성	5.8	39	5.1	39	87.9
정신요양	20.8	49	17.6	53	84.6
부 랑 인	16.5	21	17.5	23	106.1
전 체	22.7	497	20.3	550	89.4

다음으로 종사자 1인당 거주자 수를 조사한 결과, 시설 종사자 1인당 평균 거주자수는 전체적으로 평균 6.8명으로 나타났다. 시설별로는 모자복지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이 가장 많은 15.6명이었고, 부랑인복지시설 10.8명이다. 아동시설은 비교적 낮은 5.8명, 노인시설 5.5명이었고, 장애인시설은 가장 낮은 2.2명이었다.

〈표 3-3-2〉 시설별 종사자수 대비 거주자

(단위: 명, 개소)

시설유형	거주자 수		종사자수		종사자 1인당 평균 거주자수	
	평균인원	응답시설수	평균인원	응답시설수	평균인원	응답시설수
아 동	74.6	161	14.8	162	5.8	158
노 인	69.2	163	17.7	160	5.5	158
장 애 인	90.7	126	38.9	113	2.2	113
여 성	68.1	41	5.1	39	15.6	39
정신요양	203.9	54	17.6	53	15.6	52
부 랑 인	260.5	23	17.5	23	10.8	23
전 체	96.0	568	20.3	550	6.8	543

나. 추가로 필요한 종사자

시설에서 추가로 필요한 종사자를 살펴 본 결과 가장 많은 필요를 나타낸 종사자는 생활보조원/생활재활교사/보육사와 생활지도원 및 사회재활교사로 각 7.0명, 3.1명이었다. 또한 취사원 1.9명, 간호사 1.8명, 촉탁의사 1.5명, 세탁부 1.5명, 청능훈련사 1.5명 등 각종 직종에서 2명 가까운 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그 밖의 직종은 약 1명 정도 추가적으로 더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시설 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정신요양시설은 추가로 간호사의 수에 대한 요구가 타시설보다 많았고, 부랑인복지시설은 생활지도원 및 사회재활교사가, 장애인시설은 생활보조원/생활재활교사/보육사가, 부랑인복지시설은 사무원과 취사원이, 정신요양시설은 작업치료사와 청능훈련사, 운전원의 수가 더 많았다.

〈표 3-3-3〉 종사자수 대비 적정거주자

(단위: 명, 개소)

구분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정신요양		부랑인		전체	
	명	시설 수	명	시설 수	명	시설 수	명	시설 수	명	시설 수	명	시설 수	명	시설 수
촉탁의사	1.2	33	1.8	58	1.1	26	1.0	2	1.4	36	1.5	8	1.5	163
간호(조무)사	1.3	70	1.6	104	1.3	79	1.0	7	3.6	45	2.3	18	1.8	323
생활지도원, 사회재활교사	2.0	84	1.7	117	1.8	94	1.1	15	4.4	42	19.9	21	3.1	374
생활보조원, 생활재활교사, 보육사	6.1	97	6.1	96	12.6	58	1.4	7	5.2	37	4.2	18	7.0	313
영양사	1.2	41	1.0	52	1.1	20	1.0	5	1.2	15	1.3	8	1.1	141
사무원	1.1	141	1.1	139	1.3	104	1.0	15	1.4	39	1.5	11	1.2	449
취사원	1.5	80	1.6	132	1.8	79	1.0	6	2.4	40	4.2	20	1.9	357
세탁부	1.6	44	1.2	86	1.4	64	1.0	4	1.8	40	2.0	19	1.5	257
직업훈련교사	1.5	10	1.0	7	1.3	60	1.0	2	1.7	34	1.1	19	1.4	132
이동복지상담원, 임상심리상담원	1.3	85	1.0	13	1.2	47	1.1	16	1.6	20	1.2	5	1.2	186
물리치료사	1.0	4	1.3	81	1.6	64	1.0	1	1.6	18	1.0	16	1.4	184
작업치료사	-	-	1.1	41	1.3	57	-	-	2.2	23	1.1	11	1.4	132
언어치료사	1.0	5	1.0	13	1.3	68	-	-	2.3	3	1.0	1	1.3	90
청능훈련사	-	-	1.0	5	1.5	6	-	-	2.3	3	1.0	1	1.5	15
운전원	1.1	71	1.0	114	1.2	91	1.1	13	1.4	42	1.2	19	1.2	350
시설관리기사(안전관리기사)	1.2	88	1.0	126	1.2	107	1.0	21	1.3	45	1.1	18	1.2	405

〈표 3-3-4〉 시설별 추가로 필요한 종사자수 분석 결과

구분	F 값	유의도	구분	F 값	유의도	구분	F 값	유의도
축탁의사	.196	.964	취사원	5.803	.000	작업치료사	3.863	.003
간호사	12.246	.000	세탁부	2.191	.056	언어치료사	1.759	.130
생활지도원	5.124	.000	직업훈련교사	1.993	.084	청능훈련사	.453	.801
보조원	5.498	.000	아동복지상담원	.901	.482	운전원	4.113	.001
영양사	1.307	.265	물리치료사	1.500	.192	시설관리기사	1.583	.164
사무원	5.604	.000						

다. 종사자 대비 적정 거주자 수

종사자 대비 적정 거주자의 수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3-5〉 종사자 1인당 대비 적정거주자

(단위: 명, 개소)

구분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정신요양		부랑인		전체	
	명	시설 수	명	시설 수	명	시설 수	명	시설 수						
축탁의사 1인	65.9	78	50.3	135	61.8	104	30.0	5	89.6	48	88.8	16	62.8	386
간호(조무)사 1인	42.6	125	26.9	155	39.7	119	28.1	14	32.1	48	52.7	23	35.9	484
생활지도원, 사회적 활동교사 1인	32.3	128	34.1	149	36.0	119	25.3	31	39.5	49	31.1	23	34.0	499
생활보조원, 생활재 활동교사, 보육사 1인	7.8	144	8.1	144	5.2	116	21.2	17	21.8	43	26.9	22	9.8	486
영양사 1인	52.0	130	51.7	151	66.0	111	30.6	8	147.9	45	122.6	20	67.2	465
사무원 1인	44.8	137	51.9	151	49.5	116	41.2	21	103.2	46	120.1	20	56.5	491
취사원 1인	35.1	138	28.9	159	32.8	119	22.3	15	48.6	49	51.6	23	34.3	503
세탁부 1인	41.9	133	38.3	155	44.2	118	20.6	8	82.1	47	109.2	21	47.8	482
직업훈련교사 1인	37.7	25	35.6	28	31.7	74	21.7	6	84.0	34	54.2	17	44.5	184
아동복지상담원, 임 상심리상담원 1인	1.3	85	1.0	13	1.2	47	1.1	16	1.6	20	1.2	5	1.2	186
물리치료사 1인	47.5	15	39.0	139	37.5	107	16.3	4	103.1	20	103.8	13	45.7	298
작업치료사 1인	37.8	12	45.9	59	36.9	80	18.8	4	85.2	26	135.0	6	49.3	187
언어치료사 1인	41.8	16	37.6	29	31.8	84	16.3	4	77.0	5	125.0	2	36.7	140
청능훈련사 1인	44.7	11	39.2	24	30.0	28	16.3	4	77.0	5	125.0	2	40.2	74
운전원 1인	52.5	102	50.6	138	54.4	110	37.5	14	107.2	41	148.8	16	60.8	421
시설관리기사(안전 관리기사) 1인	51.6	115	51.7	136	64.8	110	42.9	23	115.8	43	160.1	18	65.0	445

생활보조원 등은 직원 1인당 9.8명의 거주자가 적당하다고 하였고, 생활지도원은 34.0명이라고 지적하였다. 촉탁의사는 1인당 62.8명, 간호사는 35.9명이 적당하고, 사무원 56.5명, 취사원은 34.3명이 적당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시설별로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생활지도원을 제외한 전 항목에서 시설의 특성대로 종사자수 대비 적정거주자 수가 다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정신요양시설이나, 부랑인복지시설은 다른 시설에 비해서 각 직종별 적정 거주자수를 높게 응답하였고, 반면 모자복지시설은 낮게 응답하여 시설간에 종사자 지원기준에 편차가 큼을 알 수 있다.

〈표 3-3-6〉 시설별 종사자 1인당 대비 적정거주자 분석 결과

구 분	F 값	유의도	구 분	F 값	유의도
의사 1인당	10.549	.000	직업훈련교사 1인당	10.514	.000
간호사 1인당	18.244	.000	아동복지상담원 1인당	.901	.482
생활지도원 1인당	1.746	.123	물리치료사 1인당	24.868	.000
생활보조원 1인당	51.418	.000	작업치료사 1인당	13.727	.000
영양사 1인당	40.442	.000	언어치료사 1인당	6.140	.000
사무원 1인당	33.112	.000	청능훈련사 1인당	4.847	.001
취사원 1인당	16.943	.000	운전원 1인당	28.968	.000
세탁부 1인당	19.324	.000	시설관리기사 1인당	16.818	.000

라. 교대제 운영

교대제 운영방식을 조사한 결과, 교대제를 운영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0.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에서 2교대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것이 잘 실천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모자복지시설(84.6%)과 부랑인복지시설(80.0%)에서 2교대제를 실시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다. 반면 장애인시설은 4.0%만이 2교대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많은 응답은 격일로 교대근무와 1일 2교대 근무로 각 각 21.3%와 19.9%이었다. 격일 근무는 장애인시설에서 49.2%로 가장 많았고, 1일 2교대 근무는 노인시설에서 30.8%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기타의 방법이 18.7%로 많았고, 3교대근무 6.9% 등이었다.

〈표 3-3-7〉 시설별 교대제 운영 방식

(단위: 개소, %)

항 목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정신요양	부랑인	전체
1일 2교대 근무	15	45	33	1	5	2	101
	10.6	30.8	26.2	3.8	10.4	10.0	19.9
격일로 교대 근무	19	19	61	0	9	0	108
	13.4	12.3	49.2	0	18.8	0	21.3
3교대 근무	2	17	15	1	1	0	35
	1.4	11.0	11.9	3.8	2.1	0	6.9
3일씩 교대 근무	0	0	3	0	1	0	3
	0	0	2.4	0	2.1	0	0.6
1주일씩 교대 근무	2	3	0	0	0	0	5
	1.4	2.1	0	0	0	0	1.0
24시간 근무하되, 직원 2배 채용	7	0	1	0	1	0	9
	4.9	0	0.8	0	2.1	0	1.8
2교대 운영 안함	87	47	5	20	33	16	208
	62.0	30.1	4.0	84.6	68.8	80.0	40.9
기타	20	43	23	3	4	3	95
	14.1	28.8	18.3	11.5	8.3	15.0	18.7
전체	142	146	126	26	48	20	508
	28.0	28.7	24.8	5.1	9.4	3.9	100.0

주: 중복응답을 백분율로 환산한 것임.

바람직한 교대제는 1일2교대제, 격일근무, 3교대 근무가 각 25.7%, 24.5%, 23.2%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특히 2교대제를 실시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부랑인복지시설과 모자복지시설에서 2교대제 근무에 대한 희망율이 높았다. 격일근무는 아동시설과 장애인시설에서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었고, 3교대근무는 노인시설(36.7%)이 다른 시설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희망율을 보이고 있었다. 24시간을 근무하되 직원을 2배 채용에서는 11.3%가 지지하고 있어 비교

적 소수의 시설장이 이를 원하고 있었다. 3일씩 교대근무와 1주일씩 교대근무는 더욱 소수만이 이를 지지하였다.

〈표 3-3-8〉 바람직한 교대제 운영 방식

(단위: 개소, %)

항목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정신요양	부랑인	전체
1일 2교대 근무	34 22.7	49 32.7	24 19.7	9 32.1	8 16.0	10 45.5	134 25.7
격일로 교대 근무	46 30.7	21 14.0	40 32.8	4 14.3	14 28.0	3 13.6	128 24.5
3교대 근무	8 5.3	55 36.7	35 28.7	4 14.3	14 28.0	5 22.7	121 23.2
3일씩 교대 근무	4 2.7	0 0	2 1.6	0 0	1 2.0	2 9.1	9 1.7
1주일씩 교대 근무	5 3.3	1 0.7	1 0.8	0 0	0 0	0 0	7 1.3
24시간 근무하되, 직원 2배 채용	44 29.3	7 4.7	4 3.3	2 7.1	2 4.0	0 0	59 11.3
기타	9 6.0	17 11.3	16 13.1	8 32.1	11 22.0	2 9.1	64 12.3
전체	150 100.0	150 100.0	122 100.0	28 100.0	50 100.0	22 100.0	522 100.0

주: 셀의 빈도가 5미만인 경우가 20% 이상이어서 통계치는 제시하지 않았음.

제 4 절 시설운영비: 보조금

가. 보조금 지원 빈도

정부보조금의 지원빈도를 항목별로 월과 분기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인건비, 생계비, 관리운영비 모두 시설의 차이 없이 대부분 매월 보조금을 지원 받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각 80.5%, 92.2%, 75.2%). 즉, 상대적으로 분기로 받는 경우는 비율은 관리운영비에서 많았고, 생계비는 90% 이상이 매월 지급 받고 있었다.

〈표 3-4-1〉 정부보조금 지원 빈도

(단위: 개소, %)

항목	시기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정신요양	부랑인	전체
인건비	매 월	131 80.4	131 82.9	91 74.0	33 91.7	46 85.2	16 69.6	447 80.4
	매분기	32 19.6	27 17.1	32 26.0	3 8.3	8 14.8	7 30.4	109 19.6
	전 체	163 100.0	158 100.0	123 100.0	36 100.0	54 100.0	23 100.0	557 100.0
생계비	매 월	144 91.7	144 94.1	114 91.9	33 96.9	45 90.0	19 82.2	499 92.2
	매분기	13 8.3	9 5.9	10 8.1	1 2.9	5 10.0	4 17.4	42 7.8
	전 체	157 100.0	153 100.0	124 100.0	34 100.0	50 100.0	23 100.0	541 100.0
관 리 운영비	매 월	122 75.6	125 79.1	82 66.1	32 84.2	43 81.1	15 65.2	418 75.2
	매분기	39 24.4	33 20.9	42 33.9	6 15.8	10 18.9	8 34.8	138 24.8
	전 체	160 100.0	162 100.0	124 100.0	38 100.0	53 100.0	23 100.0	557 100.0

주: 인건비 - $\chi^2= 9.254, p=.099$ 생계비 - $\chi^2= 5.261, p=.385$, 관리운영비- $\chi^2= 10.688, p=.058$

다음에서는 순수지방비의 지원빈도를 살펴보았다. 지방비도 대부분 매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단 전체적으로 정부보조금보다는 순수지방비의 경우 매월 받는 비율이 약간 낮았다. 인건비의 경우는 시설별 차이를 보이고있었는데, 모자복지시설이나 노인시설, 그리고 정신요양시설의 경우는 다른 시설보다 인건비를 매월 받는 비율이 높았다. 반면 장애인시설, 부랑인복지시설, 아동시설에서는 매분기 받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생계비와 관리운영비 항목에서는 시설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정부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순수지방보조금에 있어서도 인건비, 생계비, 관리운영비 중 매월 지급되는 비율이 생계비가 가장 높았다(각 77.8%, 85.9%, 70.2%).

〈표 3-4-2〉 순수지방비보조금 지원 빈도

(단위: 개소, %)

항목	시기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정신요양	부랑인	전체
인건비	매 월	99 78.6	99 82.5	69 67.6	25 92.6	39 81.3	13 68.4	344 77.8
	매분기	27 21.4	21 17.5	32 32.4	2 7.4	9 18.8	6 31.6	98 22.2
	전 체	125 100.0	124 100.0	101 100.0	25 100.0	48 100.0	19 100.0	442 100.0
생계비	매 월	84 86.5	84 88.4	64 81.0	17 100.0	31 83.8	13 81.3	293 85.9
	매분기	13 13.4	11 11.6	15 19.0	0 0	6 16.2	3 18.8	48 14.1
	전 체	96 100.0	98 100.0	78 100.0	15 100.0	37 100.0	16 100.0	340 100.0
관 리 운영비	매 월	77 68.8	65 74.7	54 62.8	18 81.8	30 76.9	8 57.1	252 70.2
	매분기	35 31.3	22 25.3	32 37.2	4 18.2	9 23.1	6 42.9	107 29.8
	전 체	112 100.0	87 100.0	86 100.0	22 100.0	39 100.0	14 100.0	359 100.0

주: 인건비 - $\chi^2= 12.396, p=.030$, 생계비 - $\chi^2= 5.316, p=.379$, 관리운영비 - $\chi^2= 6.587, p=.253$

나. 보조금 지급 시기

다음은 정부보조금을 국고, 지방비와 순수지방비로 나누어 각각의 보조금 중 인건비, 생계비, 관리운영비를 언제 지급받는지 알아보았다. 정부보조금 중 인건비는 시설의 과반수인 50.2%가 집행 진행도중에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집행사유 발생초기에 지급받는 시설은 25.9%에 불과하였다. 더구나 집행 사유 종료 후에 인건비를 받는 시설도 23.9%나 되었다. 따라서 시설들이 인건비를 집행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건비 지급시기는 시설간 차이를 보이지 않고, 대부분 집행사유진행 도중에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보조금 중 생계비 지급시기는 시설의 과반수에 약간 못 미치는 48.4%가 집행 진행도중에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집행사유 발생초기에 지급 받는 시설은 인건비 비율보다는 약간 더 높은 33.6%이었다. 집행 사유 종료 후에 생계비를

받는 시설은 18.0%이었다. 생계비 지급시기도 시설간 차이를 보이지 않고, 대부분 집행사유진행 도중이나 초기에 지급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3〉 시설별 정부보조금 지급시기

(단위: 개소, %)

항목	시기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정신요양	부랑인	전체
인건비	집행사유발생초기	47 30.1	38 25.7	29 24.2	6 18.8	12 22.6	6 26.1	138 25.9
	집행 사유 종료후	36 23.1	36 24.3	29 24.2	9 28.1	13 24.5	4 17.4	127 23.9
	집행 사유 진행 도중	73 46.8	74 50.0	62 51.7	17 53.1	28 52.8	13 56.5	267 50.2
	전체	156 100.0	148 100.0	120 100.0	32 100.0	53 100.0	23 100.0	532 100.0
생계비	집행사유발생초기	59 39.1	42 29.6	40 33.6	9 30.0	15 30.6	7 33.3	172 33.6
	집행 사유 종료후	26 17.2	30 21.1	20 16.8	5 16.7	8 16.3	3 14.3	92 18.0
	집행 사유 진행 도중	66 43.7	70 49.3	59 49.6	16 53.3	26 53.1	11 52.4	248 48.4
	전체	151 100.0	142 100.0	119 100.0	30 100.0	49 100.0	21 100.0	512 100.0
관 리 운영비	집행사유발생초기	54 34.8	39 26.5	33 27.7	10 29.4	14 26.4	6 27.3	156 29.4
	집행 사유 종료후	25 16.1	34 23.1	28 23.5	7 20.6	11 20.8	4 18.2	109 20.6
	집행 사유 진행 도중	76 49.0	74 50.3	58 48.7	17 50.0	28 52.8	12 54.5	265 50.0
	전체	155 100.0	147 100.0	119 100.0	34 100.0	53 100.0	22 100.0	530 100.0

주: 인건비 $\chi^2= 3.503, p=.967$, 생계비 $\chi^2= 4.645, p=.914$, 관리운영비 $\chi^2= 5.045, p=.888$

정부보조금 중 관리운영비 지급시기는 인건비와 마찬가지로 50.0%가 집행 진행도중에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집행사유 발생초기에 지급받는 시설은 29.4%에 불과하였다. 더구나 집행 사유 종료 후에 인건비를 받는 시설도 20.6%나 되었다. 지급시기도 시설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2/3가 집행사유진행 도중이나 사후에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에는 순수지방비 지급시기를 살펴보았다. 인건비는 국고와 지방비와 마찬가지로 시설의 과반수가 집행 진행도중에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집행사유 발생초기에 지급 받는 시설은 26.0%에 불과하다. 더구나 집행 사유 종료 후에 받는 시설도 20.6%나 되었다. 따라서 시설들이 인건비를 집행하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건비 지급시기도 시설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2/3 집행사유진행 도중이나 사후에 지급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4〉 시설별 순수지방비 지급시기

(단위: 개소, %)

항목	시기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정신요양	부랑인	전체
인건비	집행사유발생초기	37 30.1	26 23.9	22 23.2	5 20.8	12 25.5	5 27.8	107 25.7
	집행 사유 종료후	30 24.4	27 24.8	23 24.2	8 33.3	10 21.3	3 16.7	101 24.3
	집행 사유 진행 도중	56 45.5	56 51.4	50 52.6	11 45.8	25 53.2	10 55.6	208 50.0
	전체	123 100.0	109 100.0	95 100.0	24 100.0	47 100.0	18 100.0	416 100.0
생계비	집행사유발생초기	32 33.3	22 25.0	23 30.7	6 35.3	12 33.3	6 42.9	101 31.0
	집행 사유 종료후	21 21.9	21 23.9	9 12.0	4 23.5	4 11.1	3 21.4	62 19.0
	집행 사유 진행 도중	43 44.8	45 51.1	43 57.3	7 41.2	20 55.6	5 35.7	163 50.0
	전체	96 100.0	88 100.0	75 100.0	17 100.0	36 100.0	14 100.0	326 100.0
관리운영비	집행사유발생초기	41 38.0	18 22.5	23 29.1	7 33.3	10 26.3	4 30.8	103 30.4
	집행 사유 종료후	19 17.6	21 26.3	19 24.1	6 28.6	8 21.1	2 15.4	75 22.1
	집행 사유 진행 도중	48 44.4	41 51.3	37 46.8	8 38.1	20 52.6	7 53.8	161 47.5
	전체	108 100.0	80 100.0	79 100.0	21 100.0	38 100.0	13 100.0	339 100.0

주: 인건비 $\chi^2= 3.934, p=.950$, 생계비 $\chi^2= 9.251, p=.508$, 관리운영비 $\chi^2=7.588, p=.669$

다음에는 순수지방비 중 생계비 지급시기를 살펴보았다. 생계비는 과반수가 집행 진행도중에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집행사유 발생초기에 지급 받는 시설은

인건비보다는 높은 비율인 31.0%이었다. 집행 사유 종료 후에 생계비를 받는 시설은 19.0%에 이른다. 시설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전체의 70%가 집행사유진행 도중이나 사후에 지급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수지방비 중 관리운영비 지급시기는 47.5%가 집행 진행도중에 받는다고 응답하여 이 기간에 국고 및 지방비로부터 비용을 지급 받는 시설의 비율보다 2.5% 가량 더 비율이 낮았다. 집행사유 발생초기에 지급 받는 시설은 30.4%로 국고 및 지방비 비율(29.4%)과 거의 비슷하였다. 집행 사유 종료 후에 관리운영비를 받는 시설은 22.1%로 국고 및 지방비로부터 이 기간에 지급 받는 시설 비율인 20.6%와 거의 비슷한 경향을 나타낸다. 순수지방비 중 관리운영비 지급시기는 국고 및 지방비와 비슷하게 70% 정도의 시설의 집행사유 진행도중이나 집행사유종료 후에 지급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희망하는 보조금 수준

시설에서는 지급받는 보조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항목별로 어느 정도의 인상을 원하는지를 살펴보았다.

<표 3-4-5> 시설별 희망하는 보조금 지급액 평균 인상율

(단위: %, 개소)

시설유형	생계비 ¹⁾		인건비		관리운영비		프로그램비		시설증개축비		기타	
	희망 인상 률	응답 시설 수	희망 인상 률	응답 시설 수	희망 인상 률	응답 시설 수	희망 인상 률	응답 시설 수	희망 인상 률	응답 시설 수	희망 인상 률	응답 시설 수
아 동	17.4	116	26.9	145	34.1	143	43.2	119	38.7	105	19.4	49
노 인	20.5	106	38.7	134	38.3	134	39.8	94	32.4	80	26.1	39
장 애 인	25.4	102	32.7	113	34.6	110	42.2	97	46.5	88	17.4	39
여 성	29.0	32	26.6	32	35.4	35	47.4	31	47.2	25	28.5	10
정신요양	29.2	48	30.4	52	29.8	53	42.0	52	33.3	39	12.1	15
부 랑 인	29.5	21	36.0	21	36.7	21	49.1	17	41.8	19	21.3	4
전 체	22.9	421	32.1	497	35.1	496	42.6	410	39.4	356	20.5	156

주: 1) 생계비만 시설간 유의한 차이를 보임. F= 3.538, p=.004

그 결과 모든 항목에서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였다. 인상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프로그램비로 현행보다 42.6%를 더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시설증개축비로 39.4%의 증액을, 요구하고 있었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 35.1%, 인건비 32.1%, 생계비 22.9%, 기타 20.5%로 기타를 제외하면 생계비의 인상요구 비율이 가장 낮았다. 시설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생계비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어 모자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부랑인 시설 등이 타 시설보다 더 높은 생계비 인상비율을 제시하였다.

거주자 1인당 지원받는 정부보조금과 희망하는 보조금액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모든 항목에서 현행보다는 희망 보조금 액수가 더 많았다.

〈표 3-4-6〉 현행 정부보조금 지급액 및 희망 정부보조금 지급액

(단위: 천원, 개소)

시설유형	현행 거주자1인당 정부보조금 (A)		희망 거주자 1인당 정보보조금 (B)		차이 (B-A)	
	금액	응답시설수	금액	응답시설수	금액	응답시설수
아 동	2,510.4	139	3,498.4	134	950.4	134
노 인	1,922.5	110	2,411.8	106	572.8	102
장 애 인	2,499.6	100	3,641.3	93	1,044.0	93
여 성	791.1	30	1,282.9	27	533.8	27
정신요양	1,162.7	49	1,790.0	46	635.7	46
부 랑 인	1,885.0	19	3,217.0	17	1,337.0	17
전 체	2,073.6	447	2,921.4	425	830.3	419

주: 현행 F= 4.462, p=.001, 희망 F= 4.292, p=.001, 차이 F= 2.741, p=.019

전체적으로 현행 거주자 1인당 정부보조금 지급액은 2,073,600원이었고, 희망 정부보조금은 2,921,400원이었다. 평균 830,300원을 더 인상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었다. 현행 1인당 보조금 액수로 보면 아동시설 2.5백만원, 장애인시설 2.5백만원, 노인시설 1.9백만원, 부랑인복지시설 1.5백만원, 정신요양시설 1.2백만원,

모자복지시설 79만원의 순이었다. 희망하는 1인당 보조금은 장애인시설이 가장 높은 3.6백만원이었고, 아동시설 3.5백만원, 부랑인복지시설 3.2백만원, 노인시설 2.4백만원, 정신요양시설 1.8백만원, 모자복지시설 1.3백만원의 순이었다.

현행 보조금과 희망 보조금 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차이가 가장 많았던 것을 부랑인복지시설로 1.3백만원이었다. 그 다음은 장애인시설로 1.0백만원, 아동시설 95만원, 정신요양시설 64만원, 노인시설 57만원, 모자복지시설은 가장 낮은 53만원이었다.

라. 보조금 집행방식

현행 정부보조금이 생계비, 인건비, 관리운영비가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살펴 보았다. 가장 많은 응답은 각각을 '별로 집행한다'로 80.5% 시설이 지적하였고, 모두 통합 집행하는 시설은 8.9%, 인건비와 관리비 통합집행 시설은 3.3%로 소수에 불과하다. 시설장의 결정에 따라 목간의 전용이 가능하다는 지적과는 달리 실제로는 예산전용이 많지 않았다.

〈표 3-4-7〉 현행 정부보조금 지급방식

(단위: 개소, %)

항 목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정신 요양	부랑인	전체
생계비, 인건비, 관리운영비 통합	18	11	14	3	2	3	51
	11.2	6.7	11.1	7.1	3.7	13.0	8.9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통합	6	2	2	4	5	-	19
	3.7	1.2	1.6	9.5	9.3	-	3.3
생계비와 관리운영비 통합	12	6	4	1	1	-	24
	7.5	3.7	3.2	2.4	1.9	-	4.2
각각 별도 집행	117	142	105	32	46	20	460
	72.7	85.4	83.3	76.2	85.2	87.0	80.5
기타	8	5	1	1	-	-	15
	5.0	3.0	0.8	2.6	-	-	2.6
전체	161	164	126	42	54	23	57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빈도가 5 이하의 셀이 20% 이상이어서 통계치는 제시하지 않았음.

희망하는 정부보조금 집행방식은 무엇인지 알아본 결과, 가장 많은 응답은 인건비는 따로 두고 생계비와 관리운영비를 같이 집행하는 것으로 37.5%이었고, 비슷한 비율인 34.7%가 생계비, 인건비, 관리운영비를 통합해서 집행하는 것이었다. 소수의 시설인 8.5%만이 인건비와 관리운영비의 통합집행을 희망하였다.

〈표 3-4-8〉 희망하는 보조금 집행방식

(단위: 개소, %)

항 목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정신 요양	부랑인	전체
생계비, 인건비, 관리운영비 통합	49 30.4	46 28.9	63 50.4	8 20.0	20 37.0	9 39.1	195 34.7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통합	13 8.1	11 6.9	10 8.0	4 10.0	6 11.1%	4 17.4	48 8.5
생계비와 관리운영비 통합	76 47.2	68 42.8	31 24.8	11 27.5	20 37.0	5 21.7	211 37.5
각각 별도 집행	19 11.8	28 17.6	19 15.2	14 35.0	8 14.8	5 21.7	93 16.5
기타	4 2.5	6 3.8	2 1.6	3 7.5	-	-	15 2.7
전체	161 100.0	159 100.0	125 100.0	40 100.0	54 100.0	23 100.0	561 100.0

주: 빈도가 5 이하의 셀이 20% 이상이어서 통계치는 제시하지 않았음.

마. 세출항목 중 과부족 항목

세출 항 중 부족함을 많이 지적한 항목은 인건비, 사무운영비, 시설비, 사업 운영비, 특별사업비 등이다. 반면, 몇몇 시설들은 인건비, 판공비, 사무운영비, 시설비, 수업운영비 등이 적정하다고 지적한 곳도 있다.

지출목에 있어서 예산의 부족 정도가 큰 것은 연료비, 공공요금, 급여, 제세 공과금, 수용 및 수수료, 퇴직금 등이다. 반면 부식비, 일반의류비 등은 적정하거나 남는 편이라는 시설이 다른 목에 비해서 많았다.

〈표 3-4-9〉 세출 항별 과부족 정도

(단위: 개소, %)

구분	매우부족		부족한편		적정한편		남는편		전체	
	시설수	비율	시설수	비율	시설수	비율	시설수	비율	시설수	비율
인건비	29	43.3	26	38.8	10	14.9	2	3.0	67	100.0
관공비	14	35.0	17	42.5	8	20.0	1	2.5	40	100.0
사무운영비	32	45.7	25	35.7	11	15.7	2	2.9	70	100.0
시설비	19	31.7	26	43.3	12	20.0	3	5.0	60	100.0
사업운영비	13	26.5	23	46.9	8	16.3	5	10.2	49	100.0
교육비	11	35.5	12	38.7	8	25.8	-	-	31	100.0
사업비	23	37.1	25	40.3	14	2.6	-	-	62	100.0
전출금	4	36.4	4	36.4	3	27.3	-	-	11	100.0
과년도지출	4	44.4	3	33.3	2	22.2	-	-	9	100.0
부채상환금	4	40.0	3	30.0	3	30.0	-	-	10	100.0
반납금	5	50.0	3	30.0	2	20.0	-	-	10	100.0
예비비	4	36.4	3	27.3	4	36.4	-	-	11	100.0
이월금	4	23.5	5	29.4	4	23.5	4	23.5	17	100.0
총계	12	46.2	10	38.5	3	11.5	1	3.8	26	100.0

〈표 3-4-10〉 예산 부족 정도가 큰 지출목 우선순위(시설수 중심)

(단위: 개소, %)

구분	매우부족		부족한편		적정한편		남는편		전체	
	시설수	비율	시설수	비율	시설수	비율	시설수	비율	시설수	비율
연료비	78	50.0	56	35.9	19	12.2	3	1.9	156	100.0
공공요금	77	48.1	59	36.9	21	13.1	3	1.9	160	100.0
급여	64	40.0	69	43.1	25	15.6	2	1.3	160	100.0
체세공과금	53	39.0	52	38.2	29	21.3	2	1.5	136	100.0
수용비및 수수료	49	34.8	65	46.1	25	17.7	2	1.4	141	100.0
퇴직금	43	34.7	52	41.9	28	22.6	1	0.8	124	100.0
시설장비유지비	38	30.4	65	52.0	20	16.0	2	1.6	125	100.0
자산취득비	37	31.1	60	50.4	20	16.8	2	1.7	119	100.0
일반의류비	30	21.4	66	47.1	39	27.9	5	3.6	140	100.0
부식비	25	17.7	64	45.4	45	31.9	7	5.0	141	100.0

다음에는 예산이 남는 항목을 시설수가 많은 순서대로 나열하였더니, 예산이 ‘남는 편’이라고 가장 많이 지적한 목은 주식비로 18개 시설이 지적하였다. 다음은 부식비로 7개소, 런닝·팬티비 6개소, 운영비 5개소, 일반의류비 5개소, 특별급식비 5개소 등이다. 물론 이 목도 부족하다는 응답이 남는다는 응답보다 더 많았다. 그럼에도 이러한 목에 있어서는 다른 목들보다도 예산이 남는다고 지적한 시설이 더 많았다. 이러한 항목들은 주로 직접비에 해당하는 것들이 많고, 운영비관련 한 것은 운영비소계만 있을 뿐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예산 배정이 되거나, 관항목 간의 전용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3-4-11〉 예산이 남는 지출목 우선순위(시설수 중심)

(단위: 개소, %)

구분	남는편		매우부족		부족한편		적정한편		전체	
	시설수	비율	시설수	비율	시설수	비율	시설수	비율	시설수	비율
주식비	18	13.6	10	7.6	38	28.8	66	50.0	132	100.0
부식비	7	5.0	25	17.7	64	45.4	45	31.9	141	100.0
운영비	5	10.2	13	26.5	23	46.9	8	16.3	49	100.0
런닝팬티비	6	5.0	13	10.7	55	45.5	47	38.8	121	100.0
일반의류비	5	3.6	30	21.4	66	47.1	39	27.9	140	100.0
의약품비	5	4.1	27	22.1	60	49.2	30	24.6	122	100.0
특별급식비	5	5.0	20	20.0	45	45.0	30	30.0	100	100.0
동내의비	4	3.5	13	11.4	51	44.7	46	40.4	114	100.0
차량비	4	3.2	29	23.2	58	46.4	34	27.2	125	100.0
이월금	4	23.5	4	23.5	5	29.4	4	23.5	17	100.0

제 5 절 지방자치단체의 시설 지도·감독

가. 지원 시설 현황

사회복지시설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 설문은 근본 취지는 공무원들이 시

설에서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교대제와 예산의 관항목 전용을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 가에 관한 것이었다. 우선 해당 지역의 시설 수를 유형별로 파악하였다.

〈표 3-5-1〉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회복지생활시설 수

(단위: 개소)

시설유형		전체	광역시 자치단체	시	군	구
아동	양육시설	111	1	42	17	51
	직업훈련시설	3	0	0	0	3
	보호치료시설	2	0	0	0	2
	자립지원시설	3	1	1	0	1
	일시보호시설	4	1	0	1	2
	아동종합시설	7	7	0	0	0
	합계	130	10	43	18	59
노인	무료양로시설	53	7	21	16	9
	무료노인요양시설	47	6	23	8	10
	무료전문요양시설	19	4	8	5	2
	실비양로시설	6	0	3	3	0
	실비노인요양시설	8	1	4	2	1
	합계	133	18	59	34	22
정신 요양	정신요양시설	36	6	15	8	7
	정신질환자사회복지시설	13	0	4	1	8
	합계	49	6	19	9	15
여성	모자보호시설	17	1	4	5	7
	모자자립시설	2	1	0	0	1
	모자일시보호시설	9	2	2	1	4
	미혼모시설	3	0	1	0	2
	선도보호시설	8	1	2	0	5
	성폭력보호시설	13	1	6	1	5
	합계	52	6	15	7	24
장애인	지체장애인시설	20	2	9	4	5
	시각장애인시설	9	0	3	0	6
	청각·언어장애인시설	8	1	5	0	2
	정신지체장애인시설	54	4	26	7	17
	장애인요양시설	35	1	16	5	13
	합계	126	8	59	16	43
부랑인	부랑인복지시설	171	1	7	4	5

〈표 3-5-2〉 지원하고 있는 조건부 신고시설 현황

(단위: 개소)

시설유형	전체	광역시	시	군	구
아동·청소년 시설	58	9	21	13	15
노인시설	250	13	123	93	21
장애인시설	204	26	102	35	41
모자복지시설	8	3	1	1	3
정신요양시설	10	0	6	4	0
부랑인복지시설	13	0	6	1	6
결핵·나장애인시설	0	0	0	0	0
혼합시설	4	0	0	4	0
기타	1	0	1	0	0
합계	553	51	264	152	86

주: 빈도가 5 이하의 셀이 20% 이상이어서 통계치는 제시하지 않았음.

〈표 3-5-3〉 지원하고 있는 미신고 시설 현황

(단위: 개소)

시설유형	전체	광역시	시	군	구
아동·청소년 시설	10	1	4	3	2
노인시설	24	1	9	10	4
장애인시설	28	1	12	8	7
모자복지시설	3	0	1	0	2
정신요양시설	2	0	1	1	0
부랑인복지시설	3	0	1	0	2
결핵·나장애인시설	1	0	1	0	0
혼합시설	6	0	0	3	3
기타	1	0	0	1	0
합계	74	3	27	24	20

주: 빈도가 5 이하의 셀이 20% 이상이어서 통계치는 제시하지 않았음.

나. 보조금 운용 및 자체 지원 현황

보조금 운용 중 가장 많은 문제가 되어 온 예산 전용여부에 있어서 가장 많은 경우는 전용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48.2%를 차지하고, 그 다음이 목

간 전용 허용 22.3%, 관간 전용 16.1%이었다. 지방자치단체별로는 통계수치를 제시할 수는 없었지만, 상대적으로 시도의 경우 전용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구에서는 관 및 목간의 전용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시도와 시에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목간 전용을 허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관항목 예산전용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응답은 ‘보조금 유용을 막기 위해서’로 65.2%가 해당한다. 다음은 현재의 관항목 간의 배분이 잘 되어 있어서 전용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경우로 22.7%이다. 나머지는 소수의 공무원만이 지적하였다.

〈표 3-5-4〉 예산 전용 허용 여부

(단위: %, 개소)

항 목	시도		시		군		구		전체	
	시설수	비율								
관간 전용 허용	-	-	5	12.5	4	10.3	9	32.1	18	16.1
항간 전용 허용	-	-	2	5.0	1	2.6	2	7.1	5	4.5
목간 전용 허용	2	40.0	12	30.0	5	12.8	6	21.4	25	22.3
전용허용안함	3	60.0	21	52.5	22	56.4	6	28.6	54	48.2
기타	-	-	-	-	7	17.9	3	10.7	10	8.9
전체	5	100.0	40	100.0	39	100.0	28	100.0	112	100.0

주: 빈도가 5 이하의 셀이 20% 이상이어서 통계치는 제시하지 않았음.

〈표 3-5-5〉 예산 전용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

(단위: %, 개소)

항 목	시도		시		군		구		전체	
	시설수	비율								
보조금 유용을 막기 위해	2	50.0	17	65.4	15	65.2	9	69.2	43	65.2
현 관항목별 금액배분이 잘되어 있어서	2	50.0	5	19.2	5	21.7	3	23.1	15	22.7
지금까지의 관행이라	-	-	1	3.8	1	4.3	-	-	2	3.0
전용할 수 있는 지 몰라서	-	-	1	3.8	1	4.3	-	-	2	3.0
기타	-	-	2	7.7	1	4.3	1	7.7	4	6.1
전체	4	100.0	26	100.0	23	100.0	13	100.0	66	100.0

주: 빈도가 5 이하의 셀이 20% 이상이어서 통계치는 제시하지 않았음.

지자체별로는 통계적인 수치를 계산할 수 없었으나, 시도 공무원의 경우가 다른 공무원보다 현 관항목별 금액배분이 잘되어 있다(50%)고 보고 있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향후 정부보조금 운용 방침을 살펴본 결과 1년 이내에 관간 전용을 허용할 것(47.1%)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다. 그 다음은 전용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으로 31.4%를 차지한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12.9%나 되어 예산 전용에 대한 계획이 없거나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규정에는 관항목간의 전용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용되고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러한 허용방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5-6〉 향후 정부보조금 운용 방침

(단위: %, 개소)

항 목	시도		시		군		구		전체	
	시설수	비율								
가능한 지킴이도록 지도하고 점차 허용	4	100.0	15	50.0	6	28.6	8	53.3	33	47.1
허용하지 않을 것임	-		7	23.3	10	47.6	5	33.3	22	31.4
잘 모르겠음	-		5	16.7	3	14.3	1	6.7	9	12.9
기타	-		3	10.0	2	9.5	1	6.7	6	8.6
전체	4	100.0	30	100.0	21	100.0	15	100.0	70	100.0

주: 빈도가 5 이하의 셀이 20% 이상이어서 통계치는 제시하지 않았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시설수를 시설유형에 따라 파악한 결과, 아동복지시설이 가장 많은 44개소였고, 그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24개소, 정신요양시설 11개소, 노인시설 9개소 등이다.

〈표 3-5-7〉 시설유형별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시설 수

(단위: 개소)

시설 유형	아동	노인	장애인	모자	정신요양	부랑인	미신고	미상	보조사업	합계
시설수	44	9	24	7	11	5	1	2	3	106

다음으로 지원 예산의 규모는 132개 지자체 1개소당 평균 1천1백만원으로 집계되었다. 각 지자체별로는 시도가 가장 많은 1억6천3백만원 정도이었고, 시 1천5십만원, 군 4백6십만원, 구 1백6십만원의 순이다.

〈표 3-5-8〉 자체 지원한 예산 규모

(단위: 개소, 천원)

지자체 유형	사례수	전체 지원 예산 합계	시설당 평균지원예산
시도	5	814,961	162,992
시	41	428,872	10,460
군	51	235,103	4,610
구	35	56,650	1,619
전체	132	1,535,586	11,633

주: 평균은 자체예산으로 지원하지 않은 지자체도 포함하여 계산하였음.

제 6 절 예산 지원방식의 문제점

다음에서는 2장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현행 정부지원방식과 3장의 사회복지 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하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방식상의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가. 거주자 인원비례방식

시설의 유형과 수용자의 특성(장애정도, 연령 등)에 따라 차등을 두고는 있으나 대체로 종별 거주자 1인당 일정금액을 거주자의 수에 비례하여 지원하고 있다. 거주자수에 비례하여 지원하는 예산지원방식으로 인하여 소규모시설 일수록 운영이 어렵고, 대형시설은 상대적으로 운영에 여유가 있는 등 시설 대형화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는 규모의 경제를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거주자수에 비례하여 지원하고 있는 항목은 생계비, 피복비, 난방연료비, 전력비, 수도요금 등이다. 영양사, 운전기사, 사무직원 등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의 경우

시설 종별로 종사자 배치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나. 예산 전용문제

재무·회계규칙에는 예산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예산전용이 어려워 효율적인 지출이 어려운 실정이다. 난방연료비는 수용인원수에 비례하여 증감한다기보다는 난방면적에 따라 증감하게 된다. 또한 노인 시설이나 영아시설의 경우 다른 시설과는 난방온도와 난방일수에 차등을 두어 지원해야 하나 현재는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의류 등 피복비나 쌀 등 주식비 또는 부식비 등은 후원물품으로 많이 접수가 되는 까닭에 예산상 여유가 있는 반면에 난방비 등은 급작스러운 석유류나 가스의 가격인상으로 인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다. 종사자 배치기준의 시설 종별 특수성 반영 미흡

정부보조금 내역 중 생계비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모든 시설에 공통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시설관리운영비는 시설종별로 수용자 1인당 지원액에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시설 종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는 시설 종별 거주자의 특성과 종사자 배치기준의 차이에 기인한다. 1인당 지원액의 현격한 격차는 시설종별 시설보호수준의 격차로 연결된다. 특히 정신요양시설이나 부랑인복지시설의 경우 정부지원수준이 생계보호비 수준에 불과하여 거주자들은 단순수용보호수준의 서비스만 받고 있는 수준이다.

2001년 현재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거주자 1인당 지원액은 연간 1,459천원이며, 부랑인 시설의 경우 연간 1인당 지원액은 1,269천원에 불과하다. 이에 비하여 전문요양시설인 경우 1인당 연간 8,229천원이, 장애인 생활시설인 경우 연간 5,848천원을 지원하고 있어 대조적이다.

이처럼 거주자 1인당 예산지원기준이 적고 종사자 배치기준이 낮을 경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첫째, 개별보호가 어렵다. 장애인시설의 경우 종사자 1명이 평균 2.2명의 장

애인을 담당하고 있는 반면, 부랑인복지시설의 경우 평균 11.9명,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13.1명을 담당하게 되어 개별보호가 어렵고 수용위주의 보호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표 3-6-1〉 복지시설별 거주자 1인당 연간 지원 단가

(단위: 천원, %)

시설종류		1999년		2000년		2001년	
		금액	상대비	금액	상대비	금액	상대비
노인복지시설	양로	2,608	2.6	2,738	2.4	2,875	2.3
	요양	2,870	2.9	3,014	2.6	4,738	3.7
	전문요양	5,105	5.1	5,369	4.6	8,229	6.5
장애인복지시설	생활시설	4,457	4.5	4,670	4.1	5,848	4.6
	근로시설	4,457	4.5	4,670	4.1	4,914	3.9
	보호작업장	830	0.8	872	0.8	916	0.7
아동복지시설		3,099	3.1	3,254	2.8	3,734	2.9
모자복지시설		1,798	1.8	1,888	1.6	1,982	1.6
부랑인복지시설(성인)		994	1.0	1,154	1.0	1,269	1.0
정신요양시설		1,206	1.2	1,326	1.2	1,459	1.2

주: 상대비는 부랑인복지시설(성인)을 1.0으로 했을 때의 상대비임.

자료: 이태수, 『국민의 정부이후 사회복지시설정책의 변화와 향후과제』, 『제4차 한국종교계사회 복지대표자협의회 심포지엄 자료집』, 2001. 11.

둘째,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력의 부족으로 의료재활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부랑인복지시설과 정신요양시설에 의사·간호사 등의 의료인력의 배치를 강화하고, 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도 함께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참고로 한국의 노인시설, 일본과 미국의 노인시설에 있어서의 배치기준을 비교한 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배치기준이 상당히 열악함을 알 수 있으며, 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이 열악하게 되면 종사자의 소진 현상이 빨리 오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거주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올라가기 어렵다.

셋째, 생활지도원의 부족으로 사회복지에 어려움이 있다. 이는 시설 종별로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기준과 거주자의 특성에 따른 프로그램지원의 차이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설 종별로 종사자 지원기준을 재검토하고 프로그램의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시설종별 예산지원 단가차이의 보전이 필요하다.

〈표 3-6-2〉 외국의 장기요양시설 인력기준 비교

구분	한국	미국	일본
시설기능	노인복지시설	Nursing Home	특별양호노인홈
시설장	1인	1인 또는 비상근	1인
총무	1인	-	-
생활지도원	1인	-	1인
의사	1인(전담/촉탁)	비상근	상근 1인
간호사	양로 50인당 1인 요양 25인당 1인 전문 20인당 1인	100인 규모 1일 실제 배치인력 9~10인(근무조당 1인 이상)	50인당 6인
보조원	양로 20인당 1인 요양 7인당 1인 전문 3인당 1인	거주자 100인 규모 1일 실제 배치인력 20~39인	50인 규모 13~14인 80인 규모 19인 100인 규모 23인
약사		비상근	-
물리치료사	요양, 전문 1인(100인 추가 시 1인 추가)	1인	1인
사회복지사	-	1인/비상근	-
작업치료사	-	비상근	-
오락치료사	-	1인	-
급식	영양사 거주자 50인당 1인 취사인력 50인당 1인	10~14인	영양사 1인 조리원: 50인 규모 5인, 100 인 규모 6인
세탁	50인당 1인	3~4인	-
청소	-	5~10인	-
의무기록	-	1인	-
원무	-	3인	-
행정	100인 이상 사무원 2인 전문: 50인당 관리원 1인	-	50인당 1인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소규모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활성화를 위한 시설설비·인력기준과 운영개선 방안』, 2001.

라. 운영비 지원 기준에 대한 형평성 미흡

인력 지원 기준면에서 생활영역 및 시설 관리부분의 인력이 부족하다. 특히 부랑인시설은 노인시설이나 장애인시설에 비해서 인력 지원 기준이 낮아 형평성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부랑인시설에도 정상인은 23.4% 밖에 안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거주자가 대부분이므로 다른 시설과 비슷한 수준의 인력지원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표 3-6-3〉 사회복지시설의 인력 지원 기준 비교(2003년 기준)

	인력	부랑인	노인	장애인
행정	원장(시설장)	시설당 1인	시설당 1인	시설당 1인
	사무국장(총무)	시설당 1인	시설당 1인	시설당 1인
일상 생활 영역	상담부장(사회재활교사)	시설당 1인	-	시설당 1인
	생활복지사	40인당 1인	100인 이상 1인	-
	생활지도원 (생활재활교사)	50인당 1인	양로: 25인당* 요양: 10인당 전문: 5인당	중증: 4.7인당 2인 아동: 8인당 2인 정지, 시각:10인당 2인 지체, 청각·언어:20인당 2인
의료	촉탁의사	필요 시설만	시설당 1인	시설당 1인
	간호사	200인당 1인	양로: 시설당 1인 요양: 50인당	시설당 1인
	물리치료사	-	시설당 1인	시설당 1인
	언어치료사	-	-	시설당 1인
관리	영양사	시설당 1인	시설당 1인	시설당 1인
	위생원(세탁부)	-	시설당 1인	시설당 1인(200인 이상 2인)
	조리원	-	시설당 1인**(50인 이상 2인)	시설당 1인(50인 이상 2인)
	경비원	시설당 1인	-	-
	시설관리기사	-	-	시설당 1인
사무원	시설당 1인	-	-	시설당 1인

주: *2교대를 위해 2배수로 지원, ** 2003년 4/4분기부터
자료: 2003년 부랑인복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사업안내

정부지원수준이 낮은 부랑인복지시설과 정신요양시설에 대해서는 직원배치기

준의 상향조정과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확대로 타종의 시설과 예산지원에 있어서의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관리운영비에 있어 사회복지시설단가 설정기준도 시설간 차이가 있다. 부랑인시설, 노인시설, 장애인시설을 비교했을 때, 관리운영비는 장애인시설에 가장 많이 배정되고 있고, 부랑인시설이 가장 낮은 편이다.

〈표 3-6-4〉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비 비교

(단위: 원/년)

구분	부랑인			노인			장애인
	1,500인 이상	250~300인	100인 이하	양로	요양	전문요양	
관리운영비	405,000	500,280	600,240	592,190	755,390	995,790	시설당 3,000만원 1인당 451,000원
100인 기준	60만원			59.2만원	75.5만원	99.5만원	300만원

자료: 2003년도 부랑인, 노인, 장애인 사업안내.

다. 직원 교대제 문제

종사자와 관련해서는 종사자의 지원 기준을 개선하는 것 뿐 아니라, 교대제의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 현재는 장애인시설을 중심으로 2교대제가 실시되고 있으나,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파악되었듯이 노인 및 장애인시설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에서 교대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교대제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인건비가 충분치 않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교대제의 권고와 함께 충분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인력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바. 보조금 지급시기 문제

정부보조금 지급시기는 대부분 사업시행 후나 시행 중에서 지원되고 있었다. 인건비, 생계비, 관리운영비 등의 항목을 불문하고 지원시기가 늦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보조금 지급시기를 개선하여 사업진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 4 장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세입·세출 분석

제 1 절 아동복지시설

가. 세입

1) 세입총괄

(1) 전체 세입 현황

2001년말 현재 아동양육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등 150개 아동복지 생활시설의 세입 현황을 분석한 결과, <표 4-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 아동복지시설의 평균 세입은 585,355천원으로 나타났다. 세입 항목별로 평균 금액을 보면, 국고 및 지방비 등을 통한 보조금 수입이 451,510천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전입금(75,583천원), 후원금(35,433천원), 이월금(13,810천원), 잡수입(4,155천원), 차입금(2,745천원), 사업수입(1,025천원), 과년도 수입(986천원), 입소비용(109천원) 등의 순이다. 세입 항목별 구성비를 보면, 보조금 수입이 77.1%로 현저하게 비율이 높고, 전입금 12.9%, 후원금 6.1%, 이월금 2.4%, 잡수입 0.7%, 차입금 0.5%, 사업수입과 과년도 수입이 각각 0.2%, 입소비 수입이 0.02% 등의 순이다(표 4-1-2 참조).

시설 종류별로 보면, 평균 세입이 가장 많은 시설은 아동양육시설(616,004천원)이고, 다음은 아동보호치료시설(557,904천원), 아동일시보호시설(508,914천원), 아동직업훈련시설(330,415천원), 자립지원시설(75,175천원) 등의 순으로, 자립지원시설의 평균 세입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이는 자립지원시설이 시설 퇴소 아동에 대한 사회적응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로 숙박 등 제한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등 보조금 수입이 상대적으로 적고, 특히 생계비 지원을 받지 않는데서 비롯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표 4-1-1〉 아동복지시설 종류별 평균 세입 규모(2001년 기준)

(단위: 천원, 개소)

항	목		아동양육 시설	아동직업 훈련시설	아동보호 치료시설	자립지원 시설	아동일시 보호시설	전체 평균		
입소비용수입	입소비용		17	0	0	2,345	0	109		
사업수입	사업수입		910	0	4,219	3,060	0	1,025		
과년도수입	과년도수입		402	0	0	15,601	0	986		
보조금수입	경 상 보조금 수 입	정 부 보 조	국 고	인 건 비	133,392	57,071	134,143	20,891	194,634	128,605
			생 계 비	63,602	21,581	44,911	0	49,633	59,564	
			관 리 운 영 비	45,391	24,081	48,081	1,933	24,456	42,861	
		지 방 비	인 건 비	82,629	57,071	81,222	14,296	84,585	79,395	
			생 계 비	28,655	21,581	15,662	0	12,408	26,782	
			관 리 운 영 비	30,682	24,081	20,606	1,242	10,481	28,767	
		순 수 지 방 비 보 조	인 건 비	27,086	15,394	13,472	2,430	7,137	25,195	
			생 계 비	5,752	213	344	138	695	5,205	
			관 리 운 영 비	16,657	20,270	3,090	138	18,093	15,826	
	자 본 보 조 금 수 입	정 부 보 조	국 고	6,633	0	66,117	0	0	7,292	
			지 방 비	6,508	0	78,502	0	0	7,427	
		순 수 지 방 비 보 조	5,372	0	5,627	0	0	4,948		
	기 타 보 조 금 수 입	정 부 보 조	국 고	7,950	1,667	1,868	0	5,382	7,333	
			지 방 비	9,470	1,667	1,868	0	7,025	8,735	
		순 수 지 방 비 보 조	3,722	5,000	2,065	123	3,789	3,571		
소 계			473,501	249,675	517,579	41,189	418,319	451,510		
후원금수입	후원금 수입		28,573	5,599	4,372	837	30,541	26,560		
	결연수원금 수입		9,843	642	71	0	0	8,873		
	소 계		38,416	6,240	4,444	837	30,541	35,433		
차입금	금융기관차입금		507	0	0	2,106	0	540		
	기타차입금		2,450	0	0	0	0	2,205		
	소 계		2,956	0	0	2,106	0	2,745		
전입금	법인전입금		80,540	60,870	22,345	9,010	53,631	75,583		
이월금	전년도이월금		13,684	8,634	1,244	553	3,718	12,609		
	이월사업비		1,317	0	0	378	0	1,201		
	소 계		15,001	8,634	1,244	931	3,718	13,810		
잡수입	불용품매각대		159	0	0	4	0	143		
	기타예금이자수입		1,021	4,506	179	47	505	1,024		
	기타잡수입		3,082	489	7,894	46	2,199	2,987		
	소 계		4,261	4,996	8,073	96	2,704	4,155		
총계 (시설수)			616,004 (135)	330,415 (3)	557,904 (3)	75,175 (6)	508,913 (6)	585,356 (150)		

시설 종류별로 세입항목별 세입여부를 분석한 결과, <표 4-1-2>에서 보는 바와 같다. 즉, 아동직업훈련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에서는 입소비 수입, 과년도 수입 및 차입금 세입이 없고, 아동양육시설 중 0.7%, 자립지원시설 중 33.3%가 이러한 항목의 세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수입의 경우 아동직업훈련시설과 아동일시보호시설에는 없고, 아동양육시설 중 5.2%, 아동보호치료시설 중 33.3%, 자립지원시설 중 16.7%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후원금 수입이 있는 시설의 비율을 보면, 아동양육시설과 일시보호시설은 각각 96.3%, 100.0%로 대부분의 시설이 후원금 수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아동직업훈련시설(66.7%), 아동보호치료시설(66.7%), 자립지원시설(50.0%)은 비교적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전입금의 경우는 아동직업훈련시설과 아동일시보호시설은 모두 전입금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아동양육시설은 80.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2> 세입항목별 세입이 있는 아동복지시설 비율

(단위: %, 개소)

세입항목	아동양육 시설	아동직업 훈련시설	아동보호 치료시설	자립지원 시설	아동일시 보호시설	전체 평균
입소비수입	0.7	-	-	33.3	-	2.0
사업수입	5.2	-	33.3	16.7	-	6.0
과년도수입	5.2	-	-	16.7	-	5.3
보조금수입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후원금수입	96.3	66.7	66.7	50.0	100.0	93.3
차입금	17.0	-	-	16.7	-	16.0
전입금	80.0	100.0	66.7	66.7	100.0	80.0
이월금	89.6	100.0	100.0	83.3	66.7	89.3
잡수입	91.1	100.0	66.7	100.0	100.0	91.3
총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시설수	135	3	3	6	3	150

시설 종류별로 세입항목의 구성비를 비교하면 보면, <표 4-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립지원시설의 경우, 입소비 수입(3.1%), 사업수입(4.1%), 과년도 수입(20.8%)의 비율이 다른 시설에 비해 상당히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보조금 수입의 시설당 평균 규모는 아동보호치료시설이 517,579천원으로 가장 높아 이들 시설의 전체 세입의 92.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양육시설은 76.8%, 아동직업훈련시설은 75.6%, 아동일시보호시설은 82.2% 등이고, 자립지원시설의 세입 중 보조금 수입의 비율은 5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원금 수입의 비율은 아동양육시설 6.2%, 아동일시보호시설 6.0%로서 주로 연령이 어린 아동이 많은 시설들에서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불량 아동을 선도보호하고 있는 아동보호치료시설의 경우, 0.8%(4,444천원)로 전체 세입 중 비율과 금액이 낮다. 전입금의 경우, 평균금액은 아동양육시설이 88,540천원으로 가장 높지만, 전체 세입 중 비율은 13.1%로 아동직업훈련시설(18.4%)에 비해 낮다.

<표 4-1-3> 아동복지시설 평균 세입의 항목별 구성비

(단위: 천원, %, 개소)

세입항목	아동양육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전체 평균	
	세입	비율	세입	비율	세입	비율	세입	비율	세입	비율	세입	비율
입소비수입	17	0.02	0	-	0	-	2,345	3.1	0	-	109	0.02
사업수입	910	0.2	0	-	4,219	0.8	3,060	4.1	0	-	1,025	0.2
과년도수입	402	0.1	0	-	0	-	15,601	20.8	0	-	986	0.2
보조금수입	473,501	76.8	249,675	75.6	517,579	92.8	41,189	54.8	418,319	82.2	451,510	77.1
후원금수입	38,416	6.2	6,240	1.9	4,444	0.8	837	1.1	30,541	6.0	35,433	6.1
차입금	2,956	0.5	0	-	0	-	2,106	2.8	0	-	2,745	0.5
전입금	80,540	13.1	60,870	18.4	22,345	4.0	9,010	12.0	53,631	10.5	75,583	12.9
이월금	15,001	2.4	8,634	2.6	1,244	0.2	931	1.2	3,718	0.7	13,810	2.4
잡수입	4,261	0.7	4,996	1.5	8,073	1.4	96	0.1	2,704	0.5	4,155	0.7
총계	616,004	100.0	330,415	100.0	557,904	100.0	75,175	100.0	508,913	100.0	585,356	100.0
시설수	135		3		3		6		3		150	

(2) 보조금 세입 현황

앞에서 분석한 결과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많은 부분을 중앙 또는 지방 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보조금 수입의 현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표 4-1-4〉 아동복지시설의 보조금 출처별 세입 규모

(단위: 천원, %)

세입항목		아동 양육시설	아동직업 훈련시설	아동보호 치료시설	자립지원 시설	아동일시 보호시설	전체 평균
국 고	소계	256,968 (54.3)	104,400 (41.8)	295,120 (57.0)	22,824 (55.4)	274,105 (65.5)	245,655 (54.4)
	경상보조금	242,385	102,733	227,135	22,824	268,723	231,030
	자본보조금	6,633	0	66,117	0	0	7,292
	기타보조금	7,950	1,667	1,868	0	5,382	7,333
지방비	소계	157,944 (33.4)	104,400 (41.8)	197,860 (38.2)	15,538 (37.7)	114,499 (27.4)	151,106 (33.5)
	경상보조금	141,966	102,733	117,490	15,538	107,474	134,944
	자본보조금	6,508	0	78,502	0	0	7,427
	기타보조금	9,470	1,667	1,868	0	7,025	8,735
순 수 지방비	소계	58,589 (12.3)	40,877 (16.4)	24,598 (4.8)	2,829 (6.9)	29,714 (7.1)	54,745 (12.1)
	경상보조금	49,495	35,877	16,906	2,706	25,925	46,226
	자본보조금	5,372	0	5,627	0	0	4,948
	기타보조금	3,722	5,000	2,065	123	3,789	3,571
총계		473,501 (100.0)	249,675 (100.0)	517,579 (100.0)	41,189 (100.0)	418,319 (100.0)	451,510 (100.0)

출처별로 보면 보조금은 국고, 지방비, 순수지방비로 구성되는데, 2001년 현재 150개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세입 451,510천원 중 국고는 245,655천원으로 54.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방비는 33.5%(151,106

천원), 순수지방비는 12.1%(54,745천원)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시설종류별로 보면, 아동일시보호시설이 국고의 비율이 65.5%로서 국고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고, 국고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낮은 시설은 아동직업훈련시설(41.8%)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비를 포함한 정부보조금에 대한 의존도를 보면, 아동보호치료시설이 95.2%(국고 57.0%, 지방비 38.2%)로 가장 높고, 아동직업훈련시설의 경우는 순수지방비 비율이 16.4%로 가장 높아 상대적으로 정부보조금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상보조금 수입을 정부지원 기준인 인건비, 생계비, 관리운영비로 구분하여 그 규모를 분석한 결과는 <표 4-1-5>와 같다. 150개 아동복지시설의 경상보조금 평균 세입은 412,204천원으로 나타났다. 시설 종류별로 보면, 아동양육시설이 433,845천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은 아동일시보호시설(402,123천원), 아동보호치료시설(361,532천원), 아동직업훈련시설(241,342천원), 자립지원시설(41,068천원) 등의 순이다.

경상보조금 세입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인건비로서 전체 세입 중 56.6%(233,195천원)를 차지하고 있다. 시설 종류별로 보면, 평균 인건비 세입은 아동일시보호시설이 286,356천원으로 가장 높고, 경상보조금 세입 중 차지하는 비율도 71.2%로 상대적으로 높아 인건비 세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립지원시설의 경우는 인건비가 37,356천원으로 그 규모는 다른 시설에 비해 현저하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시설 세입 중 비율은 91.6%나 차지하고 있어 다른 시설에 비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다른 시설에 비해 법정종사자 배치 기준 및 지원기준이 낮는데 이유가 있다. 아동양육시설의 경우, 순수지방비에서 지원되는 인건비가 27,086천원으로 다른 종류의 시설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아동양육시설에서 필요한 종사자에 대한 정부지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해 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를 경상보조금 출처별로 보면, 150개 아동복지시설 인건비의 국고 비율은 55.1%이고, 지방비는 34.1%, 순수지방비는 10.8%이다. 이를 시설종류별로 보면,

아동일시보호시설 인건비의 국고 비율이 68.0%로 가장 높고, 다음은 아동보호 치료시설(58.6%), 자립지원시설(55.5%), 등의 순이다. 인건비 중 순수지방비 비율은 아동양육시설(11.1%)과 아동직업훈련시설(11.8%)이 높게 나타났다.

〈표 4-1-5〉 아동복지시설의 인건비, 생계비, 관리운영비 세입 규모

(단위: 천원, %)

세입항목		아동 양육시설	아동직업 훈련시설	아동보호 치료시설	자립지원 시설	아동일시 보호시설	전체 평균
인건비	소 계	243,106 (100.0)	129,536 (100.0)	228,837 (100.0)	37,617 (100.0)	286,356 (100.0)	233,195 (100.0)
	국 고	133,392 (54.9)	57,071 (44.1)	134,143 (58.6)	20,891 (55.5)	194,634 (68.0)	128,605 (55.1)
	지 방 비	82,629 (34.0)	57,071 (44.1)	81,222 (35.5)	14,296 (38.0)	84,585 (29.5)	79,395 (34.1)
	순수지방비	27,086 (11.1)	15,394 (11.8)	13,472 (5.9)	2,430 (6.5)	7,137 (2.5)	25,195 (10.8)
생계비	소 계	98,009 (100.0)	43,374 (100.0)	60,918 (100.0)	138 (100.0)	62,736 (100.0)	91,554 (100.0)
	국 고	63,602 (64.9)	21,581 (49.8)	44,911 (73.7)	0 (-)	49,633 (79.1)	59,564 (65.1)
	지 방 비	28,655 (29.2)	21,581 (49.8)	15,662 (25.7)	0 (-)	12,408 (19.8)	26,782 (29.3)
	순수지방비	5,752 (5.9)	213 (0.4)	344 (0.6)	138 (100.0)	695 (1.1)	5,205 (5.6)
관 리 운영비	소 계	92,730 (100.0)	68,432 (100.0)	71,777 (100.0)	3,313 (100.0)	53,031 (100.0)	87,455 (100.0)
	국 고	45,391 (48.9)	24,081 (35.2)	48,081 (67.0)	1,933 (58.3)	24,456 (46.1)	42,861 (49.0)
	지 방 비	30,682 (33.1)	24,081 (35.2)	20,606 (28.7)	1,242 (37.5)	10,481 (19.8)	28,767 (32.9)
	순수지방비	16,657 (18.0)	20,270 (29.6)	3,090 (4.3)	138 (4.2)	18,093 (34.1)	15,826 (18.1)
총계	433,845	241,342	361,532	41,068	402,123	412,204	

다음으로 생계비 지원규모를 보면, 아동양육시설이 98,009천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은 아동일시보호시설(62,736천원)이다. 생계비 수준이 가장 낮은 자립지원시설의 경우는 순수지방비에 의해서만 138천원의 세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비의 경우도 아동양육시설은 다른 시설에 비해 순수지방비에 의한 지원(5,752천원)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관리운영비는 아동양육시설(92,730천원)이 가장 높고, 다음은 아동보호치료시설(71,777천원), 아동직업훈련시설(68,432천원) 등의 순이다.

생계비의 출처별 규모를 보면, 인건비와 마찬가지로 아동일시보호시설의 국고 비율이 79.1%로 가장 높고, 다음은 아동보호치료시설(73.7%), 아동양육시설(64.9%) 등의 순이다. 자립지원시설의 경우 생계비에 대한 국고와 지방비는 없고, 138천원 모두가 순수지방비 보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운영비의 경우는 국고와 지방비 이외에 순수지방비의 지원규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아동직업훈련시설의 경우, 순수지방비에 의한 관리운영비 평균 지원금이 20,270천원으로 동 시설 전체의 평균 관리운영비 중 29.6%를 차지하고 있다. 관리운영비 출처별 비율을 보면, 아동보호치료시설의 경우 국고에 대한 의존도가 67.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방비 비율이 가장 높은 시설은 자립지원시설(37.5%)로 나타났고, 아동직업훈련시설과 아동일시보호시설은 순수지방비 비율이 각각 29.6%, 34.1%로 다른 시설에 비해 현저하게 높다.

1) 시설 소재지 규모별 세입

(1) 전체 평균 세입

본 조사에 응답한 150개 아동복지시설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규모별 분포를 분석한 결과 <표 4-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도시에 소재한 시설은 42.0%(63개소), 중소도시에 소재한 시설은 33.3%(50개소) 그리고 군지역에 소재한 시설은 24.7%(37개소)로 나타났다⁷⁾.

7) 지역규모는 대도시(특별시 및 광역시의 시·구), 중소도시(9개 도의 시·구), 군지역(16개 시·도의 군)으로 구분함.

<표 4-1-6> 지역규모별 아동복지시설 분포

(단위: 개소, %)

항 목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전체	
	개소수	비율	개소수	비율	개소수	비율	개소수	비율
아동양육시설	55	40.7	44	32.6	36	26.7	135	100.0
아동직업훈련시설	2	66.7	1	33.3	0	-	3	100.0
아동보호치료시설	1	33.3	1	33.3	1	33.3	3	100.0
자립지원시설	4	66.7	2	33.3	0	-	6	100.0
아동일시보호시설	1	33.3	2	66.7	0	-	3	100.0
계	63	42.0	50	33.3	37	24.7	150	100.0

지역규모별로 세입을 분석한 결과, 다음의 <표 4-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도시의 세입이 758,286천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중소도시(468,704천원), 군지역(448,542천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입항목별로 보면, 대도시와 중소도시 시설에 입소비용 수입이 각각 126천원, 169천원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체 세입 대비 비율은 상당히 미미하다. 또한 대도시 시설의 경우 과년도 수입(1,570천원)이 중소도시(899천원)와 군지역(109천원) 시설에 비해 높고, 중소도시(1,743천원)와 군지역(1,780천원) 시설은 사업수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 수입의 규모는 대도시가 553,551천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전체 세입 중 차지하는 비율은 73.0%로 중소도시(80.2%), 군지역(84.7%)에 비해 낮다. 다음으로 후원금 수입은 중소도시가 40,599천원으로 대도시(33,265천원)나 군지역(32,142천원)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차입금은 군지역 시설이 7,880천원으로 가장 높다. 전입금의 수준은 대도시 시설이 146,300천원으로 중소도시(31,402천원)의 4배, 군지역(14,879천원)의 9배를 상회하고 있고,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3%로 중소도시(6.7%), 군지역(3.3%)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기타 이월금과 잡수입 등은 시설간에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4-1-7〉 아동복지시설의 소재지 규모별 평균 세입 총괄

(단위: 천원, %, 개소)

항 목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전체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입소비용수입	126	0.02	169	0.04	0	-	109	0.02
사업수입	12	-	1,743	0.4	1,780	0.4	1,025	0.2
과년도수입	1,570	0.2	899	0.2	109	0.02	986	0.2
보조금수입	553,551	73.0	375,795	80.2	380,081	84.7	451,510	77.1
후원금수입	33,265	4.4	40,599	8.7	32,142	7.2	35,433	6.1
차입금	1,036	0.1	1,097	0.2	7,880	1.8	2,745	0.5
전입금	146,300	19.3	31,402	6.7	14,879	3.3	75,583	12.9
이월금	17,594	2.3	13,624	2.9	7,618	1.7	13,810	2.4
잡수입	4,832	0.6	3,376	0.7	4,054	0.9	4,155	0.7
총계	758,286	100.0	468,704	100.0	448,542	100.0	585,355	100.0
시설 수	63		50		37		150	

시설유형별로 소재지 규모에 따른 평균세입을 보면, <표 4-1-8>에서 보는 바와 같다. 먼저, 아동양육시설의 경우, 입소비용은 중소도시 소재 시설에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 사업수입은 중소도시가 1,564천원, 군지역이 1,478천원으로 대도시(14천원)에 비해 높은 규모를 보이고 있다. 과년도 수입 또한 중소도시(1,021천원)와 군지역(1,112천원)에서 대도시(96천원)보다 높은 규모를 보였다. 반면 보조금수입은 대도시가 603,702천원으로 가장 높고, 중소도시(388,350천원)와 군지역(378,656천원)은 비슷한 수준이다. 후원금은 중소도시가 44,640천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전입금은 대도시 162,955천원, 중소도시 30,929천원, 군지역 15,264천원 등으로 보조금 수입과 더불어 지역규모별로 가장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아동양육시설의 전체적인 세입총계를 보면, 대도시가 830,216천원으로 중소도시(485,453천원), 군지역(448,297천원)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규모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8〉 아동복지시설 종류 및 시설 소재지 규모별 평균 세입

(단위: 천원)

항 목		아동 양육시설	아동직업 훈련시설	아동보호 치료시설	자립지원 시설	아동일시 보호시설
입소비용수입	대 도시	0	0	0	1,988	0
	중소도시	53	0	0	3,060	0
	군 지역	0	-	0	-	-
	소계	17	0	0	2,345	0
사업수입	대 도시	14	0	0	0	0
	중소도시	1,564	0	0	9,180	0
	군 지역	1,478	-	0	-	-
	소계	910	0	0	3,060	0
과년도수입	대 도시	96	0	0	23,401	0
	중소도시	1,021	0	0	0	0
	군 지역	1,112	-	0	-	-
	소계	402	0	0	15,601	0
보조금수입	대 도시	603,702	202,496	537,156	46,136	543,421
	중소도시	388,350	344,035	584,202	31,297	355,768
	군 지역	378,656	-	431,380	-	-
	소계	473,501	249,675	517,579	41,189	418,319
후원금수입	대 도시	37,099	1,200	0	1,255	47,794
	중소도시	44,640	16,321	5,651	0	21,915
	군 지역	32,822	-	7,680	-	-
	소계	38,416	6,240	4,444	837	30,541
차입금	대 도시	957	0	0	3,159	0
	중소도시	1,247	0	0	0	0
	군 지역	8,099	-	0	-	-
	소계	2,956	0	0	2,106	0
법인전입금	대 도시	162,955	39,370	66,034	13,515	55,562
	중소도시	30,929	103,869	0	0	52,666
	군 지역	15,264	-	1,000	-	-
	소계	80,540	60,870	22,345	9,010	5,363
이월금	대 도시	19,983	1,875	112	1,364	0
	중소도시	14,716	22,152	274	65	5,578
	군 지역	7,736	-	3,347	-	-
	소계	15,001	8,634	1,244	931	3,718
접수입	대 도시	5,410	181	0	63	6,266
	중소도시	2,933	14,625	22,906	164	924
	군 지역	4,130	-	1,313	-	-
	소계	4,261	4,996	8,073	96	2,704
총계	대 도시	830,216	245,121	603,302	90,880	653,043
	중소도시	485,453	501,002	613,033	43,765	436,850
	군 지역	448,297	-	457,377	-	-
	소계	616,004	330,415	557,904	75,175	508,914

아동양육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의 시설들은 그 수가 적고, 본 조사에 응답한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그리고 아동일시보호시설 중에는 군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시설이 없어, 지역규모별 비교가 어렵다. 또한 아동직업훈련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등에는 입소비용, 사업수입, 과년도 수입, 차입금 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대체로 보조금수입, 후원금, 법인전입금 등의 세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아동직업훈련시설의 경우, 중소도시 소재 시설의 법인전입금 평균이 103,869천원으로 대도시(39,370천원)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아동직업훈련시설과 아동보호치료시설의 경우 잡수입이 각각 14,625천원, 22,906천원 등으로 상당히 높은 규모이다.

전체적인 세입 총계를 보면, 아동직업훈련시설의 경우, 중소도시의 세입총계가 501,002천원으로 대도시(245,121천원)의 2배를 상회한다. 아동보호치료시설의 경우에는 대도시(603,302천원)와 중소도시(613,033천원)에 비해 군지역(457,377천원)의 전체 세입이 상대적으로 낮다. 마지막으로 자립지원시설과 아동일시보호시설의 경우는 대도시의 평균 세입이 중소도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1인당 평균 세입

지역규모별 거주자 1인당 평균세입은 다음의 <표 4-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도시 소재 시설의 1인당 세입이 8,550.4천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중소도시(7,264.3천원), 군지역(7,055.6천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입항목별로 보면, 대도시와 중소도시 시설에 입소비용 수입이 각각 4.9천원, 6.2천원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거주자 1인당 전체 세입 대비 비율은 상당히 미미하다. 사업수입의 경우는 대도시 0.3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소도시와 군지역은 각각 30.3천원, 31.2천원이고 1인당 전체 세입 중 비율도 각각 0.4%나 되는 등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도시의 경우, 과년도수입의 비율이 01%, 차입금 0.2%와 비교해 볼 때, 사업수입의 비중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보조금 수입의 경우, 대도시가 6,585.5천원으로 중소

도시(5,803.7천원) 및 군지역(5,956.6천원)보다 높고, 그 비율을 보면, 군지역은 84.4%로 대도시(77.0%)와 중소도시(79.9%)에 비해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후원금의 경우는 대도시(549.6천원)보다 중소도시(669.1천원)가 높고, 군지역은 511.9천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9> 시설 소재지 규모별 거주자 1인당 평균 세입 총괄

(단위: 천원, %)

항 목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전체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입소비용	4.9	0.1	6.2	0.1	0	-	4.1	0.1
사업수입	0.3	0.004	30.3	0.4	31.2	0.4	17.9	0.2
과년도수입	72.1	0.8	6.6	0.1	1.4	0.02	32.8	0.4
보조금수입	6,585.5	77.0	5,803.7	79.9	5,956.6	84.4	6,169.8	79.6
후원금수입	549.6	6.4	669.1	9.2	511.9	7.3	580.1	7.5
차입금	26.3	0.3	11.4	0.2	118.8	1.7	44.1	0.6
법인전입금	977.1	11.4	462.5	6.4	240	3.4	623.7	8.0
이월금	258.9	3.0	219	3.0	125.7	1.8	212.7	2.7
잡수입	75.7	0.9	55.6	0.8	70.2	1.0	67.6	0.9
총계	8,550.4	100.0	7,264.3	100.0	7,055.6	100.0	7,753.3	100.0
시설수	63		50		37		150	

시설유형별로 소재지 규모에 따른 1인당 평균 세입을 보면, <표 4-1-10>에서 보는 바와 같다. 먼저 아동양육시설의 경우, 세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조금 수입은 대도시가 거주자 1인당 6,825.7천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군지역(5,908.1천원), 중소도시(5,884.2천원) 등의 순이다. 반면 거주자 1인당 후원금 수입은 중소도시가 728.0천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대도시(610.3천원), 군지역(522.3천원)의 순이다. 법인전입금은 대도시가 990.0천원으로 다른 지역소재의 시설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아동양육시설의 거주자 1인당 전체 세입규모를 보면, 대도시가 8,821.8천원으로 중소도시 7,352.5천원, 군지역 7,024.7천원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4-1-10〉 아동복지시설 종류 및 시설 소재지 규모별 1인당 평균 세입
(단위: 천원)

항 목		아동 양육시설	아동직업 훈련시설	아동보호 치료시설	자립지원 시설	아동일시 보호시설
입소비용	대 도 시	0	0	0	76.4	0
	중소도시	1.3	0	0	127.5	0
	군 지 역	0	-	0	-	-
	소 계	0.4	0	0	93.5	0
사업수입	대 도 시	0.3	0	0	0	0
	중소도시	17.1	0	0	382.5	0
	군 지 역	25.8	-	226.0	-	-
	소 계	12.6	0	75.3	127.5	0
파견도수입	대 도 시	1.5	0	0	1,114.3	0
	중소도시	7.5	0	0	0	0
	군 지 역	1.4	-	0	-	-
	소 계	3.4	0	0	742.9	0
보조금수입	대 도 시	6,825.7	5,649.6	11,190.8	2,054.6	8,764.9
	중소도시	5,884.2	5,733.9	7,789.4	1,420.3	7,457.7
	군 지 역	5,908.1	-	7,703.2	-	-
	소 계	6,274.1	5,677.7	8,894.4	1,843.2	7,893.4
후원금수입	대 도 시	610.3	28.6	0	57.7	770.9
	중소도시	728.0	272.0	75.3	0	493.8
	군 지 역	522.3	-	137.1	-	-
	소 계	625.8	109.7	70.8	38.4	586.2
차입금	대 도 시	19.2	0	0	150.4	0
	중소도시	12.9	0	0	0	0
	군 지 역	122.1	-	0	-	-
	소 계	44.6	0	0	100.3	0
법인전입금	대 도 시	990.0	1,194.5	1,375.7	611.3	896.2
	중소도시	416.3	1,731.2	0	0	1,536.9
	군 지 역	246.1	-	17.9	-	-
	소 계	604.7	1,373.4	464.5	407.5	1,323.3
이월금	대 도 시	290.2	59.6	2.3	56.8	0
	중소도시	233.8	369.2	3.7	2.7	143.1
	군 지 역	127.5	-	59.8	-	-
	소 계	228.4	162.8	21.9	38.8	95.4
접수입	대 도 시	84.5	5.4	0	2.6	101.1
	중소도시	49.5	243.8	305.4	6.9	19.3
	군 지 역	71.5	-	23.4	-	-
	소 계	69.6	84.9	109.6	4.0	46.6
총 계	대 도 시	8,821.8	6,937.7	12,568.8	4,124.1	10,533.0
	중소도시	7,352.5	8,350.0	8,173.8	1,939.9	9,650.8
	군 지 역	7,024.7	-	8,167.4	-	-
	소 계	7,863.7	7,408.5	9,636.7	3,396.0	9,944.8

한편, 1인당 평균세입의 항목별 구성비를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표 4-1-11>과 같다.

<표 4-1-11> 아동복지시설 종류 및 시설 소재지 규모별 1인당 평균세입의 항목별 구성비
(단위: %)

지역	세입항목	아동양육시설	아동직업 훈련시설	아동보호 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일시 보호시설
대 도 시	입소비용	0	0	0	1.9	0
	사업수입	0	0	0	0	0
	과년도수입	0.02	0	0	27.0	0
	보조금수입	77.4	81.4	89.0	49.8	83.2
	후원금수입	6.9	0.4	0	1.4	7.3
	차입금	0.2	0	0	3.7	0
	법인전입금	11.2	17.2	11.0	14.8	8.5
	이월금	3.3	0.9	0.02	1.4	0
	잡수입	1.0	0.1	0	0.1	1.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중 소 도 시	입소비용	0.02	0	0	6.6	0
	사업수입	0.2	0	0	19.7	0
	과년도수입	0.1	0	0	0	0
	보조금수입	80.0	68.7	95.3	73.2	77.3
	후원금수입	9.9	3.3	0.9	0	5.1
	차입금	0.2	0	0	0	0
	법인전입금	5.7	20.7	0	0	15.9
	이월금	3.2	4.4	0.1	0.1	1.5
	잡수입	0.7	2.9	3.7	0.4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군 지 역	입소비용	0	-	0	-	-
	사업수입	0.4	-	2.8	-	-
	과년도수입	0.02	-	0	-	-
	보조금수입	84.1	-	94.3	-	-
	후원금수입	7.4	-	1.7	-	-
	차입금	1.7	-	0	-	-
	법인전입금	3.5	-	0.2	-	-
	이월금	1.8	-	0.7	-	-
	잡수입	1.1	-	0.3	-	-
	계	100.0	-	100.0	-	-

먼저 아동양육시설의 거주자 1인당 평균 세입 중 보조금수입의 비중은 대도시 77.4%, 중소도시 80.0%, 군지역 84.1%로 군지역으로 갈수록 보조금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후원금 수입의 비중은 중소도시 9.9%, 군지역 7.4%, 대도시 6.9%의 순으로 대도시가 후원금액은 군지역에 비해서 많지만, 1인당 평균 세입 중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다. 법인전입금의 경우, 대도시는 11.2%, 중소도시 5.7%, 군지역은 3.5%로 대도시의 법인전입금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아동직업훈련시설의 경우, 대도시와 중소도시간 거주자 1인당 세입 중 보조금 수입의 비중이 각각 81.4%, 68.7%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동보호치료시설의 경우는 대도시의 보조금 수입이 89.0%, 중소도시 95.3%로 거주자 1인당 전체 세입 중 보조금의 비중이 다른 시설에 비해 상당히 높다. 이 시설의 경우, 법인전입금에서 대도시는 11.0%로 비교적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중소도시는 법인전입금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지원시설 중 대도시 시설의 보조금 수입 비율은 49.8%로 중소도시 73.2%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른 시설유형과 비교해 볼 때, 거주자 1인당 보조금 수입의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아동일시보호시설도 대도시의 보조금 수입 비율이 83.2%로 중소도시(77.3%)에 비해 높다.

1) 시설(거주자) 규모별 세입

(1) 전체 평균 세입

본 조사에 응답한 150개 아동복지시설의 2001년 현재 거주자 수는 11,246명으로 나타났다. 이를 시설별로 보면, 전체 응답시설의 94.5%를 차지하고 있는 아동양육시설의 거주자가 10,631명으로 가장 많다. 특히 양육시설은 29명 규모의 소규모 시설로부터 1,000명을 상회하는 대규모 시설도 포함되는 등 거주자 규모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각 시설 종류별로 평균 거주자 수를 보면, 아동양육시설이 78.8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아동보호치료시설로 59.7명, 아동일시보호시설 57.0명, 아동직업훈련시설 44.0명, 자립지원시설 22.2명 등의 순이다.

<표 4-1-12> 아동복지시설 종류별 평균 거주자 수(2001년 현재)

(단위: 명, 개소)

구분		아동양육 시설	아동직업 훈련시설	아동보호 치료시설	자립지원 시설	아동일시 보호시설	전체	
거주자 수	전체	수	10,631	132	179	133	171	11,246
		비율	94.5	1.2	1.6	1.2	1.5	100.0
	최대	1,017	60	75	26	80	1,017	
	최소	29	30	48	19	29	19	
시설 수		135	3	3	6	3	150	
평균 거주자 수		78.8(71.8) ²⁾	44.0	59.7	22.2	57.0	74.9	

주: () 안의 수는 거주자 수가 1,017명으로 최대인 시설을 제외한 것임.

다음 <표 4-1-13>은 각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별로 거주자 수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이다. 규모의 구분은 전체 응답시설의 분포에 따라 3등분되는 거주자 수를 찾은 결과, 하위 1/3에 해당하는 소규모는 50인 이하, 중규모는 51~71인 이하, 상위 1/3인 대규모는 72인 이상이 된다.

<표 4-1-13> 거주자 규모별 아동복지시설 비율

(단위: %, 개소)

시설종류	소규모 (50인 이하)	중규모 (51~71인 이하)	대규모 (72인 이상)	계
아동양육시설	29.6(40)	34.1(46)	36.3(49)	100.0(135)
아동직업훈련시설	66.7(2)	33.3(1)	-	100.0(3)
보호치료시설	33.3(1)	33.3(1)	33.3(1)	100.0(3)
아동자립지원시설	100.0(6)	-	-	100.0(6)
아동일시보호시설	33.3(1)	33.3(1)	33.3(1)	100.0(3)
계	33.3(50)	32.7(49)	34.0(51)	100.0(150)

주: () 안은 시설 수임.

먼저 아동양육시설 중에는 29.6%가 소규모시설이고, 중규모시설은 34.1%, 대규모시설은 36.3%이다. 아동직업훈련시설은 모두 3개소 시설 중 2개소(66.7%)가 소규모이고, 나머지 1개소(33.3%)가 중규모시설이다. 보호치료시설과 아동일시보호시설은 각 규모별로 1개소의 시설이 분포하고 있다. 아동자립지원시설은 6개소 모두 50인 이하의 소규모 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자 규모별로 세입을 분석한 결과, 다음의 <표 3-1-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규모 시설의 세입이 944,292천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중규모(481,385천원), 소규모(321,130천원)의 순이다.

<표 4-1-14> 아동복지시설 거주자 규모별 평균 세입 총괄

(단위: 천원, %, 개소)

항 목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전체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입소비용수입	328	0.1	0	0.0	0	0.0	109	0.0
사업수입	793	0.2	312	0.1	1,939	0.2	1,025	0.2
과년도수입	1,905	0.6	0	0.0	1,031	0.1	986	0.2
보조금수입	262,949	81.9	372,848	77.5	711,950	75.4	451,510	77.1
후원금수입	23,166	7.2	47,142	9.8	36,208	3.8	35,433	6.1
차입금	1,228	0.4	4,055	0.8	2,974	0.3	2,745	0.5
전입금	19,606	6.1	32,831	6.8	171,539	18.2	75,583	12.9
이월금	7,391	2.3	20,908	4.3	13,282	1.4	13,810	2.4
잡수입	3,763	1.2	3,288	0.7	5,371	0.6	4,155	0.7
총계	321,130	100.0	481,385	100.0	944,292	100.0	585,355	100.0
시설 수	50		49		51		150	

이를 세입항목별로 보면, 소규모시설에 입소비용수입이 328천원이 있고, 사업수입은 대규모 시설이 1,939천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년도 수입은 소규모 시설이 1,905천원, 대규모 시설이 1,031천원인 반면, 중규모 시설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 수입은 시설의 규모에 비례하여 소규모 시설이

262,949천원, 중규모 시설이 372,848천원, 대규모 시설이 711,950천원이다. 후원금 수입은 소규모시설(23,166천원) 및 대규모시설(35,208천원)에 비해 중규모 시설(47,142천원)이 높게 나타났다. 전입금의 경우, 소규모 시설이 19,606천원, 중규모 시설이 32,831천원인데 비해, 대규모 시설은 171,538천원으로 대규모 시설의 전입금 규모가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소규모시설의 세입은 321,130천원, 중규모는 481,385천원, 대규모는 944,292천원이다.

다음 <표 3-1-15>는 아동복지시설 유형 및 거주자 규모별로 세입 항목을 분석한 결과이다. 시설유형별로 거주자 규모에 따른 평균세입을 보면, 아동양육시설의 경우, 입소비용은 소규모 시설(58천원)에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 사업수입은 소규모가 532천원, 중규모가 57천원, 대규모가 2,018천원으로 대규모 시설이 가장 높은 규모를 보였다. 과년도 수입은 소규모에 42천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규모 시설(1,073천원)에 비해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조금 수입은 거주자 규모에 따라 증가하여, 소규모 시설은 292,106천원, 중규모 시설은 368,494천원, 대규모시설은 720,155천원이다. 후원금 수입은 아동양육시설을 비롯하여 모든 유형의 시설에서 중규모 시설이 가장 높은 것이 특징적이다. 법인전입금은 시설마다 다른 특징을 보이는데, 아동양육시설의 경우는 대규모 시설의 법인전입금이 178,022천원으로 소규모(17,539천원)와 중규모(31,484천원)시설에 비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아동복지시설의 중 대규모 시설은 법인의 설립주체가 개인에 의한 소규모 법인인 경우보다는 종교인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종교법인들은 부족한 정부의 보조금을 법인전입금을 통해 충당하고 있다. 즉, 현재 정부의 보조금, 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가 법정기준이나 현실적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며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은 현실에서 시설의 규모가 커질수록 정부보조금이 비례하여 증가하기 때문에 소규모 시설에 비해 유리한 운영조건에 있을 것이라는 예측은 전입금 등 자기 자본을 투자하지 않으면서 일정정도 규모가 되는 시설에 대한 분석에서는 타당성이 있지만,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은 후원금이나 법인전입금 등 별도의 수입을 확보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불리한 조건(운영의 어려움)에 놓이게 된다고 볼 수 있다.

〈표 4-1-15〉 아동복지시설 종류 및 거주자 규모별 평균 세입

(단위: 천원)

항 목		아동 양육시설	아동직업 훈련시설	아동보호 치료시설	자립지원 시설	아동일시 보호시설
입소비용	소규모	58	0	0	2,345	0
	중규모	0	0	0	-	0
	대규모	0	-	0	-	0
	소계	17	0	0	2,345	0
사업수입	소규모	532	0	0	3,060	0
	중규모	57	0	12,657	-	0
	대규모	2,018	-	0	-	0
	소계	910	0	4,219	3,060	0
과년도수입	소규모	42	0	0	15,601	0
	중규모	0	0	0	-	0
	대규모	1,073	-	0	-	0
	소계	402	0	0	15,601	0
보조금수입	소규모	292,106	202,496	537,156	41,189	273,903
	중규모	368,494	344,035	431,380	-	543,421
	대규모	720,155	-	584,202	-	437,633
	소계	473,501	249,675	517,579	41,189	418,319
후원금수입	소규모	28,272	1,200	0	837	20,005
	중규모	48,656	16,321	7,680	-	47,794
	대규모	37,084	-	5,651	-	23,824
	소계	38,416	6,240	4,444	837	30,541
차입금	소규모	1,219	0	0	2,106	0
	중규모	4,319	0	0	-	0
	대규모	3,095	-	0	-	0
	소계	2,956	0	0	2,106	0
법인전입금	소규모	17,539	39,370	66,034	9,010	79,932
	중규모	31,484	103,869	1,000	-	55,562
	대규모	178,022	-	0	-	25,400
	소계	80,540	60,870	22,345	9,010	53,631
이월금	소규모	8,836	1,875	112	931	6,675
	중규모	21,718	22,152	3,347	-	0
	대규모	13,727	-	274	-	4,480
	소계	15,001	8,634	1,244	931	3,718
접수입	소규모	4,663	181	0	96	705
	중규모	3,020	14,625	1,313	-	6,266
	대규모	5,099	-	22,906	-	1,142
	소계	4,261	4,996	8,073	96	2,704
총계	소규모	353,267	245,121	603,302	75,175	381,220
	중규모	477,748	501,002	457,377	-	653,043
	대규모	960,273	-	613,033	-	492,479
	소계	616,004	330,415	557,904	75,175	508,914

<표 4-1-16>은 이러한 현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다. 즉, 100명 이하 시설의 법인전입금 평균은 25,599천원으로 총 세입의 5.7%를 차지하지만, 101명 이상 시설의 경우, 법인전입금 평균은 707,206천원이고, 이러한 금액은 총 세입의 30.0%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101인 이상 시설의 총 세입은 100인 이하 시설의 5.3배에 불과하지만, 전입금 규모는 27.6배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시설운영비의 표준화 보다 선행되어야 할 조건은 현실적이고 표준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정부지원기준이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표 4-1-16> 아동양육시설 거주자 규모에 따른 법인전입금 구성비
(단위: 천원, %)

항 목	100명 이하	101명 이상	비율
법인전입금	25,599	707,206	27.6배
총세입	445,256	2,355,702	5.3배
총세입대비 구성비	5.7	30.0	

아동양육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의 시설들의 세입 특성을 보면, 자립지원 시설의 경우, 다른 유형의 시설과는 달리 2,345천원(소규모 시설)의 입소비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업수입의 경우는 아동보호치료시설이 12,657천원으로 다른 시설에 비해 높은 규모를 보이고 있다. 과년도 수입의 경우, 자립지원시설이 15,601천원으로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다.

보조금 수입은 시설규모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아동양육시설과는 달리 아동보호치료시설은 중규모시설(431,380천원)이 가장 작고, 아동일시보호시설은 오히려 중규모 시설(543,421천원)이 가장 높은 규모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인 세입을 거주자 규모별로 보면, 아동양육시설은 소규모 시설이 353,267천원, 중규모 시설이 477,748천원, 대규모시설이 960,273천원으로 대규모 시설의 세입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다. 아동보호치료시설의 경우에는 소규모 시설(603,302천원)과 대규모시설(613,033천원)에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중규모시설이 452,377천원으로 현저하게 낮은 세입 규모를 보이고 있다.

반면, 아동일시보호시설의 경우에는 중규모 653,043천원, 대규모 492,479천원, 소규모 381,220천원의 순으로 중규모 시설의 세입이 가장 높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아동양육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의 시설에서는 세입이 거주자 규모에 비례하지 않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동양육시설을 이외의 시설의 경우, 분석에 활용된 시설 수가 적어서 사실상 거주자 규모에 따른 세입을 반영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여진다.

(2) 1인당 평균 세입

거주자 규모에 따른 세입의 변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기 위하여 시설의 거주자 규모별로 거주자 1인당 세입 규모를 산출한 결과는 <표 4-1-17>에서 볼 수 있다. 거주자 1인당 세입규모가 가장 큰 시설은 중규모 시설(8,046.2천원)이고, 다음은 소규모 시설(7,980.1천원), 대규모 시설(7,248.6천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입 항목별로 보면, 입소비용은 소규모 시설(12.4천원)에만 있고, 사업수입은 소규모 시설 25.4천원, 대규모 시설 22.4천원이다. 과년도 수입은 소규모 시설이 가장 많아 89.9천원으로 나타났다. 거주자 1인당 보조금 수입 평균은 거주자 규모가 작은 시설일수록 높아, 소규모 6,455.3천원, 중규모 6,237.8천원, 대규모 5,824.4천원의 순이다. 후원금 수입은 중규모 시설이 794.1천원, 소규모 시설이 563.0천원, 대규모 시설이 391.4천원의 순으로 중규모 시설이 가장 높다. 다음으로 시설 세입 중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법인전입금에서는 대규모 시설이 793.6천원으로 중규모(552.7천원) 및 소규모(520.0천원)에 비해 높은 규모를 보이고 있다.

거주자 규모별로 각 시설의 주요 세입 항목별 구성비를 보면, 보조금 수입은 소규모 시설(80.9%)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고, 후원금 수입은 중규모 시설(9.9%) 그리고 법인전입금 수입은 대규모 시설(10.9%)이 가장 높게 나타나, 주요 세입 항목별로 시설 규모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표 4-1-17> 시설 거주자 규모별 거주자 1인당 평균 세입 총괄
(단위: 천원, %, 개소)

항 목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전체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입소비용수입	12.4	0.2	0.0	0.0	0.0	0.0	4.1	0.1
사업수입	25.4	0.3	5.6	0.1	22.4	0.3	17.9	0.2
과년도수입	89.9	1.1	0.0	0.0	8.4	0.1	32.8	0.4
보조금수입	6,455.3	80.9	6,237.8	77.5	5,824.4	80.4	6,169.8	79.6
후원금수입	563.0	7.1	794.1	9.9	391.4	5.4	580.1	7.5
차입금	35.2	0.4	63.0	0.8	34.8	0.5	44.1	0.6
법인전입금	520.0	6.5	552.7	6.9	793.6	10.9	623.7	8.0
이월금	182.1	2.3	337.1	4.2	123.3	1.7	212.7	2.7
잡수입	96.9	1.2	55.8	0.7	50.3	0.7	67.6	0.9
총계	7,980.1	100.0	8,046.2	100.0	7,248.6	100.0	7,753.0	100.0
시설수	50		49		51		150	

시설유형별로 거주자 규모에 따른 1인당 평균 세입을 보면, <표 3-1-18>에서 보는 바와 같다. 먼저 아동양육시설의 경우, 세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조금 수입은 소규모 시설이 6,994.3천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중규모(6,161.9천원), 대규모(5,791.6천원)의 순이다. 후원금 수입은 중규모 시설이 820.2천원, 소규모 시설이 679.3천원, 대규모 시설이 399.7천원의 순으로 중규모 시설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법인전입금은 대규모 시설이 819.5천원, 중규모시설이 531.3천원, 소규모 시설이 425.9천원으로 규모에 비례하고 있다. 특기할만한 것은 아동보호치료시설 중 소규모 시설의 경우, 보조금 수입 11,190.9천원, 전체 평균 세입이 12,558.8천원으로 1인당 세입 규모가 다른 시설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규모를 보이고 있다. 아동일시보호시설의 경우도 소규모 시설의 보조금 수입이 9,444.9천원, 1인당 전체 평균 세입이 13,145.5천원으로 다른 시설에 비해 현저하게 높다.

〈표 4-1-18〉 아동복지시설 거주자 규모별 거주자 1인당 평균 세입 규모
(단위: 천원)

항 목		아동 양육시설	아동직업 훈련시설	아동보호 치료시설	자립지원 시설	아동일시 보호시설
입소비용	소규모	1.4	0	0	93.5	0
	중규모	0	0	0	-	0
	대규모	0	-	0	-	0
	소 계	0.4	0	0	93.5	0
사업수입	소규모	12.6	0	0	127.5	0
	중규모	1.1	0	226.0	-	0
	대규모	23.3	-	0	-	0
	소 계	12.6	0	75.3	127.5	0
과년도수입	소규모	0.9	0	0	742.9	0
	중규모	0	0	0	-	0
	대규모	8.7	-	0	-	0
	소 계	3.4	0	0	742.9	0
보조금수입	소규모	6,994.3	5,649.6	11,190.8	1,843.2	9,444.9
	중규모	6,161.9	5,733.9	7,703.2	-	8,764.9
	대규모	5,791.6	-	7,789.4	-	5,470.4
	소 계	6,274.1	5,677.7	8,894.4	1,843.2	7,893.4
후원금수입	소규모	679.3	28.6	0	38.4	689.8
	중규모	820.2	272.0	137.1	-	770.9
	대규모	399.7	-	75.3	-	297.8
	소 계	625.8	109.7	70.8	38.4	586.2
차입금	소규모	29.0	0	0	100.3	0
	중규모	67.1	0	0	-	0
	대규모	36.2	-	0	-	0
	소 계	44.6	0	0	100.3	0
법인전입금	소규모	425.9	1,194.5	1,375.7	407.5	2,756.3
	중규모	531.3	1,731.2	17.9	-	896.2
	대규모	819.5	-	0	-	317.5
	소 계	604.7	1,373.4	464.5	407.5	1,323.3
이월금	소규모	213.0	59.6	2.3	38.8	230.2
	중규모	349.7	369.2	59.8	-	0
	대규모	127.1	-	3.7	-	56.0
	소 계	228.4	162.8	21.9	38.8	95.4
잡수입	소규모	119.6	5.4	0	4.0	24.3
	중규모	51.4	243.8	23.4	-	101.1
	대규모	45.8	-	305.4	-	14.3
	소 계	69.6	84.9	109.6	4.0	46.6
총계	소규모	8,476.0	6,937.7	12,568.8	3,396.0	13,145.5
	중규모	7,982.8	8,350.0	8,167.4	-	10,533.0
	대규모	7,252.0	-	8,173.8	-	6,156.0
	소 계	7,863.7	7,408.5	9,636.7	3,396.0	9,944.8

한편, 거주자 1인당 평균 세입의 항목별 구성비를 거주자 규모별로 비교해보면, <표 4-1-19>와 같다.

<표 4-1-19> 아동복지시설 종류 및 거주자 규모별 1인당 평균세입의 항목별 구성비 (단위: %)

지역	세입항목	아동양육시설	아동직업 훈련시설	아동보호 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일시 보호시설
소 규모	입소비용	0.0	0.0	0.0	2.8	0.0
	사업수입	0.1	0.0	0.0	3.8	0.0
	과년도수입	0.0	0.0	0.0	21.9	0.0
	보조금수입	82.5	81.4	89.0	54.3	71.8
	후원금수입	8.0	0.4	0.0	1.1	5.2
	차입금	0.3	0.0	0.0	3.0	0.0
	법인전입금	5.0	17.2	10.9	12.0	21.0
	이월금	2.5	0.9	0.0	1.1	1.8
	잡수입	1.4	0.1	0.0	0.1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중 규모	입소비용	0.0	0.0	0.0	-	0.0
	사업수입	0.0	0.0	2.8	-	0.0
	과년도수입	0.0	0.0	0.0	-	0.0
	보조금수입	77.2	68.7	94.3	-	83.2
	후원금수입	10.3	3.3	1.7	-	7.3
	차입금	0.8	0.0	0.0	-	0.0
	법인전입금	6.7	20.7	0.2	-	8.5
	이월금	4.4	4.4	0.7	-	0.0
	잡수입	0.6	2.9	0.3	-	1.0
	계	100.0	100.0	100.0	-	100.0
대 규모	입소비용	0.0	-	0.0	-	0.0
	사업수입	0.3	-	0.0	-	0.0
	과년도수입	0.1	-	0.0	-	0.0
	보조금수입	79.9	-	95.3	-	88.9
	후원금수입	5.5	-	0.9	-	4.8
	차입금	0.5	-	0.0	-	0.0
	법인전입금	11.3	-	0.0	-	5.2
	이월금	1.8	-	0.0	-	0.9
	잡수입	0.6	-	3.7	-	0.2
	계	100.0	-	100.0	-	100.0

먼저 아동양육시설의 거주자 1인당 평균 세입 중 보조금수입의 비중은 소규모 82.5%, 대규모 79.2%, 중규모 77.2%의 순이다. 반면, 후원금 수입의 비중은 거주자 1인당 전체 세입 중 중규모 시설이 10.3%, 소규모 시설이 8.0%, 대규모 시설이 5.5%의 순이다. 법인전입금은 대규모 시설이 11.3%로 중규모(6.7%)와 소규모(5.0%) 시설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나. 세출

1) 세출총괄

(1) 전체 세출 현황

2001년말 현재 아동양육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 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등 150개 아동복지 생활시설의 세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아동복지시설 1개소당 평균 세출은 573,891천원으로 나타났다(별표 1 참조). 이러한 세출은 2001년도 시설 1개소당 세입 평균 585,356천원에 미달하는 규모이다⁸⁾.

각 세출 항목별로 보면, 인건비가 273,893천원으로 가장 많아 전체 세출 중 43.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1-20 참조). 이러한 인건비 규모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인건비 세입 233,195천원(표 4-1-5 참조)에 비해서 약 40,698천원이 많은 금액이다.

다음으로 세출이 많은 항목은 시설 거주자에 대한 직접비에 해당하는 생계비, 피복비, 의료비 등이 포함된 사업운영비이다. 2001년도의 사업운영비 세출은 모두 125,720천원이고, 이는 전체 세출의 19.9%(표 4-1-20 참조)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많은 세출은 시설비(61,930천원, 9.8%), 사무운영

8) 본 분석에 사용한 아동복지시설의 세출 조사 자료 중 세출의 세부항목별 조사에 대한 응답내용이 부실하여 본 분석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세출의 세부항목을 기재하지 않고 전체 총액만을 기재한 시설을 포함하여 분석할 경우, 평균 세출은 632,115천원으로 세입(585,356천원)에 비해 46,759천원이 많아, 세입보다 세출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비(45,293천원, 7.2%), 교육비(22,680천원, 3.6%), 사업비(13,645천원, 2.2%) 등의 순이다.

〈표 4-1-20〉 아동복지시설 평균 세출의 항목별 구성비

(단위: 천원, %)

세출항목	아동양육시설		아동직업 훈련시설		보호치료시설		아동자립 지원시설		아동일시 보호시설		전체 평균	
	세출	비율	세출	비율	세출	비율	세출	비율	세출	비율	세출	비율
인건비	286,069	42.6	153,894	49.0	234,746	51.2	41,894	70.5	349,123	70.1	273,893	43.3
판공비	2,447	0.4	1,296	0.4	1,197	0.3	204	0.3	2,603	0.5	2,312	0.4
사무운영비	47,853	7.1	37,595	12.0	27,951	6.1	6,804	11.5	32,106	6.4	45,293	7.2
시설비	67,324	10.0	6,048	1.9	30,367	6.6	3,750	6.3	23,020	4.6	61,930	9.8
사업운영비	133,327	19.9	74,829	23.8	138,336	30.2	130	0.2	72,897	14.6	125,720	19.9
교육비	25,092	3.7	2,619	0.8	2,237	0.5	0	0.0	0	0.0	22,680	3.6
사업비	14,537	2.2	19,111	6.1	2,923	0.6	2,439	4.1	1,630	0.3	13,654	2.2
기타	30,137	4.6	18,423	5.8	20,587	4.5	4,165	7.0	16,910	3.4	28,409	4.5
총계	606,786	100.0	313,815	100.0	458,344	100.0	59,386	100.0	498,289	100.0	573,892	100.0

주: 기타는 전출금, 과년도지출, 부채상환금, 반납금, 잡지출, 결연후원금, 예비비, 이월금 등을 합계한 것임.

이러한 세출 항목의 구성비를 시설 유형에 따라 보면, 아동양육시설은 인건비(42.6%)의 비중이 다른 아동복지시설에 비해 낮은 반면, 시설비(10.0%)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또한 다른 유형의 시설에는 없는 전출금, 과년도지출, 결연후원금 등의 세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직업훈련시설은 보호치료시설과 더불어 사업운영비의 비중이 각각 23.8%, 30.2%로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아동자립지원시설과 아동일시보호시설의 경우는 인건비의 비중이 각각 70.5%, 70.1%로 다른 유형의 시설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아동자립지원시설의 경우, 사무운영비(11.5%), 사업비(4.1%), 부채상환금(3.5%)이 다른 유형의 시설이 비해 높은 것을 제외하면, 다른 세출 항목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특히, 다른 시설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생계

비, 피복비, 의료비 등의 사업운영비(0.2%)의 비율이 두드러지게 적은 데 원인이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아동일시보호시설의 경우도 사업운영비(14.6%)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2) 1인당 세출 현황

아동복지시설의 세출을 거주자 1인당 세출 금액으로 환산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의 <표 4-1-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아동복지시설의 1인당 세출은 7,522천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주자 1인당 세입 7,753천원보다 약 231원 적은 금액이다.

<표 4-1-21> 아동복지시설 거주자 1인당 평균 세출의 항목별 구성비

(단위: 천원, %)

세출 항목	아동양육 시설		아동직업 훈련시설		보호치료 시설		아동자립 지원시설		아동일시 보호시설		전체	
	세출	비율	세출	비율	세출	비율	세출	비율	세출	비율	세출	비율
인건비	3,555	46.2	3,415	49.8	3,969	52.5	1,880	71.1	6,990	71.3	3,562	47.4
판공비	38	0.5	30	0.4	16	0.2	8	0.3	72	0.7	37	0.5
사무운영비	615	8.0	942	13.7	438	5.8	298	11.3	653	6.7	606	8.1
시설비	757	9.8	111	1.6	494	6.5	165	6.2	397	4.0	708	9.4
사업운영비	1,645	21.4	1,658	24.2	2,262	29.9	5	0.2	1,379	14.1	1,587	21.1
교육비	396	5.1	61	0.9	40	0.5	0	0	0	0	359	4.8
사업비	228	3.0	319	4.7	61	0.8	104	3.9	52	0.5	218	2.9
기타	467	6.1	320	4.7	282	3.7	186	7.0	267	2.7	445	5.9
총계	7,701	100.0	6,856	100.0	7,562	100.0	2,646	100.0	9,810	100.0	7,522	100.0

이를 세출항목별로 보면, 인건비는 평균 세출은 3,562천원으로 47.4%를 차지하고, 다음은 사업운영비(1,587천원, 21.1%)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 비교해 보면, 거주자 1인당 세출이 가장 높은 것은 아동일시보호시설(9,810천원), 아동양육시설(7,701천원), 보호치료시설(7,562천원), 아동직업훈련시설(6,856

천원) 등의 순이고, 아동자립지원시설은 2,646천원으로 다른 시설과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각 시설유형에 따른 세출항목을 비교해 보면, 인건비는 아동일시보호시설이 6,990천원으로 그 금액도 가장 많고, 전체 세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1.3%로 가장 높다. 반면 사업운영비는 아동양육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보호치료시설이 20%를 모두 상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일시보호시설은 14.1%로 낮고, 아동자립지원시설은 0.2%로 상당히 미미하다. 또한 자립지원시설과 일시보호시설은 교육비 세출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같은 아동복지시설이라고 할지라도 시설유형 및 특성에 따라 재원이 사용되는 출처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시설의 세부 유형에 따라 예산지원기준에 차별성을 두어야 함을 시사하는 점이라고 볼 수 있다.

2) 시설 소재지 규모별 세출

(1) 전체 평균 세출

앞의 시설 소재지를 분류 기준(표 4-1-6 참조)에 따라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등 시설 소재지 규모에 따른 평균 세출을 분석한 결과, 대도시의 총 세출이 742,434천원으로 중소도시(456,433천원), 군지역(445,643천원)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절대적인 금액으로는 대도시 지역 시설의 평균 인건비가 365,295천원으로 중소도시(223,789천원), 군지역(185,973천원)으로 월등하게 높다는 점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원인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인건비 이외에도 대도시에 소재한 시설의 사무운영비(55,812천원)와 사업운영비(168,287천원)에서도 중소도시나 군지역에 소재한 시설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각 세출항목의 구성비를 보면, 중소도시(8.5%)나 군지역(8.2%)이 여비, 공공요금, 연료비, 차량운영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무운영비의 비율이 대도시(7.5%)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군지역의 경우에는 시설비 세출의 비중이 15.4%로 대도시(10.3%)나 중소도시(8.5%)에 비해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표 4-1-22〉 아동복지시설의 소재지 규모별 평균 세출 총괄

(단위: 천원, %, 개소)

항 목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전체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인건비	365,295	49.2	223,789	49.0	185,973	41.7	273,893	47.7
판공비	3,242	0.4	1,901	0.4	1,286	0.3	2,312	0.4
사무운영비	55,812	7.5	38,607	8.5	36,418	8.2	45,293	7.9
시설비	76,287	10.3	38,729	8.5	68,840	15.4	61,930	10.8
사업운영비	168,287	22.7	91,963	20.1	98,860	22.2	125,720	21.9
교육비	27,032	3.6	21,724	4.8	16,560	3.7	22,680	4.0
사업비	15,395	2.1	12,317	2.7	12,496	2.8	13,654	2.4
기타	31,083	4.2	27,405	6.0	25,211	5.7	28,409	5.0
총계	742,434	100.0	456,433	100.0	445,643	100.0	573,892	100.0
시설 수	63		50		37		150	

이를 시설유형별 세출로 환산하여 분석하여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보호치료시설을 제외하면, 시설유형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세출 항목에서 대도시의 세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징은 아동양육시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아동양육시설의 경우 모든 세출항목에서 대도시가 가장 높은 금액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아동직업훈련시설과 보호치료시설은 대부분의 세출항목에 대해서 중소도시가 가장 높은 금액을 보이고 있으며, 아동자립지원 시설은 인건비, 판공비, 시설비, 사업운영비 등에서 대도시가 금액이 높다. 마지막으로 아동일시보호시설은 판공비와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세출항목에서 대도시의 세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설유형에 따라 지역별 세출 규모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지만, 아동양육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의 경우에는 분석에 활용된 시설수가 적어서, 시설의 개별적 특성은 반영하지만, 소재지 규모에 따른 시설의 세출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라 보는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시

설의 규모를 배제하고, 분석에 활용된 데이터가 풍부한 아동양육시설의 경우만을 볼 때, 전체적으로 대도시에 소재한 시설의 세출이 중소도시나 군지역에 소재한 시설에 비해 많다고 볼 수 있다.

〈표 4-1-23〉 아동복지시설 종류 및 시설 소재지 규모별 평균 세출

(단위: 천원)

세출항목	지역	아동양육시설	아동직업 훈련시설	보호치료시설	아동자립 지원시설	아동일시 보호시설
인건비	대 도시	398,582	114,188	185,591	49,913	477,932
	중소도시	228,758	233,305	269,645	25,856	284,718
	군 지역	184,222	-	249,001	-	-
관공비	대 도시	3,646	731	0	306	998
	중소도시	1,871	2,427	3,471	0	3,405
	군 지역	1,318	-	120	-	-
사무운영비	대 도시	61,321	33,958	11,164	6,152	39,846
	중소도시	40,117	44,870	47,636	8,110	28,237
	군 지역	36,734	-	25,052	-	-
시설비	대 도시	86,178	2,092	6,964	5,107	34,709
	중소도시	42,027	13,960	36,873	1,037	17,176
	군 지역	69,439	-	47,264	-	-
사업운영비	대 도시	187,004	63,455	91,914	176	97,382
	중소도시	95,021	97,578	198,271	38	60,655
	군 지역	98,138	-	124,823	-	-
교육비	대 도시	30,830	3,636	105	0	0
	중소도시	24,665	586	317	0	0
	군 지역	16,845	-	6,288	-	-
사업비	대 도시	17,415	0	8,769	655	693
	중소도시	12,325	57,334	0	6,006	2,098
	군 지역	12,843	-	0	-	-
기타	대 도시	35,137	2,163	112	4,938	1,481
	중소도시	27,454	50,942	56,820	2,617	24,624
	군 지역	25,777	-	4,829	-	-
총계	대 도시	820,113	220,222	304,619	67,248	653,041
	중소도시	472,238	501,002	613,033	43,662	420,913
	군 지역	445,317	-	457,377	-	-

(2) 1인당 평균 세출

소재지 규모별 세출을 거주자 1인당 단가로 환산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4-1-24>에서 보는 바와 같다. 먼저 대도시 시설의 거주자 1인당 평균 세출은 8,139천원으로 중소도시(7,138천원)와 군지역(6,990천원)보다 현저하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4-1-24> 시설 소재지 규모별 거주자 1인당 평균 세출 총괄

(단위: 천원, %, 개소)

세출 항목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전체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인건비	3,924	48.2	3,550	49.7	2,961	42.4	3,562	47.4
판공비	52	0.6	29	0.4	21	0.3	37	0.5
사무운영비	625	7.7	604	8.5	575	8.2	606	8.1
시설비	600	7.4	584	8.2	1,057	15.1	708	9.4
사업운영비	1,759	21.6	1,415	19.8	1,527	21.8	1,587	21.1
교육비	438	5.4	331	4.6	262	3.7	359	4.8
사업비	243	3.0	206	2.9	190	2.7	218	2.9
기타	498	6.1	417	5.8	397	5.7	446	5.9
총계	8,139	100.0	7,138	100.0	6,990	100.0	7,522	100.0
시설 수	63		50		37		150	

각 세출 항목별로 보면, 1인당 인건비는 대도시가 3,924천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은 중소도시(3,550천원), 군지역(2,961천원)의 순이다. 이러한 인건비의 비중은 중소도시가 49.7%로 가장 높고, 다음이 대도시(48.2%), 군지역(42.4%)의 순이다. 이는 <표 4-1-22>에서 분석한 소재지별 인건비 세출의 구성비(대도시 49.2%, 중소도시 49.0%, 군지역 41.7%)와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판공비는 대도시 52천원, 중소도시 29천원, 군지역 21천원이고, 사무운영비는 대도시 625천원, 중소도시 604천원, 군지역 575천원 등으로 모두 대도

시, 중소도시, 군지역의 순이다. 반면 시설비는 군지역이 1,057천원으로 대도시(600천원), 중소도시(584천원)의 2배에 가까운 세출 규모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1인당 사업운영비의 경우, 시설당 평균 금액에서 대도시가 현저하게 높은 금액을 보인것과 마찬가지로(표 4-1-22 참조), 거주자 1인당 금액에서도 대도시 1,759천원, 군지역 1,527천원, 중소도시 1,415천원으로 대도시가 가장 금액이 높은 뿐만 아니라, 다른 세출 항목에 비해서 지역간 차이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비나 사업비의 경우도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의 순으로 대도시의 세출이 가장 높다.

이를 시설유형별 거주자 1인당 세출로 환산하여 분석하여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보호치료시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세출 항목별로 대도시의 세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징은 아동양육시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시설비는 제외한 모든 세출 항목에서 대도시가 가장 높은 금액을 보이고 있다. 한가지 특기할 만한 것은 군지역의 경우, 시설비가 1,063천원으로 나타나, 대도시(657천원)와 중소도시(631천원)에 상당히 세출 규모가 크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아동직업훈련시설과 보호치료시설은 대부분의 세출항목에 대해서 중소도시가 가장 높은 금액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아동직업훈련시설 사업운영비의 경우, 시설당 평균 세출(표 4-1-22 참조)에서 중소도시가 가장 높은 세출을 보였지만, 거주자 1인당 평균 단가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대도시 1,674천원, 중소도시 1,626천원으로 대도시의 단가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아동자립지원시설은 인건비, 판공비, 시설비, 사업운영비 등에서 대도시의 세출이 높다. 마지막으로 아동일시보호시설은 판공비, 사무운영비,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세출항목에서 대도시의 세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설유형에 따라 소재지별 거주자 1인당 세출 규모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지만,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동양육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의 경우에는 분석에 활용된 시설수가 적어서, 시설의 개별적 특성은 반영하지만, 소재지 규모에 따른 시설의 세출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라 보는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분석에 활용된 데이터가 풍부한

아동양육시설의 경우만을 볼 때, 전체적으로 대도시에 소재한 시설이 거주자 1인을 보호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표 4-1-25〉 아동복지시설 종류 및 시설 소재지 규모별 거주자 1인당 평균 세출
(단위: 천원)

세출항목	지역	아동양육시설	아동직업 훈련시설	보호치료시설	아동자립 지원시설	아동일시 보호시설
인건비	대 도시	4,007	3,178	3,866	2,235	7,709
	중소도시	3,510	3,888	3,595	1,170	6,631
	군 지역	2,920	-	4,446	-	-
관공비	대 도시	57	24	0	12	16
	중소도시	27	40	46	0	100
	군 지역	22	-	2	-	-
사무운영비	대 도시	643	1,039	233	267	643
	중소도시	609	748	635	360	659
	군 지역	579	-	447	-	-
시설비	대 도시	657	50	145	225	560
	중소도시	631	233	492	43	316
	군 지역	1,063	-	844	-	-
사업운영비	대 도시	1,890	1,674	1,915	7	1,571
	중소도시	1,453	1,626	2,644	2	1,284
	군 지역	1,507	-	2,229	-	-
교육비	대 도시	498	87	2	0	0
	중소도시	376	10	4	0	0
	군 지역	266	-	112	-	-
사업비	대 도시	272	0	183	31	11
	중소도시	198	956	0	250	72
	군 지역	196	-	0	-	-
기타	대 도시	551	56	2	224	24
	중소도시	415	849	758	109	389
	군 지역	405	-	86	-	-
총계	대 도시	8,575	6,108	6,346	3,001	10,533
	중소도시	7,218	8,350	8,174	1,934	9,452
	군 지역	6,958	-	8,167	-	-

한편, 1인당 평균세출의 항목별 구성비를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표 4-1-26>

과 같다. 먼저 아동양육시설의 거주자 1인당 평균 세출 중 가장 비중이 큰 인건비는 대도시 46.7%, 중소도시 48.6%, 군지역 42.0%로 중소도시의 인건비 비중이 가장 크고, 군지역이 가장 작게 나타났다.

〈표 4-1-26〉 아동복지시설 종류 및 지역 규모별 1인당 평균세출의 항목별 구성비
(단위: %)

지역	세출항목	아동양육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보호치료시설	아동자립지원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대도시	인건비	46.7	52.0	60.9	74.5	73.2
	판공비	0.7	0.4	0.0	0.4	0.2
	사무운영비	7.5	17.0	3.7	8.9	6.1
	시설비	7.7	0.8	2.3	7.5	5.3
	사업운영비	22.0	27.4	30.2	0.2	14.9
	교육비	5.8	1.4	0.0	0.0	0.0
	사업비	3.2	0.0	2.9	1.0	0.1
	기타	6.4	0.9	0.0	7.5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중소도시	인건비	48.6	46.6	44.0	60.5	70.2
	판공비	0.4	0.5	0.6	0.0	1.1
	사무운영비	8.4	9.0	7.8	18.6	7.0
	시설비	8.7	2.8	6.0	2.2	3.3
	사업운영비	20.1	19.5	32.3	0.1	13.6
	교육비	5.2	0.1	0.0	0.0	0.0
	사업비	2.7	11.4	0.0	12.9	0.8
	기타	5.7	10.2	9.3	5.6	4.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군지역	인건비	42.0	-	54.4	-	-
	판공비	0.3	-	0.0	-	-
	사무운영비	8.3	-	5.5	-	-
	시설비	15.3	-	10.3	-	-
	사업운영비	21.7	-	27.3	-	-
	교육비	3.8	-	1.4	-	-
	사업비	2.8	-	0.0	-	-
	기타	5.8	-	1.1	-	-
	계	100.0	-	100.0	-	-

관공비는 대도시 0.7%, 중소도시 0.4%, 군지역 0.3%의 순으로 대도시가 가장 크다. 사무운영비의 비중은 대도시가 7.5%, 중소도시가 8.4%, 군지역이 8.3%로 대도시가 중소도시와 군지역에 비해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시설비는 대도시 7.7%, 중소도시 8.7%, 군지역 15.3%로 군지역의 시설비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사업운영비는 대도시 22.0%, 중소도시 20.1%, 군지역 21.7%로 지역간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육비 비율은 군지역이 3.8%로 대도시 5.8%, 중소도시 5.2%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사업비는 대도시 3.2%, 중소도시 2.7%, 군지역 2.8%로 대도시가 가장 높다.

아동직업훈련시설의 경우는 대도시의 사무운영비(17.0%)와 사업운영비(27.4%)가 중소도시(각각 9.0%, 19.5%)에 비해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대도시에는 사업비가 전혀 없지만, 중소도시에는 11.4%나 되고 있다. 보호치료시설은 대도시의 인건비 비중이 60.9%, 중소도시가 44.4%, 군지역 54.5%로 지역간에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아동자립지원시설은 보호치료시설과 마찬가지로 인건비에서 대도시(74.5%)와 중소도시(60.5%)간에 많은 차이를 보였다. 특히 사무운영비와 사업비에서는 중소도시(18.6%, 12.9%)가 대도시(각각 8.9%, 1.0%)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비율을 보였다. 아동일시보호시설의 경우는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큰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양육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의 경우, 대도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 인건비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3) 거주자 규모별 세출

(1) 전체 평균 세출

거주자 수에 따라 시설을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로 3등분하여 시설 규모에 따른 평균 세출을 분석한 결과, 대규모 시설의 세출이 936,322천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의 지출은 거주자 수에 대체로 비례하여 증가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금액으로 시설의 규모에 따른 세출을 비교하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각 세출항목별 구성비를 통해 시설 규모별 세출을 비교해 보면, 인건비의 경우, 소규모 시설이 49.5%로 가장 많은 비중을 보였다. 판공비와 사무비 비율은 시설규모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비교적 유사한 수준이다. 시설비의 경우는 대규모 시설이 12.9%로 중규모(8.3%), 소규모(8.1%)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였다. 사업운영비의 경우도 대규모 시설이 22.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다른 규모 시설과 유사한 수준이다. 교육비는 중규모 시설이 4.6%로 가장 높고, 대규모 시설은 2.9%로 상대적으로 비율이 작다. 사업비의 경우는 오히려 소규모 시설의 비율이 3.6%로 중규모(2.5%)나 대규모(1.9%) 시설에 비해 비율이 높다.

〈표 4-1-27〉 아동복지시설의 규모별 평균 세출 총괄

(단위: 천원, %, 개소)

세출항목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전체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인건비	149,520	49.5	211,214	44.6	456,049	48.7	273,893	47.7
판공비	1,218	0.4	2,757	0.6	2,957	0.3	2,312	0.4
사무운영비	25,771	8.5	36,545	7.7	72,839	7.8	45,293	7.9
시설비	24,482	8.1	39,329	8.3	120,360	12.9	61,930	10.8
사업운영비	62,736	20.8	101,458	21.4	210,780	22.5	125,720	21.9
교육비	14,387	4.8	26,734	5.6	26,914	2.9	22,680	4.0
사업비	10,878	3.6	12,073	2.5	17,894	1.9	13,654	2.4
기타	13,072	4.3	43,934	9.3	28,528	3.0	28,408	5.0
총계	302,064	100.0	474,043	100.0	936,322	100.0	573,892	100.0
시설 수	63		50		37		150	

이를 시설유형별 분석하여 보면, 시설유형에 관계없이 대체로 대규모 시설이 높은 세출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출은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대체로 거주자 규모에 비례하여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시설

규모별 보다 합리적인 세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거주자 1인당 세출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4-1-28〉 아동복지시설 종류 및 시설 규모별 평균 세출

(단위: 천원)

세출항목	규모	아동양육시설	아동직업 훈련시설	보호치료시설	아동자립 지원시설	아동일시 보호시설
인건비	소규모	163,280	114,188	185,591	41,894	279,503
	중규모	204,114	233,305	249,001	-	477,932
	대규모	463,244	-	269,645	-	289,933
관공비	소규모	1,325	731	0	204	5,240
	중규모	2,860	2,427	120	-	998
	대규모	2,975	-	3,471	-	1,570
사무운영비	소규모	28,520	33,958	11,164	6,804	27,814
	중규모	36,542	44,870	25,052	-	39,846
	대규모	74,255	-	47,636	-	28,659
시설비	소규모	29,530	2,092	6,964	3,750	9,227
	중규모	39,808	13,960	47,264	-	34,709
	대규모	124,007	-	36,873	-	25,125
사업운영비	소규모	71,734	63,455	91,914	130	47,818
	중규모	101,123	97,578	124,823	-	97,382
	대규모	213,838	-	198,271	-	73,492
교육비	소규모	17,799	3,636	105	0	0
	중규모	28,328	586	6,288	-	0
	대규모	28,006	-	317	-	0
사업비	소규모	12,907	0	8,769	2,439	4,196
	중규모	11,599	57,334	0	-	693
	대규모	18,625	-	0	-	0
기타	소규모	15,419	2,163	112	4,164	7,423
	중규모	45,554	50,942	4,829	-	1,481
	대규모	27,679	-	56,820	-	41,825
총계	소규모	340,515	220,222	304,619	59,386	381,221
	중규모	469,928	501,002	457,377	-	653,041
	대규모	952,628	-	613,033	-	460,604

(2) 1인당 평균 세출

시설 규모별 세출을 거주자 1인당 단가로 환산한 결과는 다음의 <표 4-1-29>에서 보는 바와 같다. 먼저 소규모 시설의 거주자 1인당 평균 세출은 7,482천원, 중규모 7,927천원, 대규모 7,172천원으로 중규모 시설의 1인당 세출이 가장 높고, 대규모 시설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

이를 세출항목별로 보면, 인건비는 소규모 시설이 3,768천원(50.4%)으로 가장 높고, 다음은 중규모(3,538천원), 대규모(3,383천원)의 순으로 인건비는 시설의 규모가 커질수록 그 단가가 감소함을 볼 수 있다. 사무운영비의 경우도 소규모 시설이 653천원(8.7%)으로 가장 높고, 중규모 606천원, 대규모 559천원 등의 순으로 시설 규모가 작을수록 세출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사업비에서도 소규모 251천원(3.4%), 중규모 207천원, 대규모 196천원으로 작은 규모 시설에서 세출이 크다. 반면 1인당 시설비는 소규모 590천원, 중규모 665천원, 대규모 864천원으로 시설이 클수록 세출이 증가함을 볼 수 있다.

<표 4-1-29> 아동복지시설의 규모별 거주자 1인당 평균 세출 총괄
(단위: 천원, %, 개소)

세출항목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전체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인건비	3,768	50.4	3,538	44.6	3,383	47.2	3,562	47.4
판공비	31	0.4	47	0.6	32	0.5	37	0.5
사무운영비	653	8.7	606	7.6	559	7.8	606	8.1
시설비	590	7.9	665	8.4	864	12.0	708	9.4
사업운영비	1,515	20.2	1,685	21.3	1,564	21.8	1,587	21.1
교육비	343	4.6	445	5.6	291	4.1	359	4.8
사업비	251	3.4	207	2.6	196	2.7	218	2.9
기타	330	4.4	734	9.3	283	3.9	446	5.9
총계	7,482	100.0	7,927	100.0	7,172	100.0	7,522	100.0
시설 수	63		50		37		150	

이를 시설유형별로 보면, 1인당 세출 총계의 경우, 아동양육시설은 소규모 시설이 8,163천원, 중규모 7,856천원, 대규모 7,180천원으로 작은 규모 시설이 크게 나타났다.

〈표 4-1-30〉 아동복지시설 종류 및 시설 규모별 거주자 1인당 평균 세출
(단위: 천원)

세출항목	규모	아동양육 시설	아동직업 훈련시설	보호치료 시설	아동자립 지원시설	아동일시 보호시설
인건비	소규모	3,932	3,178	3,866	1,880	9,638
	중규모	3,420	3,888	4,446	-	7,709
	대규모	3,374	-	3,595	-	3,624
관공비	소규모	32	24	0	8	181
	중규모	49	40	2	-	16
	대규모	32	-	46	-	20
사무운영비	소규모	690	1,039	233	298	959
	중규모	606	748	447	-	643
	대규모	562	-	635	-	358
시설비	소규모	699	50	145	165	318
	중규모	673	233	844	-	560
	대규모	883	-	492	-	314
사업운영비	소규모	1,720	1,674	1,915	5	1,649
	중규모	1,677	1,626	2,229	-	1,571
	대규모	1,555	-	2,644	-	919
교육비	소규모	424	87	2	0	0
	중규모	472	10	112	-	0
	대규모	303	-	4	-	0
사업비	소규모	290	0	183	104	145
	중규모	199	956	0	-	11
	대규모	204	-	0	-	0
기타	소규모	375	56	2	186	256
	중규모	761	849	86	-	24
	대규모	268	-	758	-	523
총계	소규모	8,163	6,108	6,346	2,645	13,146
	중규모	7,856	8,350	8,167	-	10,533
	대규모	7,180	-	8,174	-	5,758

그러나 아동직업훈련시설과, 보호치료시설의 경우에는 오히려 규모가 큰 시설의 세출 단가가 크다. 아동일시보호시설의 경우는 소규모 시설의 경우 13,146천원, 중규모 10,533천원, 대규모 5,758천원 등의 순으로 시설규모간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세출항목별로 보면, 인건비의 경우, 전체적으로 3,000천원대의 세출단가를 보이고 있으나, 아동자립지원시설은 소규모 시설에서 1,880천원으로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고, 반면 아동일시보호시설의 경우는 소규모 시설이 9,638천원, 중규모시설이 7,709천원 등으로 현저하게 높은 금액이 산출되었다. 판공비의 경우도 아동일시보호시설 중 소규모 시설의 거주자 1인당 세출 단가가 181천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시설들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밖에 사무운영비 등 나머지 항목에서는 모든 시설이 비교가능한 소규모 시설에서 시설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한편, 1인당 평균세출의 항목별 구성비를 시설규모별로 비교해 보면, <표 4-1-31>과 같다. 먼저 아동양육시설의 거주자 1인당 평균 세출 중 가장 비중이 큰 인건비는 소규모 시설이 48.2%, 중규모 시설이 43.5%, 대규모 시설이 47.0%로 소규모 시설이 세출 중 인건비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항목에서는 시설규모간 약간의 편차를 보이지만, 큰 차이는 아니고, 다만, 시설비에서 소규모 시설과 중규모 시설이 각각 8.6%이고, 대규모 시설이 12.3%로 차이가 제법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간 세출항목별 차이를 비교해 보면, 모든 시설이 비교가능한 소규모 시설 중 인건비는 아동양육시설 48.2%로부터 아동일시보호시설 73.3%에 이르기까지 시설간 다양한 편차를 보였다. 사무운영비의 비중에서는 보호치료시설 3.7%부터 아동직업훈련시설 17.0%까지 그 차이가 크다. 특히 사업운영비의 경우에는 보호치료시설이 30.2%로 상당히 높은 비중을 보인 반면, 자립지원시설은 0.2%로 사업운영비의 비중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동양육시설과 아동직업훈련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에서는 교육비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31〉 아동복지시설 종류 및 거주자 규모별 1인당 평균세출의 항목별 구성비
(단위: %)

시설 규모	세출항목	아동양육 시설	아동직업 훈련시설	보호치료 시설	아동자립 지원시설	아동일시 보호시설
소 규 모	인건비	48.2	52.0	60.9	71.1	73.3
	관공비	0.4	0.4	0.0	0.3	1.4
	사무운영비	8.5	17.0	3.7	11.3	7.3
	시설비	8.6	0.8	2.3	6.2	2.4
	사업운영비	21.1	27.4	30.2	0.2	12.5
	교육비	5.2	1.4	0.0	0.0	0.0
	사업비	3.6	0.0	2.9	3.9	1.1
	기타	4.6	0.9	0.0	7.0	1.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중 규 모	인건비	43.5	46.6	54.4	-	73.2
	관공비	0.6	0.5	0.0	-	0.2
	사무운영비	7.7	9.0	5.5	-	6.1
	시설비	8.6	2.8	10.3	-	5.3
	사업운영비	21.3	19.5	27.3	-	14.9
	교육비	6.0	0.1	1.4	-	0.0
	사업비	2.5	11.4	0.0	-	0.1
	기타	9.7	10.2	1.1	-	0.2
계	100.0	100.0	100.0	-	100.0	
대 규 모	인건비	47.0	-	44.0	-	62.9
	관공비	0.4	-	0.6	-	0.3
	사무운영비	7.8	-	7.8	-	6.2
	시설비	12.3	-	6.0	-	5.5
	사업운영비	21.7	-	32.3	-	16.0
	교육비	4.2	-	0.0	-	0.0
	사업비	2.8	-	0.0	-	0.0
	기타	3.7	-	9.3	-	9.1
계	100.0	-	100.0	-	100.0	

제 2 절 노인복지시설

가. 세입

1) 세입 총괄

노인시설 분석에 포함된 총 159개 시설(무료양로시설 61개소, 무료요양시설 60개소, 전문요양시설 26개소, 실비양로시설 3개소, 실비요양시설 9개소)의 총 수입 규모는 2001년 기준 492,552천원으로 나타났다(표 4-2-1). 2001년간 총 수입금액을 시설종류별로 살펴보면, 무료양로시설(61개소) 320,101천원, 무료요양시설(60개소) 537,082천원, 전문요양시설(26개소) 881,455천원, 실비양로시설(3개소) 210,910천원, 실비요양시설(9개소) 334,899천원으로 각 시설종별로 평균 세입규모에 있어 큰 차이를 보였다. 전문요양시설의 세입규모가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는 무료요양시설, 실비요양시설, 무료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의 순서로 나타났다.

다음은 세입내역을 항목별로 살펴보았다. 먼저 입소비용수입을 살펴보면, 전체시설평균은 24,761천원이고, 무료양로시설 1,868천원, 무료요양시설 5,445천원, 전문요양시설 38,851천원, 실비양로시설 111,333천원, 실비요양시설 239,132천원으로서, 실비시설은 거주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세입의 절반 이상(실비양로시설 52.8% 실비요양시설 71.4%)을 충당하고 있었다.

사업수입의 경우 전체 수입액 중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본 결과, 전체 시설 평균 0.3%에 불과했고(1,382천원), 시설종별로 그 비중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절대액수는 사업수입이 전무한 실비양로시설과 무료양로시설(647천원), 실비요양시설(519천원), 무료요양시설(1,948천원), 전문요양시설(2,257천원)이 다소 차이를 보였다.

세입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보조금 수입이다. 이 중에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고지원(경상보조금 수입)은 전체 시설 평균 77.5%로 나타나고 있다. 시설종별로는 무료양로시설 78.4%(251,037천원), 무료요양시설

82.8%(444,583천원), 전문요양시설 79.6%(701,989천원), 실비양로시설 11.7%(24,673천원), 실비요양시설 12.0%(40,227천원)로, 무료요양시설의 국고보조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4-2-1〉 노인시설 종류별 평균 세입 규모

(단위: 천원)

항 목	무료 양로시설	무료 요양시설	전문 요양시설	실비 양로시설	실비 요양시설	전체	
입소비용수입	1,868 (0.6)	5,445 (1.0)	38,851 (4.4)	111,333 (52.8)	239,132 (71.4)	24,761 (5.0)	
사업수입	647 (0.2)	1,948 (0.4)	2,257 (0.3)	0 (0.0)	519 (0.2)	1,382 (0.3)	
과년도수입	84 (0.03)	3,346 (0.6)	580 (0.1)	0 (0.0)	1,139 (0.3)	1,454 (0.3)	
보조금수입	251,037 (78.4)	444,583 (82.8)	701,989 (79.6)	24,673 (11.7)	40,227 (12.0)	381,610 (77.5)	
후원금수입	26,167 (8.2)	26,593 (5.0)	25,303 (2.9)	7,845 (3.7)	11,823 (3.5)	25,029 (5.1)	
기타	차입금	939 (0.3)	3,167 (0.6)	10,756 (1.2)	898 (0.4)	833 (0.2)	3,378 (0.7)
	전입금	23,614 (7.4)	34,412 (6.4)	19,870 (2.3)	52,000 (24.6)	14,333 (4.3)	27,087 (5.5)
	이월금	13,199 (4.1)	11,994 (2.2)	68,367 (7.8)	10,389 (4.9)	16,084 (4.8)	21,876 (4.4)
	잡수입	2,548 (0.8)	5,593 (1.0)	13,484 (1.5)	3,771 (1.8)	10,807 (3.2)	5,976 (1.2)
총계	320,101 (100.0)	537,082 (100.0)	881,455 (100.0)	210,910 (100.0)	334,899 (100.0)	492,552 (100.0)	

주: 1) 분석에 포함된 시설은 무료양로시설 61개소, 무료요양시설 60개소, 전문요양시설 26개소, 실비양로시설 3개소, 실비요양시설 9개소임.

후원금 및 결연후원금 수입의 비율은 시설전체 평균 5.1%(25,029천원)으로서, 무료양로시설 8.2%(26,167천원), 무료요양시설 5.0%(26,593천원), 전문요양시설 2.9%(25,303천원), 실비양로시설 3.7%(7,845천원), 실비요양시설 5.1%(11,823천원) 등 시설종별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무료양로시설과 무료요양시설, 전문요양

시설간에 시설평균 후원금의 절대규모는 그다지 차이를 보이지 않아 거주자 수 즉, 시설 규모나 시설 특성이 후원금 수입 규모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법인전입금의 규모를 살펴보면, 무료양로시설은 7.4%(23,614천원), 무료요양시설은 6.4%(34,412천원), 전문요양시설은 2.3%(19,870천원), 실비양로시설은 24.6%(52,000천원), 실비요양시설은 4.3%(14,333천원)로서 실비양로시설을 제외하고는 10% 미만의 매우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는 앞서 분석한 시설종류별 세입액을 거주자 1인 기준으로 비교해보았다. 이는 다음 <표 4-2-2>와 같다. 시설 거주자 1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세입 총액 즉, 1인당 평균 세입총액은 무료양로시설 6,453천원, 무료요양시설 8,635천원, 전문요양시설 11,033천원, 실비양로시설 5,433천원, 실비요양시설 6,409천원으로서, 앞서 살펴 본 시설종류별 평균 세입액 규모와 유사한 순서를 보이고 있다. 전문요양시설의 경우 시설 평균 총세입 규모와 거주자 1인당 세입규모가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는 무료요양시설, 무료양로시설, 실비요양시설, 실비양로시설의 순서로서, 총세입 규모에서는 실비요양시설이 무료양로시설보다 다소 많았으나 1인당 세입액은 반대의 순서로 나타났다.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입소비용수입은 시설간 큰 차이를 보였는데, 2001년 한 해동안 무료시설은 양로 34천원, 요양 87천원에 불과했으나, 전문요양시설은 410천원, 실비양로시설은 3,089천원, 실비요양시설은 4,557천원의 입소비용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비시설의 경우 거주자 1인의 연간입소비용이 양로시설 3,240천원, 요양시설 3,888천원정도로 정해져 있으므로⁹⁾, 조사결과를 통해 보면, 지침으로 제시된 비용에 비하여 양로시설은 다소 적게, 요양시설은 다소 높게 수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 수입은 거주자 1인 평균 무료양로시설 5,012천원, 무료요양시설 7,167

9) 노인시설의 월별비용수납 한도액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 시설 입소자 1인에 대해 지원 하는 시설운영비에 생계비를 한산한 금액으로 하되, 월을 기준으로 양로시설(무료 270천원, 실비 270천원) 요양시설(무료 324천원, 실비 324천원), 전문요양시설 619천원으로 하고 있음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사업지침, 2002)

천원, 전문요양시설 8,626천원, 실비양로시설 666천원, 실비요양시설 834천원이었다. 무료시설인 양로시설과 요양시설간 보조금 수입규모의 차이가 200여만원, 전문요양시설과의 차이가 36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원금 수입은 무료양로시설 580천원, 무료요양시설 447천원, 전문요양시설 309천원, 실비양로시설 185천원, 실비요양시설 279천원으로서, 앞서 살펴본 시설간 비교에서는 평균 금액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1인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는 실비 시설에 비해 무료시설의 규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표 4-2-2> 노인시설 종류별 거주자 1인 기준 세입 규모

(단위: 천원)

항 목	무료 양로시설	무료 요양시설	전문 요양시설	실비 양로시설	실비 요양시설	전체	
입소비용수입	34	87	410	3,089	4,557	429	
사업수입	10	24	12	0	8	15	
과년도수입	2	109	7	0	47	46	
보조금수입	5,012	7,167	8,626	666	834	6,105	
후원금수입	580	447	309	185	279	460	
기타	차입금	13	43	115	27	17	42
	전입금	491	480	364	1,130	210	462
	이월금	257	190	1,036	230	258	359
	잡수입	53	88	155	106	201	92
총계	6,453	8,635	11,033	5,433	6,409	8,013	

주: 1) 분석에 포함된 시설은 무료양로시설 61개소, 무료요양시설 60개소, 전문요양시설 26개소, 실비양로시설 3개소, 실비요양시설 9개소임.

이 중 국고보조, 지방비 보조, 순수지방비 보조로 구성되는 보조금 수입내역을 분석해 보면, 다음 <표 4-2-3>과 같다.

전체 시설 평균 세입액 중 보조금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77.5%였다. 이를 구분하면 경상보조금수입이 69%, 자본보조금수입은 5.3%, 기타보조금수입은 2.0%였다. 시설종별 경상보조금 수입 비율은 무료양로시설 70.2%, 무료요양시

설 76.5%, 전문요양시설 54.8%, 실비양로시설 7.6%, 실비요양시설 10.0%로서, 무료요양시설의 경우 가장 의존도가 높았다.

<표 4-2-3> 노인시설종류별 평균 보조금 수입 규모

(단위: 천원, %)

목		무료 양로시설	무료 요양시설	전문 요양시설	실비 양로시설	실비 요양시설	전체
경상 보조금 수입	국고	144,230	276,356	409,076	11,200	20,010	227,855
	지방비	59,610	105,671	39,962	4,800	5,149	86,510
	순수지방비보조	21,103	28,579	33,942	0	8,358	24,905
	소계	224,943 (70.2)	410,606 (76.5)	482,980 (54.8)	16,000 (7.6)	33,517 (10.0)	339,270 (69.0)
자본 보조금 수입	국고	6,499	9,145	60,953	0	6,137	16,259
	지방비	6,480	5,494	27,865	0	0	9,116
	순수지방비보조	485	1,430	1,508	0	0	972
	소계	13,464 (4.2)	16,069 (3.0)	90,326 (10.2)	0 (0.0)	6,137 (1.8)	26,347 (5.3)
기타 보조금 수입	국고	3,356	8,105	4,402	8,000	0	5,217
	지방비	2,586	2,133	2,984	673	0	2,298
	순수지방비보조	1,971	2,799	4,148	0	573	2,523
	소계	7,913 (2.5)	13,037 (2.4)	11,534 (1.3)	8,673 (4.1)	573 (0.2)	10,038 (2.0)

주: 1) 괄호안의 수치는 각 시설종별 총세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2) 분석에 포함된 시설은 무료양로시설 61개소, 무료요양시설 60개소, 전문요양시설 26개소, 실비양로시설 3개소, 실비요양시설 9개소임.

다음 <표 4-2-4>는 국고와 지방비보조로 이루어지는 인건비, 생계비, 관리운영비 내역을 분석하였다. 인건비의 경우 전체 시설평균 231,158천원 중 국고보조가 66.6%, 지방비보조가 26.0%, 순수지방비 보조가 7.4%를, 생계비의 경우는 전체시설 평균 65,213천원 중 국고보조 71.1%, 지방비보조 22.1%, 순수지방비보조가 6.9%를 차지하였으며, 관리비의 전체시설 평균 보조금액 65,213천원 중 국고보조 64.4%, 지방비보조 28.0%, 순수지방비보조가 7.6%로 나타났다.

〈표 4-2-4〉 노인시설종류별 평균 인건비·생계비·관리운영비 규모

(단위: 천원)

항 목		무료 양로시설	무료 요양시설	전문 요양시설	실비 양로시설	실비 요양시설	합계
인건비	정부보조 국고	81,149 (63.2)	187,824 (66.5)	311,976 (89.3)	10,533 (70.0)	12,131 (65.9)	153,910 (66.6)
	정부보조지방비	34,050 (26.5)	74,182 (26.3)	11,448 (3.3)	4,515 (30.0)	4,053 (22.0)	60,091 (26.0)
	순수 지방비	13,266 (10.3)	20,404 (7.2)	25,937 (7.4)	0 (0.0)	2,225 (12.1)	17,157 (7.4)
	소계	128,465 (100.0)	282,410 (100.0)	349,361 (100.0)	15,048 (100.0)	18,409 (100.0)	231,158 (100.0)
생계비	정부보조 국고	42,650 (69.4)	55,697 (70.4)	53,977 (76.5)	0 (0.0)	2,290 (54.6)	46,336 (71.1)
	정부보조지방비	14,560 (23.7)	17,918 (22.7)	12,249 (17.4)	0 (0.0)	660 (15.7)	14,388 (22.1)
	순수 지방비	4,267 (6.9)	5,489 (6.9)	4,342 (6.2)	0 (0.0)	1,247 (29.7)	4,489 (6.9)
	소계	61,477 (100.0)	79,104 (100.0)	70,568 (100.0)	0 (0.0)	4,197 (100.0)	65,213 (100.0)
관리 운영비	정부보조 국고	20,431 (58.4)	332,835 (95.3)	43,123 (68.4)	667 (70.0)	5,589 (51.2)	27,609 (64.4)
	정부보조지방비	11,000 (31.4)	13,571 (3.9)	16,265 (25.8)	285 (30.0)	436 (4.0)	12,031 (28.0)
	순수 지방비	3,570 (10.2)	2,686 (0.8)	3,663 (5.8)	0 (0.0)	4,886 (44.8)	3,259 (7.6)
	소계	35,001 (100.0)	349,092 (100.0)	63,051 (100.0)	952 (100.0)	10,911 (100.0)	42,899 (100.0)

주: 분석에 포함된 시설은 무료양로시설 61개소, 무료요양시설 60개소, 전문요양시설 26개소, 실비양로시설 3개소, 실비요양시설 9개소임.

생계비와 인건비, 관리비 항목별로 전체 정부보조 수입 중에 국고보조가 차지하는 비중을 파악해보았다. 인건비의 경우 무료양로시설 63.2%(81,149천원), 무료요양시설 66.5%(187,824천원), 전문요양시설 89.3%(311,976천원), 실비양로시설 70.0%(10,533천원), 실비요양시설 65.9%(12,131천원)로서, 인건비 수입에 있어서 전문요양시설의 국고보조 의존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순수 지방비를 통

한 인건비 수입은 실비요양시설이 12.1%, 무료양로시설이 10.3%, 무료요양시설이 7.2%, 전문요양시설이 7.4%로 나타났다.

생계비의 경우 정부보조금 중 국고보조의 비중은 무료양로시설 69.4%(42,650천원), 무료요양시설 70.4%(55,697천원), 전문요양시설 76.5%(53,997천원), 실비양로시설 0%, 실비요양시설 54.6%(2,290천원)로 인건비와 마찬가지로 전문요양시설의 의존도가 가장 높고, 관리비의 경우는 무료양로시설 58.4%(20,431천원), 무료요양시설 95.3%(332,835천원), 전문요양시설 68.4%(43,123천원), 실비양로시설 70.0%(667천원), 실비요양시설 51.2%(5,589천원)로 무료요양시설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 지역별 분석

다음으로는 대표적인 노인거주시설로서 무료양로시설과 무료요양시설을 사례로 지역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지역은 대도시(특별·광역시의 시·구), 중소도시(9개 도의 시·구), 군지역(16개 시·도의 군)으로 구분하였는데, 각각 42개소, 64개소, 41개소가 이에 해당되었다. 지역별로 시설의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 <표 4-2-5>와 같다.

<표 4-2-5> 지역별 노인시설 분포 및 평균 거주자 수

(단위: 개소, 명)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전체	
	시설수	거주자	시설수	거주자	시설수	거주자	시설수	거주자
양로시설	16	79	27	41	18	45	61	52
요양시설	21	72	22	56	17	70	60	66
전문시설	5	117	15	80	6	68	26	84

본 분석에 포함된 시설은 각 시설종별로 중소도시 지역에 소재한 시설이 가장 많았다. 평균 거주자 수는 세 가지 시설종별로 모두 대도시 지역의 거주자

수가 타 지역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양로시설의 경우는 대도시 거주자(79명)수가 중소도시(41명), 군지역(45명)에 비해 2배에 이르렀고, 요양시설의 경우는 대도시 72명, 군지역 70명, 중소도시 56명으로서, 대도시와 군소재지역 시설이 비슷한 규모를 나타내었다. 전문요양시설의 경우는 양로시설과 마찬가지로 대도시(117명), 중소도시(80명), 군지역(68명)의 순이었다.

무료양로시설의 세입규모를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대도시 409,473천원, 중소도시 301,707천원, 군지역 268,251천원으로 차이를 보였다.

〈표 4-2-6〉 지역별 노인무료양로시설 평균 세입 규모

(단위: 천원, %)

항 목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시설평균	1인기준	시설평균	1인기준	시설평균	1인기준	
입소비용수입	1,689(0.4)	23	605(0.2)	20	3,921(1.5)	63	
사업수입	2,164(0.5)	31	0(0.0)	0	268(0.1)	7	
과년도수입	259(0.1)	6	0(0.0)	0	56(0.02)	1	
보조금수입	336,067(82.1)	4,379	227,003(75.2)	5,489	211,503(78.8)	4,887	
후원금수입	27,767(6.8)	383	28,878(9.6)	743	20,679(7.7)	518	
기타	차입금	3,547(0.9)	50	0(0.0)	0	28(0.01)	2
	전입금	20,842(5.1)	318	28,625(9.5)	630	18,559(6.9)	443
	이월금	15,293(3.7)	210	14,592(4.8)	340	9,248(3.4)	178
	잡수입	1,845(0.5)	22	2,004(0.7)	50	3,988(1.5)	84
총계	409,473(100.0)	5,423	301,707 (100.0)	7,274	268,251(100.0)	6,182	

주: 분석에 포함된 시설 수는 대도시 16개소, 중소도시 27개소, 군지역 18개소임.

이는 소재지역별 평균 거주자수가 대도시시설 79명, 중소도시시설 41명, 군지역시설 45명, 근무직원 현원이 대도시 시설 10명, 중소도시시설 7.6명, 군지역시설 7.9명으로서, 대도시소재 시설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중소도시와 군지역을 비교하면, 군지역 시설규모가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나지만 중소도시의 세입이 보다 큰 규모를 보이고 있었다. 세입내역

으로 보면 군지역보다 중소도시 지역의 보조금 수입, 후원금 수입, 전입금 액수가 많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도시 시설은 보조금 수입이 상대적으로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사업수입도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거주자 1인 기준으로 보면, 중소도시지역에 소재한 양로시설의 1인당 세입액이 가장 크고(7,274천원), 다음으로는 군지역(6,182천원), 대도시지역(5,423천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그 구성항목을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조금수입에서 중소도시-군지역-대도시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후원금 수입, 전입금 등에서 모두 이와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사업수입은 대도시에서, 입소비용수입은 군지역이 각각 타 지역에 비해서 큰 규모를 보였다.

무료요양시설의 세입규모의 지역별 분석 결과는 다음 <표 4-2-6>과 같다. 총 세입액은 대도시지역 시설 618,519천원, 중소도시지역 시설 515,668천원, 군지역 시설 464,195천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구분한 평균 거주자 규모는 대도시 72명, 중소도시 56명, 군지역 70명, 실제 근무직원 수가 24명, 20명, 19명으로서, 군지역의 경우 시설당 평균 거주자 수는 중소도시 지역보다 많으나, 근무직원 수가 적고 세출예산 규모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입내역을 살펴볼 때, 군지역보다 중소도시 지역의 보조금 수입, 후원금 수입, 전입금 액수가 많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도시의 경우 사업수입이 기타지역에 비해 매우 크게 나타났으며(대도시 4,676천원, 중소도시 764천원, 군지역 112천원), 군지역의 경우는 타 지역에 비해 잠수입(대도시 7,788천원, 중소도시 7,221천원, 군지역 775천원), 법인전입금(대도시 43,090천원, 중소도시 38,887천원, 군지역 17,901천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였다.

무료양로시설의 경우에서와 같이 거주자 1인을 기준으로 분석한 세입규모에서는 중소도시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9,300천원), 양로시설과는 달리 대도시(9,001천원)지역이 군지역(7,322천원)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는 세부내역인 보조금, 후원금, 사업수입, 전입금 등에서 모두 유사한 경향을 보이므로, 이들 항목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2-7〉 지역별 노인무료요양시설 평균 세입 규모

(단위: 천원, %)

항 목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시설평균	1인기준	시설평균	1인기준	시설평균	1인기준	
입소비용수입	10,357(1.7)	138	0(0.0)	0	6,425(1.4)	136	
사업수입	4,676(0.8)	29	764(0.1)	36	112(0.02)	2	
과년도수입	79(0.01)	2	914(0.2)	16	10,528(2.3)	363	
보조금수입	507,557(82.1)	7,486	422,452(81.9)	7,632	395,433(85.2)	6,170	
후원금수입	30,291(4.9)	475	28,294(5.5)	494	19,823(4.3)	351	
기 타	차입금	4,591(0.7)	45	451(0.1)	17	4,924(1.1)	74
	전입금	43,090(7.0)	558	38,887(7.5)	665	17,901(3.9)	143
	이월금	10,090(1.6)	161	16,684(3.2)	310	8,275(1.8)	70
	잡수입	7,788(1.3)	108	7,221(1.4)	128	775(0.2)	12
총계	618,519(100.0)	9,001	515,668(100.0)	9,300	464,195(100.0)	7,322	

주: 분석에 포함된 시설은 대도시 21개소, 중소도시 22개소, 군지역 17개소임.

(3) 거주자규모별 분석

다음에는 거주자 수로 구분한 시설의 규모별로 시설당 평균 세입 규모를 살펴 보았다. 이를 위해서 분석에 포함된 시설 중별로 시설의 분포를 파악하여 전체 집단을 3분하고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의 시설로 구분하였다. 이에 따라 양로시설의 경우는 소규모 40인 이하, 중규모 41~50인, 대규모 51인 이상으로 구분되었으며, 각 집단에는 시설 19개소, 23개소, 19개소가 포함되었다. 요양시설의 경우는 소규모 49인 이하, 중규모 50~69인, 대규모 70인 이상으로, 각각 23개소, 17개소, 20개소가 포함되었다. 거주자규모별로 구분한 3개 시설유형별 평균 거주자 수와 시설 분포는 다음 <표 4-2-8>과 같다.

〈표 4-2-8〉 거주자규모별 노인시설 분포 및 평균 거주자 수

(단위: 개소, 명)

구분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전체	
	시설수	거주자	시설수	거주자	시설수	거주자	시설수	거주자
양로시설	18	29	23	46	19	83	60	52
요양시설	23	39	17	55	20	105	60	65
전문시설	7	46	10	72	9	128	26	84

주: 시설규모의 구분은 양로시설의 경우 소규모 40인 이하, 중규모 41~50인, 대규모 51인 이상으로, 요양시설의 경우 소규모 49인 이하, 중규모 50~69인, 대규모 70인 이상으로, 전문요양시설의 경우 소규모 60인 이하, 중규모 61~85인, 대규모 86인 이상으로 함.

무료양로시설의 총세입액을 비교해보면, 40인 이하 소규모 시설의 경우는 219,673천원, 41~60인의 중규모 시설은 301,132천원, 61인 이상 대규모시설은 443,492천원으로 나타났다.

무료양로시설(60개소)의 전체평균 거주자 수는 60명, 규모별로 보면 소규모 29명, 중규모 46명, 대규모 83명으로서(표 4-2-8), 거주자 수는 소규모시설에 비해 중규모시설이 1.59배, 대규모시설이 2.07배였으며, 세입금액은 각각 1.37배, 2.02배로 나타나 거주자 수 증가정도에 비해 세입금액은 다소 적게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거주자 1인 기준 금액으로 분석해보면, 소규모시설 7,249천원, 중규모시설 6,590천원, 대규모시설 5,532천원으로서, 규모가 큰 시설의 1인당 세입금액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 내역을 보면, 입소비용 수입, 사업 수입, 이월금의 항목에서, 시설평균 금액과 1인 기준 금액의 크기가 각각 대규모-중규모-소규모 시설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규모시설에서 상대적으로 이들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 수입과 후원금 수입은 거주자 1인 기준 평균 금액으로 비교할 경우 그 크기는 각각 소규모-중규모-대규모 시설의 순이다. 보조금수입의 경우는 시설평균 금액으로 보면 규모에 비례하여 커지고 있으므로, 규모의 경제를 감안하여 보조금이 지급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후원금 수입은 중규모와 대규모시설의 경우 거주자 수에 관계없이 그 액수가

유사하고, 소규모 시설의 경우 그 액수가 매우 적어, 소규모 시설의 후원금 모금에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시설의 경우 거주자 수에 비례하는 크기의 후원금 모금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2-9> 노인무료양로시설 규모별 평균 세입 규모

(단위: 천원)

항 목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시설평균	1인기준	시설평균	1인기준	시설평균	1인기준	
입소비용수입	859(0.4)	29	1,189(0.4)	26	3,697(0.8)	48	
사업수입	42(0.02)	2	175(0.06)	4	1,822(0.4)	26	
과년도수입	0(0.0)	0	180(0.06)	4	53(0.01)	1	
보조금수입	174,350(79.4)	5,752	226,164(75.1)	4,964	357,831(80.7)	4,371	
후원금수입	15,115(6.9)	633	30,537(10.1)	669	31,929(7.2)	422	
기타	차입금	26(0.01)	2	0(0.0)	0	2,987(0.7)	42
	전입금	22,587(10.3)	602	25,832(8.6)	557	21,955(5.0)	305
	이월금	5,468(2.5)	189	13,375(4.4)	284	20,718(4.7)	288
	잡수입	1,225(0.6)	39	3,680(1.2)	83	2,500(0.6)	29
총계	219,673(100.0)	7,249	301,132(100.0)	6,590	443,492(100.0)	5,532	

주: 무료양로시설 규모의 구분은 소규모 40인 이하, 중규모 41~50인, 대규모 51인 이상으로 하였으며, 각각 19개소, 23개소, 19개소였음.

무료요양시설의 규모별 세입액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4-2-9>와 같다. 총 세입액은 소규모시설 342,575천원, 50~69인의 중규모시설 441,329천원, 70인 이상 대규모시설은 842,155천원이다. 무료요양시설(60개소)의 전체평균 거주자 수는 60명, 규모별로 보면, 소규모 39명, 중규모 55명, 대규모 105명으로 거주자수는 소규모에 비해 중규모시설이 1.41배, 대규모시설이 2.69배이고, 세입금액은 각각 1.29배, 2.46배로 양로시설에 비해 거주자 수 증가정도와 세입금액 비례정도의 차이가 더 크다. 세입 내역을 보면, 입소비용 수입, 보조금 수입, 후원금 수입, 차입금, 이월금의 경우 그 크기가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시설의 순이다.

거주자 1인 기준으로 비교하면, 소규모시설 거주자 1인당 9,053천원, 중규모 시설 8,064천원, 대규모시설 8,640천원으로 거주자 규모를 감안하면 소규모시설의 세입액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히 보조금 수입, 과년도 수입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1인당 입소비용수입, 법인전입금, 잡수입 등은 대규모 시설이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10> 노인무료요양시설 규모별 평균 세입 규모

(단위: 천원)

항 목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시설평균	1인기준	시설평균	1인기준	시설평균	1인기준	
입소비용수입	1,862 (0.5)	64	4,961 (1.1)	90	9,978 (1.2)	111	
사업수입	730 (0.2)	35	112 (0.03)	2	4,910 (0.6)	31	
과년도수입	7,854 (2.3)	270	1,176 (0.3)	21	6 (0.001)	0	
보조금수입	287,694 (84.0)	7,540	382,612 (86.7)	6,987	677,682 (80.5)	6,891	
후원금수입	16,992 (5.0)	436	26,504 (6.0)	491	37,708 (4.5)	422	
기타	차입금	669 (0.2)	28	3,253 (0.7)	54	5,968 (0.7)	50
	전입금	16,340 (4.8)	419	8,199 (1.9)	150	77,476 (9.2)	830
	이월금	8,020 (2.3)	195	10,604 (2.4)	196	17,745 (2.1)	179
	잡수입	2,413 (0.7)	66	3,908 (0.9)	72	10,682 (1.3)	127
총계	342,575 (100.0)	9,053	441,329 (100.0)	8,064	842,155 (100.0)	8,640	

주: 무료요양시설 규모의 구분은 소규모 49인 이하, 중규모 50~69인, 대규모 70인 이상으로 하였으며 각각 23개소, 17개소, 20개소였음.

2) 세출

(1) 세출총괄 내용

노인시설의 세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 <4-2-11>과 같다. 전체 노인시설의 세출 총액은 495,738천원이었으며, 무료양로시설(61개소) 348,635천원, 무료요양시설(60개소) 518,950천원, 전문요양시설(21개소) 880,595천원, 실비양로시설

(3개소) 193,555천원, 실비요양시설(9개소) 326,939천원으로 나타났다. 2001년간 총 세입금액과 비교할 때, 무료시설의 경우는 세출액이 다소 많고, 전문요양시설의 경우는 거의 유사했으며, 실비시설의 경우는 세입액이 다소 많았다.¹⁰⁾

세출을 항목별로 보면, 인건비 260,394천원(52.5%), 판공비 1,981천원(0.4%), 사무운영비 45,205천원(9.1%), 시설비 65,947천원(13.3%), 사업운영비 89,333천원(18.0%), 교육비 67천원(0.01%), 사업비 1,496천원(0.3%) 등으로 인건비가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거주자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사업운영비가 18.0%, 시설비가 13.3%, 프로그램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의 경우는 무료양로시설 40.5%, 무료요양시설 58.6%, 전문요양시설 56.2%, 실비양로시설 46.4%, 실비요양시설 47.9%로서 전체 세출액 중 인건비 비중이 무료양로시설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무료요양시설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무운영비는 무료양로시설 9.9%, 무료요양시설 9.3%, 전문요양시설 7.3%, 실비양로시설 19.1%, 실비요양시설 14.0%로서, 실비 시설의 경우 기타 시설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시설비는 무료양로시설 20.8%, 무료요양시설 8.1%, 전문요양시설 13.6%, 실비양로시설 10.9%, 실비요양시설 12.8%로, 무료양로시설의 비중이 큰 차이를 보였다. 사업운영비는 무료양로시설 21.7%, 무료요양시설 19.2%, 전문요양시설 12.8%, 실비양로시설 21.3%, 실비요양시설 18.6%로 전문요양시설의 경우 사업운영비의 비중이 매우 적게 나타났다. 사업비는 무료양로시설 0.3%, 무료요양시설 0.5%, 전문요양시설 0.1%, 실비양로시설 0.0%, 실비요양시설 0.1%로 전반적으로 매우 적은 지출을 하고 있었다.

한편, 판공비와 사무운영비의 총액과 인건비의 비율을 비교한 결과, 전체 세출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시설 평균 인건비는 52.5%, 판공비와 사무운영비의 합은 9.5%였다. 시설종별로 살펴보면 각각 무료양로시설 40.5%, 10.4%, 무료요양시설 58.6%, 9.7%, 전문요양시설 56.2%, 7.6%, 실비양로시설 46.4%, 20.9%, 실비요양시설 47.9%, 14.4%로 나타났다.

10) 세입액은 무료양로시설 320,101천원, 무료요양시설 537,082천원, 전문요양시설 881,455천원, 실비양로시설 210,910천원, 실비요양시설(9개소) 334,899천원이었음(표 4-2-1 참조)

〈표 4-2-11〉 노인시설 종별 세출항목별 비율

(단위: 천원, %)

항 목	무료 양로시설	무료 요양시설	전문 요양시설	실비 양로시설	실비 요양시설	전체	
인건비	141,265 (40.5)	304,024 (58.6)	494,832 (56.2)	89,797 (46.4)	156,563 (47.9)	260,394 (52.5)	
판공비	1,652 (0.5)	1,950 (0.4)	2,875 (0.3)	3,565 (1.8)	1,298 (0.4)	1,981 (0.4)	
사무운영비	34,436 (9.9)	48,323 (9.3)	63,982 (7.3)	37,004 (19.1)	45,898 (14.0)	45,205 (9.1)	
시설비	72,433 (20.8)	41,970 (8.1)	119,626 (13.6)	21,006 (10.9)	41,748 (12.8)	65,947 (13.3)	
사업운영비	75,490 (21.7)	99,884 (19.2)	112,870 (12.8)	41,269 (21.3)	60,850 (18.6)	89,333 (18.0)	
교육비	64 (0.02)	66 (0.01)	103 (0.01)	0 (0.0)	11 (0.003)	67 (0.01)	
사업비	1,198 (0.3)	2,404 (0.5)	678 (0.1)	0 (0.0)	320 (0.1)	1,496 (0.3)	
기 타	전출금	836 (0.2)	381 (0.1)	0 (0.0)	0 (0.0)	0 (0.0)	465 (0.1)
	과년도지출	132 (0.04)	1,216 (0.2)	48,011 (5.5)	0 (0.0)	0 (0.0)	8,360 (1.7)
	부채상환금	971 (0.3)	3,748 (0.7)	9,266 (1.1)	132 (0.1)	2,658 (0.8)	3,455 (0.7)
	반납금	437 (0.1)	487 (0.1)	2,279 (0.3)	0 (0.0)	0 (0.0)	724 (0.1)
	잡지출	2,954 (0.8)	2,635 (0.5)	6,081 (0.7)	89 (0.1)	1,475 (0.5)	3,207 (0.6)
	결연후원금	771 (0.2)	461 (0.1)	1,603 (0.2)	0 (0.0)	0 (0.0)	732 (0.1)
	예비비	633 (0.2)	239 (0.1)	2,882 (0.3)	0 (0.0)	540 (0.2)	835 (0.2)
	이월금	15,360 (4.4)	11,162 (2.2)	15,508 (1.8)	693 (0.4)	15,578 (4.8)	13,536 (2.7)
총계	348,635 (100.0)	518,950 (100.0)	880,595 (100.0)	193,555 (100.0)	326,939 (100.0)	495,738 (100.0)	

주: 1) 분석에 포함된 시설은 무료양로시설 61개소, 무료요양시설 60개소, 전문요양시설 26개소, 실비양로시설 3개소, 실비요양시설 9개소임.

이는 시설 전체의 경우 인건비가 관공비와 사무운영비 합 의 5.5배임을 의미 하는데, 무료양로시설은 3.9배, 무료요양시설은 6.0배, 전문요양시설은 7.4배, 실비양로시설은 2.2배, 실비요양시설은 3.3배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음으로는 시설종별 세출내역을 거주자 1인을 기준으로 재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 4-2-12>와 같다. 거주자 1인당 평균 세출총액을 살펴보면, 무료양로시설 7,092천원, 무료요양시설 8,404천원, 전문요양시설 11,141천원, 실비양로시설 5,056천원, 실비요양시설 6,227천원으로서, 실비시설 거주자에 대한 지출규모가 무료·전문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12> 노인시설 종별 1인 기준 세출 규모

(단위: 천원)

항 목	무료 양로시설	무료 요양시설	전문 요양시설	실비 양로시설	실비 요양시설	전체	
인건비	2,971	4,996	5,794	2,374	2,950	4,192	
관공비	36	34	34	78	30	35	
사무운영비	701	790	753	959	888	759	
시설비	1,514	717	1,975	486	755	1,224	
사업운영비	1,428	1,513	1,296	1,132	1,231	1,422	
교육비	2	1	1	0	0	1	
사업비	19	23	7	0	5	18	
기타	전출금	13	5	0	0	0	7
	과년도지출	2	24	837	0	0	147
	부채상환금	14	54	99	4	45	45
	반납금	7	7	18	0	0	8
	잡지출	53	44	66	3	24	49
	결연후원금	16	6	26	0	0	12
	예비비	14	4	36	0	11	13
	이월금	300	186	198	20	288	234
총계	7,092	8,404	11,141	5,056	6,227	8,168	

주: 분석에 포함된 시설은 무료양로시설 61개소, 무료요양시설 60개소, 전문요양시설 26개소, 실비양로시설 3개소, 실비 요양시설 9개소였음.

이는 기타 지출항목과 시설비를 제외하고 거주자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건비, 사무운영비, 시설비 사업운영비, 교육비, 사업비 등의 합계만으로 비교할 때도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무료양로 6,635천원, 무료요양 8,040천원, 전문요양 9,826천원, 실비양로 4,951천원, 실비요양 5,824천원).

(2) 지역별 분석

다음으로는 세입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무료양로시설과 무료요양시설의 지역별 세출금액을 분석해보았다. 우선 무료양로시설의 세출금액을 지역별로 살펴보면(표 4-2-13), 대도시(412,364천원), 중소도시(367,164천원), 군지역(264,193천원)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인건비(180,989천원, 129,642천원, 123,390천원), 사무운영비(42,630천원, 33,228천원, 28,966천원), 사업비(2,265천원, 1,268천원, 147천원), 이월금(17,562천원, 17,175천원, 10,681천원), 결연후원금 2,182천원, 318천원, 197천원) 등에서 나타나고 있는 차이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세출내역에서는 특히 대도시 소재 시설에서 중소도시 및 군지역에 비해 큰 규모의 지출이 이루어지는 항목이 있었는데, 대도시 시설의 사업운영비는 타지역 시설의 약 2배에 이르렀고, 사업비(프로그램비)와 결연후원비는 지역특성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전출금, 부채상환금, 반납금, 잡지출, 예비비 등 기타 지출에서 대도시 지역의 금액이 월등하게 많았다.

1인당 세출금액을 비교해보면, 중소도시시설 거주자에 대한 세출총액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8,786천원), 군지역 6,068천원, 대도시 5,490천원으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인건비(대도시 2,442천원, 중소도시 3,226천원, 군지역 3,073천원), 사무운영비(대도시 575천원, 중소도시 811천원, 군지역 655천원)와 시설비(대도시 491천원, 중소도시 2,755천원, 군지역 630천원) 규모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비의 경우는 대도시지역(31천원)과 중소도시(21천원), 군지역(5천원)간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표 4-2-13〉 지역별 노인무료양로시설 평균 세출 규모

(단위: 천원)

항 목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시설평균	1인기준	시설평균	1인기준	시설평균	1인기준	
인건비	180,989 (43.9)	2,442	129,642 (35.3)	3,226	123,390 (46.7)	3,073	
관공비	1,507 (0.4)	22	2,226 (0.6)	56	921 (0.3)	20	
사무운영비	42,630 (10.3)	575	33,228 (9.0)	811	28,966 (11.0)	655	
시설비	38,959 (9.4)	491	119,817 (32.6)	2,755	31,110 (11.8)	630	
사업운영비	111,162 (27.0)	1,461	61,129 (16.6)	1,422	65,324 (24.7)	1,409	
교육비	0 (0.0)	0	144 (0.04)	6	0 (0.0)	0	
사업비	2,265 (0.5)	31	1,268 (0.3)	21	147 (0.1)	5	
기 타	전출금	2,500 (0.6)	35	66 (0.02)	3	513 (0.2)	10
	과년도지출	13 (0.003)	0	258 (0.1)	5	51 (0.02)	1
	부채상환금	3,672 (0.9)	52	0 (0.0)	0	28 (0.01)	2
	반납금	1,075 (0.3)	9	315 (0.1)	9	53 (0.02)	1
	잡지출	5,570 (1.4)	74	1,579 (0.4)	39	2,693 (1.0)	54
	결연후원금	2,182 (0.5)	41	318 (0.1)	8	197 (0.1)	4
	예비비	2,280 (0.6)	47	0 (0.0)	0	119 (0.05)	4
	이월금	17,562 (4.3)	211	17,175 (4.7)	425	10,681 (4.0)	200
총계	412,364 (100.0)	5,490	367,164 (100.0)	8,786	264,193 (100.0)	6,068	

주: 분석에 포함된 시설은 대도시 16개소, 중소도시 27개소, 군지역 18개소였음.

노인무료요양시설의 세출 총액은 대도시 610,631천원, 중소도시 508,427천원, 군지역 419,316천원으로 나타났는데, 인건비(349,084천원, 300,381천원, 253,075천원), 사무운영비(5,260천원, 46,011천원, 42,745천원), 시설비(56,136천원, 45,692천원, 19,655천원), 잡지출(4,325천원 2,921천원, 177천원), 결연후원금(875천원 296천원 165천원) 등의 항목에서 총액의 크기와 마찬가지로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비의 경우(대도시 3,350천원, 중소도시 337천원, 군지역 3,911천원), 잡지출의 경우(대도시 4,325천원, 중소도시 2,921천원, 군지역 177천원) 지역간에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거주자 1인 기준으로 분석해보면, 양로시설에서와 마찬가지로 중소도시 지역 세입액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대도시-군지역의 순으로 나타나 양로시설과는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인건비, 판공비, 사무운영비, 잡지출, 이월금 등에 크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4-2-14〉 지역별 노인무료요양시설 평균 세출 규모

(단위: 천원)

항 목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시설평균	1인기준	시설평균	1인기준	시설평균	1인기준	
인건비	349,084 (57.2)	5,057	300,381 (59.1)	5,412	253,075 (60.4)	4,383	
판공비	2,026 (0.3)	30	2,918 (0.6)	55	604 (0.1)	11	
사무운영비	55,260 (9.0)	773	46,011 (9.0)	847	42,745 (10.2)	739	
시설비	56,136 (9.2)	968	45,692 (9.0)	789	19,655 (4.7)	315	
사업운영비	121,044 (19.8)	1,724	87,347 (17.2)	1,568	89,970 (21.5)	1,183	
교육비	116 (0.02)	2	28 (0.01)	0	53 (0.01)	1	
사업비	3,350 (0.5)	47	337 (0.1)	8	3,911 (0.9)	13	
기 타	전출금	0 (0.0)	0	1,039 (0.2)	13	0 (0.0)	0
	과년도지출	60 (0.01)	1	3,201 (0.6)	63	74 (0.02)	1
	부채상환금	4,828 (0.8)	48	528 (0.1)	23	6,582 (1.6)	102
	반납금	538 (0.1)	9	815 (0.2)	10	0 (0.0)	0
	잡지출	4,325 (0.7)	57	2,921 (0.6)	62	177 (0.04)	4
	결연후원금	875 (0.1)	12	296 (0.1)	4	165 (0.04)	2
	예비비	605 (0.1)	9	75 (0.01)	1	0 (0.0)	0
	이월금	12,385 (2.0)	192	16,838 (3.3)	290	2,306 (0.5)	45
총계	610,631 (100.0)	8,927	508,427 (100.0)	9,144	419,316 (100.0)	6,798	

주: 대도시 21개소, 중소도시 22개소, 군지역 17개소

(3) 거주자규모별 분석

다음은 앞서 세입분석에서 적용한 바와 같이 양로시설과 요양시설 거주자 규모에 따라 3개의 범주로 구분하여 각 세출내역을 파악하였다. 양로시설의 총

세출규모는 소규모시설은 220,772천원, 중규모시설은 390,440천원, 대규모시설은 425,891천원으로 나타났고, 인건비, 사무운영비, 사업운영비, 사업비, 전출금, 반납금, 잡지출 등은 거주자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함께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표 4-2-15〉 노인무료양로시설 규모별 평균 세출 규모

(단위: 천원)

항 목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시설평균	1인기준	시설평균	1인기준	시설평균	1인기준	
인건비	112,601 (51.0)	3,866	129,351 (33.1)	2,832	184,351 (43.3)	2,290	
판공비	1,064 (0.5)	35	2,219 (0.6)	49	1,554 (0.4)	21	
사무운영비	25,210 (11.4)	809	34,171 (8.8)	751	43,984 (10.3)	538	
시설비	24,345 (11.0)	793	135,198 (34.6)	2,871	44,541 (10.5)	553	
사업운영비	47,824 (21.7)	1,445	64,387 (16.5)	1,411	116,598 (27.4)	1,434	
교육비	131 (0.1)	7	10 (0.003)	0	62 (0.01)	1	
사업비	714 (0.3)	11	1,103 (0.3)	24	1,798 (0.4)	21	
기 타	전출금	93 (0.04)	5	123 (0.03)	3	2,442 (0.6)	35
	과년도지출	0 (0.0)	0	9 (0.002)	0	414 (0.1)	7
	부채상환금	26 (0.01)	2	0 (0.0)	0	3,092 (0.7)	44
	반납금	223 (0.1)	7	238 (0.1)	6	892 (0.2)	7
	잡지출	1,638 (0.7)	47	3,070 (0.8)	65	4,131 (1.0)	43
	결연후원금	980 (0.4)	28	324 (0.1)	7	1,104 (0.3)	13
	예비비	1,283 (0.6)	35	0 (0.0)	0	750 (0.2)	9
	이월금	4,638 (2.1)	172	20,238 (5.2)	437	20,179 (4.7)	257
총계	220,772 (100.0)	7,268	390,440 (100.0)	8,455	425,891 (100.0)	5,273	

주: 시설규모의 구분은 소규모 40인 이하, 중규모 41~50인, 대규모 51인 이상으로 하였으며, 각각 19개소, 23개소, 19개소였음.

이를 거주자 1인 기준으로 분석해 보면, 소규모시설 7,268천원, 중규모시설 8,455천원, 대규모시설 5,273천원으로 지출금액의 크기가 중규모시설-소규모시설-대규모시설 순으로 나타났다.¹¹⁾

세출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사무운영비의 경우 각각 소규모-중규모-대규모 시설 순으로 1인기준 세출금액의 규모가 나타나 규모의 경계가 작용하고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거주자 생계비에 해당하는 사업운영비는 규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4-2-16〉 노인무료요양시설 규모별 평균 세출 규모

(단위: 천원)

항 목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시설평균	1인기준	시설평균	1인기준	시설평균	1인기준	
인건비	203,335 (60.4)	5,369	259,793 (62.0)	4,775	457,412 (56.2)	4,755	
판공비	1,399 (0.4)	38	1,299 (0.3)	25	3,139 (0.4)	36	
사무운영비	32,862 (9.8)	911	35,390 (8.4)	648	77,095 (9.5)	773	
시설비	28,247 (8.4)	812	26,379 (6.3)	467	71,005 (8.7)	821	
사업운영비	59,089 (17.6)	1,517	79,186 (18.9)	1,441	164,391 (20.2)	1,571	
교육비	0 (0.0)	0	53 (0.01)	1	152 (0.02)	2	
사업비	566 (0.2)	13	501 (0.1)	9	6,135 (0.8)	47	
기 타	전출금	0 (0.0)	0	0 (0.0)	0	1,142 (0.1)	15
	과년도지출	2,205 (0.7)	45	1,233 (0.3)	22	63 (0.01)	1
	부채상환금	833 (0.2)	36	4,675 (1.1)	79	6,313 (0.8)	53
	반납금	93 (0.03)	3	162 (0.04)	3	1,218 (0.1)	14
	잡지출	1,341 (0.4)	45	399 (0.1)	8	6,024 (0.7)	72
	결연후원금	0 (0.0)	0	123 (0.03)	2	1,279 (0.2)	17
	예비비	49 (0.01)	1	578 (0.1)	10	170 (0.02)	1
	이월금	6,371 (1.9)	164	9,385 (2.2)	175	18,182 (2.2)	221
총계	336,389 (100.0)	8,954	419,156 (100.0)	7,664	813,721 (100.0)	8,400	

주: 무료요양시설 규모의 구분은 소규모 49인 이하, 중규모 50~69인, 대규모 70인 이상으로 하였으며 각각 23개소, 17개소, 20개소였음.

11) 본조사에서는 중규모 시설의 시설비가 매우 크게 나타나 세출총액의 규모별 비교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사업비의 경우는 소규모시설의 지출규모에 비해 중규모와 대규모시설에서 지출되는 규모가 커서, 소규모시설에서 상대적으로 거주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의 실시 등이 미흡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의 경우는 세출총액이 소규모시설 336,389천원, 중규모시설 419,156천원, 대규모시설 813,721천원 등으로 나타났다(표 4-2-16). 인건비, 판공비, 사무운영비, 시설비, 사업운영비, 사업비 등 모든 항목에서 대규모 시설은 소규모 혹은 중규모시설에 비해 2배 이상의 세출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사업비의 경우 큰 차이를 볼 수 있었다(소규모 566천원, 중규모 501천원, 대규모 6,135천원).

그러나 이를 거주자 1인을 기준으로 분석해보면, 소규모시설에서 1인당 세출 금액이 가장 컸고(8,954천원), 다음으로는 대규모시설(8,400천원), 중규모시설(7,664천원)의 순으로서, 거주자 1인당 비용이 50~69명 규모의 시설에서 가장 적게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의 경우는 대규모시설에서 거주자 1인기준 지출이 가장 적게 나타났으며, 판공비와 사무운영비는 대규모시설보다 소규모시설에서, 시설비와 사업운영비, 사업비는 소규모시설 보다 대규모시설에서 더 큰 지출이 있었다.

양로시설과 요양시설의 경우를 종합해 보면, 중규모시설은 차이가 있었으나, 두 경우 모두 대규모시설보다는 소규모시설의 거주자 1인당 세출규모가 크게 나타났다.

제 3 절 장애인복지시설

가. 세입

1) 세입총괄

장애인시설의 총수입을 살펴보면 118개소 시설 평균 920,545천원이었다. 지체 장애인 시설이 19개소 평균 967,193천원, 시각·청각·언어 장애인시설이 11개소

평균 635,038천원, 정신지체인 시설 48개소 평균 914,912천원, 중증장애인요양시설 40개소 평균 983,661천원이었다. 이러한 4가지 유형의 장애인시설 중 중증장애인요양시설의 수입 평균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중증장애인요양시설은 다른 시설에 비해 정부보조금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는 장애인시설의 세입을 항목별로 살펴보았다. 입소비용의 규모는 평균 10,820천원이고, 중증장애인요양시설은 평균 15,066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정신지체인 시설로서 평균 9,493천원이었다. 시설 당 사업수입 평균은 571천원으로 파악되었고, 지체장애인시설이 평균 1,797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증장애인요양시설이 11천원으로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년도수입은 시설 당 평균 3,677천원이었다.

보조금 수입 중 경상보조금 수입을 구성하는 인건비, 생계비, 관리운영비는 국고, 지방비, 순수지방비로부터 지원되고 있다. 인건비의 경우, 시설 당 평균 국고지원액은 332,685천원이고, 지방비는 153,201천원, 순수지방비는 56,152천원 등이다. 생계비의 경우, 시설 당 평균 국고지원액은 66,074천원, 지방비 25,807천원, 순수지방비 9,097천원이다. 관리운영비의 경우, 국고로부터의 시설 당 평균 지원액은 54,659천원, 지방비 25,717천원, 순수지방비 10,161천원이다.

보조금수입 중 자본보조금 수입의 경우 국고로부터 시설 당 평균 10,161천원, 지방비 22,795천원, 순수지방비 5,762천원이 지원되고 있고, 기타 보조금 수입의 경우는 국고에서 6,020천원, 지방비에서 6,494천원, 순수지방비에서 3,198천원이 지원되고 있다. 아울러 보조금 수입에는 시설후원금과 결연후원금이 포함된다. 시설후원금은 장애인시설 당 평균 35,470천원이고, 결연후원금은 시설 당 평균 4,170천원이다. 후원금을 합하면 시설 당 평균 39,639천원이 추가로 지원되고 있는 셈이 된다. 시설후원금은 지체장애인시설이 다른 시설보다 더 많다.

다음에는 차입금을 살펴보았다. 차입금으로 금융기관차입금은 시설 당 평균 액이 5천원으로 나타났고, 기타 차입금은 시설 당 평균 7,413천원이었다. 합하면 시설 당 평균 7,418천원인 것으로 집계된다.

법인전입금은 시설 당 평균 38,536천원이었다. 이월금은 시설 당 평균 19,801천원이었다. 잡수입은 시설 당 평균 8,717천원으로 나타났다.

〈표 4-3-1〉 장애인시설 종류별 평균 세입 규모

(단위: 천원, 개소)

항	목		지체장애 시설	시각청각언어 장애시설	정신지체인 시설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합계		
입소비용수입	입소비용		6,298	8,988	9,493	15,066	10,820		
사업수입	사업수입		1,797	585	549	11	571		
과년도수입	과년도수입		18,590	5,203	367	146	3,677		
보조금수입	경 상 보조금 수 입	정부 보조	국 고	인 건 비	375,191	237,334	330,721	341,072	332,685
			생 계 비	59,596	51,350	73,297	64,534	66,074	
			관리운영비	52,545	56,565	59,397	49,453	54,659	
		지 방 비	인 건 비	132,440	107,861	156,073	172,083	153,201	
		생 계 비	18,550	16,088	25,972	31,727	25,807		
		관리운영비	20,196	30,561	27,010	25,457	25,717		
	순수 지방비 보조	인 건 비	47,607	23,978	50,008	76,431	56,152		
		생 계 비	5,285	6,460	10,678	9,735	9,097		
		관리운영비	14,625	7,162	6,035	13,817	10,161		
	자 본 보조금 수 입	정부 보조	국 고	17,693	14,713	19,942	30,864	22,795	
			지방비	16,793	19,933	9,192	15,467	13,544	
		순수지방비보조	2,774	2,809	6,558	7,038	5,762		
	기 타 보조금 수 입	정부 보조	국 고	15,179	0	6,107	3,220	6,020	
			지방비	17,820	818	6,422	2,762	6,494	
순수지방비보조		1,117	1,945	3,357	4,340	3,198			
소계			797,411	577,577	790,770	847,999	791,365		
후원금수입	후원금 수입		72,931	21,435	31,377	26,447	35,470		
	결연후원금 수입		3,832	1,067	3,899	5,508	4,170		
	소계		76,763	22,501	35,275	31,955	39,639		
차입금	금융기관차입금		0	0	0	14	5		
	기타차입금		1,747	0	4,530	15,603	7,413		
	소계		1,747	0	4,530	15,617	7,418		
전입금	법인전입금		45,000	11,917	40,795	40,077	38,536		
이월금	전년도이월금		10,615	5,441	26,053	18,607	19,121		
	이월사업비		3	0	313	1,628	679		
	소계		10,618	5,441	26,365	20,234	19,801		
잡수입	불용품매각대		39	90	58	18	45		
	기타예금이자수입		321	271	478	890	573		
	기타잡수입		8,610	2,466	6,232	11,649	8,100		
	소계		8,971	2,827	6,767	12,557	8,717		
총계			967,193 (19)	635,038 (11)	914,912 (48)	983,661 (40)	920,545 (118)		

이번에는 시설의 세입을 전체 대비 비중으로 살펴본 결과 세입의 비중이 가장 많은 것은 보조금(86.0%)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후원금으로 4.3%, 그리고 전입금 4.2%의 순이었다. 나머지 항목은 매우 미미한 비중만을 보이고 있었다.

시설별로 보면 지체장애인시설은 다른 시설에 비해서 보조금 비율이 82.4%로 낮은 대신, 후원금(7.9%), 전입금(4.7%) 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장애인시설은 정부보조금에 의존해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3-2〉 장애인시설 항목별 평균 세입비율

(단위: 천원, %)

항 목	지체장애 시설		시각청각언어 장애시설		정신지체인 시설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전체평균	
	세입	비율	세입	비율	세입	비율	세입	비율	세입	비율
입소비용	6,298	0.7	8,988	1.4	9,493	1.0	15,066	1.5	10,820	1.2
사업수입	1,797	0.2	585	0.1	549	0.1	11	0.0	571	0.1
과년도수입	18,590	1.9	5,203	0.8	367	0.0	146	0.0	3,677	0.4
보조금	797,411	82.4	577,577	91.0	790,770	86.4	847,999	86.2	791,365	86.0
후원금	76,763	7.9	22,501	3.5	35,275	3.9	31,955	3.2	39,639	4.3
차입금	1,747	0.2	0	0.0	4,530	0.5	15,617	1.6	7,418	0.8
전입금	45,000	4.7	11,917	1.9	40,795	4.5	40,077	4.1	38,536	4.2
이월금	10,618	1.1	5,441	0.9	26,365	2.9	20,234	2.1	19,801	2.2
잡수입	8,971	0.9	2,827	0.4	6,767	0.7	12,557	1.3	8,717	0.9
총계	967,193	100.0	635,038	100.0	914,912	100.0	983,661	100.0	920,545	100.0

장애인시설의 세입을 시설 당 평균값으로 살펴본 결과가 다음 표에 제시되어 있다. 표에 제시되었듯이, 정부보조금 수입은 장애인시설 거주자 1인당 평균 9,727천원으로 가장 많았다. 시설별로는 중증장애인요양시설에 대한 보조금이 10,742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지체장애인시설 10,276천원, 시각·청각·언어 장애인시설 9,687천원, 그리고 정신지체인 시설 8,672천원의 순이었다.

보조금 다음으로 1인당 평균 세입이 많은 것으로 후원금으로서 시설거주 장애인 1인당 평균 610천원이었으며, 다음이 전입금 595천원 등의 순이었다.

〈표 4-3-3〉 장애인시설 1인당 평균 세입규모

(단위: 천원, 개소)

항 목	지체장애 시설	시각청각언어 장애시설	정신지체인 시설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전체평균
입소비용	71	137	117	178	132
사업수입	25	12	5	0	7
과년도수입	612	235	1	2	122
보조금수입	10,276	9,687	8,672	10,742	9,727
후원금수입	1,207	514	486	501	610
차입금	39	0	71	87	65
전입금	631	310	558	700	595
이월금	176	156	365	345	308
잡수입	114	70	78	133	102
총계	13,153	11,122	10,353	12,688	11,667
시설수	19	11	48	40	118

〈표 4-3-4〉 장애인시설종류별 평균 인건비·생계비·관리운영비 규모

(단위: 천원)

항 목		지체장애 시설	시각청각언어 장애시설	정신지체인 시설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전체평균
인건비	소계	555,238	369,173	536,803	589,586	542,037
	정부보조 국고	375,191	237,334	330,721	341,072	332,685
	정부보조 지방비	132,440	107,861	156,073	172,083	153,201
	순수 지방비	47,607	23,978	50,008	76,431	56,152
생계비	소계	83,431	73,898	109,947	105,996	100,978
	정부보조 국고	59,596	51,350	73,297	64,534	66,074
	정부보조 지방비	18,550	16,088	25,972	31,727	25,807
	순수 지방비	5,285	6,460	10,678	9,735	9,097
관리 운영비	소계	87,366	64,288	92,442	88,727	90,537
	정부보조 국고	52,545	56,565	59,397	49,453	54,659
	정부보조 지방비	20,196	30,561	27,010	25,457	25,717
	순수 지방비	14,625	7,162	6,035	13,817	10,161

다음에는 보조금 수입 중 인건비, 생계비, 관리운영비를 살펴보았더니 인건비는 시설 당 평균 542,037천원, 생계비 100,978천원, 관리운영비 90,537천원으로 파악되었다. 시설유형별로 보면 인건비는 중증장애인요양시설이 가장 많았고, 생계비는 정신지체인 시설이 가장 많았다. 관리운영비도 정신지체인 시설이 가장 많았다.

2) 시설 소재지 규모별 세입

이번에는 장애인시설의 세입을 시설이 소재한 지역별(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로 살펴보았다. 지체장애인시설의 경우 대도시에 가장 많은 57.9%이고 중소도시와 군 지역은 21.1%로 동일하였다. 규모별로는 소규모인 69인 이하 시설과 중규모인 70~110인 시설이 각각 42.1%로서 중규모 이하가 84.2%를 차지하고 있었다. 지체장애인 시설의 거주자 평균인원은 82.9명으로 조사되었다.

시각·청각·언어 장애인 시설은 대도시에 7개소 중소도시에 3개소, 그리고 군 지역에 1개소가 분포하고 있다. 규모는 69인 이하 시설이 7개소로서 많았고, 중규모와 대규모 시설은 각각 2개소로 나타났다. 시각·청각·언어 장애인 시설은 평균 67.9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지체인시설은 모두 48개소로서 대도시에 19개소, 군 지역에 18개소, 중소도시 11개소가 분포하고 있으며, 규모별로는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시설이 각각 16개소씩 분포하고 있었다. 정신지체인 시설의 거주자 평균인원은 99.2명으로 다른 시설 유형에 비하여 평균 거주자 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증장애인요양시설은 모두 40개소가 조사되었으며, 군 지역에 19개소가 존재하고 있어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대도시에 16개소가 분포하고 있었다. 규모 면으로는 소규모시설이 가장 많은 50.0%이고, 중규모시설은 35.0%, 그리고 대규모 시설은 15.0%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의 거주자 평균인원은 84.1명으로 조사되었다. 입소비용의 경우 대도시 1개 시설 당 평균 8,454천원, 중소도시의 경우 평균 12,299천원, 군 지역은 평균 12,997천원으로 중소도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수입의 경우, 대도시의 경우 지체장애인 시설의 시설 당 평균이 2,951천 원으로 가장 높고, 다음이 중소도시, 군지역의 순이었다. 과년도수입은 전체 장애인 시설 당 평균 3,677천원이고, 군 지역은 시설 당 평균 8,839천원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다. 중소도시의 경우 과년도수입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조금 수입의 전체 평균은 791,365천원이었고, 대도시, 중소도시, 군 지역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원금 수입은 전체 평균 29,685천원이었고, 대도시 지역이 가장 많은 48,445천원, 중소도시의 경우 시설 당 평균 37,525천원, 그리고 군 지역은 가장 적은 29,685천원으로 조사되었다.

입소비용과 과년도수입은 군 지역이 더 많았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는 대도시에 소재 한 시설의 평균 세입이 더 많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차입금은 대도시가 평균 12,208천원이고, 전입금은 중소도시가 40,308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대도시로서 39,236천원, 그리고 군 지역이 36,684천원이었다. 이월금은 중소도시 26,852천원, 대도시 24,175천원, 군 지역 10,420천원으로 집계되었고, 잡수입은 대도시 10,548천원, 중소도시 7,662천원, 군 지역 6,986천원으로 파악되었다.

세입을 종합해서 평균을 살펴보았더니 대도시 시설 당 평균이 1,050,707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중소도시로서 887,674천원, 마지막으로 군 지역으로서 774,294천원의 순이었다.

〈표 4-3-5〉 지역 및 거주자규모별 장애인시설 분포

(단위: 명, 개소)

구분	지체장애 시설			시각청각언어 장애시설			정신지체인 시설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대규모	4	2	2	6	0	1	4	6	6	6	1	13
중규모	6	1	1	1	1	0	6	2	8	5	3	6
소규모	1	1	1	0	2	0	9	3	4	5	1	0
시설수	19			11			48			40		

〈표 4-3-6〉 장애인시설 지역별 평균 세입 규모

(단위: 천원)

항 목	지체장애 시설	시각청각언어 장애시설	정신지체인 시설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전체평균	
입소비용	대도시	160	5,191	5,262	19,374	8,454
	중소도시	20,561	19,841	6,512	13,898	12,299
	군지역	8,913	3,003	15,781	11,745	12,997
	소계	6,298	8,988	9,493	15,066	10,820
사업수입	대도시	2,951	919	1,388	0	1,231
	중소도시	420	0	0	0	73
	군지역	0	0	0	24	11
	소계	1,797	585	549	11	571
과년도수입	대도시	0	8,176	254	38	1,182
	중소도시	0	0	0	0	0
	군지역	88,304	0	711	274	8,839
	소계	18,590	5,203	367	146	3,677
보조금수입	대도시	897,245	497,464	897,882	1,097,836	905,228
	중소도시	711,744	831,788	666,334	968,466	761,493
	군지역	608,532	375,726	753,752	605,908	664,039
	소계	797,411	577,576	790,770	847,999	791,365
후원금수입	대도시	103,615	14,108	33,192	43,650	48,445
	중소도시	36,879	24,294	42,798	34,380	37,525
	군지역	42,803	75,874	32,878	21,468	29,685
	소계	76,763	22,501	35,275	31,955	39,639
차입금	대도시	108	0	3,481	36,231	12,208
	중소도시	6,250	0	785	0	1,462
	군지역	1,750	0	7,925	2,367	4,634
	소계	1,747	0	4,530	15,617	7,418
법인전입금	대도시	45,715	11,182	45,976	39,051	39,236
	중소도시	41,784	6,271	46,336	46,287	40,308
	군지역	46,249	34,000	31,940	39,306	36,684
	소계	45,000	11,917	40,795	40,077	38,536
이월금	대도시	14,563	5,657	22,491	40,884	24,175
	중소도시	4,930	1,176	51,207	6,212	26,852
	군지역	5,455	16,727	15,273	6,536	10,420
	소계	10,618	5,441	26,365	20,234	19,801
잡수입	대도시	8,406	3,941	5,586	20,803	10,548
	중소도시	13,814	943	8,526	4,870	7,662
	군지역	5,681	675	6,940	7,636	6,986
	소계	8,971	2,827	6,767	12,557	8,717
총계	대도시	1,072,763	546,639	1,015,511	1,297,868	1,050,707
	중소도시	836,382	884,313	822,498	1,074,113	887,674
	군지역	807,685	506,005	865,200	695,264	774,294
	소계	967,193	635,038	914,912	983,661	920,545

〈표 4-3-7〉 장애인시설 지역별 1인당 평균 세입 규모

(단위: 천원)

항 목	지체장애 시설	시각청각언어 장애시설	정신지체인 시설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전체평균	
입소비용	대도시	2	112	48	145	76
	중소도시	213	199	127	178	162
	군지역	121	125	184	206	186
	소계	71	137	117	178	132
사업수입	대도시	40	20	12	0	15
	중소도시	8	0	0	0	1
	군지역	0	0	0	1	0
	소계	25	12	5	0	7
과년도수입	대도시	0	370	1	1	49
	중소도시	0	0	0	0	0
	군지역	2,907	0	3	4	280
	소계	612	235	1	2	122
보조금수입	대도시	10,853	10,027	8,927	10,617	9,982
	중소도시	8,891	6,905	8,315	9,205	8,425
	군지역	10,077	15,655	8,622	11,251	10,117
	소계	10,276	9,687	8,672	10,742	9,727
후원금수입	대도시	1,727	262	344	604	699
	중소도시	443	218	730	317	523
	군지역	542	3,161	488	462	545
	소계	1,207	514	486	501	610
차입금	대도시	1	0	30	155	58
	중소도시	125	0	15	0	29
	군지역	58	0	148	52	93
	소계	39	0	71	87	65
법인전입금	대도시	613	264	681	567	577
	중소도시	459	48	430	470	394
	군지역	851	1,417	506	874	727
	소계	631	310	558	700	595
이월금	대도시	248	142	211	660	345
	중소도시	64	8	888	49	447
	군지역	93	697	208	157	185
	소계	176	156	365	345	308
잡수입	대도시	111	103	51	140	97
	중소도시	163	8	149	47	111
	군지역	74	28	64	149	103
	소계	114	70	78	133	102
총계	대도시	13,595	11,300	10,304	12,889	11,899
	중소도시	10,367	7,386	10,653	10,267	10,093
	군지역	14,723	21,084	10,222	13,155	12,236
	소계	13,153	11,122	10,353	12,688	11,667

지역별 1인당 세입 규모를 보면 군 지역이 가장 많은 12,236천원, 그 다음은 대도시로 11,899천원이고, 중소도시의 경우 10,093천원으로 가장 낮은 규모를 보이고 있다. 항목별로는 군 지역의 경우 정부보조금이 1인당 평균 10,117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후원금 수입으로 545천원이었다. 시설별로는 지체 장애인 시설의 거주자 1인당 평균 세입이 13,153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중증 장애인 요양시설 12,688천원, 시각·청각·언어 장애인 시설 11,122천원, 그리고 정신지체인 시설 10,353천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3) 거주자 규모별 세입

다음에는 시설의 규모별로 시설 당 평균 세입 규모를 살펴보았다. 시설의 규모를 거주자의 분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더니, 111명 이상의 대규모 시설의 세입이 가장 많은 1,442,289천원이었고, 그 다음이 중규모 시설로 901,253천원이었다. 세입이 가장 적은 시설은 69인 이하의 소규모 시설로 659,459천원이었다. 즉, 시설의 세입은 시설의 규모에 비례함을 알 수 있다.

항목별로 세입규모를 보았더니 입소비용의 경우는 대규모 시설이 18,399천원, 중규모 시설 7,149천원, 그리고 소규모 시설은 9,688천원이었다. 사업수입은 대규모시설이 907천원, 중규모시설이 858천원으로 대규모시설이 더 많았다. 보조금 수입은 대규모시설이 가장 많은 1,286,772천원, 중규모시설 803,241천원, 69명 이하 519,776천원으로 파악되었다. 후원금은 소규모시설이 가장 많은 44,424천원이고, 대규모시설 37,266천원, 중규모시설 35,140천원의 순이다. 소규모시설의 후원금이 가장 많은 것이 특이하다. 차입금은 대규모시설이 가장 많았고, 전입금은 소규모시설이, 이월금은 소규모시설이, 잡수입은 대규모시설이 각각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표 4-3-8〉 장애인시설 거주자 규모별 평균 세입 규모

(단위: 천원)

항 목	지체장애 시설	시각청각언어 장애시설	정신지체인 시설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전체평균	
입소비용	69명 이하	2,097	4,953	13,252	11,531	9,688
	70~110명	8,145	10,748	2,566	11,303	7,149
	111명 이상	12,573	21,351	12,661	35,628	18,399
	소계	6,298	8,988	9,493	15,066	10,820
사업수입	69명 이하	210	919	0	23	168
	70~110명	4,041	0	125	0	858
	111명 이상	44	0	1,523	0	907
	소계	1,797	585	549	11	571
과년도수입	69명 이하	43,321	8,176	0	154	7,978
	70~110명	831	0	0	197	235
	111명 이상	0	0	1,101	0	653
	소계	18,590	5,203	367	146	3,677
보조금	69명 이하	569,654	453,163	524,350	519,480	519,776
	70~110명	896,333	547,028	724,715	876,391	803,241
	111명 이상	1,140,969	1,043,574	1,123,245	1,876,814	1,286,772
	소계	797,411	577,576	790,770	847,999	791,365
후원금	69명 이하	108,199	22,431	43,304	27,509	44,424
	70~110명	60,859	18,667	27,361	31,687	35,140
	111명 이상	35,344	26,584	35,161	47,400	37,266
	소계	76,763	22,501	35,275	31,955	39,639
차입금	69명 이하	4,000	0	6,281	2,749	3,676
	70~110명	148	0	6,340	786	2,840
	111명 이상	0	0	967	93,117	21,267
	소계	1,747	0	4,530	15,617	7,418
전입금	69명 이하	30,676	14,706	45,399	49,759	40,587
	70~110명	58,670	4,666	34,165	26,819	35,020
	111명 이상	46,740	9,406	42,821	38,738	39,874
	소계	45,000	11,917	40,795	40,077	38,536
이월금	69명 이하	17,075	7,051	42,558	24,541	26,622
	70~110명	4,715	3,489	10,005	15,415	10,514
	111명 이상	9,140	1,759	26,533	17,124	20,675
	소계	10,618	5,441	26,365	20,234	19,801
잡수입	69명 이하	7,027	2,604	7,487	6,967	6,541
	70~110명	9,059	5,323	3,718	7,685	6,255
	111명 이상	13,920	1,110	9,097	42,559	16,477
	소계	8,971	2,827	6,767	12,557	8,717
총계	69명 이하	782,258	514,002	682,631	642,712	659,459
	70~110명	1,042,801	589,919	808,994	970,282	901,253
	111명 이상	1,258,730	1,103,782	1,253,111	2,151,378	1,442,289
	소계	967,193	635,038	914,912	983,661	920,545

〈표 4-3-9〉 장애인시설 거주자 규모별 1인당 평균 세입 규모

(단위: 천원)

항 목		지체장애 시설	시각청각언어 장애시설	정신지체인 시설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전체평균
입소비용	69명 이하	42	123	259	220	191
	70~110명	86	144	24	130	80
	111명 이상	110	178	68	150	99
	소계	71	137	117	178	132
사업수입	69명 이하	4	20	0	1	4
	70~110명	55	0	2	0	12
	111명 이상	0	0	13	0	8
	소계	25	12	5	0	7
과년도수입	69명 이하	1,444	370	0	3	278
	70~110명	10	0	0	2	3
	111명 이상	0	0	4	0	2
	소계	612	235	1	2	122
보조금	69명 이하	11,780	11,254	10,823	11,745	11,394
	70~110명	9,645	6,451	7,794	9,958	8,854
	111명 이상	7,952	7,442	7,400	9,227	7,871
	소계	10,276	9,687	8,672	10,742	9,727
후원금	69명 이하	2,148	688	910	675	981
	70~110명	644	232	313	342	385
	111명 이상	201	187	236	292	241
	소계	1,207	514	486	501	610
차입금	69명 이하	92	0	138	72	86
	70~110명	1	0	70	7	31
	111명 이상	0	0	5	320	74
	소계	39	0	71	87	65
전입금	69명 이하	622	453	1,022	1,123	921
	70~110명	723	48	350	287	388
	111명 이상	407	72	300	254	285
	소계	631	310	558	700	595
이월금	69명 이하	341	232	808	538	550
	70~110명	55	36	111	185	122
	111명 이상	61	11	175	73	127
	소계	176	156	365	345	308
잡수입	69명 이하	130	92	145	151	138
	70~110명	97	56	40	89	70
	111명 이상	120	8	50	172	82
	소계	114	70	78	133	102
총계	69명 이하	16,603	13,230	14,104	14,527	14,542
	70~110명	11,315	6,967	8,704	11,003	9,944
	111명 이상	8,851	7,898	8,251	10,489	8,789
	소계	13,153	11,122	10,353	12,688	11,667

1인당 평균 세입은 소규모 시설이 가장 많은 14,542천원이고, 다음은 중규모 9,944천원, 대규모 8,789천원으로, 규모의 경계가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설별로는 소규모 지체장애인시설이 가장 많은 16,603천원이고, 다음이 소규모 중증장애인요양시설로 14,527천원이다. 정부보조금에 있어서 1인당 평균 세입은 소규모 지체장애인시설이 가장 많은 11,780천원이고, 다음은 소규모 중증장애인요양시설로 11,745천원이다. 후원금도 소규모 지체장애인 시설이 가장 많았다.

다음에는 정부보조금 구성비를 시설 규모별로 살펴보았다. 인건비는 대규모 시설이 가장 많은 61.5%이고, 중규모 59.6%, 소규모 55.1%의 순이다. 생계비의 구성비는 중규모가 가장 많은 12.9%이고, 대규모 12.5%, 소규모 10.1%의 순이다. 마지막으로 관리운영비는 거의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특히 소규모 시설에서 비중이 높았다. 보조금이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규모 시설이 가장 많은 83.9%이었고, 중규모시설 82.1%, 소규모시설 72.2%의 순이었다.

〈표 4-3-10〉 장애인시설 거주자 규모별 평균 보조금 구성비

(단위: 천원, %)

항 목	총세입	경상보조금수입				
		인건비	생계비	관리운영비	계	
69명이하	금액	659,459	363,094	46,915	66,364	476,373
	비율	100.0	55.1	7.1	10.1	72.2
70~110명	금액	901,253	537,556	116,085	86,557	740,198
	비율	100.0	59.6	12.9	9.6	82.1
111명 이상	금액	1,442,289	886,679	180,715	142,095	1,209,488
	비율	100.0	61.5	12.5	9.9	83.9

나. 세출

1) 세출 총괄

장애인시설의 전체 세출규모는 861,601천원이다. 이는 세입 920,545천원보다 약간 적은 금액이다. 시설별로는 중증장애인요양시설이 가장 많은 913,585천원

이고, 다음이 지체장애인시설 890,966천원, 정신지체인시설 865,201천원, 시각·청각·언어장애인시설은 가장 적은 606,140천원이다. 항별 소계를 보면 인건비는 시설 당 평균 517,085천원으로 가장 많고, 판공비 3,922천원, 사무운영비 63,998천원, 시설비 92,796천원, 사업운영비 139,978천원, 교육비 2,791천원, 사업비 15,750천원 등이다. 기타 비용은 25,279천원이다. 세출비중별로 보면 인건비가 가장 많은 60.0%, 다음이 사업운영비(16.2%)이다. 시설비는 10.8%, 사무운영비 7.4%, 기타 2.9%, 특별사업비 1.8%, 교육비 0.3%, 판공비 0.5%로 조사되었다. 인건비 비중이 가장 많은 시설은 중증장애인요양시설이었고, 생계비 등 직접비에 해당하는 사업운영비의 비중이 가장 많은 시설은 정신지체인 시설이었다.

〈표 4-3-11〉 장애인시설 시설 당 평균 세출규모

(단위: 천원, %)

항 목	지체장애 시설		시각청각언어 장애시설		정신지체인시설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전체평균	
	세입	비율	세입	비율	세입	비율	세입	비율	세입	비율
인건비	528,990	59.4	364,029	60.1	517,729	59.8	552,749	60.5	517,085	60.0
판공비	4,179	0.5	2,305	0.4	3,912	0.5	4,257	0.5	3,922	0.5
사무운영비	73,709	8.3	48,000	7.9	63,109	7.3	64,851	7.1	63,998	7.4
시설비	107,213	12.0	88,144	14.5	83,095	9.6	98,870	10.8	92,796	10.8
사업운영비	139,886	15.7	91,348	15.1	148,379	17.1	143,315	15.7	139,978	16.2
교육비	2,322	0.3	3,985	0.7	2,988	0.3	2,449	0.3	2,791	0.3
사업비	12,493	1.4	4,057	0.7	24,500	2.8	10,014	1.1	15,750	1.8
기타	22,175	2.5	4,271	0.7	21,489	2.5	37,079	4.1	25,279	2.9
세출 총계	890,966	100.0	606,140	100.0	865,201	100.0	913,585	100.0	861,601	100.0

다음에는 1인당 평균 세출규모를 살펴보았더니, 전체 평균은 10,848천원이고, 세출규모가 가장 많은 시설은 중증장애인요양시설로서 11,987천원이다. 다음은 지체장애인시설로 11,738천원, 시각·청각·언어 장애인시설 10,534천원, 정신지체인 시설 9,619천원의 순이다. 예상대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은 거주자 1인당 인건비가 가장 많은 7,259천원이고, 사업운영비도 가장 많은 1,747천원이다.

〈표 4-3-12〉 장애인시설 1인당 평균 세출규모

(단위: 천원, 개소)

항 목	지체장애시설	시각청각언어장애시설	정신지체인시설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전체평균
인건비	6,935	6,121	5,584	7,259	6,419
판공비	55	43	56	81	63
사무운영비	1,015	941	740	882	851
시설비	1,449	1,749	1,058	1,333	1,279
사업운영비	1,726	1,478	1,516	1,747	1,624
교육비	29	60	30	34	34
사업비	166	50	369	232	260
기타	364	91	267	420	318
총계	11,738	10,534	9,619	11,987	10,848
시설수	19	11	48	40	118

인건비와 운영비(판공비와 운영비 합계)비 액수를 비교한 결과, 전체 인건비 대 운영비 비율이 78.7대 21.3으로 나타났다. 정신지체인시설은 77.7대 22.3, 시각·청각·언어장애인시설은 79.9 대 20.1이다.

〈표 4-3-13〉 장애인시설 시설 당 평균 인건비 대 운영비 비율

(단위: 천원, %, 개소)

항 목	지체장애 시설		시각청각언어 장애시설		정신지체인시설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전체평균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인건비	528,990	79.1	364,029	79.9	517,729	77.7	552,749	79.4	517,085	78.7
운영비	139,886	20.9	91,348	20.1	148,379	22.3	143,315	20.6	139,978	21.3
합계	668,876 (19)	100.0	455,377 (11)	100.0	666,107 (48)	100.0	696,064 (40)	100.0	657,064 (118)	100.0

(2) 시설 소재지 규모 세출

시설 소재지별로 세출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더니, 세출이 가장 많은 것은 대도시로 971,631천원이었고, 그 다음은 중소도시로서 828,094천원이었다.

〈표 4-3-14〉 장애인시설 지역별 평균 세출 규모

(단위: 천원)

항 목	지체장애 시설	시각청각언어 장애시설	정신지체인 시설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전체평균	
인건비	대도시	585,399	333,276	596,630	711,816	594,289
	중소도시	510,943	493,262	421,768	625,186	490,823
	군지역	391,915	191,596	493,087	399,736	434,043
	소계	528,990	364,029	517,729	552,749	517,085
관공비	대도시	3,781	2,735	2,437	3,911	3,200
	중소도시	6,422	903	8,090	1,628	5,458
	군지역	3,032	3,501	2,915	5,241	3,992
	소계	4,179	2,305	3,912	4,257	3,922
사무운영비	대도시	76,141	44,106	68,448	78,508	69,866
	중소도시	77,585	56,207	53,776	68,193	61,368
	군지역	63,145	50,643	63,177	52,471	58,032
	소계	73,709	48,000	63,109	64,851	63,998
시설비	대도시	150,917	59,133	65,553	75,944	85,559
	중소도시	31,689	132,535	117,216	179,987	117,986
	군지역	62,549	158,050	80,760	96,829	88,135
	소계	107,213	88,144	83,095	98,870	92,796
사업운영비	대도시	160,901	77,039	173,723	201,156	166,574
	중소도시	105,327	132,877	120,988	144,494	124,925
	군지역	116,652	66,920	138,365	94,297	114,661
	소계	139,886	91,348	148,379	143,315	139,978
교육비	대도시	1,457	3,212	5,861	4,331	4,135
	중소도시	6,529	7,120	970	2,880	3,154
	군지역	495	0	1,190	751	897
	소계	2,322	3,985	2,988	2,449	2,791
사업비	대도시	3,941	1,653	9,010	7,613	6,565
	중소도시	37,852	11,017	8,851	5,842	13,523
	군지역	10,649	0	50,414	13,133	28,561
	소계	12,493	4,057	24,500	10,014	15,750
기타	대도시	20,105	6,298	32,131	82,546	41,443
	중소도시	27,165	936	9,993	5,666	10,858
	군지역	22,876	90	17,282	7,059	12,781
	소계	22,175	4,271	21,489	37,079	25,279
총계	대도시	1,002,642	527,452	953,792	1,165,825	971,631
	중소도시	803,512	834,857	741,653	1,033,874	828,094
	군지역	671,313	470,800	847,190	669,518	741,103
	소계	890,966	606,140	865,201	913,585	861,601

〈표 4-3-15〉 장애인시설 지역별 1인당 평균 세출 규모

(단위: 천원)

항 목	지체장애 시설	시각청각언어 장애시설	정신지체인 시설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전체평균	
인건비	대도시	7,407	6,720	5,769	7,340	6,709
	중소도시	6,141	4,104	5,316	6,102	5,473
	군지역	6,430	7,983	5,551	7,495	6,572
	소계	6,935	6,121	5,584	7,259	6,419
관공비	대도시	51	43	36	54	45
	중소도시	80	9	102	19	68
	군지역	38	146	49	120	82
	소계	55	43	56	81	63
사무운영비	대도시	1,006	960	702	755	815
	중소도시	954	506	685	682	708
	군지역	1,103	2,110	813	1,041	975
	소계	1,015	941	740	882	851
시설비	대도시	1,890	1,387	692	777	1,058
	중소도시	391	983	1,795	1,548	1,391
	군지역	1,292	6,585	994	1,744	1,495
	소계	1,449	1,749	1,058	1,333	1,279
사업운영비	대도시	1,880	1,467	1,627	1,893	1,739
	중소도시	1,323	1,068	1,408	1,397	1,346
	군지역	1,704	2,788	1,464	1,716	1,633
	소계	1,726	1,478	1,516	1,747	1,624
교육비	대도시	26	68	54	52	49
	중소도시	57	59	16	43	35
	군지역	9	0	13	17	14
	소계	29	60	30	34	34
사업비	대도시	42	40	102	147	95
	중소도시	488	90	113	74	167
	군지역	184	0	808	345	520
	소계	166	50	369	232	260
기타	대도시	307	140	438	829	490
	중소도시	358	6	111	57	129
	군지역	527	4	180	171	205
	소계	364	91	267	420	318
총계	대도시	12,609	10,825	9,421	11,847	11,000
	중소도시	9,794	6,825	9,546	9,922	9,316
	군지역	11,288	19,617	9,873	12,649	11,495
	소계	11,738	10,534	9,619	11,987	10,848

1인당 세출 규모는 군지역의 평균이 가장 높은 11,495천원이고, 그 다음은 대도시 시설로 11,000천원이다. 중소도시 시설은 가장 낮은 9,316천원이다.

(3) 거주자 규모별 세출

시설규모별 세출은 111명 이상 대규모 시설이 가장 많은 1,352,924천원이다.

〈표 4-3-16〉 장애인시설 거주자 규모별 평균 세출 규모

(단위: 천원)

항 목		지체장애 시설	시각청각언어장애 시설	정신지체인 시설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전체평균
인건비	69명 이하	412,091	287,365	317,673	365,288	346,996
	70~110명	544,667	364,942	486,752	575,014	523,136
	111명 이상	798,919	631,440	748,762	1,125,670	829,402
	소계	528,990	364,029	517,729	552,749	517,085
판공비	69명 이하	3,406	2,927	4,844	5,810	4,734
	70~110명	4,661	1,434	3,178	2,251	3,063
	111명 이상	4,956	1,000	3,713	3,763	3,661
	소계	4,179	2,305	3,912	4,257	3,922
사무운영비	69명 이하	69,852	43,462	47,646	47,769	50,603
	70~110명	64,655	48,878	60,156	57,659	59,618
	111명 이상	108,135	63,008	81,525	138,572	95,787
	소계	73,709	48,000	63,109	64,851	63,998
시설비	69명 이하	61,403	77,410	93,394	58,070	72,329
	70~110명	167,895	38,216	58,221	139,565	107,626
	111명 이상	67,554	175,643	97,671	139,913	109,487
	소계	107,213	88,144	83,095	98,870	92,796
사업운영비	69명 이하	89,321	68,840	73,673	82,061	78,754
	70~110명	155,786	90,084	145,623	142,783	143,885
	111명 이상	232,325	171,391	225,840	348,739	249,838
	소계	139,886	91,348	148,379	143,315	139,978
교육비	69명 이하	1,654	2,821	1,647	1,801	1,869
	70~110명	384	1,452	1,292	1,460	1,177
	111명 이상	9,275	10,596	6,026	6,920	6,924
	소계	2,322	3,985	2,988	2,449	2,791
사업비	69명 이하	11,879	1,511	48,503	13,275	22,493
	70~110명	11,316	2,186	9,867	9,408	9,612
	111명 이상	17,264	14,839	15,130	558	12,107
	소계	12,493	4,057	24,500	10,014	15,750
기타	69명 이하	28,252	5,853	11,873	23,016	17,986
	70~110명	16,816	1,601	21,682	24,763	20,783
	111명 이상	20,259	1,405	30,914	112,694	45,717
	소계	22,175	4,271	21,489	37,079	25,279
총계	69명 이하	677,857	490,187	599,252	597,090	595,765
	70~110명	966,180	548,792	786,770	952,903	868,900
	111명 이상	1,258,687	1,069,321	1,209,580	1,876,828	1,352,924
	소계	890,966	606,140	865,201	913,585	861,601

그 다음이 중규모시설(70~110명)로 868,900천원이고, 가장 세출이 적은 시설은 69인 이하의 소규모시설로 595,765천원이다.

〈표 4-3-17〉 장애인시설 거주자 규모별 1인당 평균 세출 규모

(단위: 천원)

항 목	지체장애 시설	시각청각언어 장애시설	정신지체인 시설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전체평균	
인건비	69명 이하	8,461	7,105	6,607	8,168	7,578
	70~110명	5,872	4,194	5,240	6,600	5,790
	111명 이상	5,698	4,607	4,904	5,764	5,161
	소계	6,935	6,121	5,584	7,259	6,419
판공비	69명 이하	64	61	110	138	107
	70~110명	51	16	32	23	32
	111명 이상	40	8	25	25	25
	소계	55	43	56	81	63
사무운영비	69명 이하	1,440	1,180	1,031	1,082	1,136
	70~110명	680	589	641	650	649
	111명 이상	776	455	548	756	613
	소계	1,015	941	740	882	851
시설비	69명 이하	1,355	2,284	1,850	1,393	1,653
	70~110명	1,936	486	681	1,467	1,198
	111명 이상	399	1,144	644	820	693
	소계	1,449	1,749	1,058	1,333	1,279
사업운영비	69명 이하	1,813	1,682	1,549	1,844	1,724
	70~110명	1,705	1,040	1,540	1,639	1,583
	111명 이상	1,549	1,203	1,458	1,677	1,498
	소계	1,726	1,478	1,516	1,747	1,624
교육비	69명 이하	35	64	35	40	41
	70~110명	4	15	15	17	13
	111명 이상	80	88	41	53	51
	소계	29	60	30	34	34
사업비	69명 이하	223	38	892	382	470
	70~110명	113	29	110	115	108
	111명 이상	153	111	105	4	88
	소계	166	50	369	232	260
기타	69명 이하	633	136	370	506	432
	70~110명	173	17	229	294	230
	111명 이상	156	9	201	426	232
	소계	364	91	267	420	318
총계	69명 이하	14,024	12,550	12,443	13,554	13,141
	70~110명	10,535	6,385	8,488	10,804	9,603
	111명 이상	8,851	7,624	7,926	9,526	8,362
	소계	11,738	10,534	9,619	11,987	10,848

1인당 세출 규모에 있어서는 소규모 시설이 가장 높은 13,141천원이었고, 그 다음은 중규모시설로 9,603천원, 1인당 세출이 가장 낮은 시설은 대규모 시설로 8,362천원으로 조사되었다. 항목별로는 인건비, 사무운영비, 사업운영비, 사업비 등 많은 분야에서 소규모 시설이 1인당 단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대규모 시설은 인건비, 판공비, 사무운영비, 시설비, 사업운영비, 사업비 등 거의 모든 항목에서 1인당 단가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 4 절 모자복지시설

가. 세입

1) 세입 총괄

모자복지시설의 총세입은 42개소 시설 평균 238,185천원이다. 모자보호시설 23개소 평균 277,253천원, 모자자립시설 3개소 평균 9,077천원, 모자일시보호시설 8개소 평균 119,999천원, 미혼모시설 8개소 평균 329,970천원이다. 4개 유형의 모자복지시설 중 미혼모시설의 세입 평균이 가장 높다. 이는 미혼모 시설이 다른 시설에 비해 후원금, 이월금 등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는 모자복지시설의 세입을 항목별로 살펴보았다. 입소비용의 규모는 533천원이고, 모자보호시설은 854천원, 모자자립시설은 916천원이다. 모자일시보호시설과 미혼모시설은 입소비용이 없이 무료로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실비시설 수와 비용과는 다소 다른 결과이다. 앞에서는 모자복지시설의 경우 실비시설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세입에서는 4개소의 시설에서 실비로 입소비용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설당 사업수입 평균은 315천원이고, 모자보호시설은 478천원이었고, 미혼모시설은 281천원이었다. 과년도 수입 시설당 평균은 1,120천원으로 나타났다.

보조금 수입 중 경상보조금 수입을 구성하는 인건비, 생계비, 관리운영비는 국고, 지방비, 순수지방비로부터 지원되고 있다.

〈표 4-4-1〉 모자복지시설 종류별 평균 세입 규모

(단위: 천원, 개소)

항	목			모자보호 시설	모자자립 시설	모자일시 보호시설	미혼모 시설	합계	
입소비용수입	입소비용			854	916	0	0	533	
사업수입	사업수입			478	0	0	281	315	
과년도수입	과년도수입			2,045	0	0	0	1,120	
보조금수입	경 상 보조금 수 입	정부 보조	국 고	인 건 비	60,217	3,798	43,591	66,591	54,234
			생 계 비	59,106	184	8,015	24,155	38,508	
			관리운영비	23,604	738	7,372	29,934	20,085	
		지 방 비	인 건 비	27,191	1,628	2,340	34,464	22,017	
		생 계 비	18,678	79	1,452	10,157	12,445		
		관리운영비	12,896	316	1,044	13,914	9,934		
		순수 지방비 보조	인 건 비	6,005	0	4,851	11,472	6,397	
			생 계 비	6,208	0	1,427	1,091	3,879	
			관리운영비	3,630	0	471	6,482	3,312	
	자 본 보조금 수 입	정부 보조	국 고	8,864	0	15,830	875	8,036	
			지방비	8,342	0	4,500	875	5,592	
		순수지방비보조	4,354	0	0	0	2,384		
	기 타 보조금 수 입	정부 보조	국 고	2,944	0	4,500	1,696	2,794	
			지방비	2,599	0	4,500	2,588	2,773	
		순수지방비보조	704	100	0	3,346	1,030		
소계				245,344	6,842	99,892	207,638	193,421	
후원금 수입	후원금 수입			8,726	778	3,615	32,995	11,808	
	결연수원금 수입			2,307	0	506	3,808	2,085	
	소계			11,033	778	4,121	36,803	13,893	
차입금	금융기관차입금			300	0	0	0	164	
	기타차입금			1,495	0	1,415	0	1,088	
	소계			1,795	0	1,415	0	1,252	
전입금	법인전입금			11,536	33	7,489	4,581	16,472	
이월금	전년도이월금			2,830	495	5,575	36,995	9,694	
	이월사업비			0	0	809	0	153	
	소계			2,830	495	6,380	36,995	9,847	
잡수입	불용품매각대			3	0	0	0	1	
	기타예금이자수입			144	1	42	1,139	304	
	기타잡수입			1,189	12	660	1,305	1,026	
	소계			1,336	13	701	2,444	1,332	
총계				277,253 (23)	9,077 (3)	119,999 (8)	329,970 (8)	238,185 (42)	

인건비의 경우, 국고로부터의 시설당 평균 지원액은 54,234천원이고, 지방비 22,017천원, 순수지방비 6,397천원 등이다. 생계비는 시설당 평균 국고 지원액은 38,508천원, 지방비 12,445천원, 순수지방비 3,897천원이다. 관리운영비는 시설당 평균 국고 지원액은 20,085천원, 지방비 9,934천원, 순수지방비 3,312천원이다.

보조금 수입 중 자본보조금 수입은 시설당 평균 국고지원이 8,036천원, 지방비 5,592천원, 순수지방비 2,384천원이고, 기타 보조금 수입의 경우는 국고에서 2,794천원, 지방비에서 2,773천원, 순수지방비에서 1,030천원이 지원되고 있다.

보조금 수입 중 시설후원금은 모자복지시설당 평균 11,808천원이고, 결연후원금 시설당 평균은 2,085천원이었다. 후원금을 합하면 시설당 평균 13,893천원이 지원되고 있는 셈이 된다. 시설후원금은 미혼모시설이 다른 시설보다 더 많다. 다음 차입금 중 금융기관차입금은 시설당 평균액이 164천원으로 나타났고, 기타 차입금은 평균 1,088천원이었다. 합하면 시설당 평균 1,252천원인 것으로 집계 된다. 법인전입금은 시설당 평균 16,472천원이었다. 이월금은 시설당 평균 9,847천원이다. 잡수입은 시설당 평균 1,332천원으로 나타났다.

이번에는 시설의 세입을 전체 대비 비중으로 살펴본 결과, 세입의 비중이 가장 많은 것은 보조금으로 81.2%를 차지한다. 다음은 전입금으로 6.9%, 후원금 5.8%, 이월금 4.1%의 순이다. 나머지 항목은 매우 미미한 비중을 보이고 있다.

〈표 4-4-2〉 모자복지시설 항목별 평균 세입비율

(단위: 천원, %)

항 목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모자일시보호시설		미혼모시설		전체 평균	
	세입	비율	세입	비율	세입	비율	세입	비율	세입	비율
임소비용	854	0.3	916	10.1	0	0.0	0	0.0	533	0.2
사업수입	478	0.2	0	0.0	0	0.0	281	0.1	315	0.1
과년도수입	2,045	0.7	0	0.0	0	0.0	0	0.0	1,120	0.5
보조금	245,344	88.5	6,842	75.4	99,892	83.2	207,638	62.9	193,421	81.2
후원금	11,033	4.0	778	8.6	4,121	3.4	36,803	11.2	13,893	5.8
차입금	1,795	0.6	0	0.0	1,415	1.2	0	0.0	1,252	0.5
전입금	11,536	4.2	33	0.4	7,489	6.2	45,810	13.9	16,472	6.9
이월금	2,830	1.0	495	5.5	6,380	5.3	36,995	11.2	9,847	4.1
잡수입	1,336	0.5	13	0.1	701	0.6	2,444	0.7	1,332	0.6
계	277,253	100.0	9,077	100.0	119,999	100.0	329,970	100.0	238,185	100.0

시설별로 보면 미혼모 시설은 다른 시설에 비해서 보조금의 비율이 낮은 대신, 후원금(11.2%), 전입금(13.9%), 이월금(11.2%)등의 비율이 다른 시설에 비해서 높았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모자복지시설은 정부보조금에 의존해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항목으로부터의 수입은 매우 적은 비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모자복지시설의 세입을 시설당 평균값으로 살펴본 결과가 다음 표에 제시되어 있다. 표에 제시되었듯이, 정부보조금 수입은 모자복지시설 거주자 1인당 평균 3,561천원으로 가장 많았다. 시설별로는 미혼모시설에 대한 보조금이 6,400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모자보호시설 3,738천원, 모자일시보호시설 1,508천원, 모자자립시설 112천원의 순이었다.

보조금 다음으로 1인당 평균 세입이 많은 것으로 이월금 364천원, 전입금 357천원, 후원금 347천원 등의 순이었다.

〈표 4-4-3〉 모자복지시설 1인당 평균 세입규모

(단위 : 천원, 개소)

항 목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모자일시 보호시설	미혼모시설	전체 평균
입소비용	13	15	0	0	8
사업수입	10	0	0	2	6
과년도수입	34	0	0	0	19
보조금수입	3,738	112	1,508	6,400	3,561
후원금수입	179	17	164	1,136	347
차입금	30	0	7	0	18
전입금	199	1	99	1,201	357
이월금	44	10	606	1,172	364
잡수입	19	0	4	66	24
총계	4,266	155	2,387	9,978	4,703
시설수	23	3	8	8	42

다음에는 보조금 수입 중 인건비, 생계비, 관리운영비를 살펴보았더니 인건비

는 시설당 평균 82,648천원, 생계비 54,832천원, 관리운영비 33,331천원으로 파악되었다. 시설유형별로 보면 인건비는 미혼모시설이 가장 많았고, 생계비는 모자보호시설이 가장 많았다. 관리운영비도 미혼모시설이 가장 많았다. 미혼모시설은 다른 시설에 비해 출산과 관련된 인력과 시설이 필요하므로 다른 시설에 비해서 인건비와 관리운영비가 더 많이 소요된다고 추정할 수 있다.

〈표 4-4-4〉 모자복지시설종류별 평균 인건비·생계비·관리운영비 규모
(단위: 천원, 개소)

항 목		모자보호 시설	모자자립 시설	모자일시 보호시설	미혼모 시설	합계
인건비	소계	93,414	5,425	50,782	112,527	82,648
	정부보조 국고	60,217	3,798	43,591	66,591	54,234
	정부보조 지방비	27,191	1,628	2,340	34,464	22,017
	순수지방비	6,005	0	4,851	11,472	6,397
생계비	소계	83,993	262	10,893	35,402	54,832
	정부보조 국고	59,106	184	8,015	24,155	38,508
	정부보조 지방비	18,678	79	1,452	10,157	12,445
	순수지방비	6,208	0	1,427	1,091	3,879
관리 운영비	소계	40,127	1,054	8,887	50,331	33,331
	정부보조 국고	23,604	738	7,372	29,934	20,085
	정부보조 지방비	12,896	316	1,044	13,914	9,934
	순수지방비	3,630	0	471	6,482	3,312

2) 시설 소재지 규모별 세입

이번에는 모자복지시설의 세입을 시설이 소재한 지역별을 삼분하여 대도시(23개소), 중소도시(14개소), 군지역(5개소)을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참고로 지역별 및 거주자 규모별 모자복지시설의 분포를 표에 제시하였다. 모자보호시설의 경우 대도시에 가장 많은 47.8%이고 중소도시 34.8%, 군지역은 가장 적은

17.4%이다. 규모별로는 중규모인 40~100인시설이 가장 많은 82.6%이고, 40인 미만의 소규모 시설은 한 군데도 없었다. 100인 이상의 대규모시설은 17.4%이다. 모자보호시설의 거주자 평균인원은 68.2명으로 조사되었다.

모자자립시설은 대도시에 1개소 중소도시에 2개소이고, 규모는 40인 이하 1개소, 40~100인 시설 2개소이다. 군지역에는 모자자립시설이 없다. 모자자립시설의 거주자 평균인원은 45.3명으로 조사되었다.

모자일시보호시설의 경우도 군지역에는 전무하고 대도시에 대부분인 85.7%가 있다. 중소도시에 1군데만이 있다. 규모면으로는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 소규모시설 42.9%, 중규모시설 14.3%, 대규모시설 42.9%의 분포이다. 모자일시보호시설의 거주자 평균인원은 107.0명으로 조사되었다.

미혼모시설은 대도시에 5개소, 중소도시 2개소, 군지역 1개소로 총 8개소가 있다. 규모면으로는 소규모시설이 가장 많은 75.0%이고, 중규모시설과 대규모시설이 각 12.5%로 나타났다. 미혼모시설의 거주자 평균인원은 41.0명으로 조사되었다.

입소비용의 경우 대도시 1개 시설당 평균 282천원, 중소도시 평균 460천원, 군지역 1,895천원으로 군지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수입의 경우, 군지역의 경우 모자보호시설의 시설당 평균이 2,200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중소도시의 경우 사업수입은 0이었다. 대도시는 시설당 평균 사업수입이 98천원으로 파악되었다. 과년도 수입은 전체 여성 시설당 평균은 1,120천원이었고, 대도시에 있는 시설만이 2,045천원이었다. 즉 중소도시와 군지역에 소재한 시설에서는 과년도 수입이 없었다.

보조금 수입의 전체 평균은 193,421천원이었고, 대도시, 군지역, 중소도시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원금 수입은 전체 평균 13,893천원이었고, 군지역이 가장 많은 18,533천원, 대도시 17,361천원, 중소도시는 가장 적은 6,536천원으로 조사되었다.

입소비용과 사업수입, 후원금 수입은 군지역이 더 많았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는 대도시에 소재한 시설의 평균 세입이 더 많았다.

차입금은 중소도시가 평균 3,757천원이고, 전입금은 대도시 23,680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소도시 9,374천원, 군지역 3,187천원이었다. 이월금은 대도시 12,429천원, 중소도시 8,819천원, 군지역 564천원으로 집계되었고, 잠수입은 대도시 1,582천원, 중소도시 1,136천원, 군지역 727천원으로 파악되었다.

세입을 종합해서 평균을 살펴보았더니 대도시 시설당 평균이 269,892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군지역으로 224,171천원, 마지막이 중소도시로 190,953천원의 순이었다.

〈표 4-4-5〉 지역 및 거주자규모별 모자복지시설 분포

(단위: 명, 개소)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전체	평균인원
모자보호시설	40인 이하	0.0(0)	0.0(0)	0.0(0)	0.0(0)	68.2
	40~100인	34.8(8)	30.4(7)	17.4(4)	82.6(19)	
	100인 이상	13.0(3)	4.3(1)	0.0(0)	17.4(4)	
	소계	47.8(11)	34.8(8)	17.4(4)	100.0(23)	
모자자립시설	40인 이하	0.0(0)	33.3(1)	0.0(0)	33.3(1)	45.3
	40~100인	33.3(1)	33.3(1)	0.0(0)	66.7(2)	
	100인 이상	0.0(0)	0.0(0)	0.0(0)	0.0(0)	
	소계	33.3(1)	66.7(2)	0.0(0)	100.0(3)	
모자일시보호시설	40인 이하	42.9(3)	0.0(0)	0.0(0)	42.9(3)	107.0
	40~100인	13.3(1)	0.0(0)	0.0(0)	14.3(1)	
	100인 이상	28.6(2)	14.3(1)	0.0(0)	42.9(3)	
	소계	85.7(6)	14.3(1)	0.0(0)	100.0(7)	
미혼모시설	40인 이하	37.5(3)	25.0(2)	12.5(1)	75.0(6)	41.0
	40~100인	12.5(1)	0.0(0)	0.0(0)	12.5(1)	
	100인 이상	12.5(1)	0.0(0)	0.0(0)	12.5(1)	
	소계	62.5(5)	25.0(2)	12.5(1)	100.0(8)	

〈표 4-4-6〉 모자복지시설 지역별 평균 세입 규모

(단위: 천원)

항 목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모자일시 보호시설	미혼모시설	전체 평균
입소비용	대도시	590	0	0	282
	중소도시	461	1,374	0	460
	군지역	2,369	0	0	1,895
	소계	854	916	0	533
사업수입	대도시	0	0	0	450
	중소도시	0	0	0	0
	군지역	2,750	0	0	2,200
	소계	478	0	0	281
과년도수입	대도시	4,276	0	0	2,045
	중소도시	0	0	0	0
	군지역	0	0	0	0
	소계	2,045	0	0	1,120
보조금수입	대도시	279,381	1,829	97,815	245,129
	중소도시	22,061	9,348	106,124	127,283
	군지역	201,108	0	0	180,892
	소계	245,344	6,842	99,892	207,638
후원금수입	대도시	13,944	2,334	5,237	42,436
	중소도시	8,356	0	776	11,555
	군지역	8,383	0	0	59,134
	소계	11,033	778	4,121	36,803
차입금	대도시	0	0	0	0
	중소도시	5,161	0	5,658	0
	군지역	0	0	0	0
	소계	1,795	0	1,415	0
법인전입금	대도시	19,119	0	7,986	57,289
	중소도시	4,887	50	6,000	40,017
	군지역	3,984	0	0	0
	소계	11,536	30	7,489	45,810
이월금	대도시	2,285	1,152	7,279	43,185
	중소도시	4,642	167	3,685	40,017
	군지역	705	0	0	0
	소계	2,830	495	6,380	36,995
잡수입	대도시	1,155	16	913	3,637
	중소도시	1,803	11	68	663
	군지역	899	0	0	40
	소계	1,336	13	701	2,444
총계	대도시	320,751	5,331	119,228	392,125
	중소도시	245,970	10,950	122,310	219,534
	군지역	220,198	0	0	240,066
	소계	277,253	9,077	119,999	329,970

〈표 4-4-7〉 모자복지시설 지역별 1인당 평균 세입 규모

(단위: 천원)

항 목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모자일시 보호시설	미혼모시설	전체 평균
입소비용	대도시	9	0	0	4
	중소도시	5	22	0	6
	군지역	42	0	0	33
	소계	13	15	0	8
사업수입	대도시	0	0	0	4
	중소도시	0	0	0	0
	군지역	57	0	0	46
	소계	10	0	0	2
과년도수입	대도시	71	0	0	34
	중소도시	0	0	0	0
	군지역	0	0	0	0
	소계	34	0	0	19
보조금수입	대도시	3,964	41	1,834	7,202
	중소도시	3,272	148	531	3,978
	군지역	4,049	0	0	7,236
	소계	3,738	112	1,508	6,400
후원금수입	대도시	220	52	217	1200
	중소도시	129	0	4	361
	군지역	166	0	0	2,365
	소계	179	17	164	1,136
차입금	대도시	0	0	0	0
	중소도시	86	0	28	0
	군지역	0	0	0	0
	소계	30	0	7	0
법인전입금	대도시	321	0	122	1,422
	중소도시	87	1	30	1,251
	군지역	88	0	0	0
	소계	199	1	99	1,201
이월금	대도시	31	26	801	1,374
	중소도시	78	3	18	1,251
	군지역	13	0	0	0
	소계	44	10	606	1,201
잡수입	대도시	14	0	5	97
	중소도시	26	0	0	21
	군지역	18	0	0	2
	소계	19	0	4	66
총계	대도시	4,629	118	2,979	11,300
	중소도시	3,684	174	612	6,860
	군지역	4,433	0	0	9,603
	소계	4,266	155	2,387	9,978

지역별 1인당 세입 규모를 보면 군지역이 가장 많은 5,467천원, 그 다음은 대도시로 5,453천원이고, 중소도시 3,198천원으로 가장 낮은 규모를 보이고 있다. 항목별로는 군지역의 경우 정부보조금이 1인당 평균 4,686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후원금 수입으로 이것도 군지역이 가장 많은 606천원이었다. 시설별로는 미혼모시설의 1인당 평균 세입이 9,978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모자보호시설 4,266천원, 모자일시보호시설 2,387천원, 모자자립시설 155천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3) 거주자 규모별 세입

다음에는 시설의 규모별로 시설당 평균 세입 규모를 살펴보았다. 시설의 규모를 거주자의 분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더니, 100명 이상의 대규모 시설의 세입이 가장 많은 262,588천원이었고, 그 다음이 중규모 시설로 245,642천원이었다. 세입이 가장 적은 시설은 40인 이하의 소규모 시설로 199,074천원이었다. 즉, 시설의 세입은 시설의 규모에 비례함을 알 수 있다.

항목별로 세입규모를 보았더니 입소비용의 경우는 중규모 시설만이 이를 받고 있었고, 시설당 평균은 974천원이었다. 사업수입은 중규모시설이 478천원, 대규모시설이 315천원으로 중규모시설이 더 많았다. 과년도 수입은 중규모 시설만이 지적하였는데, 2,045천원으로 나타났다.

보조금 수입은 대규모시설이 가장 많은 234,518천원, 중규모시설 208,653천원, 40명 이하 121,400천원으로 파악되었다. 후원금은 소규모시설이 가장 많은 26,114천원이고, 대규모시설 12,297천원, 중규모시설 9,204천원의 순이다. 소규모 시설의 후원금이 가장 많은 것이 특이하다. 차입금은 대규모시설이 가장 많았고, 전입금은 중규모시설이, 이월금은 소규모시설이 잠수입은 대규모시설이 각각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상에서 볼 때, 소규모시설이 세입 규모가 반드시 적은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표 4-4-8〉 모자복지시설 거주자 규모별 평균 세입 규모

(단위: 천원)

항 목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일시보호시설	미혼모시설	전체 평균
입소비용	40명 이하	0	0	0	0
	41~100명	1,034	1,374	0	974
	101명 이상	0	0	0	0
	소계	854	916	0	533
사업수입	40명 이하	0	0	0	0
	41~100명	579	0	0	478
	101명 이상	0	0	2,248	250
	소계	478	0	0	281
과년도수입	40명 이하	0	0	0	0
	41~100명	2,476	0	0	2,045
	101명 이상	0	0	0	0
	소계	2,045	0	0	1,120
보조금	40명 이하	0	0	28,600	188,034
	41~100명	218,845	10,263	302,471	317,964
	101명 이상	371,215	0	102,716	214,938
	소계	245,344	6,842	99,892	207,638
후원금	40명 이하	0	0	7,187	39,929
	41~100명	9,587	1,167	5,500	21,688
	101명 이상	17,901	0	1,478	33,158
	소계	11,033	778	4,121	36,803
차입금	40명 이하	0	0	0	0
	41~100명	1,810	0	0	1,495
	101명 이상	1,725	0	2,829	0
	소계	1,795	0	1,415	0
전입금	40명 이하	0	0	3,284	25,878
	41~100명	13,037	50	10,523	190,099
	101명 이상	4,407	0	9,885	21,113
	소계	11,536	33	7,489	45,810
이월금	40명 이하	0	0	14,400	48,670
	41~100명	2,965	743	472	0
	101명 이상	2,190	0	1,842	3,943
	소계	2,830	495	6,380	36,995
잡수입	40명 이하	0	0	0	2,544
	41~100명	887	19	383	237
	101명 이상	3,467	0	1,307	4,046
	소계	1,336	13	701	2,444
총계	40명 이하	0	0	53,471	305,054
	41~100명	251,221	13,615	319,349	529,988
	101명 이상	400,904	0	120,057	279,447
	소계	277,253	9,077	119,999	329,970

〈표 4-4-9〉 모자복지시설 거주자 규모별 1인당 평균 세입 규모

(단위: 천원)

항 목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일시보호시설	미혼모시설	전체 평균
입소비용	40명 이하	0	0	0	0
	41~100명	16	22	0	0
	101명 이상	0	0	0	0
	소계	13	15	0	0
사업수입	40명 이하	0	0	0	0
	41~100명	12	0	0	10
	101명 이상	0	0	0	18
	소계	10	0	0	2
과년도수입	40명 이하	0	0	0	0
	41~100명	41	0	0	0
	101명 이상	0	0	0	0
	소계	34	0	0	0
보조금	40명 이하	0	0	1,477	7,069
	41~100명	3,900	169	5,707	7,066
	101명 이상	2,970	0	482	1,720
	소계	3,738	112	1,508	6,400
후원금	40명 이하	0	0	393	1,390
	41~100명	182	26	104	482
	101명 이상	163	0	7	265
	소계	179	17	164	1,136
차입금	40명 이하	0	0	0	0
	41~100명	33	0	0	0
	101명 이상	16	0	14	0
	소계	30	0	7	0
전입금	40명 이하	0	0	137	869
	41~100명	234	1	299	4,224
	101명 이상	34	0	45	169
	소계	199	1	99	1,201
이월금	40명 이하	0	0	1,600	1,557
	41~100명	50	15	9	0
	101명 이상	16	0	9	32
	소계	44	10	606	1,172
잡수입	40명 이하	0	0	0	82
	41~100명	16	0	7	5
	101명 이상	34	0	6	32
	소계	19	0	4	66
총계	40명 이하	0	0	3,607	10,968
	41~100명	4,484	223	6,025	11,778
	101명 이상	3,233	0	563	2,236
	소계	4,266	155	2,387	9,978

1인당 평균 세입은 소규모 시설이 가장 많은 7,663천원이고, 중규모(4,499천원), 대규모(1,935천원)시설의 순이다. 시설별로는 중규모 미혼모시설이 11,778천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소규모 미혼모 시설로 10,968천원이다. 정부보조조금 1인당 평균 세입은 중규모 및 소규모 미혼모시설이 가장 많은 7,000천여원이고, 다음은 중규모 모자일시보호시설로 5,707천원이다.

다음에는 정부보조금의 구성비를 살펴본 결과, 인건비는 중규모시설에서 총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많은 37.9%이고, 소규모시설 32.0%, 대규모시설 29.8%의 순이다. 생계비는 대규모시설이 가장 많은 31.8%이고, 중규모 23.8%, 소규모 10.5%의 순이다. 관리운영비는 거의 비슷한 추세를 보이는데, 특히 소규모시설에서 비중이 높았다. 보조금이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대규모시설이 가장 많은 76.1%이고, 중규모 74.5%, 소규모 59.1%의 순이다.

〈표 4-4-10〉 모자복지시설 거주자 규모별 평균 보조금 구성비

(단위: 천원)

항 목	총세입	경상보조금수입				
		인건비	생계비	관리운영비	계	
40명이하	금액	199,073	63,692	20,878	33,181	117,751
	비율	100.0	32.0	10.5	16.7	59.1
41~100명	금액	245,641	93,092	58,386	31,530	183,008
	비율	100.0	37.9	23.8	12.8	74.5
101명 이상	금액	262,588	78,135	83,480	38,098	199,713
	비율	100.0	29.8	31.8	14.5	76.1

나. 세출

1) 세출 총괄

모자복지시설의 전체 세출규모 233,591천원이다. 이는 세입 238,185천원보다 약간 적은 금액이다. 시설별로는 미혼모시설이 가장 많은 321,009천원이고, 그 다음이 모자보호시설로 274,851천원, 모자일시보호시설 111,744천원이었고, 모자자립시설은 가장 적은 9,077천원이다. 상세한 세출내용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항별 소계를 보면 인건비는 시설당 평균 84,845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판공비 1,070천원, 사무운영비 20,634천원, 시설비 30,124천원, 사업운영비 73,786천원, 교육비 5,361천원, 사업비 6,233천원 등이다. 기타의 비용은 11,539천원(전출금 583천원, 과년도지출 3,524천원, 부채상환금 1,480천원, 반납금 519천원, 잡지출 1,083천원, 결연후원금 856천원, 예비비 388천원, 이월금 3,105천원)이다.

〈표 4-4-11〉 모자복지시설 시설당 평균 세출규모

(단위: 천원)

항 목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모자일시보호시설		미혼모시설		전체 평균	
	세입	비율	세입	비율	세입	비율	세입	비율	세입	비율
인건비	95,638	34.8	5,425	59.8	40,726	36.4	127,715	39.8	84,845	36.3
판공비	1,287	0.5	0	0.0	153	0.1	1,903	0.6	1,070	0.5
사무운영비	24,281	8.8	1,502	16.5	8,764	7.8	29,192	9.1	20,634	8.8
시설비	34,354	12.5	478	5.3	35,787	32.0	23,419	7.3	30,124	12.9
사업운영비	94,644	34.4	1,558	17.2	18,873	16.9	95,819	29.8	73,786	31.6
교육비	9,299	3.4	0	0.0	202	0.2	1,210	0.4	5,361	2.3
사업비	7,180	2.6	0	0.0	517	0.5	11,534	3.6	6,233	2.7
기타	8,169	3.0	114	1.3	6,860	6.1	30,189	9.4	11,539	4.9
총계	274,851	100.0	9,077	100.0	111,744	100.0	321,009	100.0	233,591	100.0

세출의 비중별로 보면 인건비가 가장 많은 36.3%, 그 다음이 사업운영비로 31.6%이었다. 시설비는 12.9%, 사무운영비 8.8%, 기타 4.9%, 특별사업비 2.7%, 교육비 2.3%, 판공비 0.5%로 조사되었다. 인건비의 비중이 가장 많은 시설은 모자자립시설이었고, 생계비 등 직접비에 해당하는 사업운영비의 비중이 가장 많은 시설은 모자보호시설이었다. 시설비는 모자일시보호시설에서 가장 많았다.

다음에는 1인당 평균 세출규모 살펴보았더니, 전체 평균은 4,483천원이었고, 세출규모가 가장 많은 것을 미혼모시설로 9,700천원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모자보호시설로 4,230천원, 모자일시보호시설 1,617천원, 모자자립시설 155천원의 순이었다. 예상대로 미혼모시설은 거주자 1인당 인건비가 가장 많은 3,906천원이었고, 사업운영비도 가장 많은 2,845천원이다. 모자자립시설은 각 항목에서 1인당 지출이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표 4-4-12〉 모자복지시설 1인당 평균 세출규모

(단위: 천원)

항 목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일시보호시설	미혼모시설	전체 평균
인건비	1,542	86	541	3,906	1,698
관공비	22	0	0	52	22
사무운영비	364	25	179	893	405
시설비	542	11	393	703	506
사업운영비	1,375	32	316	2,845	1,357
교육비	121	0	2	35	73
사업비	131	0	7	373	144
기타	134	2	179	892	277
총계	4,230	155	1,617	9,700	4,483
시설수	23	3	8	8	42

인건비와 운영비(관공비와 운영비를 합한 것) 액수를 비교하였더니 전체적으로는 인건비 대 운영비 비율이 80대 20으로 나타났다. 모자일시보호시설은 인건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82대 18이고, 모자자립시설은 운영비의 비율이 다른 시설보다 약간 더 높아 인건비 대 운영비의 비율이 78 대 22이다.

〈표 4-4-13〉 모자복지시설 시설당 평균 인건비 대 운영비 비율

(단위: 천원, %, 개소)

항 목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모자일시보호시설		미혼모시설		합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인건비	95,638	79	5,425	78	40,726	82	127,715	80	84,845	80
운영비	25,567	21	1,502	22	8,780	18	31,095	20	21,704	20
합계	121,206 (23)	100	6,927 (3)	100	49,505 (8)	100	158,810 (8)	100	106,548 (42)	100

주: 운영비는 사회복지회계규칙의 관공비와 운영비를 합산한 것임.

2) 시설 소재지 규모별 세출

시설 소재지별로 세출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더니, 세출이 가장 많은 것은 대도시로 266,101천원이었고, 그 다음은 군지역으로 229,203천원이었다.

〈표 4-4-14〉 모자복지시설 지역별 평균 세출 규모

(단위: 천원)

항 목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모자일시 보호시설	미혼모시설	전체 평균
인건비	대도시	101,408	0	38,116	156,845	92,539
	중소도시	92,688	8,138	48,556	64,191	70,234
	군지역	85,671	0	0	109,116	90,360
	소계	95,638	5,425	40,726	127,715	84,845
관공비	대도시	1,388	0	21	2,788	1,275
	중소도시	970	0	0	485	624
	군지역	1,642	0	0	313	1,376
	소계	1,287	0	153	1,903	1,070
사무운영비	대도시	30,295	410	10,034	30,557	23,767
	중소도시	18,473	2,048	4,956	22,145	14,720
	군지역	19,356	0	0	36,460	22,777
	소계	24,281	1,502	8,764	29,192	20,634
시설비	대도시	35,991	1,435	34,025	23,432	31,245
	중소도시	33,356	0	41,072	31,699	29,456
	군지역	31,846	0	0	6,797	26,836
	소계	34,354	478	35,787	23,419	30,124
사업운영비	대도시	117,254	3,486	19,274	115,518	86,370
	중소도시	77,642	594	17,672	52,277	5,444
	군지역	66,471	0	0	84,404	70,058
	소계	94,644	1,558	18,873	95,819	73,786
교육비	대도시	13,452	0	125	1,936	6,887
	중소도시	5,434	0	433	0	3,167
	군지역	5,608	0	0	0	4,486
	소계	9,299	0	202	1,210	5,361
사업비	대도시	8,601	0	460	18,502	8,256
	중소도시	1,916	0	688	0	1,193
	군지역	13,799	0	0	0	11,039
	소계	7,180	0	517	11,534	6,233
기타	대도시	9,294	0	6,309	44,482	15,761
	중소도시	9,660	171	8,514	8,060	7,912
	군지역	2,095	0	0	2,977	2,271
	소계	8,169	114	6,860	30,189	11,539
총계	대도시	317,683	5,331	108,362	394,060	266,101
	중소도시	240,140	10,950	121,891	178,856	181,751
	군지역	226,487	0	0	240,067	229,203
	소계	274,851	9,077	111,744	321,009	233,591

중소도시 모자복지시설의 평균 세출은 181,751천원이다. 인건비, 사무운영비, 시설비, 사업운영비, 교육비 등 거의 모든 항목에서 대도시 세출이 가장 많다.

〈표 4-4-15〉 모자복지시설 지역별 1인당 평균 세출 규모

(단위: 천원)

항 목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모자일시 보호시설	미혼모시설	전체 평균
인건비	대도시	1,567	0	940	4,575	1,911
	중소도시	1,419	129	243	2,006	1,150
	군지역	1,718	0	0	4,365	2,247
	소계	1,542	86	541	3,906	1,698
판공비	대도시	22	0	0	75	27
	중소도시	14	0	0	15	10
	군지역	36	0	0	13	31
	소계	22	0	0	52	22
사무운영비	대도시	432	9	231	860	454
	중소도시	261	33	25	692	256
	군지역	384	0	0	1,458	599
	소계	364	25	179	892	405
시설비	대도시	525	32	455	674	518
	중소도시	509	0	205	991	462
	군지역	654	0	0	272	577
	소계	542	11	393	703	506
사업운영비	대도시	1,593	77	391	3,223	1,568
	중소도시	1,094	9	88	1,634	873
	군지역	1,334	0	0	3,376	1,742
	소계	1,375	32	316	2,845	1,357
교육비	대도시	145	0	2	57	82
	중소도시	93	0	2	0	53
	군지역	110	0	0	0	88
	소계	121	0	2	35	73
사업비	대도시	155	0	9	597	206
	중소도시	28	0	3	0	16
	군지역	275	0	0	0	220
	소계	131	0	7	373	144
기타	대도시	153	0	225	1,303	415
	중소도시	154	3	43	252	131
	군지역	39	0	0	119	55
	소계	134	2	179	892	277
총계	대도시	4,593	118	1,953	11,363	5,181
	중소도시	3,572	174	609	5,589	2,952
	군지역	4,549	0	0	9,603	5,560
	소계	4,230	155	1,617	9,700	4,483

그 다음은 군지역으로 판공비나 사업비에 있어서는 군지역의 세출이 가장 많았다. 중소도시의 세출액은 거의 모든 항목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군지역에는 모자보호시설 4개소와 미혼모시설이 1개소 있는데, 이러한 시설들이 대도시 및 중소도시에 소재한 모자자립시설이나 모자일시보호시설보다 세입과 세출이 많음을 알 수 있다.

1인당 세출 규모는 총계를 볼 때 군지역 시설의 평균이 가장 높은 5,560천원이었고, 그 다음은 대도시 시설로 5,181천원이었다. 중소도시 시설은 가장 낮은 2,952천원이었다. 인건비, 사무운영비, 시설비, 사업운영비 등 많은 항목에서 군지역 시설의 1인당 평균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거주자 규모별 세출

시설규모별 세출은 101명 이상의 대규모 시설이 가장 많은 259,463천원이고, 그 다음이 중규모 시설인 41~100명 규모의 시설로 244,422천원이었고, 가장 세출이 적은 시설은 40인 이하의 소규모 시설로 185,398천원이었다. 대규모시설은 시설비, 사업운영비, 교육비 등에 있어서 중소규모시설보다 지출이 더 많았다. 인건비는 대규모시설보다는 중규모 시설에서 더 많았는데, 그 이유는 중규모 시설은 미혼모시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미혼모 시설의 인력 기준이 다른 유형의 시설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특히 30이 이상의 미혼모 시설에는 다른 유형의 시설에는 없는 영양사, 간호사, 조리원 등이 추가로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의 지출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1인당 세출 규모에 있어서는 소규모 시설이 가장 높은 6,824천원이었고, 그 다음은 중규모시설로 4,474천원, 1인당 세출이 가장 낮은 시설은 대규모 시설로 1,906천원에 불과하다. 항목별로는 인건비, 사무운영비, 사업운영비, 사업비, 기타 등 많은 분야에서 소규모 시설이 1인당 단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대규모 시설은 인건비, 판공비, 사무운영비, 시설비, 사업운영비, 사업비, 기타 등 거의 모든 항목에서 1인당 단가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4-16〉 모자복지시설 거주자 규모별 평균 세출 규모

(단위: 천원)

항 목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모자일시 보호시설	미혼모시설	전체 평균
인건비	40명 이하	0	0	9,483	111,276	69,610
	41~100명	94,033	8,138	122,740	222,695	93,406
	101명 이상	103,262	0	43,655	131,373	79,893
	소계	95,638	5,425	40,726	127,715	84,845
판공비	40명 이하	0	0	0	1,059	635
	41~100명	1,283	0	123	7,200	1,378
	101명 이상	1,303	0	0	1,669	764
	소계	1,287	0	15	1,903	1,070
사무운영비	40명 이하	0	0	4,350	26,665	17,304
	41~100명	21,159	2,253	25,540	55,639	21,205
	101명 이상	39,109	0	7,881	17,909	22,874
	소계	24,281	1,502	8,764	29,192	20,634
시설비	40명 이하	0	0	1,959	21,081	13,236
	41~100명	32,033	718	110,869	40,033	33,086
	101명 이상	45,375	0	42,387	20,835	41,320
	소계	34,354	478	35,787	23,419	30,124
사업운영비	40명 이하	0	0	6,552	82,510	51,472
	41~100명	78,335	2,337	51,442	183,745	75,141
	101명 이상	172,111	0	19,972	87,742	95,119
	소계	94,644	1,558	18,873	95,819	73,786
교육비	40명 이하	0	0	57	1,184	728
	41~100명	6,407	0	80	0	5,296
	101명 이상	23,039	0	341	2,574	10,677
	소계	9,299	0	202	1,210	5,361
사업비	40명 이하	0	0	0	15,418	9,251
	41~100명	7,692	0	2,760	0	6,474
	101명 이상	4,746	0	344	0	2,262
	소계	7,180	0	517	11,564	6,233
기타	40명 이하	0	0	9,835	33,686	23,162
	41~100명	8,804	171	5,739	20,676	8,436
	101명 이상	5,156	0	4,909	18,716	6,553
	소계	8,169	114	6,860	30,189	11,539
총계	40명 이하	0	0	32,236	292,878	185,398
	41~100명	249,747	13,615	319,293	529,988	244,422
	101명 이상	394,100	0	119,488	280,817	259,463
	소계	274,851	9,077	111,744	321,009	233,591

〈표 4-4-17〉 모자복지시설 거주자 규모별 1인당 평균 세출 규모

(단위: 천원)

항 목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모자일시 보호시설	미혼모시설	전체 평균
인건비	40명 이하	0	0	395	4,208	2,644
	41~100명	1,684	129	2,316	4,949	1,719
	101명 이상	865	0	206	1,051	593
	소계	1,542	86	541	3,906	1,698
판공비	40명 이하	0	0	0	41	25
	41~100명	24	0	2	160	27
	101명 이상	11	0	0	13	6
	소계	22	0	0	52	22
사무운영비	40명 이하	0	0	270	960	657
	41~100명	376	38	482	1,236	388
	101명 이상	309	0	36	143	169
	소계	364	25	179	893	405
시설비	40명 이하	0	0	85	761	482
	41~100명	586	16	2,092	890	615
	101명 이상	330	0	198	167	253
	소계	542	11	393	703	506
사업운영비	40명 이하	0	0	394	2,995	1,915
	41~100명	1,366	48	971	4,083	1,353
	101명 이상	1,414	0	938	702	748
	소계	1,375	32	316	2,845	1,357
교육비	40명 이하	0	0	2	44	27
	41~100명	114	0	2	0	94
	101명 이상	154	0	2	21	72
	소계	121	0	2	35	73
사업비	40명 이하	0	0	0	497	298
	41~100명	152	0	52	0	128
	101명 이상	35	0	2	0	16
	소계	131	0	7	373	144
기타	40명 이하	0	0	410	1,088	776
	41~100명	152	3	108	459	150
	101명 이상	47	0	24	150	48
	소계	134	2	179	892	277
총계	40명 이하	0	0	1,556	10,596	6,824
	41~100명	4,454	233	6,024	11,778	4,474
	101명 이상	3,166	0	560	2,247	1,906
	소계	4,230	155	1,617	9,700	4,483

제 5 절 정신요양시설

가. 세입

1) 세입 총괄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 55개의 정신요양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응답이 미비한 1개의 시설을 뺀 54개 시설을 대상으로 한 총 세입은 시설 평균 935,556천원이다. 정신요양시설이 45개소 시설 평균 1,074,334천원이고,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이 9개소 시설 평균 241,668천원으로, 정신요양시설이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에 비해 시설 당 세입평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보조금 수입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입소하고 있는 거주자 수의 시설 평균이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230명,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32명으로 입소인원에 따른 예산지원방식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세입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입소 비용으로 평균 84,432천원을 받고 있고,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은 평균 18,833천원이다. 시설 당 사업수입 평균은 1,804천원이고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이 평균 8,469천원으로 정신요양시설 평균 471천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이 거주자 외에 일일 프로그램 이용자로부터 비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보조금 수입은 경상보조금, 자본보조금, 기타보조금, 후원금 수입으로 분류하였고 후원금을 뺀 나머지 보조금을 다시 정부로부터 지급되는 국고, 지방비와 순수지방비로 살펴보았다. 경상보조금 수입을 구성하는 인건비, 생계비, 관리운영비를 살펴보면, 인건비의 경우, 국고로부터 시설 당 평균 189,461천원이고, 지방비는 평균 82,617천원, 순수지방비는 평균 24,458천원이다. 생계비의 경우 평균 170,813천원, 지방비는 평균 44,976천원 그리고 순수지방비는 평균 15,236천원이었다. 관리운영비를 보면, 국고로부터의 시설 당 평균 지원액이 78,562천원, 지방비는 41,720천원, 순수지방비는 17,983천원이다.

〈표 4-5-1〉 시설 종류별 평균 세입 규모

(단위: 천원, 개소)

관		과 목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합계	
관	항	목						
입소비용수입	입소비용수입	입소비용			84,432	18,833	73,499	
사업수입	사업수입	사업수입			471	8,469	1,804	
과년도수입	과년도수입	과년도수입			11,547	0	9,623	
보조금수입	보조금수입	경 상 보조금 수 입	정 부 보 조	국 고	인 건 비	214,047	66,529	189,461
					생 계 비	203,114	9,307	170,813
					관리운영비	91,270	15,025	78,562
				지 방 비	인 건 비	90,232	44,542	82,617
					생 계 비	53,180	3,960	44,976
					관리운영비	43,866	30,992	41,720
			순수 지방비 보 조		인 건 비	28,831	2,595	24,458
					생 계 비	18,017	1,330	15,236
					관리운영비	21,511	339	17,983
			자 본 보 조금 수 입	정 부 보 조	국 고	57,079	0	47,566
					지방비	57,134	0	47,612
					순수지방비보조	6,513	0	5,428
			기 타 보 조금 수 입	정 부 보 조	국 고	5,034	1,667	4,473
					지방비	3,378	278	2,862
					순수지방비보조	10,041	833	8,507
			소 계			903,247	177,397	782,272
		후원금수입	후원금 수입			25,141	8,926	22,439
			결연후원금 수입			316	0	263
			소 계			25,457	8,926	22,702
	기타수입	차입금	금융기관차입금			0	0	0
			기타차입금			1,614	1,833	1,651
소 계			1,614	1,833	1,651			
전입금		법인전입금			9,263	14,487	10,134	
이월금		전년도이월금			8,875	7,786	8,694	
		이월사업비			9,693	181	8,108	
		소 계			18,568	7,967	16,801	
잡수입		불용품매각대			146	0	122	
		기타예금이자수입			13,741	191	11,483	
		기타잡수입			5,846	3,564	5,466	
		소 계			19,733	3,755	17,070	
총 계					1,074,334(45)	241,668(9)	935,556(54)	

보조금 수입 중 정신요양시설의 자본보조금 수입은 국고로부터 평균 47,566천원을 지원 받고 있으며 지방비는 평균 47,612천원, 순수지방비는 평균 5,428천원을 받고 있는 반면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에는 자본보조금 수입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타보조금 수입의 경우, 국고로부터 평균 4,473천원, 지방비는 평균 2,862천원이고, 순수지방비는 평균 8,507천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후원금 수입을 보면, 시설 후원금으로 평균 22,439천원이 있으며, 결연후원금으로 평균 263천원의 후원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타 수입을 보면, 어떠한 시설에서도 금융기관에 의한 차입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차입금의 평균은 9,904천원이다. 법인전입금은 평균 10,134천원, 이월금은 평균 16,801천원이며 잡수입은 평균 17,070천원으로 나타났다.

시설 종류별 세입항목을 비교해보면, <표 4-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신요양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모두 보조금 수입이 각각 84.1%와 73.4%로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두 시설의 운영에 있어 모두 정부 보조금 수입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5-2> 정신요양시설의 세입 항목별 평균세입의 구성비

(단위: 천원, %)

항 목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지시설	합계
입소비용	84,432(7.9)	18,833(7.8)	73,499(7.9)
사업수입	471(0.04)	8,469(3.5)	1,804(0.2)
과년도수입	11,547(1.1)	0(0.0)	9,623(1.0)
보조금수입	903,247(84.1)	177,392(73.4)	782,272(83.6)
후원금수입	25,457(2.4)	8,926(3.7)	22,702(2.4)
차입금	1,614(0.2)	1,833(0.8)	1,651(0.2)
전입금	9,263(0.9)	14,487(6.0)	10,134(1.1)
이월금	18,568(1.7)	7,967(3.3)	16,801(1.8)
잡수입	19,733(1.8)	3,755(1.6)	17,070(1.8)
총계	1,074,334(100.0)	241,668(100.0)	935,556(100.0)
시설수	45	9	54

두 시설의 세입 구성비는 비슷한 분포를 보이거나 사업 수입에 있어 사회복지 시설이 3.5%로 정신요양시설의 0.04%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과년도수입에 있어서는 사회복지 시설의 수입이 전혀 없었으며 전입금에 의한 수입에 있어 사회복지 시설이 6.0%로 정신요양시설 0.9%에 비해 다소 높게 조사되었다. 그러나 보조금 수입에 비해 법인 전입금과 외부로부터의 후원금 등을 통합 수입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시설종류별 세입항목을 1인당 평균으로 살펴본 결과 <표 4-5-3>과 같다. 항목별 평균세입에서 나타난 규모와는 다르게 정신요양시설에 비해 사회복지시설의 1인당 평균 세입규모가 훨씬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정신요양시설에 비해 시설당 사회복지시설의 거주자 규모가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1인당 세입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보조금 수입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의 세입 규모가 정신요양시설에 비해 2배에 이르고 있는 것은 시설에 따른 정부의 지원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반면 <표 4-5-2>의 시설간 평균세입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정신요양시설은 보조금 수입이 84.1%, 입소비용이 7.9%, 후원금 수입이 2.4% 등의 순이고, 사회복지시설은 보조금 수입이 73.4%, 입소비 수입이 7.8%, 후원금 수입이 3.7%인 것에 비해 <표 4-5-3>의 1인당 평균세입의 구성비의 결과는 정신요양시설에서 보조금 수입이 82.1%, 입소비용이 7.5%으로 구성비가 낮게 나타남에 비해 후원금이 2.7%, 사업수입이 0.04%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보조금 수입이 68.9%, 입소비 수입이 7.2%로 낮아졌고, 사업수입이 후원금수입이 5.6%, 사업수입이 4.2%로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실제 시설 운영에 있어서 거주자 규모를 고려했을 시에 정부지원에 의한 보조금 수입의 비율이 낮아지며 이를 사업수입이나 후원금 등에서 충당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1인당 평균 세입규모의 결과는 시설의 실제 정부보조금 수입정도를 나타내며 또한 시설간 정부지원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여줌으로써 시설간 형평성 있는 지원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표 4-5-3> 정신요양시설 1인당 평균 세입규모

(단위: 천원, %)

항 목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지시설	합계
입소비용	377(7.5)	888(7.2)	462(7.4)
사업수입	2(0.0)	525(4.2)	89(1.4)
과년도수입	62(1.2)	0(0.0)	52(0.8)
보조금수입	4,140(82.1)	8,513(68.9)	4,868(77.7)
후원금수입	137(2.7)	693(5.6)	228(3.6)
차입금	16(0.3)	47(0.4)	21(0.4)
전입금	63(1.3)	820(6.6)	189(3.0)
이월금	133(2.6)	760(6.1)	237(3.8)
잡수입	116(2.3)	128(1.0)	118(1.9)
총계	5,046(100.0)	12,364(100.0)	6,265(100.0)
시설수	45	9	54

다음의 <표 4-5-4>는 경상보조금 수입을 인건비와 생계비 그리고 관리운영비로 살펴본 것이다. 경상보조금 세입의 전체 평균은 665,826천원이고 그 중 인건비 세입이 44.5%인 296,536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생계비 세입이 34.7%로 231,025천원, 관리운영비 세입이 20.8%로 138,265천원이다. 그러나 정신요양시설의 세입 구성비가 고른 분포를 보인 반면에 사회복지시설의 경상보조금 세입 구성은 인건비 세입이 65.1%, 관리운영비 세입이 26.5%, 생계비 세입이 8.4%로 경상보조금 수입의 대부분이 인건비와 관리운영비에 관한 지원이고 생계비에 대한 지원이 적게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신요양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의 경상보조금 세입을 비교해 보면, 인건비세입에 있어서 정신요양시설이 333,110천원으로 사회복지시설의 113,666천원에 비해 높았고, 생계비와 관리운영비에 있어서는 정신요양시설이 각각 274,311천원, 156,647천원으로 사회복지시설의 14,597천원, 46,356천원으로 경상보조금 세입의 항목에 따른 세입 규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생계비와 관리운영비의 지원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4-5-4〉 인건비·생계비·관리운영비 규모

(단위: 천원, %)

항 목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합계
인건비	소계	333,110	113,666	296,536
	정부보조 국고	214,047	66,529	189,461
	정부보조 지방비	90,232	44,542	82,617
	순수 지방비	28,831	2,595	24,458
생계비	소계	274,311	14,597	231,025
	정부보조 국고	203,114	9,307	170,813
	정부보조 지방비	53,180	3,960	44,976
	순수 지방비	18,017	1,330	15,236
관리 운영비	소계	156,647	46,356	138,265
	정부보조 국고	91,270	15,025	78,562
	정부보조 지방비	43,866	30,992	41,720
	순수 지방비	21,511	339	17,983

2) 시설 소재지 규모별 세입

조사된 46개 시설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표 4-5-5>와 같다. 정신요양시설이 46개 시설인데 대부분의 시설이 군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를 시설의 규모별로 보면 대도시에는 대규모시설이, 중소도시에는 중규모시설이 군지역에는 중규모 및 대규모시설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4-5-5〉 지역별 정신요양시설 규모별 분포

(단위: %, 개소)

항 목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합계
130명 이하	22.2(2)	12.5(1)	13.8(4)	15.2(7)
131-230명	33.3(3)	62.5(5)	44.8(13)	45.7(21)
231명 이상	44.4(4)	25.0(2)	41.4(12)	39.1(18)
전체	100.0(9)	100.0(8)	100.0(29)	100.0(46)

주: 빈도가 5 이하의 셀이 20% 이상이어서 통계치는 제시하지 않았음.

다음은 세입을 시설이 소재 한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대도시에 소재 한 시설은 총 9개 시설로 총 세입 평균이 가장 많은 1,205,230천원이었고, 다음이 군 지역이 28개 시설로 1,053,776천원, 중소도시가 8개 시설로 999,029천원을 나타냈다. 입소비용에 의한 세입은 대도시가 104,274천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군 지역이 80,066천원, 중소도시가 77,394천원이다. 대도시의 경우 사업수입이 전혀 없었으며 군 지역은 669천원으로 중소도시 307천원에 비해 높았으며 보조금 수입에 있어서 대도시가 가장 많은 996,559천원이었고 군 지역이 903,247천원, 중소도시가 761,881천원이다. 후원금 수입으로는 군지역이 가장 많은 27,878천원이고 대도시가 2.2천원, 중소도시가 15,418천원을 나타냈으며 잡수입의 경우 중소도시가 77,757천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군 지역 8,222천원, 대도시가 3,968천원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지역별 세입구성비로 살펴보면, 대도시가 입소비용에 의한 세입이 8.7%로 가장 높았으며, 중소도시가 7.7%, 군 지역이 7.6%였으며, 보조금수입의 경우 군 지역에서 세입비율이 가장 높은 86.7%였고 대도시가 82.7%, 중소도시가 76.3%순이다. 후원금 수입은 군 지역이 2.6%, 대도시가 2.2%, 중소도시가 1.6%였고, 잡수입의 경우 중소도시가 가장 높은 7.8%, 군 지역이 0.8%, 대도시가 0.3%를 나타냈다.

따라서 정신요양시설의 평균세입에 있어 대도시가 입소비용에 의한 세입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보조금 수입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한 중소도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 대부분의 항목에서 세입규모가 가장 적었으며 이를 잡수입에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총 평균세입에서 군 지역이 가장 많은 423,138천원이고, 대도시가 194,515천원, 중소도시가 161,643천원의 순이다. 입소비용에 있어서, 군지역이 가장 많은 49,325천원이고, 대도시가 10,433천원, 중소도시가 가장 낮은 8,256천원으로 조사되었다. 사업수입에 있어서는 대도시만이 평균 12,704천원의 세입이 있었으며, 과년도 수입은 세 지역의 시설 모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 수입은 군지역이 가장 많은 320,216천원이고, 다음이 중소도시로 140,037천원, 대도시가 136,018천원이었다. 후원금 수입은 중소도시가 가장 많은 11,630천원이었고, 대도시가 9,710천원, 군지역이 5,220천원이고, 법인전입

금의 경우 중소도시에서는 없었으며 군지역이 27,740천원, 대도시가 12,484천원이다. 이월금의 경우는 대도시가 10,985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군역이 2,083천원, 중소도시가 1,625천원을 나타냈고, 잡수입의 경우 군지역이 가장 많은 10,305천원, 대도시가 2,182천원, 중소도시가 95천원으로 조사되었다.

〈표 4-5-6〉 정신요양시설 지역규모별 평균 세입규모

(단위 : 천원, %)

항 목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합계	
정신 요양 시설	소계	1,205,230(100.0)	999,029(100.0)	1,053,776(100.0)	1,074,334(100.0)
	입소비용	104,274(8.7)	77,394(7.7)	80,066(7.6)	84,432(7.8)
	사업수입	0(0.0)	307(0.0)	669(0.1)	471(0.0)
	과년도수입	27,933(2.3)	26,704(2.7)	1,950(0.2)	11,547(1.1)
	보조금수입	996,559(82.7)	761,881(76.3)	913,645(86.7)	903,247(84.1)
	후원금수입	26,849(2.2)	15,418(1.6)	27,878(2.6)	25,457(2.4)
	차입금	3,141(0.3)	213(0.0)	1,524(0.1)	1,614(0.2)
	전입금	24,526(2.0)	3,935(0.4)	5,880(0.6)	9,263(0.9)
	이월금	17,981(1.5)	35,421(3.5)	13,942(1.3)	18,568(1.7)
	잡수입	3,968(0.3)	77,757(7.8)	8,222(0.8)	19,733(1.8)
사회 복귀 시설	소계	194,515(100.0)	161,643(100.0)	423,138(100.0)	241,668(100.0)
	입소비용	10,433(5.4)	8,256(5.1)	49,325(11.7)	18,833(7.8)
	사업수입	12,704(6.5)	0(0.0)	0(0.0)	8,469(3.5)
	과년도수입	0(0.0)	0(0.0)	0(0.0)	0(0.0)
	보조금수입	136,018(70.0)	140,037(86.6)	320,216(75.7)	177,397(73.4)
	후원금수입	9,710(5.0)	11,630(7.2)	5,220(1.2)	8,926(3.7)
	차입금	0(0.0)	0(0.0)	8,250(1.9)	1,833(0.8)
	전입금	12,484(6.4)	0(0.0)	27,740(6.6)	14,487(6.0)
	이월금	10,985(5.6)	1,625(1.0)	2,083(0.5)	7,967(3.3)
	잡수입	2,182(1.1)	95(0.1)	10,305(2.4)	3,755(1.5)
총계	800,944	905,986	1,011,733	935,556	

이를 지역별 세입구성비로 살펴보면, 군 지역이 입소비용에 의한 세입이 가장 많았으며 중소도시가 보조금 수입에 의한 세입이 가장 높은 86.6%, 군지역

이 75.7%, 대도시가 70.0%순이다. 후원금 수입은 중소도시가 가장 높은 7.2%, 대도시가 5.0%, 군지역이 1.2%이고, 잡수입은 군지역 2.4%, 대도시가 1.1%, 중소도시가 0.1%를 나타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중소도시가 보조금과 후원금 수입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법인전입금에 의한 세입이 없었고, 대도시의 경우 보조금 수입비율은 가장 낮았으나 다른 두 지역에 비해 사업수입에 의한 세입비중이 높았다.

다음의 <표 4-5-7>은 지역별 세입규모를 1인당 평균으로 살펴본 것이다.

<표 4-5-7> 정신요양시설의 지역 규모별 1인당 평균 세입규모

(단위: 천원, %)

항 목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합계	
정신 요양 시설	소계	5,577(100.0)	5,322(100.0)	4,796(100.0)	5,046(100.0)
	입소비용	380(6.8)	374(7.0)	377(7.9)	377(7.5)
	사업수입	0(0.0)	2(0.0)	3(0.1)	2(0.0)
	과년도수입	117(2.1)	178(3.4)	12(0.2)	62(1.2)
	보조금수입	4,539(81.4)	3,892(73.1)	4,082(85.1)	4,140(82.1)
	후원금수입	133(2.4)	96(1.8)	150(3.1)	137(2.7)
	차입금	42(0.7)	1(0.0)	12(0.2)	16(0.3)
	전입금	211(3.8)	18(0.4)	28(0.6)	63(1.3)
	이월금	132(2.4)	229(4.3)	105(2.2)	133(2.6)
	잡수입	23(0.4)	531(10.0)	27(0.6)	116(2.3)
사회 복귀 시설	소계	14,244(100.0)	5,574(100.0)	10,118(100.0)	12,364(100.0)
	입소비용	909(6.4)	285(5.1)	1,125(11.1)	888(7.2)
	사업수입	787(5.5)	0(0.0)	0(0.0)	525(4.2)
	과년도수입	0(0.0)	0(0.0)	0(0.0)	0(0.0)
	보조금수입	9,407(66.0)	4,829(86.6)	7,673(75.8)	8,513(68.9)
	후원금수입	915(6.4)	401(7.2)	127(1.3)	683(5.5)
	차입금	0(0.0)	0(0.0)	212(2.1)	47(0.4)
	전입금	999(7.0)	0(0.0)	693(6.9)	820(6.6)
	이월금	1,116(7.9)	56(1.0)	45(0.4)	760(6.2)
	잡수입	111(0.8)	3(0.1)	244(2.4)	128(1.0)
총계	9,044	5,350	5,151	6,265	

3) 거주자 규모별 세입

본 조사에 응답한 54개 정신요양시설의 2001년 현재 거주자 수는 10,719명으로 나타났다. 이를 시설별로 보면, 정신요양시설의 거주자가 10,435명으로 전체 시설의 97%를 차지하였고 나머지 3%가 사회복지시설의 거주자 284명이었다. 각 시설 종류별로 평균 거주자 수를 보면 정신요양시설이 231.9명이고 사회복지시설이 31.6명으로 시설간 평균 거주자 수의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 4-5-8〉 정신요양시설 종류별 평균 거주자 수(2001년말 현재)

(단위: 명, 개소)

구분		정신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전체
거주자 수	전체	10,435	284	10,719
	최대	569	50	569
	최소	48	8	8
시설 수		45	9	54
평균 거주자 수		231.9	31.6	198.5

다음 <표 4-5-9>는 각 시설 종류별로 거주자 수 분포를 분석한 결과인데, 소규모 시설로 분류한 130명 이하 시설이 29.6%, 중규모시설로 분류한 131명 이상 230명 이하 시설이 38.9% 그리고 대규모 시설로 분류한 231명 이상 시설이 31.5%를 차지하고 있다.

〈표 4-5-9〉 거주자 규모별 정신요양시설 분포

(단위: %, 개소)

시설 종류	130명 이하	131~230명	231명 이상	계
정신요양시설	15.6(7)	46.7(21)	37.7(17)	100.0(45)
사회복지시설	100.0(9)	0.0(0)	0.0(0)	100.0(9)
계	29.6(16)	38.9(21)	31.5(17)	100.0(54)

주: 1) 본 연구에서 실시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조사」 결과, 2002

2) () 안은 시설 수임.

특히 정신요양시설과 사회복지시설 간의 거주자 규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최대 거주자 수가 50명이고 최소 거주자 수가 8명인 것에 비해 정신요양시설의 최대 거주자 수는 569명이고 최소 거주자 수가 50명이다. 이는 사회복지시설의 최대 거주자 인원이 정신요양시설의 최소 거주자 인원과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시설의 규모를 130명 이하, 131명에서 230명 이하, 231명 이상으로 분류한 시설 규모별 평균 세입 정도는 나타낸 것이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조사된 총 9개 시설의 거주자 규모가 50명을 넘지 않고 정신요양시설과 차이가 많아 거주자 규모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정신요양시설의 거주자 규모별 평균 세입은 시설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231명의 대규모 시설이 가장 높은 시설평균 1,423,811천원이고, 다음이 131명에서 230명 정도의 중규모 시설이 962,284천원, 소규모 시설로 분류한 130명 이하의 시설평균이 561,754천원이다. 입소비용의 평균세입은 231명 이상의 대규모 시설이 107,386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131~230명 시설이 86,814천원, 130명 이하 시설이 21,544천원으로 나타났다. 사업수입과 과년도수입은 231명 이상의 시설이 각각 754천원, 17,036천원으로 가장 높고, 보조금 수입에 있어서도 231명 이상의 시설이 1,240,459천원으로 가장 높고, 131~230명 시설이 780,969천원, 130명 이하 시설이 451,140천원이다. 차입금과 전입금 그리고 이월금에 있어서는 130명 이하의 시설이 가장 높은 8,324천원, 21,195천원 그리고 29,069천원을 나타냈고 잡수입에 있어서는 131~230명 시설이 31,223천원으로 가장 높았다.

거주자 규모별 세입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131~230명 시설의 입소비용 비율이 9.0%로 가장 높았고 보조금 수입에 있어서는 231명 이상 시설이 87.1%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반면, 130명 이하 시설에서 차입금과 법인 전입금 그리고 이월금 세입 비율이 다른 규모의 시설들에 비해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낮은 보조금과 후원금 등의 세입을 위의 세 항목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4-5-10〉 정신요양시설 거주자 규모별 평균 세입 규모

(단위: 천원, %)

항 목	130명 이하	131~230명	231명 이상	합계	
정신 요양 시설	소계	561,754(100.0)	962,283(100.0)	1,423,811(100.0)	1,074,334(100.0)
	입소비용	21,544(3.8)	86,814(9.0)	107,386(7.6)	84,432(7.8)
	사업수입	158(0.0)	347(0.0)	754(0.1)	471(0.0)
	과년도수입	3,702(0.7)	9,719(1.0)	17,036(1.2)	11,547(1.1)
	보조금수입	451,140(80.3)	780,969(81.2)	1,240,459(87.1)	903,247(84.1)
	후원금수입	24,096(4.3)	25,522(2.7)	25,937(1.8)	25,457(2.4)
	차입금	8,324(1.5)	304(0.0)	471(0.0)	1,614(0.2)
	전입금	21,195(3.8)	2,325(0.2)	12,920(0.9)	9,263(0.9)
	이월금	29,069(5.2)	25,061(2.6)	6,224(0.4)	18,568(1.7)
	잡수입	2,527(0.4)	31,223(3.3)	12,624(0.9)	19,733(1.8)
사회 복귀 시설	소계	241,668(100.0)	0(0.0)	0(0.0)	241,668(100.0)
	입소비용	18,833(7.8)	0(0.0)	0(0.0)	18,833(7.8)
	사업수입	8,469(3.5)	0(0.0)	0(0.0)	8,469(3.5)
	과년도수입	0(0.0)	0(0.0)	0(0.0)	0(0.0)
	보조금수입	177,397(73.4)	0(0.0)	0(0.0)	177,397(73.4)
	후원금수입	8,926(3.7)	0(0.0)	0(0.0)	8,926(3.7)
	차입금	1,833(0.7)	0(0.0)	0(0.0)	1,833(0.7)
	전입금	14,487(6.0)	0(0.0)	0(0.0)	14,487(6.0)
	이월금	7,967(3.3)	0(0.0)	0(0.0)	7,967(3.3)
	잡수입	3,755(1.6)	0(0.0)	0(0.0)	3,755(1.6)
총계	381,706	962,283	1,423,811	935,556	

주: 본 연구에서 실시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조사」 결과, 2002

다음은 거주자 규모에 대한 1인당 세입평균을 살펴본 것이다. 정신요양시설의 1인당 총 세입 평균은 130명 이하 시설이 가장 높은 6,029천원이고, 131~230명 시설이 5,298천원, 231명 이상 시설이 4,330천원으로 나타났고, 입소비용의 경우는 131~230명 시설이 474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231명 이상 시설이 377천원, 130명 이하 시설이 217천원이다. 보조금 수입을 보면, 130명이하 시설이 4,750천원, 131~230명 시설이 4,246천원 그리고 231명이상 시설이 3,757천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후원금과 차입금, 전입금, 이월금 수입에 있어서는 130명이하의 시설이 227천원, 91천원, 297천원 그리고 389천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잡수입의 경우 131~230명 시설이 212천원으로 231명 이상 시설 34천원, 130명이하 시설 25천원으로 나타났다.

〈표 4-5-11〉 정신요양시설의 거주자 규모별 1인당 평균 세입 규모

(단위: 천원)

항 목		130명 이하	131~230명	231명 이상	합계
정신 요양 시설	소계	6,029(100.0)	5,298(100.0)	4,330 (100.0)	5,046(100.0)
	입소비용	217(3.6)	474(9.0)	324 (7.5)	377(7.5)
	사업수입	1(0.0)	2(0.0)	2 (0.0)	2(0.0)
	과년도수입	30(0.5)	67(1.3)	71 (1.6)	62(1.2)
	보조금수입	4,750(78.8)	4,246(80.1)	3,757 (86.8)	4,140(82.0)
	후원금수입	227(3.8)	147(2.8)	87 (2.0)	137(2.7)
	차입금	91(1.5)	2(0.0)	2 (0.1)	16(0.3)
	전입금	297(4.9)	12(0.2)	30 (0.7)	63(1.3)
	이월금	389(6.5)	137(2.6)	22 (0.5)	133(2.7)
	잡수입	25(0.4)	212(4.0)	34 (0.8)	116(2.3)
사회 복지 시설	소계	12,364(100.0)	0(0.0)	0(0.0)	12,364(100.0)
	입소비용	888(7.2)	0(0.0)	0(0.0)	888(7.2)
	사업수입	525(4.3)	0(0.0)	0(0.0)	525(4.3)
	과년도수입	0(0.0)	0(0.0)	0(0.0)	0(0.0)
	보조금수입	8,513(68.9)	0(0.0)	0(0.0)	8,513(68.9)
	후원금수입	683(5.5)	0(0.0)	0(0.0)	683(5.5)
	차입금	47(0.4)	0(0.0)	0(0.0)	47(0.4)
	전입금	820(6.6)	0(0.0)	0(0.0)	820(6.6)
	이월금	760(6.1)	0(0.0)	0(0.0)	760(6.1)
	잡수입	128(1.0)	0(0.0)	0(0.0)	128(1.0)
총계	9,592	5,298	4,330	6,265	

나. 세출

1) 세출 총괄

정신요양시설의 세출 규모는 위의 세입 규모보다 다소 적게 나타났다. 정신요양시설이 45개소 시설평균 1,060,808천원이었고, 정신질환자 사회복지 시설이 9개소 시설평균 242,036천원으로 전체 평균에서 924,346천원을 나타냈다.

항별 내용을 살펴보면, 직원 수가 평균 19.5명인 정신요양시설이 7.2명인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에 비해 인건비로 지출되는 금액이 높았다. 인건비에서 급여가 차지하는 비율이 75%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그 다음이 제수당 9.5%, 퇴직적립금 7.2% 등의 순이었다. 상여금과 직급별 수당에 있어서는 정신질환자 사회복지 시설이 평균 5,008천원, 7,171천원으로 정신요양시설 평균 1,364천원, 2,672천원에 비해 높았다.

관공비에 있어서는 회의비에서 두 시설간에 평균 지출은 정신요양시설이 450천원,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434천원으로 비슷하였으나, 정보비에 대한 지출이 정신요양시설 평균 3,298천원으로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평균 654천원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운영비에 있어서는 정신요양시설이 평균 95,321천원을 지출한 반면 정신질환자 사회복지 시설이 평균 23,816천원이었으며 특히 제세공과금에 있어서 정신요양시설이 평균 9,930천원으로,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평균 881천원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설 종류별 세출항목을 비교해보면, <표 4-5-12>에서 처럼, 정신요양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모두 인건비의 비율이 각각 35.6%와 53.1%로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인건비로 인한 세출이 전체 세출 항목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인건비 다음으로 사업운영비의 비율이 33.7%로 높았으며 시설비가 17.6%, 사무운영비가 9.0%, 기타가 3.0%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사회복지시설은 인건비에 이어 시설비가 11.8%, 사업운영비가 10.3%, 사무운영비가 9.8%의 순으로 정신요양시설에 비해 교육비와 사업비 사무운영비 등에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표 4-5-12> 정신요양시설의 항목별 평균세출의 구성비

(단위: 천원, %)

항 목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지시설	합계
인건비	377,425(35.6)	128,581(53.1)	335,951(36.3)
판공비	6,886(0.6)	2,953(1.2)	6,230(0.7)
사무운영비	95,321(9.0)	23,816(9.8)	83,404(9.0)
시설비	186,754(17.6)	28,510(11.8)	160,380(17.4)
사업운영비	357,004(33.7)	24,932(10.3)	301,659(32.6)
교육비	66(0.0)	1,429(0.6)	293(0.0)
사업비	5,037(0.5)	18,100(7.5)	7,214(0.8)
기타	32,315(3.0)	13,715(5.7)	29,215(3.2)
총계	1,060,808(100.0)	242,036(100.0)	924,346(100.0)

다음의 <표 4-5-13>은 인건비와 운영비의 평균 비율을 본 것이다. 정신요양시설의 인건비 비율은 377,425천원(78.7%)이고, 운영비는 102,207천원(21.3%)으로 조사되었다. 정신요양시설에 비해 인건비의 비율이 더 높은 사회복지시설은 인건비가 128,581천원으로 82.7%, 운영비가 26,769천원으로 17.3%로 전체 평균을 보았을 때 인건비와 운영비의 비율이 8:2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13> 정신요양시설의 인건비와 운영비 평균 비율

(단위: 천원, %, 개소)

항 목	정신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합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인건비	377,425	78.7	128,581	82.7	335,951	78.9
운영비	102,207	21.3	26,769	17.3	89,634	21.1
합계	479,632	100.0	155,350	100.0	425,585	100.0

주: 운영비는 사회복지회계규칙의 판공비와 운영비를 합산한 것임.

시설종류별 세출항목을 1인당 평균으로 살펴본 결과 <표 4-5-14>와 같다. 정신요양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모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정신요양시설

1,813천원(36.7%), 사회복지시설 6,979천원(56.6%)로 가장 높았으며 사회복지시설이 인건비로 인한 세출이 50% 이상을 나타내 항목별 세출구성비가 적절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특히 정신요양시설의 시설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8.7%이고 사업운영비가 31.8% 인데 비해 사회복지시설의 시설비가 8.6%, 사업운영비가 10.0%로 낮게 나타나 생계비 및 의료비 등의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정신요양시설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5-14〉 정신요양시설의 1인당 평균세출 구성비

(단위: 천원, %)

항 목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지시설	합계
인건비	1,813(36.7)	6,979(56.6)	2,674(43.3)
판공비	35(0.7)	105(0.9)	47(0.8)
사무운영비	419(8.5)	1,061(8.6)	526(8.5)
시설비	925(18.7)	1,061(8.6)	948(15.4)
사업운영비	1,570(31.8)	1,236(10.0)	1,515(24.5)
교육비	1(0.0)	84(0.7)	14(0.2)
사업비	26(0.5)	821(6.7)	158(2.6)
기타	153(3.1)	972(7.9)	289(4.7)
총계	4,942(100.0)	12,321(100.0)	6,172(100.0)
시설수	45	9	54

2) 시설 소재지 규모별 세출

다음은 세출을 시설이 소재 한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대도시에 소재 한 시설은 총 9개 시설로 총 세출 평균이 가장 많은 1,224,023천원이었고, 다음이 군 지역이 28개 시설로 1,046,762천원, 중소도시가 8개 시설로 926,353천원을 나타냈다. 인건비에 의한 세출은 대도시가 429,388천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군 지역이 367,081천원, 중소도시가 343,922천원이었다. 판공비의 경우 대도시와 군지역이 비슷한 규모를 보여 대도시가 7,987천원, 군지역이 7,099천

원이었으며 중소도시가 가장 낮은 4,899천원을 나타냈고 사무운영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대도시가 99,983천원, 군지역이 99,508천원으로 비슷한 반면 중소도시가 가장 낮은 75,423천원으로 조사되었다. 시설비의 경우 대도시가 가장 많은 207,441천원이고, 중소도시가 193,856천원, 군지역이 178,076천원의 순이고 사업운영비는 대도시가 가장 높은 398,037천원, 군지역이 360,073천원 그리고 가장 낮은 중소도시가 300,102천원으로 나타났다. 중소도시와 군지역의 경우 교육비로 인한 세출이 전혀 없었으며 대도시가 328천원으로 나타났고 사업비는 대도시가 9,135천원, 군지역이 4,963천원, 중소도시가 684천원으로 조사되었다. 부채상환금과 잡지출 등을 나타낸 기타의 경우에는 대도시가 가장 많은 61,725천원, 군지역이 29,962천원, 중소도시가 7,467천원을 나타냈다.

〈표 4-5-15〉 정신요양시설의 지역별 평균세출 규모

(단위: 천원, %)

항 목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합계	
정신 요양 시설	소계	1,224,023(100.0)	926,353(100.0)	1,046,762(100.0)	1,060,808(100.0)
	인건비	439,388(35.9)	343,922(37.1)	367,081(35.0)	377,425(35.6)
	관공비	7,987(0.7)	4,899(0.5)	7,099(0.7)	6,886(0.6)
	사무운영비	99,983(8.2)	75,423(8.2)	99,508(9.5)	95,321(9.0)
	시설비	207,441(17.0)	193,856(20.9)	178,076(17.0)	186,754 (17.6)
	사업운영비	398,037(32.5)	300,102(32.4)	360,073(34.4)	357,004 (33.7)
	교육비	328(0.0)	0(0.0)	0(0.0)	66(0.0)
	사업비	9,135(0.7)	684(0.1)	4,963(0.5)	5,037(0.5)
	기타	61,725(5.0)	7,467(0.8)	29,962(2.9)	32,315(3.0)
	사회 복귀 시설	소계	195,098(100.0)	161,643(100.0)	423,138(100.0)
인건비		116,976(60.0)	100,926(62.4)	177,222(41.9)	128,581(53.1)
관공비		825(0.4)	2,519(1.6)	9,555(2.2)	2,953(1.2)
사무운영비		16,369(8.4)	11,480(7.1)	52,325(12.4)	23,816(9.8)
시설비		8,078(4.2)	1,927(1.2)	103,101(24.4)	28,510(11.8)
사업운영비		11,966(6.1)	38,876(24.0)	56,856(13.4)	24,932(10.3)
교육비		2,143(1.1)	0(0.0)	0(0.0)	1,429(0.6)
사업비		27,150(13.9)	0(0.0)	0(0.0)	18,100(7.5)
기타		11,560(5.9)	5,915(3.7)	24,081(5.7)	13,715(5.7)
총계		812,441	841,385	1,005,187	924,346

이것을 지역별 세출구성비로 살펴보면, 세 지역 모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35%이상을 나타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사업운영비가 32% 이상을 나타냈고 시설비가 중소도시가 20.9%, 대도시와 군지역이 17.0%의 분포를 보였다. 다음으로 사무운영비, 기타, 판공비 등의 순이었으며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세지역 모두 0%를 나타냈다.

따라서 정신요양시설의 평균세출에 있어 세출규모로는 가장 낮게 나타난 중소도시가 인건비와 시설비에서 37.1%, 20.9%로 다른 지역에 비해 세출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비로 지출되는 규모가 대도시가 328천원으로 유일했으며 그 비율에 있어 3개 지역 모두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시설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총 평균세출에서 군 지역이 가장 많은 423,138천원이고, 대도시가 195,098천원, 중소도시가 161,643천원의 순이다. 인건비에 있어 군 지역이 가장 많은 177,222천원, 대도시가 116,976천원, 중소도시가 100,926천원으로 조사되었고 판공비의 경우는 군지역이 9,555천원으로 가장 높고, 중소도시 2,519천원, 대도시 825천원의 순이다. 사무운영비는 군지역이 52,325천원으로 가장 높고 대도시 16,369천원, 중소도시 11,480천원이며, 사업운영비에 있어서 군 지역이 가장 많은 56,856천원, 중소도시가 38,876천원 그리고 대도시가 11,966천원을 나타냈다. 교육비와 사업비에 있어 중소도시와 군지역의 세출이 없었으며 대도시만이 2,143천원, 27,150천원을 나타냈고 기타로 군지역이 24,081천원, 대도시가 11,560천원 그리고 중소도시가 5,915천원이다.

이를 지역별 세출구성비로 살펴보면, 인건비에 있어 중소도시가 가장 높은 62.4%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대도시가 60.0%, 군지역이 41.9%를 차지했다. 사무운영비와 시설비에서 군지역이 12.4%와 24.4%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사업운영비에 있어서 중소도시가 24.0%로 가장 높은 반면 교육비와 사업비에서 대도시가 1.1%, 13.9%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중소도시가 인건비와 사업운영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반면 교육비와 사업비에서 대도시만 세출이 있고, 다른 두 지역은 세출이 없어 세출이 적절히 이뤄지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4-5-16〉 정신요양시설 지역별 평균 1인당 세출 규모

(단위: 천원)

항 목		정신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전체 평균
인건비	대도시	2,101	8,522	4,669
	중소도시	1,807	3,480	1,993
	군지역	1,723	4,101	1,881
	소계	1,813	6,979	2,674
관공비	대도시	32	65	46
	중소도시	22	87	29
	군지역	40	235	53
	소계	35	105	47
사무운영비	대도시	426	1,101	696
	중소도시	377	395	379
	군지역	429	1,275	486
	소계	419	1,061	526
시설비	대도시	1,000	702	881
	중소도시	1,034	66	927
	군지역	870	2,637	988
	소계	925	1,061	948
사업운영비	대도시	1,666	1,196	1,478
	중소도시	1,536	1,341	1,514
	군지역	1,549	1,306	1,533
	소계	1,570	1,236	1,515
교육비	대도시	3	126	52
	중소도시	0	0	0
	군지역	0	0	0
	소계	0	84	14
사업비	대도시	57	1,231	527
	중소도시	3	0	3
	군지역	22	0	20
	소계	26	821	158
기타	대도시	351	1,237	706
	중소도시	38	204	56
	군지역	121	564	151
	소계	153	972	289
총계	대도시	5,639	14,179	9,055
	중소도시	4,817	5,574	4,901
	군지역	4,754	10,119	5,112
	소계	4,942	12,321	6,172

3) 거주자 규모별 세출

다음의 <표 4-5-17>은 시설의 규모를 130명 이하, 131~230명 이하, 231명 이상으로 분류 한 시설 규모별 평균 세출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조사된 총 9개 시설의 거주자 규모가 50명을 넘지 않고 정신요양시설과 차이가 많아 세입부분과 마찬가지로 거주자 규모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정신요양시설의 평균 세출은 시설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231명의 대규모 시설이 가장 높은 시설 평균 1,431,810천원이고, 다음이 131명에서 230명 정도의 중규모 시설이 927,574천원, 소규모 시설로 분류한 130명 이하의 시설평균이 559,503천원이다. 인건비의 평균세출은 230명 이상의 시설이 498,584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130~230명 시설이 323,776천원, 130명 이하의 시설이 244,123천원으로 나타났다. 판공비는 230명 이상 시설이 8,562천원으로 가장 높고 130~230명 시설이 6,068천원, 130명 이하 시설이 4,369천원으로 가장 낮았으며 사무운영비와 시설운영비에 있어서도 230명 이상시설이 가장 많은 138,278천원 그리고 212,302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130~230명 시설이 78,138천원, 197,669천원이었으며 130명 이하 시설이 가장 낮은 42,547천원, 91,965천원을 나타냈다. 사업운영비에 있어서도 230명 이상 시설이 507,673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130~230명 시설이 306,600천원, 130명 이하시설이 142,308천원의 순이었다. 교육비로는 130명 이하 시설만이 422천원이었고 130~230명 시설과 230명 이상 시설에서 지출되는 것이 없었다. 사업비와 기타항목은 230명 이상 시설이 8,408천원, 58,001천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130명 이하시설로 5,591천원, 28,179천원이었고 다음이 130~230명 시설로 2,123천원, 12,901천원으로 조사되었다.

거주자 규모별 세출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130명 이하 시설이 인건비로 인한 세출비율이 가장 높은 43.6%를 나타내 세출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사무운영비와 사업운영비에서는 230명 이상 대규모 시설이 가장 높은 9.7%와 35.4%를 나타냈으며 시설비에서는 130~230명 중규모 시설이 가장 높은 21.3%를 차지하였다. 교육비와 사업비 그리고 기타 항목에서 130명 이하의 소규모 시설이 각각 0.1%, 1.0%, 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130명 이하의 소규모 시설의 인건비가 차지하는 세출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130~230명의 중규모 시설과 230명 이상의 대규모 시설에서 교육비로 인한 지출이 없는 반면 130명 이하의 소규모 시설에서 적은 규모의 세출이 이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5-17〉 정신요양시설 규모별 평균세출 규모

(단위: 천원, %)

항 목		130명 이하	131~230명	231명 이상	합계
정신 요양 시설	소계	559,503(100.0)	927,574(100.0)	1,431,810(100.0)	1,060,808(100.0)
	인건비	244,123(43.6)	323,776(34.9)	498,587(34.8)	377,425(35.6)
	판공비	4,369(0.8)	6,068(0.7)	8,562(0.6)	6,886(0.6)
	사무운영비	42,547(7.6)	78,138(8.4)	138,278(9.7)	95,321(9.0)
	시설비	91,965(16.5)	197,669(21.3)	212,302(14.8)	186,754(17.6)
	사업운영비	142,308(25.4)	306,600(33.1)	507,673(35.4)	357,004(33.7)
	교육비	422(0.1)	0(0.0)	0(0.0)	66(0.0)
	사업비	5,591(1.0)	2,123(0.2)	8,408(0.6)	5,037(0.5)
	기타	28,179(5.0)	12,901(1.4)	58,001(4.1)	32,315(3.0)
사회 복지 시설	소계	242,036(100.0)	0(0.0)	0(0.0)	242,036(100.0)
	인건비	128,581(53.1)	0(0.0)	0(0.0)	128,581(53.1)
	판공비	2,953(1.2)	0(0.0)	0(0.0)	2,953(1.2)
	사무운영비	23,816(9.8)	0(0.0)	0(0.0)	23,816(9.8)
	시설비	28,510(11.8)	0(0.0)	0(0.0)	28,510(11.8)
	사업운영비	24,932(10.3)	0(0.0)	0(0.0)	24,932(10.3)
	교육비	1,429(0.6)	0(0.0)	0(0.0)	1,429(0.6)
	사업비	18,100(7.5)	0(0.0)	0(0.0)	18,100(7.5)
	기타	13,715(5.7)	0(0.0)	0(0.0)	13,715(5.7)
총계	380,928	927,574	1,431,810	924,346	

〈표 4-5-18〉 정신요양시설 거주자 규모별 평균 1인당 세출 규모

(단위: 천원)

항 목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전체 평균	
인건비	130명 이하	2,661	6,979	5,090
	131~230명	1,792	0	1,792
	231명 이상	1,491	0	1,491
	소계	1,813	6,979	2,674
판공비	130명 이하	52	105	82
	131~230명	35	0	35
	231명 이상	29	0	29
	소계	35	105	47
사무운영비	130명 이하	442	1,061	790
	131~230명	428	0	428
	231명 이상	400	0	400
	소계	419	1,061	526
시설비	130명 이하	1,005	1,061	1,037
	131~230명	1,053	0	1,053
	231명 이상	734	0	734
	소계	925	1,061	948
사업운영비	130명 이하	1,456	1,236	1,333
	131~230명	1,681	0	1,681
	231명 이상	1,480	0	1,480
	소계	1,570	1,236	1,515
교육비	130명 이하	4	84	49
	131~230명	0	0	0
	231명 이상	0	0	0
	소계	0	84	14
사업비	130명 이하	74	821	494
	131~230명	10	0	10
	231명 이상	25	0	25
	소계	26	821	158
기타	130명 이하	307	972	681
	131~230명	68	0	68
	231명 이상	194	0	194
	소계	153	972	289
총계	130명 이하	6,001	12,321	9,556
	131~230명	5,066	0	5,066
	231명 이상	4,353	0	4,353
	소계	4,942	12,321	6,172

제 6 절 부랑인복지시설

가. 세입

1) 세입 총괄

부랑인복지시설의 총수입을 살펴보면 22개소 시설 평균이 1,019,736천원이었다. 이어 부랑인복지시설의 세입을 항목별로 살펴보았다. 입소비용은 없었고, 사업수입은 시설당 평균 10,520천원으로 파악되었다. 과년도 수입 시설당 평균은 758천원이었다.

보조금 수입 중 경상보조금 수입을 구성하는 인건비, 생계비, 관리운영비는 국고, 지방비, 순수지방비로부터 지원되고 있다. 인건비의 경우, 국고로부터의 시설당 평균 지원액은 195,034천원이고, 지방비 96,626천원, 순수지방비 59,657천원 등이다. 생계비의 경우, 국고로부터의 시설당 평균 지원액은 215,475천원, 지방비 88,294천원, 순수지방비 35,394천원(8개소)이다. 관리운영비의 경우, 국고로부터의 시설당 평균 지원액은 80,919천원, 지방비 42,941천원, 순수지방비 23,193천원이다.

보조금 수입 중 자본보조금 수입의 경우 국고로부터 시설당 평균 16,965천원, 지방비 13,873천원, 순수지방비 21,585천원이 지원되고 있고, 기타 보조금 수입의 경우는 국고에서 4,673천원, 지방비에서 2,182천원, 순수지방비에서 6,554천원이 지원되고 있다.

아울러 보조금 수입에는 시설후원금과 결연후원금이 포함된다. 시설후원금은 부랑인복지시설당 평균 24,213천원이고, 결연후원금 시설당 평균은 2,212천원이었다. 후원금을 합하면 시설당 평균 26,425천원이 지원되고 있는 셈이 된다.

다음에는 차입금을 살펴보았다. 차입금으로 금융기관차입금은 없었고, 기타 차입금은 평균 7,009천원이었다.

법인전입금은 시설당 평균 40,339천원이었다. 이월금은 시설당 평균 13,300천원이었다. 잠수입은 시설당 평균 18,020천원으로 나타났다.

〈표 4-6-1〉 부랑인복지시설 평균 세입 규모

(단위: 천원)

관		항		과 목			금액
				목			
입소비용수입	입소비용수입	입소비용					0
사업수입	사업수입	사업수입					10,520
과년도수입	과년도수입	과년도수입					758
보조금수입	보조금수입	경 상 보조금 수 입	정 부 보 조	국 고	인 건 비	195,034	
					생 계 비	215,475	
					관리운영비	80,919	
				지 방 비	인 건 비	96,626	
					생 계 비	88,294	
					관리운영비	42,941	
		순 수 지 방 비 보 조	인 건 비	59,657			
			생 계 비	35,394			
			관리운영비	23,193			
		자 본 보 조 금 수 입	정 부 보 조	국 고	16,965		
				지 방 비	13,873		
			순수지방비보조	21,585			
		기 타 보 조 금 수 입	정 부 보 조	국 고	4,673		
	지 방 비			2,182			
	순수지방비보조		6,554				
	소 계						903,365
	후원금수입	후원금 수입					24,213
		결연수원금 수입					2,212
		소 계					26,425
	기타 수입	차입금	금융기관차입금				
기타차입금					7,009		
소 계					7,009		
전입금		법인전입금					40,339
이월금		전년도이월금					12,929
		이월사업비					340
소 계						13,300	
잡수입		불용품매각대					12
		기타예금이자수입					1,614
		기타잡수입					16,394
소 계						18,020	
총 계						1,019,736 (22)	

다음에는 인건비, 생계비, 관리운영비를 살펴보았더니 인건비는 351,317천원, 생계비 339,163천원, 관리운영비 147,053천원으로 파악되었다. 부랑인복지시설은 다른 시설에 비해서 거주자 규모가 커서(평균: 260.5명) 인건비, 생계비, 관리운영비 등의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인다.

〈표 4-6-2〉 부랑인복지시설 평균 인건비·생계비·관리운영비 규모
(단위: 천원, 개소)

항 목		시설당 평균금액	시설수
인건비	소계	351,317	22
	정부보조 국고	195,034	22
	정부보조 지방비	96,626	22
	순수 지방비	59,657	22
생계비	소계	339,163	22
	정부보조 국고	215,475	22
	정부보조 지방비	88,294	22
	순수 지방비	35,394	22
관리 운영비	소계	147,053	22
	정부보조 국고	80,919	22
	정부보조 지방비	42,941	22
	순수 지방비	23,193	22

부랑인복지시설 세입의 비중을 살펴보았더니 비중이 가장 많은 것은 보조금 수입으로 88.6%이고, 그 다음은 매우 미미한 비중을 보이고 있었다. 전입금 4.0%, 후원금 2.6%, 잡수입 1.8% 등이다.

거주자 1인당 평균 세입을 항목별로 살펴보았더니 보조금 수입이 1인당 4,066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후원금 수입으로 207천원, 전입금 192천원, 잡수입 120천원 등이었다.

〈표 4-6-3〉 부랑인복지시설 세입비율 및 1인당 평균 세입규모

(단위: 천원, 개소)

항 목	세입	비율	1인당 평균
입소비용	0	0.0	0
사업수입	10,520	1.0	52
과년도수입	758	0.1	3
보조금수입	903,365	88.6	4,066
후원금수입	26,425	2.6	207
차입금	7,009	0.7	13
전입금	40,339	4.0	192
이월금	13,300	1.3	59
잡수입	18,020	1.8	120
총계	1,019,736	100.0	4,712
시설수	22	22	22

2) 시설 소재지 규모 세입

시설 소재지 별로 세입을 살펴보기 전에 지역별 부랑인복지시설의 분포를 살펴보면 대도시에는 4개소의 시설이 있고, 중소도시와 군지역에 각 9개소의 시설이 있다. 대도시에 소재한 시설의 규모는 100명 이하 소규모시설 1개소, 101~500명 이하 중규모시설 1개소와 501명 대규모시설이 2개소로 파악되었다. 중소도시와 군지역에는 대규모 부랑인복지시설은 없었고, 소규모와 중규모의 시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특히 중규모 시설은 중소도시와 군지역에 각 55.6%, 66.7%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 4-6-4〉 지역별 부랑인복지시설 분포

항 목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합계
100명 이하	25.0(1)	44.4(4)	33.3(3)	36.4(8)
101~500명	25.0(1)	55.6(5)	66.7(6)	54.5(12)
501명 이상	50.0(2)	-	-	9.1(2)
전체	100.0(4)	100.0(9)	100.0(9)	100.0(22)

주: 빈도가 5 이하의 셀이 20% 이상이어서 통계치는 제시하지 않았음.

다음에는 부랑인복지시설의 세입을 시설이 소재한 지역별로 살펴보았다. 입소비용의 경우 모든 지역에서 비용을 받는 시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수입의 경우는 대도시가 가장 많은 39,742천원이었고, 군지역 4,971천원, 중소도시 3,081천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과년도 수입은 군지역에 있는 부랑인복지시설이 가장 많은 1,763천원으로 조사되었다. 보조금 수입은 대도시가 가장 많은 2,816,048천원, 군지역 574,360천원이었다. 후원금 수입 역시 대도시가 가장 많은 41,566천원, 군지역 28,750천원, 중소도시는 가장 적은 17,369천원이다.

차입금은 대도시가 가장 많은 평균 30,000천원이고, 군지역 3,800천원이었다. 중소도시 시설의 경우 차입금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입금은 대도시 139,895천원, 군지역 25,581천원, 중소도시 10,850천원으로 대도시가 가장 많았다. 이월금은 대도시 49,841천원, 군지역 6,190천원, 중소도시 4,169천원으로 파악되었고, 잡수입은 대도시 33,464천원, 중소도시 27,065천원, 군지역 2,111천원으로 파악되었다.

〈표 4-6-5〉 부랑인복지시설 지역별 평균 세입 규모

(단위: 천원)

항 목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소계
입소비용	0	0	0	0
사업수입	39,742	3,081	4,971	10,520
과년도수입	0	89	1,763	758
보조금수입	2,816,048	382,289	574,360	903,365
후원금수입	41,566	17,369	28,750	26,425
차입금	30,000	0	3,801	7,009
법인전입금	139,895	10,850	25,581	40,339
이월금	49,841	4,169	6,190	13,300
잡수입	33,464	27,065	2,111	18,020
총계	3,150,556	444,912	647,529	1,019,736

항목별로 세입을 살펴본 결과 전체 세입규모와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대체적으로 대도시에 소재한 시설의 경우 세입이 많았다. 사업수입, 보조금수

입, 후원금수입, 차입금, 법인전입금, 이월금, 잡수입 등에서 대도시의 세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군지역 부랑인복지시설로 중소도시에 소재한 시설보다 사업수입, 보조금수입, 후원금수입, 차입금, 법인전입금, 이월금 등에서 대도시지역 시설 다음으로 세입의 규모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대도시 시설당 평균이 3,150,556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군지역으로 647,529천원, 중소도시 444,912천원의 순이었다. 이는 시설의 규모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대도시에는 대규모시설이 있고, 군지역에는 중규모시설이 중소도시보다 약간 더 많은 상황이다.

1인당 세입은 전체 평균은 4,712천원이었다. 지역별로는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군지역 4,796천원, 중소도시 4,766천원, 대도시 4,402천원으로 대도시 지역의 시설의 1인당 세입 단가액이 가장 낮았다.

〈표 4-6-6〉 부랑인복지시설 지역별 1인당 평균 세입 규모

(단위: 천원)

항 목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소계
입소비용	0	0	0	0
사업수입	163	37	16	52
과년도수입	0	1	6	3
보조금수입	3,538	4,095	4,272	4,066
후원금수입	214	189	221	207
차입금	22	0	23	13
법인전입금	354	126	187	192
이월금	81	55	54	59
잡수입	30	263	18	120
총계	4,402	4,766	4,796	4,712

1인당 정부보조금은 군지역 시설이 가장 많은 4,066천원이고, 대도시 시설은 가장 적은 3,538천원이었다. 후원금 수입 1인당 평균도 군지역이 가장 많은 221천원이었고, 대도시는 두 번째로 214천원이다. 반면 사업수입은 대도시 시설이 가장 많은 163천원이고, 법인전입금은 대도시지역 시설이 가장 많은 354천원이

고, 이월금도 대도시가 가장 많은 81천원이었다. 잡수입은 중소도시지역 시설이 가장 많은 263천원이다.

3) 거주자 규모별 세입

거주자 규모별 세입에 있어서는 거의 모든 항목이 거주자 수에 비례한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대규모 시설의 시설당 세입 평균이 5,611,166천원 이고, 그 다음이 중규모 시설로 689,849천원, 소규모 시설은 가장 적은 366,709천원이다.

〈표 4-6-7〉 부랑인복지시설 거주자 규모별 평균 세입 규모

(단위: 천원)

항 목	100명 이하	101~500명	501명 이상	소계
입소비용	0	0	0	0
사업수입	3,466	16,975	0	10,520
과년도수입	100	1,322	0	758
보조금수입	315,139	593,772	5,113,833	903,365
후원금수입	19,243	26,283	56,002	26,425
차입금	688	2,932	60,000	7,009
법인전입금	20,834	22,566	225,000	40,339
이월금	5,943	5,240	91,088	13,300
잡수입	1,295	21,300	65,244	18,020
총계	366,709	689,849	5,611,166	1,019,736

사업수입은 중규모 시설이 가장 많은 16,975천원이고, 대규모시설은 사업수입이 전무하다. 과년도수입의 경우도 중규모 시설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소규모 시설이다. 대규모시설의 과년도 수입은 전무하다. 정부보조금의 경우 대규모 시설이 압도적으로 많은 5,113,833천원이고, 그 다음은 중규모 시설로 593,772천원이다. 소규모시설의 보조금 규모는 가장 적은 315,139천원이다. 후원금은 대규모시설 56,002천원, 중규모시설 26,283천원, 소규모시설 19,243천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차입금은 대규모 시설이 압도적으로 많아 60,000천원에 이르고 있고,

중규모시설 2,932천원, 소규모시설 688천원이다. 대규모시설의 재정이 열악함을 알 수 있다. 법인전입금도 대규모시설이 중소규모 시설보다 10배 가까이 많았다. 그 만큼 시설의 세입 부족분을 법인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월금 및 잡수입도 대규모시설에서 가장 많았다.

〈표 4-6-8〉 부랑인복지시설 거주자 규모별 평균 1인당 세입 규모

(단위: 천원)

항 목	100명 이하	101~500명	501명 이상	소계
입소비용	0	0	0	0
사업수입	42	67	0	52
과년도수입	2	4	0	3
보조금수입	4,954	3,617	3,206	4,066
후원금수입	340	146	36	207
차입금	15	8	43	13
법인전입금	334	110	120	192
이월금	99	33	59	59
잡수입	18	201	47	120
총계	5,802	4,185	3,512	4,712

종합하면 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세입이 차등적임을 알 수 있는데, 특히 대규모시설의 경우의 세입의 규모가 상당히 크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예산 상의 부족으로 인해 차입금과 법인전입금도 아울러서 대규모임을 알 수 있었다.

다음 표에서 1인당 세입을 시설 규모별로 보았더니 전체적으로 규모는 소규모 5,802천원, 중규모 4,185천원, 소규모 3,512천원의 순으로 소규모시설이 1인당 세입이 가장 많았다. 이러한 추이는 보조금, 후원금 등에서도 나타났다. 1인당 차입금은 대규모시설이 가장 많았으나, 1인당 법인전입금 규모는 소규모시설이 가장 많았다.

시설 규모별 보조금 중 경상보조금의 비중을 살펴보았더니 중규모시설의 보조금 비중이 가장 높은 78.9%이었고, 그 다음은 소규모시설 71.7%이었다. 대규모시설의 경상보조금 비중은 가장 낮은 69.4%이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인건비의

경우 소규모 시설에서 비중이 높았고, 생계비는 대규모시설에서 비중이 다른 시설에 비해 매우 높았다. 관리운영비는 비슷한 수준이나 대규모 시설이 약간 더 높았다. 이러한 경상보조금 세입 비중만을 가지고 시설의 규모별 세입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논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는 하나, 생계비의 경우 규모의 경제가 별로 고려되지 않고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표 4-6-9〉 부랑인복지시설 거주자 규모별 평균 세입 구성비

(단위: 천원, %)

항 목	총세입	경상보조금수입				
		인건비	생계비	관리운영비	계	
100명 이하	금액	366,708	151,833	66,007	45,088	262,928
	비율	100.0	41.4	18.0	12.3	71.7
101~500명	금액	689,849	253,583	203,229	87,264	544,076
	비율	100.0	36.8	29.5	12.6	78.9
501명 이상	금액	5,611,166	1,735,650	2,247,388	913,648	3,896,686
	비율	100.0	30.9	40.1	16.3	69.4

나. 세출

1) 세출 총괄

부랑인복지시설의 세출규모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1,008,082천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세입 1,019,736천원보다 약간 적은 금액이다. 상세한 세출내역은 본서의 부록에 제시하였다.

항별 소계를 보면 인건비는 시설당 평균 373,381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판공비 2,998천원, 사무운영비 133,888천원, 시설비 103,940천원, 사업운영비 362,629천원, 교육비 94천원, 사업비 12,815천원 등이다. 기타의 비용으로 전출금 146천원, 과년도지출 24천원, 부채상환금 5,720천원, 반납금 1,608천원, 잡지출 1,224천원, 결연후원금 1,530천원, 예비비 3,761천원, 이월금 4,323천원이다.

〈표 4-6-10〉 부랑인복지시설 세출비율 및 1인당 평균 세출규모

(단위: 천원, 개소)

항 목	세출 금액	비율	전체 평균
인건비	373,381	37.0	2,051
관공비	2,998	0.3	8
사무운영비	133,888	13.3	500
시설비	103,940	10.3	648
사업운영비	362,629	36.0	1,302
교육비	94	0.0	1
사업비	12,815	1.3	64
기타	18,336	1.8	100
총계	1,008,082	100.0	4,674
시설수	22	22	22

세출의 비중을 보면 인건비가 가장 많은 37.0%이고, 그 다음이 사업운영비로 36.0%를 차지하고 있다. 사무운영비는 13.3%, 시설비는 10.3% 등이다. 1인당 평균 세출 규모는 4,674천원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인건비 2,051천원, 사업운영비 1,302천원, 시설비 648천원, 사무운영비 500천원 등이다.

인건비와 운영비(관공비와 사무운영비를 합한 것)의 비중을 살펴보았더니 인건비는 73%이었고, 운영비는 24%로 나타났다. 모자복지시설과 비교했을 때 인건비 비중은 낮았고, 운영비 비중은 약간 더 높았다(모자복지시설: 80 대 20).

〈표 4-6-11〉 인건비와 운영비 평균 비율

(단위: 천원, %, 개소)

항 목	금액	비율
인건비	373,381	73
운영비	136,887	24
합계	510,268(22)	100

주: 운영비는 사회복지회계규칙의 관공비와 사무운영비를 합산한 것임.

2) 시설 소재지 규모별 세출

지역별 세출을 살펴보면 대도시가 가장 많은 3,106,975천원(4개소)이고, 그 다음은 군지역으로 639,332천원(9개소), 중소도시 443,990천원(9개소) 등이다. 대체적으로 인건비, 판공비, 사업운영비, 사업비 등 거의 모든 항에서 대도시의 지출이 더 많았다. 특이한 것은 부랑인복지시설의 경우도 중소도시보다는 군지역의 세출이 더 많은 점이다.

1인당 평균 세출은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었는데, 중소도시시설에서 4,765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군지역 4,719천원, 대도시 4,369천원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지역별로 차등적인 예산 지원이 그다지 필요한 것은 아님을 시사한다. 항목별로 보았을 때도 지역별로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었다. 사무운영비, 사업운영비, 사업비, 기타 등의 항목에서는 대도시가 약간 더 높았고, 인건비는 중소도시가 약간 더 높았다. 전반적으로 지역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표 4-6-12〉 부랑인복지시설 지역별 평균 세출 규모

(단위: 천원)

항 목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소계
인건비	310,423	316,922	354,423	335,951
판공비	5,122	4,635	7,263	6,230
사무운영비	66,538	68,318	96,362	83,404
시설비	127,695	172,530	173,078	160,380
사업운영비	243,609	271,077	339,858	301,659
교육비	1,054	0	0	293
사업비	16,341	608	4,632	7,214
기타	41,658	7,294	29,570	29,215
총계	3,106,975	443,990	639,332	1,008,082

〈표 4-6-13〉 부랑인복지시설 지역별 평균 1인당 세출 규모

(단위: 천원)

항 목	대도시	중소도시	군지역	소계
인건비	1,715	2,263	1,990	2,051
관공비	9	8	8	8
사무운영비	550	531	448	500
시설비	389	518	892	648
사업운영비	1,386	1,281	1,286	1,302
교육비	0	3	0	1
사업비	154	59	28	64
기타	167	103	67	100
총계	4,369	4,765	4,719	4,674

3) 거주자 규모별 세출

다음에는 시설의 규모를 대중소로 삼등분 하여 세출의 규모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시설규모별 세출은 501명 이상의 대규모 시설이 가장 많은 5,530,706천원이고, 그 다음이 중규모시설인 101~500명 규모의 시설로 682,899천원이고, 가장 세출이 적은 시설은 100인 이하의 소규모 시설로 365,200천원이다. 대규모 시설은 인건비, 사무운영비, 시설비, 사업운영비, 부채상환금, 예비비 등에 있어서 중규모시설보다 지출이 더 많았다. 인건비는 대규모시설이 압도적으로 더 많았는데, 그 이유는 다른 시설과 달리 시설유형이 하나인 부랑인복지시설에서의 인건비 지원기준은 거주자수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거의 모든 항목에서 대규모시설의 세출이 더 많았다. 특히하게도 대규모시설에서는 교육비와 사업비는 전무한 상태이다.

1인당 평균 세출액을 보면 소규모시설이 가장 많은 5,761천원이었고, 중규모 시설 4,150천원, 대규모시설 3,470천원으로 파악되었다. 항목별로는 인건비, 시설비에서 소규모 시설의 1인당 세출액이 가장 많았고, 사무운영비, 사업운영비는 대규모시설이 가장 많았다. 대규모시설의 1인당 평균 세출액이 적은 이유는 규모의 경제로 시설이 운영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시설의 인원이 많아서 주

어진 예산으로 운영하다보니까 1인당 지출액이 감소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시설규모별 지출액만으로 시설규모별 지원액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표 4-6-14〉 부랑인복지시설 거주자 규모별 평균 세출 규모

(단위: 천원)

항 목	100명 이하	101~500명	501명 이상	소계
인건비	171,574	269,096	1,806,320	373,381
관공비	534	922	25,316	2,998
사무운영비	36,203	79,388	851,633	133,888
시설비	50,745	86,868	419,157	103,940
사업운영비	86,948	220,956	2,315,392	362,629
교육비	98	107	0	94
사업비	5,617	19,749	0	12,815
기타	13,482	5,813	112,890	18,336
총계	365,201	682,899	5,530,706	1,008,082

〈표 4-6-15〉 부랑인복지시설 거주자 규모별 평균 1인당 세출 규모

(단위: 천원)

항 목	100명 이하	101~500명	501명 이상	소계
인건비	2,767	1,729	1,120	2,051
관공비	9	6	18	8
사무운영비	550	460	545	500
시설비	804	603	286	648
사업운영비	1,371	1,236	1,423	1,302
교육비	2	1	0	1
사업비	62	75	0	64
기타	196	40	78	100
총계	5,761	4,150	3,470	4,764

제 7 절 사회복지시설의 세입·세출 종합

가. 세입

시설의 평균 시설당 세입 규모를 비교하여 살펴보았더니, 세입이 가장 많은 것은 부랑인 시설로 시설당 10억원에 가까웠다. 그 다음은 정신요양시설로 9억 3천만원, 장애인시설 9억2천만원, 아동시설 5억8천만원, 노인시설 4억9천만원이었고, 모자복지시설은 시설당 평균 세입액이 가장 적은 2억3천만원 수준이었다. 부랑인복지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은 대규모 시설이 많아 시설당 평균 세입액 규모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표 4-7-1〉 시설별 시설당 평균 세입 규모

(단위: 천원, 개소)

항 목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정신요양	부랑인	
입소비용수입	109	24,761	10,820	533	73,499	0	
사업수입	1,025	1,382	571	315	1,804	10,520	
과년도수입	986	1,454	3,677	1,120	9,623	758	
보조금수입	451,510	381,610	641,929	193,421	804,973	903,365	
후원금수입	35,433	25,029	37,945	19,893	22,701	26,425	
소계	489,063	434,236	694,942	215,282	912,600	941,068	
기 타	차입금	2,745	3,378	7,237	1,252	1,651	7,009
	전입금	75,583	27,087	38,536	16,472	10,134	40,339
	이월금	13,810	21,876	28,047	9,847	16,801	13,300
	잡수입	4,155	5,976	8,303	1,332	17,070	18,020
총계	585,355 (150)	492,552 (159)	920,821 (118)	233,591 (42)	935,555 (54)	1,019,736 (22)	

주: 반올림 상의 오차가 있음.

시설당 평균 세입을 거주자수로 나누어서 1인당 세입 단가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 세입이 가장 많은 시설은 장애인시설로 1인당 평균 10,152천원에 이르고

있다. 그 다음은 아동시설로 7,847천원, 노인시설 7,118천원이다. 나머지 시설의 1인당 단가는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정신요양시설 4,588천원, 부랑인복지시설 3,915천원, 모자복지시설 3,430천원으로 나타났다. 모자복지시설은 시설당 세입 규모만이 가장 낮은 것이 아니라, 1인당 단가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7-2〉 시설별 평균 세입 1인당 단가

(단위: 천원, 명)

항 목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정신요양	부랑인	
입소비용수입	1	358	119	8	360	0	
사업수입	14	20	6	5	9	40	
과년도수입	13	21	41	16	47	3	
보조금수입	6,052	5,515	7,077	2,840	3,948	3,468	
후원금수입	475	362	418	292	111	101	
소계	6,556	6,275	7,662	3,161	4,476	3,613	
기 타	차입금	37	49	80	18	8	27
	전입금	1,013	391	425	242	50	155
	이월금	185	316	309	145	82	51
	잡수입	56	86	92	20	84	69
총계	7,847	7,118	10,152	3,430	4,588	3,915	
평균거주자수	74.6	69.2	90.7	68.1	203.9	260.5	

주: 반올림 상의 오차가 있음.

나. 세출

시설당 평균 세출 규모에 있어서도 세입과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시설당 평균 세출이 가장 많은 시설은 부랑인복지시설로 1억원에 이르고 있었고, 그 다음은 정신요양시설로 9억2천만원이었다. 그 다음으로 장애인시설 8억9천만원, 아동시설 5억5천만원, 노인시설 4억9천만원이었고, 모자복지시설은 세입 규모가 가장 적은 2억3천만원의 수준이었다. 여기서도 시설의 거주자수에 비해

해서 평균 거주자수가 200명이 넘는 부랑인 및 정신요양시설의 경우에 있어서 세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과 세출을 비교했을 때 노인시설과 모자복지시설을 제외하고 모든 시설에서 세입이 세출보다 많았다(표 4-7-3 참조). 즉, 대부분의 시설에서는 주어진 세입 규모 내에서 시설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시설의 경우는 세입이 세출보다 3백만원 정도 적었고, 모자복지시설은 세입과 세출액이 같았다. 이러한 결과만을 가지고 시설의 세입이 충분한가에 대한 논의를 할 수는 없다. 다만, 시설들이 세입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4-7-3〉 시설별 시설당 평균 세출 규모

(단위: 천원, 개소)

항 목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정신요양	부랑인	
인건비	273,893	260,394	552,463	84,845	335,951	373,381	
판공비	2,312	1,981	3,960	1,070	6,230	2,998	
사무운영비	45,293	45,202	63,574	20,634	83,404	133,888	
시설비	61,930	65,947	95,940	30,124	160,380	103,940	
사업운영비	125,720	89,333	139,280	73,786	301,659	362,629	
교육비	22,680	67	2,969	5,316	293	94	
사업비	13,654	1,496	15,750	6,233	7,214	12,815	
소계	545,482	464,420	873,936	222,008	895,131	989,745	
기 타	전출금	1,548	465	2,348	583	1,754	146
	과년도지출	5,826	8,360	450	3,524	4,872	24
	부채상환금	1,796	3,455	1,753	1,480	3,374	5,720
	반납금	851	724	442	519	559	1,608
	잡지출	3,073	3,207	2,006	1,084	2,335	1,224
	결연후원금	3,562	732	976	856	19	1,530
	예비비	1,272	835	180	388	121	3,761
	이월금	10,481	13,536	12,310	3,105	16,181	4,323
	총세출	558,753	495,738	898,786	233,591	924,346	1,008,082
총세입	585,355	492,552	920,821	233,591	935,555	1,019,736	
세입-세출	26,602	-3,186	22,035	0	11,209	11,654	
사례수	150	159	118	42	54	22	

주: 반올림 상의 오차가 있음.

시설당 평균 1인당 세출 단가를 계산하였더니, 세출단가가 가장 높은 곳은 세입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시설로 9,909천원이었다. 그 다음은 아동시설로 7,490천원, 노인시설 7,164천원의 순이었다. 나머지 시설들은 1인당 세입단가와 마찬가지로 1인당 세출 규모도 적은 것으로 나타나, 정신요양시설 4,533천원, 부랑인복지시설 3,879천원, 모자복지시설 3,430천원이었다.

〈표 4-7-4〉 시설별 평균 1인당 세출 단가

(단위: 천원, 명)

항 목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정신요양	부랑인
인건비	3,671	3,763	6,091	1,246	1,648	1,433
관공비	31	29	44	16	61	12
사무운영비	607	653	701	303	409	514
시설비*	830	953	1,058	442	787	399
사업운영비*	1,685	1,291	1,536	1,083	1,479	1,392
교육비	304	1	33	78	1	0
사업비	183	22	174	92	35	49
소계	7,312	6,711	9,635	3,260	4,390	3,799
합계(A, *제외)	4,796	4,468	7,043	1,735	2,154	2,008
정부지원단가(B)	3,737	2,575	5,848	1,982	1,459	1,269
차이(B-A)	-1,059	-1,893	-1,195	247	-695	-739
기						
전출금	21	7	26	9	9	1
과년도지출	78	121	5	52	24	0
부채상환금	24	50	19	22	17	22
반납금	11	10	5	8	3	6
타						
잡지출	41	46	22	16	11	5
결연후원금	48	11	11	16	0	6
예비비	17	12	2	6	1	14
이월금	140	196	136	46	79	17
총계	7,490	7,164	9,909	3,430	4,533	3,870
평균거주자수	74.6	69.2	90.7	68.1	203.9	260.5

주: 1) 반올림 상의 오차가 있음. 2) 정부지원단가는 2001년 수치임.

3) 합계에서 시설비와 사업운영비는 정부지원단가 항목이 아니므로 제외하였음.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01.

운영비와 교육비 및 사업비와 정부지원 단가와 비교하였더니, 대부분의 시설에서 세출이 정부지원단가보다 높았다. 여성복지시설을 제외한 시설에서 정부의 지원수준에 비해서 세출이 많게 나타났다.

한편, 시설당 및 1인당 차등적인 세입, 세출액은 거주자의 특성이 반영되어 초래된 것이기도 하지만, 부랑인복지시설이나 정신요양시설의 경우처럼 보호가 필요하지만 국가에서의 지원이 충분치 않아 초래된 결과임을 부인할 수 없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들의 지원단가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거주자의 삶의 보장될 수 있는 수준의 지원이 요구된다.

〈표 4-7-5〉 시설별 평균 정부지원 단가

(단위: 백만원, 천원)

구분	예산액(백만원)			1인당 지원액(천원)			
	2001년	2002년	2003년	2001년	2002년	2003년	
총계	233,972	275,536	338,766	-	-	-	
아동	47,498	53,203	60,253	3,737	4,161	4,829	
노인	소계	38,199	49,286	72,070	2,875	-	-
	양로	9,230	10,092	12,576	4,738	3,128	4,039
	요양	16,176	19,510	24,654	8,229	5,069	5,211
	전문요양	12,793	19,485	32,956	-	8,710	9,146
	실비양로	-	48	197	-	-	2,020
	실비요양	-	151	1,687	-	-	2,661
장애인	74,461	83,390	85,270	5,848	6,448	6,770	
여성	소계	4,117	4,839	5,362	-	-	-
	모자보호	3,838	4,181	4,626	1,982	2,081	2,185
	미혼모	279	658	736	1,982	4,523	4,750
정신요양	16,896	18,635	25,895	1,459	1,678	2,310	
부랑인	10,485	12,058	12,484	1,269	1,459	1,843	

주: 예산액은 운영비와 인건비를 합한 것임.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2002, 2003.

제 5 장 외국의 사회복지시설 지원제도

제 1 절 일 본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의 표준운영비를 산출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시설보호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의 구조개혁을 위한 기반정비라는 의미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일본의 사회복지제도는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사회복지시설은 그 법적 장치와 운영 방식 면에서 유사성을 띠고 있으므로 일본 사회복지시설의 현상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 시설 표준운영비 모형개발에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의 사회복지시설은 1951년 사회복지사업법의 출발에서부터 시작되지만, 사회복지영역에서의 본격적인 역할은 1971년 ‘사회복지시설 긴급정비 5개년 계획’이 시작되면서부터이다. 1965년에 사회복지시설은 16,453개소였는데, 1975년에는 33,096개소로 크게 확대되었으며(小笠原祐次, 1998), 2000년에는 사회복지시설이 90종류나 되고, 그 수도 75,875개소에 달하게 되었다(厚生労働省, 2002).

사회복지사업은 제1종 사회복지사업과 제2종 사회복지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사회복지법 제2조 제2, 3항), 제1종 사회복지사업은 대체로 생활시설의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30종이 규정되어 있고, 제2종 사회복지사업은 이용시설의 서비스를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60종이 있다(社會福祉法研究會, 2001).

일본 사회복지시설의 개혁을 촉진한 중요한 계기는 개호보험제의 도입이다. 1989년부터 논의되기 시작한 개호보험제도는 1997년 12월에 개호보험법 제정으로 일단락 되고, 2000년 4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개호보험제도 도입의 의의 중 시설 개혁과 관련된 내용은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다양한 사업주체의 참가로 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점이다(山崎泰彦, 2000).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체제란 이용자에게 서비스의 선택권을 준다는 의미와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적절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한다는 의미가 포

함되어 있다. 아울러 다양한 사업주체의 참가는 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서비스의 양적·질적 양면을 동시에 확보하려는 것이다.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한 일본 사회복지의 전반적인 개혁방안은 1997년 11월부터 1998년 6월까지 중앙사회복지심의회 사회복지구조개혁분과회에서의 논의를 거쳐 “사회복지기초구조개혁에 대하여”라는 형태로 밝히고 있다(中央社會福祉審議會 社會福祉構造改革分科會, 1998). 이 내용은 2000년 6월에 개정된 사회복지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宮武 剛, 2002).

첫째는 이용자 입장에서 사회복지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서비스를 조치제도에서 지원비제도 내지는 보험제도로 바꾸어서 이용자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선택능력이 부족한 이용자에게는 이를 보장할 제도 즉, 지역복지권리옹호제도와 성인후견제도를 도입하여 선택권을 보장하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고충을 처리할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둘째는 사회복지 서비스 질의 향상이다.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 즉, 자기평가와 제3자 기관평가를 통하여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사업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이용자가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판단자료를 마련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는 사회복지사업의 충실 및 활성화이다. 우선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인가 기준을 완화하여 서비스 공급을 늘이고, 법인 운영의 탄력화를 기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면, 회계구분을 시설단위에서 법인단위로 전환하는 것이나, 지원비제도로 바뀌는 사업은 이용료를 시설정비 시 법인부담금 상환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다.

넷째는 지역복지의 추진이다. 기초 및 광역 자치단체에서의 지역복지계획의 수립과 실천을 추진하며, 지적장애인복지 등에 관한 사무를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하고, 사회복지협의회나 각종 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 사회복지의 개혁 흐름 가운데 하나로 진행되는 것이 사회복지서비스를 조치제도에서 지원비제도로 바꾸는 것이고, 2003년 4월부터 장애인복지 영역에서 이를 실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일본의 장애인복지 영역의 지원비제도 도입에 초점을 맞추어 그 내용을 소개하고 그 시사점을 다루고자 한다.

일본에서 2003년부터 도입하려는 지원비제도는 그 큰 틀은 만들어졌지만, 구체적인 부분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살펴보려는 것은 우리나라의 시설보호가 아직 조치제도에 머물러 있고 우선은 시설운영비를 적절하게 지원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이지만, 앞으로의 서비스는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체제로 바꾸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우리에게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이다.

가. 조치제도와 지원비제도

일본의 사회복지시설은 그 대상에 따라 조치제도와 지원비제도, 개호보험제도 등과 연결되어 있다. 아동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아직 조치제도에 머물러 있지만, 장애인복지시설은 2003년부터 지원비제도로 바뀌게 되고, 노인보건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이미 2000년 개호보험의 실시로 사회보험방식으로 바뀌었다.

여기서는 조치제도와 지원비제도와 비교, 지원비제도와 개호보험제도와 비교를 해 보고자 한다. 이는 지원비제도 도입의 특징과 지원비제도를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일본에서의 조치제도는 조치위탁의 형태로 민간사회복지기관에게 공적 비용을 보조하는 내용을 신고 있는 1951년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서 출발한다. 조치제도의 장점은 사회자원이 부족한 시대에 행정이 책임을 지고 대상자를 보호하고 균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일본 사회복지시설이 정비되고, 사회복지의 기반이 정비되는 성과를 가져왔다(京極高宣, 2002).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국민의 의식은 선택의 자유를 요구하게 되고, 경제적인 생활수준도 향상되므로 인하여, 최저수준의 생활보다는 다소 경제적인 부담을 하더라도 양질의 서비스를 자신이 선택하여 이용하고 싶다는 구조로 바뀌고 있는 현 시점에서 조치제도는 적절하지 못한 제도로 비판받아 왔다

행정의 조치제도에 대한 비판은 첫째, 이용자의 욕구를 행정이 직접 판정한다는 것이고 둘째, 서비스 제공도 행정의 책임으로 행정이 직접 제공하거나 행정으로부터 수탁 받은 기관만이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고 셋째,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간의 대등한 관계가 성립되기 어렵고 고충처리 등에 있어서도 이용자

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郡司 巧, 2002).

이러한 조치제도의 단점을 개선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 지원비제도이다. 지원비제도의 강점은 공적 비용을 이용자에게 지원하여 서비스의 선택권을 이용자에게 주고,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는 다양한 주체 즉, 기존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은 물론이고 주식회사, NGO, 각종협동조합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경쟁원리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조치제도와 지원비제도를 비교해 보면 <표 5-1-1>과 같다. 여기에서 가장 큰 특징은 서비스 선택권이 이용자에게 주어지고, 서비스 제공자가 다양해진다는 점이다(社會福祉法硏究會, 2001).

<표 5-1-1> 조치제도와 지원비제도와와의 비교

구 분	조치제도	지원비제도
시정촌의 입장	조치 실시자	계약에 의한 이용제도의 관리자 (기반정비, 이용료 조성)
서비스이용결정	시정촌이 독자적으로 결정	이용자와 사업자의 합의
비용부담	시정촌	이용자(시정촌이 이용자부담을 제외한 부분을 조성 : 시정촌의 조성에 대해서는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가 일정 분할 보조)
공적 비용 부담 형식	조치위탁비(사업자에게 보조) - 사용 용도의 제한(위탁비) - 정원규모 등에 의해 구분된 단가 - 공급주체의 체제 등에 따라 가산 제도가 있음	조성금(이용자에게 보조) - 시정촌이 각 이용자의 급부액을 결정 - 사업자가 대리수령 - 사용 용도의 제한이 없음 - 서비스내용에 따른 일률단가
이용자부담	비용징수(능력별 부담, 0엔~전액)	자기부담(간소화된 소득단계별 정액부담)
사업자	위탁사업자	지정사업자
불복신청	조치결정, 해제, 정지, 변경처분에 대하여 가능	신청각하결정, 조성취소, 급부내용에 대하여 가능

2003년 실시 예정인 지원비제도는 조치제도와 사회보험제도의 절충형이라는 평가가 있으며, 조치제도에서 사회보험제도로 이행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宮武 剛, 2002). 여기서는 2000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개호보

협제도와 지원비제도와 비교를 통하여 지원비제도의 특징을 명확하게 밝혀보고자 한다. 지원비제도와 개호보험제도와 비교는 <표 5-1-2>와 같다.

<표 5-1-2> 지원비제도와 개호보험제도와 비교

구 분	지원비제도	개호보험제도
시정촌 입장	제도의 관리자	보험자
재 원	공적비용(조세)방식	사회보험방식(다만, 비용절반은 조세로 부담)
수 급	이용희망자가 신청	이용희망자가 신청
심 사	시정촌에서 심사	시정촌, 광역연합 등 개호인정심사회가 심사
심사항목	장애종류·정도·심신상태를 주로 심사하면서, 가족의 개호나 서비스 정비상황 등도 고려함	본인의 요지원·요개호상태
지급기간	대상서비스에 따라 1년 내지는 3년	원칙적으로 6개월
이용자부담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부담(応能負擔)	본인의 이용서비스에 정도에 따른 부담(応益負擔)
재가지원	사례관리는 시정촌의 노력 목표	사례관리(케어플랜 작성, 사례관리자 배치 등)의 실시

자료 : 宮武 剛, 2002에서 재구성.

양 제도의 같은 점은 이용희망자가 신청하는 것에 의해 서비스 이용이 이루어진다는 점과 이용형태가 이용자와 사업자간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 사업자의 지정과 참가가 확대된다는 점 등이다. 반면, 양 제도의 차이점을 보면 지원비제도는 개호보험제도보다는 행정중심의 구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예로는 재정을 공적비용으로 부담하고, 이용과 이용량의 결정을 시정촌에서 하고, 이용자부담은 이용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부담하는 것 등이다.

나. 지원비제도의 개관

일본의 장애인복지시설 지원비제도는 아직 모든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기본사항은 상당부분 정리가 된 상태이다. 2003년 4월부터 우선 실시하면서 문제점이 나타나는 대로 대처한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각 시정촌에는 2003

년부터 지원비제도를 바로 시행할 수도 있고, 1년 동안 현행 조치제도를 유지하면서 지원비제도 도입을 준비할 수도 있도록 그 선택권이 주어져 있다.

여기서는 일본 지원비제도의 기본구조, 지원비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사업자·시설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지원비 기준, 이용자 부담분 기준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¹²⁾.

1) 지원비제도의 의의

지원비제도의 의의는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東京都社會福祉協議會, 2001). 첫째, 이용자가 자신의 의사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행정이 서비스 제공자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급부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에게는 서비스 구매자 내지는 소비자로서의 권리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셋째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선택함으로써 경쟁원리가 작동하게 되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2) 지원비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1) 지급결정 시 감안사항

장애인에게 지원비의 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후생노동성이 정한 사항을 감안하여 재가서비스는 지급량과 지급기간을, 시설서비스는 장애정도구분과 지급기간을 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후생노동성이 정한 감안사항 가운데 시설보호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① 장애 종류 및 정도, 기타 심신의 상황 : 당해 장애인의 장애인수첩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장애가 있으므로 일상생활을 해 나가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 등을 포함하여 감안해야 한다.

12) 여기에서 인용하는 자료는 별도로 밝히지 않는 한 2002년 6월 14일 및 2002년 9월 12일에 실시한 "지원비제도 담당과장 회의자료"를 참고한 것이다(障害者福祉研究會, 2002; 厚生労働省 社會 援護局 障害保健福祉部, 2002).

② 서비스를 제공할 사람의 상황 : 당해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사람의 유무, 연령 및 심신의 상황 등을 감안하고, 생활시설 서비스가 적절한지, 통원시설의 서비스가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③ 재가생활지원비의 수급상황

④ 시설훈련 등 지원비의 수급상황

⑤ 재가지원 및 시설지원 이외에 보건·의료 및 복지서비스 등의 이용상황

⑥ 이용에 관한 의향의 구체적인 내용 : 당해 장애인이 받으려는 서비스의 내용 및 이용목적 등 구체적으로 어떤 이용 의향이 있는지를 감안하고, 시설보호 지원비의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 때 사회참가의 의욕을 포함하여 본인이 어떤 생활을 하고 싶은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⑦ 지금 놓여져 있는 환경 : 시설로의 통원이 가능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당해 장애인이 살고 있는 주택의 입지나 교통수단의 상황을 감안하는 것 등을 상정하고 있다.

⑧ 지정 재가(시설)지원 제공체제의 정비 상황 : 지원비 지원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실제로 당해 장애인이 당해 시설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 사항을 감안하는 것이다. 이용 가능성은 장애인으로부터 이용예상시설을 파악하는 것 외에 장애인(장애아 또는 보호자)으로부터 욕구 파악, 알선·조정, 요청 등에 의해 판단하게 되지만, 시설보호 지원비의 경우에는 당해 장애인이 입소를 희망하는 시설에 비어있는 정원여부가 이용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자료의 1가지이다. 지원비제도의 도입 취지를 생각해 보면, 서비스의 기반정비는 중요한 과제이다. 지급신청의 심사과정은 지역에 있어서 서비스 기반정비의 필요한 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자료인 것이고, 도도부현, 시정촌은 지역의 욕구를 근거로 한 계획적인 기반정비를 위해 한층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감안사항 파악 방법

감안사항은 우선 신청자 본인으로부터 시정촌의 직원이 파악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본인으로부터는 충분한 파악이 곤란할 경우에는 본인의 상태를 잘

알고 있는 자(가족 외에도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시설직원을 포함)로부터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표 5-1-3〉 감안사항 정리표(시설보호 지원비의 경우)

이 름:		
장애 종류 및 정도	신체장애인복지수첩 요육수첩 정신보건복지수첩	(기재내용)
		장애정도구분:
기타 심신의 상황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상황	본인과의 관계: 연령: 심신 상황: 생활 상황:(취업상황 등을 기입)	성별:
시설보호 지원비의 수급 상황	지원 종류: (지원 기간)	
재가생활지원비의 수급상황	지원 종류: (지급량)	(지급 기간)
기타 보건의료서비스 또는 복지 서비스 등의 이용 상황	서비스이용 상황:	
시설지원의 이용에 관한 의향의 구체적인 내용	이용목적 등:	
	신청지원종류: 신청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당해 장애인이 처한 환경	(당해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입지, 교통수단의 상황 등을 기입)	
당해 신청에 관련된 시설지원의 제공체제 정비 상황	이용예정시설:	
비 고		

또한 “감안사항정리표(시설보호 지원비)”는 지급결정에 있어서 이상의 사항을 감안하기 위한 참고로 표시하는 것이다. 시정촌은 신청자로부터 이러한 사항을 파악함으로써 지급결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3) 지급기간

지원비 지급기간에 대해서는 장애 정도나 서비스 제공하는 사람의 상황 등 지원비 지급결정 시에 감안사항에 따라 지원비 지급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시정촌이 장애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의 적합성을 확인함과 아울러 적절한 장애정도구분 및 지급량에 대한 재검토를 하기 위해 후생노동성이 정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정촌이 정하게 되어 있다. 후생노동성에서 정한 기간은 재가지원 1년, 지적장애인지역생활시설(그룹홈) 3년, 시설지원 3년으로 되어 있다.

(4) 장애정도구분

장애정도 구분은 중증장애인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 시설보호 지원비 결정 시에 장애정도를 구분하여 정함으로써 지원비 금액의 차이를 설정하기 위함이다. 그 대상은 시설(생활 및 통원) 이용자로 장애정도에 따라 지원비를 차등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장애정도 구분은 시설의 유형마다 그 특성을 반영하여 점검항목이 조금씩 달리 설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시정촌이 신청자 등으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하게 된다.

점검항목은 생활동작 등에 관한 지원 항목과 사회참가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항목마다 ① 전면 보호, ② 부분 보호, ③ 보호 필요성 낮음 혹은 ① 매일 지원 필요, ② 자주 지원 필요, ③ 지원 빈도 낮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항목을 체크하여 2점, 1점, 0점으로 점수화 한 후 각 항목의 점수를 더한 총점으로 장애정도 구분A, 구분B, 구분C로 나누게 되어 있다.

(5) 상담지원체제의 충실 및 서비스이용에 관한 알선·조정, 요청

장애인이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으려면 장애인 주변에 서비스 선택을 위한 적절한 상담이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도도부현과 시정촌,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에 대하여 정보제공이나 상담, 지도 등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상담업무의 내용으로는 서비스 선택을 위한 상담과 사업자에 대한 정보제공이 있다. 이용자가 지원비 지급신청에 앞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 종류를 선택하고 어떤 서비스를 종합하여 이용하는 것이 적합한지 등을 상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자의 정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즉, 사업자 연락처, 시설·설비 상황, 비어있는 상황, 시설의 지원방침, 서비스 평가결과 등을 이용자가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어야 적절한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체제로는 이용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찾아내어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그리하여 일부 시정촌에서는 장애인지역오류등지원사업, 시정촌장애인생활지원사업, 지적장애자생활지원사업 등을 실시하여 지역내 장애인들의 상담 및 생활지원을 통하여 이를 보완하고 있다.

또한 시정촌은 이용자의 희망에 따라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알선·조정, 요청을 하게 되고, 시정촌의 창구에서는 이러한 알선·조정, 요청이 사업자의 정보제공과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도도부현은 시정촌이 행하는 알선·조정, 요청에 대하여 시정촌 상호간의 연락·조정 등을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필요에 따라 시설이 이용자를 선별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시설서비스의 이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공적인 조정시스템의 구축이 중요하다.

3) 지정 기준의 주된 내용

지정 기준은 직원, 설비, 운영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며, 생활시설과 통원시설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 여기서는 생활시설을 중심으로, 직원에 대해서는 시설종별로 살펴보고, 설비에 대해서는 신체장애자요호시설의 기준만 제시하기로 하며, 운영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내용만 제시하기로 한다. 생활시설의 직원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나라 시설 표준운영비 산출에 일본 시설의 직원 배치기준이 좋은 참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 직원에 관한 기준

시설의 직원배치기준은 시설종별로 다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만, 표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지만, 각 시설에서 이용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직원을 별도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표 5-1-4〉 지체부자유자갱생시설 직원 배치

시설유형	정원	의사	간호사 등	영양사
지체 부자유자 갱생시설	40명 이하	필요 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근환산¹⁾ 8인 이상 • 간호사, 작업지도원, 생활지도원은 각각 상근 1인 이상 • 이학요법사, 작업요법사는 각각 상근환산 1인 이상 • 심리판정원, 직능판정원, 안마맞사지지압사 	-
	50명 이하			1인이상
	51명 이상			• 정원 20명당 1인씩 증원
시각 장애인 장애인 갱생시설	40명 이하	필요 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근환산 8인 이상 • 간호사, 작업지도원, 생활지도원은 각각 상근 1인 이상 	-
	50명 이하			1인이상
	51명 이상			• 정원 20명당 1인씩 증원
청각·언어 장애인 장애인 갱생시설	40명 이하	필요 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근환산 8인 이상 • 간호사, 작업지도원, 생활지도원은 각각 상근 1인 이상 • 심리판정원, 직능판정원, 청능훈련사 	-
	50명 이하			1인이상
	51명 이상			• 정원 20명당 1인씩 증원
지적 장애인 장애인 갱생시설	40명 이하	필요 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부 또는 간호사, 생활지도원, 작업지도원의 총수상근환산으로 거주자 4.3명으로 나눈 인원 수 이상 • 보건부 또는 간호사는 상근 1인 이상 • 작업지도원 또는 생활지도원은 상근 1인 이상 	-
	41명 이상			1인이상
신체 장애인 장애인 요보호 시설	40명 이하	필요 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호사, 개호직원, 이학요법사 또는 작업요법사, 생활지도원의 총수는 상근환산으로 거주자 2.2명으로 나눈 인원 수 이상 • 간호사는 상근환산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자 50명 이하는 2인 이상 - 거주자 51명 이상 60명 이하는 3인 이상 - 거주자 61명 이상 80명 이하는 4인 이상 - 거주자 81명 이상 150명 이하는 5인 이상 - 거주자 151명 이상 180명 이하는 6인 이상으로 하며, 이 가운데 상근 1인 이상 • 이학요법사 또는 작업요법사는 상근환산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자 100명 이하는 1인 이상 - 거주자 101명 이상은 2인 이상 • 생활지도원은 상근 1인 이상 	-
	50명 이상			1인 이상

주: 1) 시설직원의 근무연시간을 당해 시설에서 상근직원이 근무해야 하는 시간(주당 근무시간이 32시간 이하인 경우 32시간으로 함)으로 나눈 것에 의해 산출된 당해 시설직원 수를 상근 직원 수로 환산하는 방식. 예를 들면, 상근직원이 주당 40시간 근무하는 시설에서 비상근으로 주당 20시간 근무하는 직원 2명을 배치하면 상근직원 1명을 배치한 것으로 간주함.

4) 계약에 있어서 기본적인 사고

지원비제도에서는 원칙적으로 이용자 본인과 사업자간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일정한 지원이 있으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지적장애인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대로 계약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계약체결에 있어서 성인후견제도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성인후견제도 이용을 위한 지원책에 대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다. 지원비 기준

1) 지원비 기준의 기본적인 사고

지원비제도의 핵심이 지원비의 금액이다. 지원비의 기준이 적절하지 않으면 다양한 민간단체가 지원비제도의 사업자로 참가하지 않게 될 것이고, 기존의 시설들은 지방자치단체의 별도의 지원이 없으면 파산하게 된다. 따라서 이 기준은 지원비제도의 성패와 관련된 중요한 것이다. 지원비 기준에 대한 기본적인 사고에 대하여 후생노동성은 아홉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① 각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는 통상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적절하게 평가한 기준이어야 한다.

② 장애인이 지역생활로의 추진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정한다.

③ 시설훈련 등의 지원비는 중증이나 중복장애인이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정도구분에 따라 격차를 둔 기준이어야 한다.

④ 재가생활지원비 가운데 주간보호, 단기보호 및 지적장애인 생활원조에 관한 지원비 기준에 대해서도 장애정도를 고려한 기준으로 정한다.

⑤ 재가 및 시설 지원을 담당할 사업주체에게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업 운영이 가능한 기준이어야 한다.

⑥ 동일한 서비스라면 설치주체가 다르다고 해도 동일한 지원비 기준이어야 한다.

⑦ 재가 및 시설 지원에 필요한 인건비 등의 수준은 동일한 지역에서는 같은 기준이어야 한다.

⑧ 이용자와 사업자 등 모두가 이해하기 쉽고, 간편하고 합리적인 기준이어야 한다.

⑨ 현행 조치제도로부터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

2) 기준액

지원비제도의 지원 기준액은 시설훈련 등(시설보호) 지원비와 재가생활지원비(재가보호), 재가생활지원비(주간보호), 재가생활지원비(단기입소), 재가생활지원비(지역생활원조)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시설훈련 등 지원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1) 지원비의 구성요소

지원비는 기본적으로 네 가지로 구성된다. 이렇게 지원비 구성요소를 나눈 것은 현재 전국적으로 다양한 지원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시설의 운영비 평균치를 보다 합리적으로 산출하여, 이를 근거로 하여 지원액을 산출하기 위한 것이다.

첫째는 시설훈련 등 서비스에 관한 비용[1]로서 여기에는 지도(지원)인, 개호직원, 간호사, 이학요법사, 작업요법사 등의 인건비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직원의 인건비를 말한다. 이들의 배치기준은 앞에서 제시한 바 있고, 이들의 인건비 수준은 공무원의 인건비와 연동시켜놓고 있고 여기에는 각종 수당도 포함한 총액기준으로 연동되어 있다(厚生省社會・援護局施設人材課, 1999, pp.42-43).

둘째는 시설훈련 등 서비스에 관한 비용[2]로서 [1] 이외의 비용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① 영양사, 조리사의 인건비 등, ② 식사비용(식사 재료비, 광열수소비 등), ③ 건강관리 등 비용이 포함된다.

셋째는 시설운영에 관련된 기본적인 관리비용 등으로 ① 관리자, 사무원 등

의 인건비, ② 보수관리경비, ③ 광열수도비, 연료비, ④ 소모품비, 비품비, ⑤ 기타 사무관리 경비 등으로 구성된다.

넷째는 시설·설비 정비의 설치자 부담분의 감가상각 상당을 포함하고 있다. 일본의 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정비나 설비정비 시 국고보조 기준액의 4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다.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용을 지원비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2) 지원비의 결정기준

지원비를 결정하는 기준은 몇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는 장애정도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진다. 장애정도구분은 세 단계 즉, 구분A(重症), 구분B(中症), 구분C(輕症)로 구분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신체장애자요호시설의 장애정도구분의 예를 통하여 제시한 바 있다.

둘째는 정원규모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진다. 정원규모는 세 단계 즉, ① 소규모 : 입소시설 30~40명, 통원시설 20명, ② 표준규모 : 입소시설 41-90명, 통원시설 21-60명, ③ 대규모 : 입소시설 91명 이상, 통원시설 61명 이상으로 나누어져 있다. 규모에 따라 이용자 1명당 지원액이 달라진다.

셋째는 지역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지역차이는 국가공무원 급여의 조정수당 지급비율에 준하여 설정된 것이다. 즉, 지역차이는 시설직원의 인건비가 공무원의 인건비와 연동되어 있으므로 이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 지역은 다섯 구역 즉, ① 特別區, ② 特甲區, ③ 甲區, ④ 乙區, ⑤ 丙區로 전국이 구분되어 있다.

넷째는 특별한 장애특성을 지닌 이용자에 대한 가산제도가 있다. 이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함과 아울러 시설이 이용자를 선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 사료된다. 신체장애자시설에서는 ① ALS(의사로부터 변연성 측색경화증 등 운동 뉴런 질환 분류에 속하는 병명으로 진단된 자) 등 지원가산으로 변연성의식장애자 가산, 근위축성측색경화증자 등 가산, 신경내과외사 가산, 간호사 가산이 포함되어 있고, ② 상근의사 가산이 있다. 지적장애자시설에서는 ① 강도행동장애 지원 가산, ② 자활훈련 지원 가산이 있다.

이 외에도 지원액의 산정단위는 1개월로 단위로 설정되어 있고, 이용자의 지역생활로 이행 노력 등의 평가를 반영하는 가산제도 즉, 퇴소 시 특별지원가산과 입소 시 특별가산을 설정하고 있다. 또한 지원비제도로의 이행으로 인하여 새롭게 발생하는 사무 등의 지원을 위한 특별사무비 산입 등이 있다.

(3) 지원액

지원액은 시설종별로 제시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신체장애자요호시설 지원액과 지적장애자입소갱생시설 지원액을 중심으로 제시하기로 한다.

신체장애자요호시설의 지원액은 장애정도와 정원규모를 교차시켜 제시하면 <표 5-1-5>와 같다.

<표 5-1-5> 신체장애자요호시설의 지원액(월/1인/엔)

구분	정원 30명 이상 ~ 40명 이하 시설	정원 41명 이상 ~ 90명 이하 시설	정원 91명 이상
구분A	485,000	393,200	363,300
구분B	452,100	373,500	343,500
구분C	419,500	353,800	323,800

지역차이는 특별구의 경우 지원액에 1080/1000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하고, 특감구는 1067/1000로, 감구는 1040/1000, 을구는 1020/1000, 병구는 1000/1000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ALS 등 지원 가산액(월/1인)은 ①변연성의식장애자 가산 10,000엔, ②근위축성측색경화증자 등 가산 20,000엔, ③신경내과 의사 가산 14,500엔, ④간호사 가산 82,400엔으로 되어 있다.

이 외에도 입소 시 특별가산금이 22,500엔/1인, 퇴소 시 특별지원가산금이 10,700엔/1인으로 제시되어 있다.

지적장애자입소갱생시설의 지원액은 장애정도와 정원규모를 교차시켜 제시하면 <표 5-1-6>과 같다.

〈표 5-1-6〉 지적장애자입소갱생시설의 지원액(월/1인/엔)

구분	정원 40명 이하 시설	정원 41명 이상~ 90명 이하 시설	정원 91명 이상
구분A	321,500	301,700	267,400
구분B	299,000	281,100	241,500
구분C	270,200	250,300	215,700

지역차이는 특별구의 경우 지원액에 1080/1000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하고, 특갑구는 1067/1000로, 갑구는 1040/1000, 을구는 1020/1000, 병구는 1000/1000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강도행동장애 지원 가산액(월/1인)은 ① 구분A 장애자는 179,300엔, ② 구분B 장애자는 199,900엔, ③ 구분C 장애자는 230,700엔으로 되어 있다. 또한 자활훈련 지원 가산액(월/1인)은 ① 동일 부지 내의 건물에서 실시할 경우 116,200엔, ② 동일 부지 밖의 건물에서 실시할 경우 124,800엔으로 되어 있다.

이 외에도 입소 시 특별가산금이 22,500엔/1인, 퇴소 시 특별지원가산금이 10,700엔/1인으로 제시되어 있다.

라. 이용자 부담분 기준

이용자 부담분은 일본에서 조치제도 하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지원비제도에서의 이용자 부담 수준은 조치제도에서의 수준과 같도록 설정하고 있다. 다만, 조치제도 하에서는 시정촌에 납부하던 것을 지원비제도에서는 사업자에게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이용자 부담분은 장애인 및 그 부양의무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후생노동성에 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정촌의 장이 정하게 되어 있다. 특히 부양의무자에게 부담시키는 이유는 국민 일반의 친족부양과의 균형을 맞추어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1) 주된 부양의무자

지원비제도에서는 이용자 부담분의 지불 책임이 있는 주된 부양의무자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 ① 이용자가 20세 이상인 경우: 지급결정 시 동일세대, 동일생계의 배우자 및 자녀가운데 최다 납세자
- ② 이용자가 20세 미만인 경우: 지급결정 시 동일세대, 동일생계의 배우자, 부모 및 자녀가운데 최다 납세자

2) 부담능력의 판정방법

부담능력의 판정방법은 서비스이용 유형과 이용자 본인 및 부양의무자로 구분하여 제시되어 있다.

- ① 시설훈련 등 지원의 이용자 본인 부담분 : 이용자 본인의 전년도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즉, “대상수입액”에 따라 판정한다. 여기에서 전년도 수입으로 인정되는 것은 연금 등의 수입, 직업재활시설의 공임 수입, 재산 수입, 이자·배당 수입, 기타 수입 등이고, 수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임시적인 위문금이나 지원금 등에 의한 수입,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적 급부금, 공해에 의해 건강피해 보상금, 아동수당, 장애자의 갱생훈련비 등이다. 필요경비는 소득세 등의 조세, 사회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것, 일용품 또는 일상생활비, 갱생훈련을 위한 경비, 의료비의 자기 부담분, 기타 필요경비 등이다.
- ② 재가생활 지원의 이용자 본인 부담분 : 이용자 본인의 전년도 소득세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다. 장애아의 본인 부담분은 제외한다.
- ③ 시설훈련 등 지원·재가생활 지원의 부양의무자 부담분 : 주된 부양의무자의 전년도 소득세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정한다.

3) 이용자 부담액의 설정

시설훈련 등 지원비에 대한 이용자 본인 부담분은 대상수입액에 따라 40계층

으로 구분한 부담분이 설정되어 있다. 시설훈련 등 지원비의 주된 부양의무자 부담분은 부양의무자의 전년도 소득세액에 따라 18개 계층으로 구분한다.

시설훈련 등의 기존 이용자의 경우에는 제도 시행의 경과조치로 입소 후 3년 미만의 자, 입소 후 3년 이상의 자로 구분하여 별도의 부담기준월액이 제시되어 있다.

마. 지원비제도의 과제

지원비제도의 도입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과제가 대두되고 있다. 여기서는 지원비제도의 근본적인 구조에 대한 과제와 지원비제도 실시와 관련된 과제로 구분하여 다루고자 한다.

우선 지원비제도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과제를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郡司 巧, 2002).

첫째는 장애인복지서비스는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지는데, 이 영역에 시장경쟁원리의 도입으로 나타날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특성은 장애인의 사회적 자립이나 사회참가라는 사회적 가치실현이라는 점, 장애인의 인권이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고도의 윤리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대인서비스라는 점, 일정 수준의 질이 확보된 서비스이어야 한다는 점,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공적 책임 즉, 최종적으로 아무도 제공하지 않을 때는 행정이 주체가 되어 제공해야 한다는 점, 일정한 공적인 규제 하에 제공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공공재의 성격을 가진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시장경쟁원리 적용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의 과제가 남아 있다.

둘째는 서비스의 양적인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관점이나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관점에서는 서비스 공급 측의 참가조건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나 전문성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 이 두 관점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또 다른 과제이다.

셋째는 서비스의 가격 메커니즘이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내용이 나 질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정가격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표준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관점으로부터의 요청과 어떻게 맞추어 나갈 것인가가 과제이다.

넷째는 이용자의 욕구는 앞으로 한층 더 다양화, 고급화되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하여 공적인 체계로 어느 정도 이용자의 욕구에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도 남아 있다.

다음은 2003년 4월부터 실시 예정인 지원비제도 도입 상의 과제를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金政玉, 2002).

첫째는 지원비 지급결정에 있어서 감안사항 가운데 “서비스를 제공할 사람의 상황”, “서비스 제공체제의 정비 상황” 등은 지원비제도의 핵심인 이용자의 의향이 존중이라는 것과 배치되는 것으로 이 두 사항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서비스 제공자의 상황”은 가족의 개호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사회복지 기초구조개혁의 기본이념과 크게 모순되는 것이고, “서비스 제공체제의 정비 상황”은 만약 그 기준을 현재 구비된 제공체제를 기준으로 한다면 지원비제도 시행의 의미가 없게 된다.

둘째, 이용자가 시정촌의 지원비 지급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시정촌에 불복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 이는 이용자의 권리보호라는 측면에서 보면 매우 부적절한 제도이다. 따라서 이러한 불복신청에 대해서는 시정촌과는 일정한 거리를 둔 독립적인 제3자 심사기관을 설치하여 담당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는 지원비제도에서는 지원비 지불을 시정촌이 사업자에게 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이용자의 권리가 축소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본인이 수령하여 사업자에게 지불하도록 하든지, 사업자가 시정촌으로부터 직접 이용자를 대리하여 수령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시정촌이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이용자에게 지불하고 이용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이용한 후 이에 해당하는 이용권을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는 이용자부담에 있어서 이용자 본인 부담분 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에

게까지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다(京極高宣, 2002, p.60). 권리의 주체는 이용자인데 때문에 본인의 소득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고, 장애연금제도도 성인이 된 장애인에 대한 부모의 부담을 고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대책이 강구된 것을 감안하면, 이용자 본인 부담분으로 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다섯째는 지원비제도의 지원액에 따라 시설운영에 유리한 정원수와 불리한 정원수가 나온다. 현재 제시된 지원액을 근거로 보면, 유리한 정원수는 40명과 70명 정도이고, 불리한 정원수는 50명과 100명 이상이다. 그런데 일본에서 이제까지 표준시설규모는 50명이었다. 소규모시설로의 유도라는 정책의도와는 상관 없이 시설운영에 유리한 정원수로 재편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는 지원비제도의 재가개호 서비스는 목욕, 배변, 식사, 조리, 세탁, 청소 등의 가사지원, 생활 등에 관련된 상담 및 조언, 외출 시의 이동 개호 등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는 이용자의 종합적인 사회참가를 실현하기 어렵다. 따라서 새로운 지원서비스 즉, 취업 시의 원조, 사회활동, 문화적 활동, 스포츠, 레크레이션, 자원봉사활동, 여행 등에 대한 지원을 지원비제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바. 결론

이제까지 살펴본 일본의 장애인복지시설 지원비제도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선택권을 클라이언트에게 주어야 하고, 적절한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가야 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많다.

앞으로 시설표준운영비를 적절하게 산출하여 이를 근거로 정부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시설에서는 정부보조금뿐만 아니라 민간자원의 적절한 활용을 통하여 시설보호의 질적 향상을 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일본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부보조금이 실제 시설운영비보다 현격히 낮은 수준이므로 정부보조금의 증액과 더불어 일본의 지원비제도와 같은 제

도의 도입을 추진하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단순히 시설표준운영비 산출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시설운영비에 대한 정부보조금의 현실화 수준과 새로운 제도 도입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시설운영제도의 개혁까지를 함께 구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제 2 절 영 국

가. 개 요

영국의 사회복지서비스는 기본적으로 2가지 지불방식에 기초하고 있다. 첫째는 중앙정부에 의해 조직되고 재원이 조달되는 급여체제(Benefit System)이고, 둘째는 지방차원에서 지방정부나 자원기관(voluntary organisation)을 통해 조직화 되어 보호자(carer)에게 “半(혼합)지불”되는 방식(at “semi-paid” rates)이다.

우선 피보호자(care-recipient)와 보호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전후에 성립된 영국 국민보험 및 공적부조 체계에 기초하고 있다. 특별히 장애인에 대한 급여들은 1970년대 이후 주로 도입되었고, 이전의 사회보장 체계가 기초하고 있는 기여(contributory) 및 비기여(non-contributory: 주로 자산조사에 의거하는) 급여라는 두 종류의 국민보험 급여 원칙에 근거한다. 이러한 원칙에 의거한 장애인에 대한 급여체제는 대단히 복잡하여, 장애인의 급여 권리에 관한 안내서가 무려 275페이지에 달할 정도이다.

지방정부와 자원기관을 통한 복지서비스의 급여는 다소 최근에 그 기원을 가진 방식으로서, 대체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정책 변화로부터 기인하고 있다. 즉 영국정부는 보건 및 사회 서비스에 복지의 혼합경제(mixed economy of welfare)를 도입하려고 하였고(그 대표적인 것이 1990년의 국민건강서비스 및 지역사회보호법 The National Health Service and Community Care Act 1990이다), 이로부터 지방 정부가 새로운 재정적 알선(arrangement) 책임을 맡고 재택보호를 크게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영국의 사회복지시설¹³⁾은 이미 1960년대부터 영국정부에 의해 지역사회보호(Community care)가 정책과제로 강조되면서 급속한 변화를 겪어 왔다. 특히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시설보호에 드는 비용의 급증(특별히 인구 노령화에 따른 노인시설의 부담 증대)은 이 부문에 대한 공공재정 통제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만든다. 이로 인해 1980년대 이후 장애인 및 노인 등 장기 보호(long-term care)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병원의 입원치료 이용을 줄이도록 하고, 민간시설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계약 관계에 있는 시설의 수가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의 제도상 전환은 시설들의 두드러진 수적 변화를 봐도 쉽게 드러난다. 시설 유형별¹⁴⁾로 추세를 살펴보면, 1976년 영국의 시설 이용자 중에서 공공시설(지방당국에서 제공하는) 이용자와 민간시설의 이용자 비율이 5:1정도로 공공복지시설 이용자가 압도적이었던 반면에, 1988년에는 1:1로 급격히 변화하였고 1992년에는 급기야 이 비율이 1:2로 되어 민간 및 자원복지시설 이용자가 공공복지 시설 이용자보다 오히려 많아지기에 이르렀다.

<표 4-2-1>을 보면 1977/8년에 정부가 시설에 대해 제공한 보조금의 자료가 나타나 있다. 기관에 대한 지원금(Agency Payments)은 대체적으로 이용자에 대한 생활비(숙식비bed and breakfast accommodation 등)가 포함되어 있고, 정부보조금(Grants)은 지역에 따라 그 내역이 틀린데 여러 가지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지출로 구성된다(사회복지 수급자에 대한 상담비용, 지역사회개발비 등). 아동 시설 및 성인시설에 대해 정부가 지불한 금액의 대부분은 지원금(Agency Payments) 지불로 되어 있고, 지역사회보호나 데이케어의 경우는 정부보조금(Grants)이 지원금보다 두 배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던 것이 1990년 초반에 들어서면, 지방정부에게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니드를 사정(assessment)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구매하며, 또한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지만 구매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돈(Direct Payments)을

13) 현재 영국에서는 사회복지 시설을 생활보호홈(Residential care home), 너싱홈(Nursing home)의 두가지로 공식적으로 분류함. 이 중 너싱홈은 거주자가 집중적인 보호 특히 의료적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시설을 말함.

14) 영국의 사회복지시설(Residential Home)은 지방당국(Local Authority:LA), 민간(Private), 자원(Voluntary) 시설로 나누기도 함(민간과 자원 시설을 합하여 Independent sector로 부름).

지불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된다. 이처럼 사회보장 급여가 시설 이용료로 지불될 수 있게 함으로써, 정부의 사회보장 부담과 민간 및 자원복지시설 수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왔다.

〈표 5-2-1〉 민간 및 자원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불 (1977/8년도)

(단위: 백만 £)

구분	아동시설	성인시설	지역사회보호	데이케어	합계
정부보조금	0.04	0.40	3.83	5.43	10.63
기관 지원금	28.53	39.22	2.15	3.24	73.44
합계	28.56	39.62	6.00	8.66	84.07

자료: RO(Revenue Out-turn) Data, Department of Environment

1999년 현재 영국에는 24,800개의 거주시설(residential care home)과 6,100개의 요양보호시설(nursing home)이 있으며, 각각 345,000명과 196,000명의 이용자가 각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중 민간 및 자원복지시설(independent sector)이 90%의 시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홈 이용자의 4/5가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영국 정부가 사회복지시설 서비스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원을 지원하는 역할에서, 이용자의 니드를 사정하고 민간시설들을 평가·감독하며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계약자로서 역할하는 추세로 변화하여 왔다.

이후에는 특히 영국의 노인복지시설에 초점을 맞추어 시설의 재원과 정부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소개하고자 한다.

나.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비 제도

복지서비스의 제공에 대해 사회보장제도의 일부로서 영국정부가 제공하는 급여의 체계(Benefit System)는 대부분 피보호자(care-recipient)에게 지불되도록 하고 있으나, 단 두 가지 급여만은 비공식적인 보호자(informal carer)에게 지불될

수 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장애인 보호 수당(Invalid Care Allowance: ICA)인데, 이 급여를 보호자가 수급하려면 피보호자가 반드시 보호대기 수당(Attendance Allowance)의 현재 수급자여야만 보호자는 ICA를 보호에 대한 보수로 받을 수가 있다. 이때 보호자는 최소 주당 35시간을 보호에 할애하는 노동가능자(16~60세까지의 연령인 여성 혹은 65세 이하까지의 남성)여야 한다. 이는 ICA급여가 특수한 필요를 가진 피보호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동시간을 포기한 데 대한 보상으로서 주어지는 수당이기 때문이다. ICA는 주당 일정액(flat-rate)이 동일하게 주어지는 수당이며, 그 수준은 기본적 생계에는 훨씬 못 미치는 액수(1994년 현재 주당 £33.70)이다. 이는 ICA가 비기여(non-contributory) 비자산조사(non means-tested)형의 급여임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 급여의 수준은 실업급여나 연금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도록 고려되고 있으며 보호자가 연금을 받는 나이가 되면 이 급여의 수급은 중단된다.

보호자에게 지불되는 두 번째의 급여는 보호자 할증금(Carer Premium)이라 불리우는 것이다. 이는 보호자가 자산조사에 의한 공적부조 수급자인 경우에 지불되는데, 보호자는 자산조사에 의한 수급자격자인 경우에 ICA, 공적부조와 보호자 할증금을 동시에 모두 수급 가능하다.

〈표 5-2-2〉 영국의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비기여 사회보장 지출추이

구분	지출 (백만 불)				대상자 (천명)			
	1976-77	1981-82	1986-87	1991-92	1976-77	1981-82	1986-87	1991-92
보호수당	114	330	779	1,706	230	350	605	970
장애수당	2	6	104	262	5	5	25	155
중증장애수당	34	130	285	583	105	180	265	300
이동수당	8	173	514	1,016	30	210	460	660

자료: Social Trends, No. 23, 1993. London: Central Statistical Office, HMSO.

한편, 지방정부가 노인을 위해 제공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는 대체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가정에 머물면서 보호를 요하는 노인을 위해서 직접

적으로 재택서비스(home help나 home care 등)를 제공할 수 있으며, 혹은 지방 정부를 대신해 민간이나 자원복지부문에서 서비스(시설 혹은 재택)를 제공하도록 알선(arrangement)을 해줄 수도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이 개별 노인이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받아야 할지 지방 정부에서 니드를 사정하는 욕구조사인데, 이를 needs assessment라고 하고 이에 따라 care plan을 수립하게 된다. 이러한 절차는 지방사회서비스부(local authority social service department)가 책임을 맡게 된다.

이러한 절차가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지방정부가 시설 이용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지원 시작하는 과정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지방정부는 개별 노인의 재정에 대한 조사(financial assessment)도 실시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을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된다. 참고적으로, 자산(assets)과 저축이 £11,750미만이면 지방정부가 전적으로 시설이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자산과 저축이 £11,750에서 £19,000사이이면 숙소에 대한 비용과 케어비용 일부를 지방정부에서 지원하지만, 다른 일부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 자산과 저축이 £19,000이상이면, 시설이용에 드는 비용을 전적으로 개인이 각자 부담해야 한다. 한편 처음에 시설을 이용할 당시 자산과 저축이 £19,000이상이었다가 사람이 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 재산이 그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지방정부의 지원비를 받을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보호사정(care assessment)의 절차로는, 우선 케어 니드를 고려하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인지 결정하며 마지막으로 재정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정부 가이드에서는 지방정부가 케어에 대한 사정과 재정에 대한 사정을 분리해서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많은 지방 정부가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호사정의 절차는 정해진 것이 없고 지역에 따라 폭넓은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어떤 지역에서는 지방 정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다른 민간 시설에 알선을 의뢰할 것인지 혹은 어떤 서비스가 제공될 것인지 상세한 정보가 주어지는 곳도 있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상담 후에 케어 사정의 정보를 지방정부에 보내어 지방정부가 이를 결정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

용자의 재정적 결핍을 이유로 지방정부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는 없도록 되어 있다. 다만 이용자의 재정적 상황이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 되는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해 법적으로 불만(complaint)을 표시할 수 있다. 어쨌든 이러한 과정이 종결될 때에는 다음 3가지 표준화된 사정정보(standardized assessment information)가 작성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기본신상정보(basic personal information), 니드와 건강에 대한 정보, 그리고 케어 플랜이 포함된다.

일단 care assessment가 완료되면, 지방당국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서비스를 제공받을 조건(eligibility criteria)에 대해 전국적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으며, 각각의 지방정부가 기준을 설정한다. 이 기준은 각 지방정부의 사회서비스 위원회(Social Service Committee)가 설정하고 인준하며, 이 사회서비스 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기준을 설정할 때는 그 지역에 존재하는 자원이 고려되지만, 일단 설정된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그 사후에 시설이 부족하다든지 이용료를 지불할 예산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신청자의 서비스 이용 요구를 거절할 수는 없도록 지방정부에 책임이 지워진다.

다. 노인복지 시설의 이용료

민간 및 자원복지시설이 지방정부와 계약을 체결하고 정부를 대신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자, 시설 이용료를 산정하는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연구되어 왔다. 즉 정부의 사회복지시설 민간화와 시장원리에 입각한 운영 방향에 따라 시설의 민영화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정부는 시장에 의해 공급되지 않던 보건 및 복지 서비스가 적정한 유사시장(Quasi-market) 가격에 의해 책정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왔던 것이다.

이러한 가격 책정을 위해서는 이용자의 건강에 대한 사정(health assessment), 어떤 서비스가 적정할 것인가에 대한 사정 등이 필요하다. 장기보호(long-term care)를 위한 사정에서 대략적으로 책정된 무료너싱케어(free nursing care)의 추산가격은 서비스 필요의 정도에 따라 고(High: 주당 £110), 중(Medium: 주당

£70), 하(Low: 주당 £35)로 나뉘어 진다. 우선 ‘고’의 경우는 매우 복잡한 의료 및 재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중’은 표준화된 시설보호로도 되는 경우, ‘하’는 재택 보호(home care)가 가능한 경우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체적인 비용의 산정은 어떤 시설에서 보호를 받을 것인지에 따라, 또 개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비용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는 신체적 건강과 의존성(Physical health and dependency: 기능적 제한, 시각 및 청각적 장애, 대소 실금 등) 그리고 정신 건강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인지 및 행동 장애, 거주지 및 교통접근성, 난방의 적절성 등 개인·환경적 요인도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가 된다.

서비스 비용의 수준(Levels of pay)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지리적 장소 혹은 지방 정부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 어떤 경우는 시장가격에 준하는 이용료가, 또 어떤 경우에는 지방정부가 체결할 계약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또 다른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시장가격이나 협의된 요금(agreed rates)에 연관시키지 않도록 규정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케어의 제공자가 방문한 횟수에 의해 이용료가 산정되는 것이다. 보호(caring)의 성격이 단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인지, 훈련된 기술이 필요한지 아닌지, 어느 정도까지의 책임성의 수준과 유형이 요구되는지, 요금에 어떤 요소들이 포함되는지 등등에 따라 보호의 가격화 정책(pricing policy)에는 많은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 현 상황에서 요금은 많은 부분 지불자(financier of care)측면, 보호세팅(setting of care)에 대한 공식적 분류 혹은 피보호자에게 주어진 급여체계가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급여의 한계 등에 의해 결정되는 수가 많다.

〈표 5-2-3〉 영국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지출추이, 1997-98
(단위: 백만파운드)

구분	노인	아동	학습장애	신체장애	정신보건	기타
시설보호	2,940	2,290	1,320	700	210	20
재가보호 (데이케어 등)	1,980	1,560	590	510	300	250

자료: Department of Health

한편, 사회복지 서비스의 이용료에 관련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혹은 피보호자)와의 관계에 금전적 보상이 미치게 될 영향이 라든지 혹은 보호에 대한 이용료의 성격이 과연 무엇인가(이것이 서비스 제공자가 헌신하는 시간에 대한 지불인가, 아니면 전문성에 대한 보상인지, 혹은 서비스에 노동력을 할애하지 않았더라면 벌어들였을 소득에 대한 기회비용인가)라는 문제 등이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서비스 이용자들은 한편으로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해 돈을 지불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연구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용자가 의존성이나 빚졌다는 느낌을 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용자들은 또 사회복지서비스가 단순히 서비스 제공자의 직업 이상이기를 바라기도 한다. 즉 그것은 서비스 제공자가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하며 단지 돈만 바라고 일을 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점의 표현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관계 및 만족도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할 것이다. 어쨌든 영국의 사회복지 서비스가 서비스 이용료를 이용자로부터 하여금 지불케 함으로써 얻게된 제도적 장점은, 이로 인해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감(accountability)을 높여주었다는 점일 것이다.

제 3 절 미 국

가. 시설 보호 인구

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 정신장애인, 부랑인 등 요보호대상자들에게 일정 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우리나라의 시설보호사업과는 달리, 미국은 1950년대 이후 시설보호사업의 문제점으로 비인권적인 처우, 비용의 비효율성, 재정지원방식 등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면서 탈시설화를 지향, 지역사회보호체제로 전환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체제 전환의 계기에는 지역사회보호가 시설보호에 비해

정부 지출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정치적인 목적도 포함되어 있었다. 즉, 수용시설 중심의 복지사업에서는 시설거주자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이 정부의 몫이었으나 탈시설화 정책이 진행되면서 이들에 대한 보호비용 측면에서 국가 책임을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었다.

1990년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미국에는 약 천만의 인구(모든 연령대를 포함한 전체 인구의 5% 정도)가 건강상 혹은 장애문제로 인해 일상생활상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들 중 대다수는 지역사회에서 보호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고, 대부분의 케어는 친구나 친지, 이웃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인의 3/4이 바로 이러한 무보상의 보호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약 20%의 장애인들은 이러한 비공식적 보호와 함께 정부의 복지서비스도 함께 제공받고 있다. 요양보호시설 등(nursing homes and other facilities)과 같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요보호자는 노인 160만명여명, 비노인 70만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Pepper Commission, 1990)

나. 정부의 재정지원 방식

최근 미국 정부의 사회복지시설이나 기관과 같은 사회복지 조직에 대한 재정 지원은 주나 지방정부로 이전되고 있다. 연방정부의 보조금은 지원방식에 있어서 유연성을 갖도록 하였으나, 공공부문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방법 및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를 결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다. 그리하여 현재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지원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먼저, 주정부가 재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가 운영하는 기관, 비영리 기관 등에 할당해 준다. 그 중에서도 미국의 사회복지사업은 오랫동안 종교에 기반한 사회복지시설과 파트너십을 유지해 오고 있는데, 이러한 종교기관에 대해서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면, 이들 종교기관은 다시 하위 단위의 종교시설 등과 하청과 같은 형식의 계약을 수립하여 이들 시설에 재원을 할당해 주는데, 이러한 재원은 작은 시설들에게는 가치있는 재원이 되고 있다.

이처럼 현재 미국에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방식은 존재하지 않고 다양하게 분할된 서비스가 제공(various fragmentary provision)되고 있다. 또한 공공부문에서 제공(public provision)되는 서비스에 일관된 분배의 원칙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 미국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다. 시설의 자원 구성 및 변화 동향

1) 시설의 자원 구성

2001년도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시설 및 기관(이후 조직)에 대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이들 조직의 자원은 개인기부금, 재단의 재정지원, 정부의 재정지원, 법인 기부금, 서비스 이용료, 캘리포니아 메디케어, 메디케어 등으로 구성되고 있다. <표 5-3-1>을 보면, 조직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자원은 정부의 자원(44.3%)이고, 다음은 재단의 재정지원이 19.9%이다. 그리고 서비스 이용료도 19.7%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1> 사회복지서비스 조직의 자원 구성

(단위: %)

구분	안전망사회복지시설		기타 사회복지서비스 기관		전체	
	지원받는 시설 비율	시설예산중 비율	지원받는 시설 비율	시설예산중 비율	지원받는 시설 비율	시설예산중 비율
개인기부금	89.8	15.1	89.8	19.6	89.8	17.2
재단 재정지원	84.2	15.3	87.8	24.8	86.0	19.9
정부 재정지원	80.5	47.5	63.5	40.2	72.4	44.3
법인기부금	66.7	5.4	61.4	12.9	63.2	8.9
서비스이용료	57.7	14.5	49.2	25.7	53.8	19.7
캘리포니아 메디케어	24.2	23.6	5.1	8.4	15.0	21.1
메디케어	10.7	8.3	0.0	0.0	5.8	11.1
기타 자원	46.5	18.3	44.7	29.5	45.5	23.6

주: 안전망(safty-net) 사회복지시설이란, 기초의료, 상담, 급식, 일시보호, 주5거 등의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함.

자료: LaFrance Association, Statewide Survey on the Status of California Nonprofit Organizations in the Currunt Economy, 2001

그러나 이러한 재원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조직의 비율을 보면, 개인기부금 지원을 받는 조직이 89.8%로 가장 많고, 재단의 재정지원을 받는 조직이 86.0%,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조직이 72.4% 등이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사회복지사업에 있어서 민간 부문의 후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의 특성이 잘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 시설의 재원 변화 동향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조직의 세입·세출은 시설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규모(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와 조직의 규모(대규모, 중규모, 소규모)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최근 지속적인 경기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미국의 상황은 사회복지시설의 재원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음에서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사례를 통해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사회복지서비스를 공급하는 시설의 재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4-3-1>에 구분되어 있는 재원 중 그 비중이 큰 출처별로 보면, 경기가 침체되면서, 개인기부금의 변화는 규모에 따라서 차이를 보였는데, 중규모 시설 중 38.5%가 재정지원 감축을 경험했고, 다음은 소규모(30.6%), 대규모(22.5%) 조직의 순으로 나타났다.

재단의 재정지원은 대도시지역 사회복지조직 중 35.5%, 중소도시 중 25.0%, 그리고 농어촌 중 11.6%에서 감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 보면, 대규모 조직의 대부분이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중규모 조직 중에서는 29.4%, 소규모 조직 중에서는 18.3%가 이를 경험하였다.

정부지원금은 대도시 28.6%, 중소도시 26.3%, 농어촌 15.6%가 감축을 경험하였고, 조직규모별로 보면, 대규모 조직 중 41.9%, 중규모 시설 중 21.9%, 소규모 조직 중 14.3%가 재원감축을 경험하였다. 법인기부금의 경우는 대도시 소재 조직 중 43.1%, 농어촌 중 40.7%, 중소도시 17.1%인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 보면, 중규모 중 48.4%, 대규모 35.1%, 소규모는 26.3%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포함된 조직의 감축된 재원을 금액으로 보면, 조직 당 62,000달러 정도가 되고, 감축된 재원의 규모는 전체 운영비에 5% 정도가 된다. 전국자선통계센터(National Center for Charitable Statistics)에 의하면, 1999년에 캘리포니아에는 이 연구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안전망 조직이 3,989개소가 되는데, 만일 본 조사에 응답한 사회안전망조직 중 재원의 감축을 경험한 조직들이 캘리포니아주 전체를 대표한다고 본다면, 캘리포니아주의 사회복지서비스조직은 최근 경제침체에 접어들면서 약 300,000,000달러의 재원감축을 경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재원(재단의 지원, 개인기부금, 법인기부금, 정부지원금)의 출처별로 보면, 감축된 재원의 규모를 보면, <표 4-3-2>와 같다.

전체적으로 볼 때, 가장 많은 감축이 나타난 재원은 정부지원금(조직당 평균 148,100달러)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음은 재단지원금(68,100달러)이고, 개인기부금(33,500달러)이나 법인기부금(18,200달러)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그러나 조직의 재원 중 각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감축된 금액 자체의 절대적인 비교는 한계가 있다.

<표 5-3-2> 재원의 출처별 감축된 재원의 규모(조직당 평균금액)

(단위: 달러)

구분	안전망 사회복지시설	기타 사회복지서비스기관	전체
재단 지원금	64,600	71,400	68,100
개인 기부금	44,600	22,900	33,500
법인 기부금	17,700	18,700	18,200
정부 지원금	145,200	154,100	148,100

자료: LaFrance Association, Statewide Survey on the Status of California Nonprofit Organizations in the Current Economy, 2001.

다음으로는 이러한 재정변화가 사회복지서비스 조직의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주요 서비스 공급역량과 기타 서비스 공급역량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운영상 가장 많은 변화내용은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시설이 34.1%로 가장 많고, 다음은 시설 직원의 봉급인상계획 취소가 25.6%, 주요 직원 감

축이 22.8%, 클라이언트에 대한 기타 서비스 축소 또는 취소가 17.4%, 클라이언트에 대한 주요한 서비스 축소가 13.6%, 신규클라이언트 입소 제한 또는 중단이 12.5%, 직원봉급 감축이 8.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3-3〉 재원감축이 조직의 운영에 미치는 영향

(단위: 개소, %)

구분		응답 시설수	응답시설 비율	
			경험있음/예정임	잘모르겠음
주요 서비스 공급역량	주요 직원 감축	408	22.8	10.3
	클라이언트에 대한 주요한 서비스 축소	405	13.6	9.9
	신규클라이언트 입소 제한 또는 중단	399	12.5	8.8
기타 서비스 공급역량	예비비 사용	395	34.1	15.4
	봉급인상계획 취소	402	25.6	14.9
	클라이언트에 대한 기타 서비스 축소·취소	402	17.4	14.2
	직원봉급 감축	403	8.0	9.4
	기타 활동	83	62.7	12.0

자료: LaFrance Association, Statewide Survey on the Status of California Nonprofit Organizations in the Current Economy, 2001.

이러한 미국의 사례를 보면, 사회복지조직의 재원 감소는 서비스 제공하는 직원의 인원 및 처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 내용의 축소도 동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재원의 축소는 시설 거주자 및 이용자의 삶의 질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제 4 절 시사점

이상에서 일본, 영국,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식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일본에서 도입한 지원비제도는 이용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는 제도로써 다양한 서비스 공급주체가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경쟁원리를 도입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적절한 가격에 공급하는 제도이다. 지원비의 대상자의 특성(예: 장애유형), 지역, 시설 정원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도 조만간 지원비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이용자의 시설 선택권을 최대한 반영하고 시설간의 시장원리 도입에 의한 가격과 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지역에 시설이 충분해야 하고,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용자의 특성이나 지역 등에 부합하는 차등적인 지원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사전적인 준비없이 지원비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오히려 사회복지시설에 이용자의 혼란만을 가중하게 될 것이다.

영국도 시설에 대한 지원금(일본의 조치비제도)을 제공하던 것에서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지원비제도로 바뀌었다. 사회복지시설에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도 지원금을 보조하던 것에서 이용자의 욕구를 사정하고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로 인해 서비스 제공주체에서 서비스에 대한 책임감이 제고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된다. 이를 통해 지원금제도는 세계적인 추세로써 이용자의 권리와 욕구를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탈시설화를 지향하면서 지역사회복지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미국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주체로서 다양한 민간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지원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와는 달리 정부재원의 비중이 가장 크기는 하지만, 민간, 기업, 재단, 정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제 6 장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표준운영비 산출

제 1 절 개요: 표준운영비 산출의 공통기준

가. 산출 항목 및 산출 기준

1) 산출 항목

원칙적으로 보면, 표준운영비 산출을 위해서는 먼저 표준시설의 모형을 수립하고, 이러한 표준 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항목을 설정하며, 이러한 항목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는 단계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표준시설의 모형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현재 집행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 실태를 바탕으로 현실을 반영한 운영비를 재산정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는 바, 표준운영모형(종사자 배치기준의 재정립, 각 세입세출항목의 재설정, 항목별 단가의 재산정 등) 수립에 근거한 원칙적인 의미에서의 표준운영비 산출은 이후의 연구에 맡겨야 할 것 같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표준운영비 산출을 위해 포함하여 고려하고자 하는 세부 운영비 항목들은 현재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의 시설회계 항목 중 세출회계를 기준으로 하였다¹⁵⁾. 이러한 시설 회계는 크게 사업비(직접비)와 사무비(간접비)로 구분된다. 그리고 사업비는 다시 운영비, 교육비, 사업비로 구분된다. 또한 사무비는 인건비, 운영비, 판공비로 구분된다.

사업비 중 운영비에 포함되는 '목'으로는 생계비, 피복비, 의료비 등 거주자가 생활하는데 소요되는 직접비인데, 이 운영비는 간접비의 사무운영비와 용어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생활비'로 지칭한다. 또한 직접

15) 재산조성비는 시설의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에 표준운영비 산출에서 제외함.

비 중 사업비 항목 용어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프로그램비’로 지칭한다. 마지막으로 간접비 중 관공비는 시설장 개인의 용도로 활용되는 일종의 사비의 의미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보다 ‘업무추진비’라는 용어로 대체한다.

〈표 6-1-1〉 표준운영비 산출 항목

관	항		목
	기존	본 연구	
사업비 (직접비)	운영비	생활비	생계비, 수용기관경비, 피복비, 의료비, 장의비, 의료재활비, 직업재활비, 자활사업비, 기타(특별위로금, 월동대책비, 복지비)
	교육비	교육비	수업료, 학용품비
	○○사업비	프로그램비	○○사업비
사무비 (간접비)	인건비	인건비	급여, 상여금, 일용잡급, 제수당,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부담금, 기타후생경비
	운영비	운영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연료비
	관공비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정보비, 회의비

2) 산출 기준

(1) 대표 시설의 선정

표준운영비는 6개의 시설 유형에 따라 산출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들 6종 시설 중에는 다양한 유형의 시설이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이러한 하위 시설유형별로 운영비를 산출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특히, 일부 시설은 분석에 포함된 시설 수가 극히 미미하여, 해당 시설 유형의 운영비의 대표성을 확보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6종의 시설 유형 중 분석을 위한 사례(시설) 수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대표적인 1가지 유형의 시설만은 선정하여 이에 대한 표준운영비를 산출하였다. 각 시설 유형별 표준운영비 산출을 위해 선정한 하위 시설 유형은 다음과 같다. 즉, 아동복지시설 중 아동양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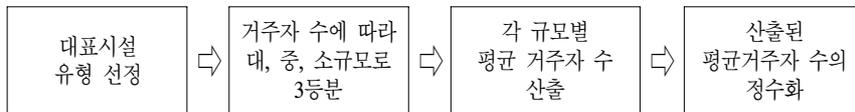
노인무료양로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중 정신지체장애인시설, 모자복지시설 중 모자보호시설, 정신요양시설 중 정신요양시설을 선정하였고, 마지막으로 부랑인복지시설은 단일 유형이므로 이 시설을 선정하였다(표 6-1-2 참조).

〈표 6-1-2〉 표준운영비 산출에 포함된 시설 유형

시설유형	하위 시설 유형 수	표준운영비 산출 시설
아동복지시설	6	아동양육시설
노인복지시설	11	노인무료양로시설
장애인시설	5	정신지체장애인시설
모자복지시설	4	모자보호시설
정신요양시설	2	정신요양시설
부랑인복지시설	1	부랑인복지시설

(2) 시설 규모별 구분

각 시설유형별 대표 시설을 선정한 후, 시설 규모에 따른 운영비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선정된 시설이 거주자 수 규모에 따라 3등분되는 지점을 찾아, 그 중 거주자 수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시설을 대규모 시설, 반대로 가장 적은 거주자 수가 분포하고 있는 시설을 소규모 시설 그리고 중간에 해당되는 시설을 중규모 시설로 분류한다. 이러한 분류는 각 시설 유형별로 규모에 따른 시설 모형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표준운영비를 산출하기 위한 것이다.



[그림 6-1-1] 시설 규모에 따른 시설 모형 설정 과정

대중소로 시설 규모가 구분되면, 각 유형의 시설 규모(대, 중, 소)별로 평균 거주자 수를 산출한다. 이 때 거주자 수는 보통 소수점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시설을 규모에 따라 하나의 모형으로 설정하여 기준으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평균 거주자수가 ‘십진 정수’로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소수점으로 산출된 평균거주자 수를 평균거주자 수와 가장 인접한 ‘십진 정수’로 대체하여, 각 시설 유형에 따른 규모(대, 중, 소)별 표준거주자를 설정한다. 예를 들면, 모자보호시설을 대, 중, 소로 구분한 결과, 이들 시설의 각 규모별 평균 거주자 수가 각각 46.80인, 61.14인, 122.25인으로 산출되었다면, 본 연구의 표준운영비 모형 정립을 위한 시설의 규모는 각각 40인 시설, 60인 시설, 120인 시설로 확정한다.

(3) 물가상승률 반영

마지막으로 표준운영비 산출에 사용된 모든 단가는 2003년도 물가지수로 환산하여 사용하였다. 즉, 본 조사결과 산출된 세출관련 통계치는 모두 2001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바, 보다 현실적인 표준운영비를 추정하기 위하여 본 조사결과 산출된 통계치에 물가상승분을 적용하였다. 2001년 대비 2003년도 물가지수 상승분은 6.3%인 바, 물가상승지수 1.063을 모든 산출 항목별 단가에 반영하여 2003년도 단가에 의거한 표준운영비를 산출하였다.

3) 항목별 산출 기준

표준운영비의 산출을 위해서는 각 항목별 합리적인 비용 산출 기준이 필요하다. 즉, 시설에서 필요한 또는 실제 소요되는 주식비, 부식비, 피복비, 교육비, 연료비 등의 수준을 판단하여 그 금액을 합산하여 전체적인 표준운영비를 산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 내용의 생활내용을 구성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시장바구니를 상정하고 여기에 시장 가격을 곱하여 필요한 운영비를 구하는 마켓바스켓 방식이 대표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방법은 작성자의 자의성이 많이 개입되므로 이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실태조사자료를 활용하여, 각 시설유형 및 각 산출 항목별 세출의 평균값을 활용한다.

각 항목별 구체적인 표준운영비 산출기준은 <표 6-1-4>와 같다. 먼저, 직접비 중 생활비는 앞에서 3등분한 시설 규모별로 거주자 수로 나누어 시설 규모(대, 중, 소)별 연간 1인당 생활비를 산출한다. 교육비 및 프로그램비도 생활비와 동일하게 산출한다. 다만, 시설에서의 전문적인 서비스의 확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비와 프로그램비의 경우, 시설유형별로 필요한 경우에 가중치를 적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두가지 항목에 대한 가중치를 교육비의 경우, 1.25, 프로그램비의 경우, 1.1을 적용하였다.

다음으로 간접비(사무비) 중 인건비는 앞에서 구분한 시설 규모(대, 중, 소)에 해당하는 거주자수 규모별로 법정 종사자 배치기준을 적용한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각 종사자 직책별 필요인원수를 산출한 후, 각 직책별로 2001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 기준에 의거하여 인건비를 산출한다. 다만, 종사자의 인건비는 근무연한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시설간 일관된 표준운영비를 산출하기 위해서, 시설장은 15호봉, 사무국장(총무)은 8호봉 그리고 나머지 직책에 해당하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4호봉의 급여를 적용하였다(표 6-1-4 참조).

또한 간접비 중 운영비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시설의 규모로 구분하여 각 시설유형별로 규모(모형)에 따른 운영비 평균값을 산출하였다¹⁶⁾. 즉, 실태조사에 의거한 시설 규모별 운영비는 시설 규모에 따른 거주자 수 평균에 해당하는 운영비이지만, 본 연구에서 산출하는 운영비는 40인, 50인, 120인 등 정수화된 모형에 의거하고 있는 바, 일차로 산출된 운영비를 정수화시킨 거주자 규모에 비례하도록 그 값을 재조정하였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운영비를 산출하는 이유는, 생활비, 프로그램비 등은 거주자 1인에 대한 직접비이므로 거주자 1인당 산출이 가능하고, 거주자 1인에 대해 산출된 단가에 시설 규모(40인, 50인, 120인 등)에 따른 거주자 수를 곱하여 시설 전체의 표준비용 산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운영비는 직접비가 아니므로, 거주자 1인당 산출이 불가능하고 거주자 수 전체를 1단위로 설정해야 하므로, 거주자 수가 40.6인일 경우의 운영비를 40인 단위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16) 다만, 부랑인복지시설의 경우,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커서, 정원을 기준으로 산출함.

〈표 6-1-3〉 표준운영비 산출 항목별 산출 공식

산출항목		산출 공식	
직접비	생활비	공식 세부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실태조사결과에 근거하여 대·중·소로 구분한 시설 규모별 거주자 현원 1인당 연간 생활비 평균값 • B: 대중소로 구분한 시설 규모별 모형에 따른 시설 거주자 수 • C: 2001~2003년 물가상승지수 1.063
		공식	• $A \times B \times C$
	교육비	공식 세부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실태조사결과에 근거하여 대·중·소로 구분한 시설 규모별 거주자 현원 1인당 연간 교육비 평균값 • B: 대중소로 구분한 시설 규모별 모형에 따른 시설 거주자 수 • C: 2001~2003년 물가상승지수 1.063 • D: 거주자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 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가중치 적용(시설 유형별로 선택적 적용, 예: 1.25)
		공식	• $A \times B \times C \times D$
	프로그램비	공식 세부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실태조사결과에 근거하여 대·중·소로 구분한 시설 규모별 거주자 현원 1인당 연간 교육비 평균값 • B: 대중소로 구분한 시설 규모별 모형에 따른 시설 거주자 수 • C: 2001~2003년 물가상승지수 1.063 • D: 거주자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 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가중치 적용(시설 유형별로 선택적 적용, 예: 1.1)
		공식	• $A \times B \times C \times D$
간접비	인건비	공식 세부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200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월보수 국고보조기준에 따른 직책 및 근무연수별 인건비(기본급과 수당 등이 통합된 총액 인건비 기준)로서 시설장 15호봉, 총무 8호봉, 기타 직원 4호봉 인건비 적용 • B: 월보수로 산정하였으므로 연간 인건비 산정을 위해 12개월 적용 • C: 시설유형별 법정종사자 배치기준에 따른 각 직책별 필요 종사자 수 • D: 2001~2003년 물가상승지수 1.063
		공식	• $A \times B \times C \times D$
	운영비	공식 세부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실태조사결과에 근거하여 대·중·소로 구분한 시설 규모별 연간 운영비 평균값 및 평균 거주자 수(예: 42.1인, 65.3인, 122.5인)를 산출한 후, 운영비 평균값을 거주자 규모별 모형(예: 40인, 60인, 120인)에 비례하여 재조정된 값 • B: 2001~2003년 물가상승지수 1.063
		공식	• $A \times B$
	업무추진비	공식 세부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직접비(생활비, 교육비, 프로그램비) • B: 간접비(인건비, 운영비) • C: 업무추진비 가중치 0.02(2%) 적용
		공식	• $(A+B) \times C$
연간표준운영비	공식	직접비(생활비, 교육비, 프로그램비)+간접비(인건비, 운영비, 업무추진비)	
1인당 보호비	공식	연간표준운영비 ÷ 시설 거주자 수	

〈표 6-1-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

직책	호봉	2001년 인건비
시설장	15호봉	1,793
사무국장	8호봉	1,333
과장, 사회복지사, 사회재활교사, 간호사, 영양사, 각종 교사, 치료·훈련사	4호봉	1,114
생활보조원, 사무원	4호봉	1,041
기능직, 취사, 세탁	4호봉	898
관리인	4호봉	980
축탁의사	4호봉	1,392

마지막으로 간접비 중 업무추진비는 직접비(생활비, 교육비, 프로그램비)와 간접비 중 인건비와 운영비를 합산한 금액의 2%¹⁷⁾ 인정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산출된 각 항목별 금액을 합산한 것이 각 시설의 1년간 표준운영비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표준운영비를 모형에 따른 거주자 수로 나눈 것이 거주자 1인당 보호단가라고 할 수 있다.

제 2 절 시설유형별 표준운영비 산출

가. 아동복지시설

1) 표준 시설규모 산출

아동복지시설의 표준운영비는 아동복지시설 중 대표적인 시설이자 동시에 본 연구의 아동복지시설 운영실태조사에서 분석가능한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아동양육시설’을 대상으로 추계하고자 한다.

먼저 시설의 규모에 따라 대, 중, 소 3개 집단으로 동등하게 분류하고, 분류

17) 사회복지시설의 업무추진비를 일반 조직의 일반관리비와 같은 차원으로 간주한 것임.

된 각 집단의 평균 거주자 수 및 이 수치에 가장 근접한 10단위 실수를 통해 아동복지시설 표준운영비 산출에 필요한 시설규모로 선정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다음의 <표 6-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규모 아동양육시설의 대표 시설 규모는 40인 시설(모형1), 중규모는 60인 시설(모형2), 대규모는 120인 시설(모형3)로 확정하였다.

<표 6-2-1> 아동복지시설의 표준운영비 산출을 위한 모형 설정 기준

(단위: 명)

구분		소규모 (모형1)	중규모 (모형2)	대규모 (모형3)
평균 거주자 수		39.0	60.3	124.3
확정 시설 규모	0~2세 아동 수	3	5	18
	3세 이상~6세 아동수	7	9	22
	7세 이상 아동 수	30	44	80
	계	40	60	120

주: 본 연구에서 실시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조사」 결과(2002)에 의거하여 산출한 것임.

그런데, 최근 영아시설과 육아시설이 아동양육시설로 통합되면서, 아동양육시설에는 3세미만 아동과 3세 이상의 아동이 혼합되어 배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현재 아동양육시설 및 아동일시보호시설의 경우에는 이러한 아동의 연령에 따라 종사자(보육사, 간호사 등) 배치기준을 차별화하고 있기 때문에, 각 모형에 이러한 아동 연령에 의한 아동 규모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각 모형에 해당하는 시설규모별 평균 영아(3세 미만)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소규모 시설의 평균 영아 수는 3명, 중규모는 5명, 대규모는 18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표준종사자 기준 산출

앞서 산출한 시설규모에 해당하는 종사자 기준을 산출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2003년 현재 아동양육시설의 법정종사자 기준을 활용하였다.

〈표 6-2-2〉 아동양육시설 모형별 법정종사자 배치 기준

구분		모형 1	모형 2	모형 3
거주자수	전체	40인	60인	120인
	① 0~2세 아동 수	3인	5인	18인
	② 3세 이상~6세 아동수	7인	9인	22인
	③ 7세 이상 아동 수	30인	44인	80인
법정 종사자	시설장	1인	1인	1인
	총무(사무국장)	1인	1인	1인
	(축탁)의사	1인	1인	1인
	간호(조무)사	1인	1인	1인
	사무원	-	1인	1인
	영양사	-	1인	1인
	보육사	① 1인	① 2인	① 6인
		② 1인	② 2인	② 4인
		③ 3인	③ 5인	③ 8인
		총 5인	총 9인	총 18인
	생활복지사		1인	2인
	직업훈련교사	-	-	-
	상담지도원	1인	1인	2인
	임상심리상담원	-	1인	1인
	조리원	1인	1인	1인
위생원	1인	1인	1인	
보안요원	-	-	-	
총 필요 종사자 수	12인	20인	31인	

주: 1) 시설장: 15호봉, 총무: 8호봉, 기타 직원: 4호봉 적용

시설의 인건비 세입은 정부보조금 지급 기준에 의거하여 확정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인건비의 총 규모는 법정종사자 기준에 의거한 지원 규모보다 낮다. 그러나 앞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개인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등 상대적으로 영세한 법인은 지원기준에 의거하여 종사자를 채용하기 때문에, 능력있는 법인이 운영하면서 법인전입금 등으로 추가로 종사자를 채용하여 활용하는 시설에 비해서 거주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이 미흡할 수 있다.

〈표 6-2-3〉 아동양육시설 법정종사자 배치 기준

종사자 유형	아동양육시설		
	아동 30인 이상	아동 10인 이상 아동 30인 미만	아동 10인 미만
시설장	1인	1인	1인
총무(사무국장)	1인	-	-
(축탁)의사	1인	-	-
간호(조무)사	1인	-	-
사무원	1인(아동 5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	-
영양사	1인(아동 5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	-
보육사	· 0~2세까지 : 아동 3인당 1인 (3인 초과시 1인 추가) · 3~6세까지 : 아동 7인당 1인 (7인 초과시 1인 추가) · 7세이상 : 아동 10인당 1인 (10인 초과시 1인 추가)	2인(아동 20인 초과시 1인)	1인
생활복지사	아동 50인 이상 1인(50인 초과시 1인 추가)	-	-
직업훈련교사	-	-	-
상담지도원	필요인원	-	-
임상심리상담원	1인(아동 5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함)	-	-
조리원	1인	-	-
위생원	1인	-	-
보안요원	-	-	-

주: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가 최소한 법정기준에 의거하여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원칙 하에 법정기준에 의한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기준을 표준운영비 산출을 위한 종사자 기준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원칙 하에서 2003년도 현재 「아동복지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아동양육시설 종사자 배치기준(표 6-2-3 참조)에 의거하여 에 각 시설 규모에 따른 모형별로 종사자 배치 모형을 제시해 보면, <표 6-2-2>와 같다¹⁸⁾. 즉, 거주

자 수 모형별 종사자 수를 산출해 보면, ‘모형1’은 보육사를 포함하여 12인의 종사자, ‘모형2’는 보육사 9인을 포함하여 20인의 종사자, ‘모형3’은 보육사 18인을 포함하여 31인의 종사자를 배치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3) 운영비 단가 산출

아동복지시설의 표준운영비를 산출하기 위한 단가산출을 위한 기준은 다음의 <표 6-2-5>와 같다. 먼저 직접비(생활비, 교육비, 프로그램비)와 간접비 중 운영비는 실태조사결과에 의거하여 산출된 평균세출금액을 단가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인건비는 법정배치기준에 따라 정부의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 보조지침 기준을 적용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는 산출된 직접비와 간접비의 합계에 2%를 적용하였다.

<표 6-2-4> 아동양육시설의 운영비 단가 산출

구분	실태조사 평균값 ¹⁾			모형에 따른 조정값 ²⁾		
	39.0인	60.3인	124.3인	40인 (모형1)	60인 (모형2)	120인 (모형3)
여비	629	1,146	1,041	644	1,140	1,005
수용비 및 수수료	5,111	7,351	10,189	5,237	7,313	9,837
공공요금	6,350	9,096	22,340	6,506	9,049	21,569
제세공과금	3,882	4,433	8,163	3,977	4,410	7,881
차량비	2,543	3,923	5,508	2,606	3,903	5,318
연료비	7,255	10,595	25,597	7,433	10,541	24,713
운영비 계	25,771	36,545	72,839	26,405	36,357	70,325

주: 1) 본 연구에서 실시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조사」 결과, 2002
 2) 실태조사 거주자 평균(39.04인, 60.31인, 124.29인)에 의한 운영비 세출 평균을 본 표준운영비 모형의 거주자 기준인 40인, 60인, 120인으로 환산하여 변화된 운영비 세출을 산출한 것임.

18) 아동양육시설의 종사자 배치기준은 30인 이상 시설과 10~30인 미만 시설, 10인 미만 시설 등 규모에 따라 3가지 유형의 시설로 구분되지만,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은 최소 40인 이상 시설이므로 30인 이상 시설 기준만 활용함.

이러한 기준에 의거하여 산출된 아동복지시설의 표준운영비 최종단가 중 직접비인 생활비는 모형1(40인 시설) 1,515천원, 모형2(60인 시설) 1,685천원, 모형3(120인 시설) 1,563천원이다. 그리고 교육비는 각 모형별로 343천원, 445천원, 291천원이며, 프로그램비는 251천원, 207천원, 196천원이다. 간접비 중 인건비는 <표 6-1-3>의 직책별 단가를 <표 6-2-2>의 모형별 종사자 배치기준에 적용하여 산출한다. 운영비는 앞에서 제시한 표준운영비 산출공식(표 6-1-4)에 의거하여, <표 6-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설 규모에 따른 대, 중, 소 시설별 평균거주자 수에 따라 운영비를 산출한 후, 이를 실수로 되어 있는 표준운영비 산출을 위한 거주자 규모에 맞게 조정하였다. 그 결과 산출된 운영비 단가는 40인 시설 26,505천원, 60인 시설 36,357천원, 120인 시설 70,325천원이다.

<표 6-2-5> 아동양육시설 표준운영비 산출을 위한 단가 요약

(단위: 천원)

구분		시설규모별단가		
		모형1(40인)	모형2(60인)	모형3(120인)
직접비	생활비(운영비)	1,515	1,685	1,563
	교육비	343	445	291
	프로그램비(사업비)	251	207	196
간접비	인건비	표 6-1-3과 표 6-2-2 기준		
	운영비	26,505	36,357	70,325
	업무추진비	[직접비+(인건비+운영비)] × 0.02		

4) 시설규모(모형)별 표준운영비

여기서는 앞에서 산출한 아동복지시설의 표준운영비 단가를 시설규모별로 적용하여 40인, 60인, 120인 규모 시설의 표준운영비를 산출하고자 한다. 여기서 산출하고자 하는 표준운영비는 하나의 예시로 제시되는 바, 본 연구에서 분석한 5개 아동복지시설 중 가장 그 수가 많고, 보편적인 시설인 아동양육시설에 대해서만 대표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표준운영비 중 직접비에 해당하는 생활비, 교육비, 프로그램비는 앞서 산출한 1인당 단가에 각 규모별 거주아동 수(40인, 60인, 120인)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교육과 전문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각각 1.25와 1.1의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간접비 중 인건비는 각 시설의 거주아동 수에 의거하여 필요한 법정 종사자 모형에 따라 각 직무·급별 인건비 단가(2001년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기준), 1년 근무 개월 수(12개월) 및 필요 종사자 수(각 직무·급별 법정 종사자 배치기준에 의거)를 적용하였다.

운영비는 앞에서 시설(거주자) 규모별로 산출한 운영비 단가가 1년을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는 각 시설 규모별로 산출된 직접비와 간접비에 2%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1) 모형1 : 거주자 40인 아동양육시설

앞에서 제시한 기준에 의거하여 시설 규모에 따른 모형1, 거주아동수가 40인인 아동양육시설의 1년간 표준운영비는 303,770천원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직접비는 94,388천원이고, 간접비 중 인건비는 175,357천원, 운영비는 28,069천원, 업무추진비는 5,956천원으로 산출되어, 전체 간접비 합계는 209,382천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를 거주아동 40인으로 나눈 아동 1인당 연간 보호비용은 7,594천원으로 산출되었다.

〈표 6-2-6〉 거주자 40인 아동양육시설의 표준운영비

(단위: 천원)

산출항목		2001년 단가	기간 (월/년)	인원수 (인)	물가상승 지수	가중치	2003년 최종단가	
직 접 비	생활비(운영비)	1,515	1	40	1.063	-	64,418	
	교육비	343	1	40	1.063	1.25	18,230	
	프로그램비(사업비)	251	1	40	1.063	1.1	11,740	
	소계	-	-	-	-	-	94,388	
간 접 비	인건비	시설장	1,793	12	1	1.063	-	22,872
		총무	1,333	12	1	1.063	-	17,004
		축탁의사	1,392	12	1	1.063	-	17,756
		간호(조무)사	1,114	12	1	1.063	-	14,210
		사무원	1,041	12	0	1.063	-	0
		영양사	1,114	12	0	1.063	-	0
		보육사	1,041	12	5	1.063	-	66,395
		생활복지사	1,114	12	0	1.063	-	0
		직업훈련교사	1,114	12	0	1.063	-	0
		상담지도원	1,114	12	1	1.063	-	14,210
		임상심리상담원	1,114	12	0	1.063	-	0
		조리원	898	12	1	1.063	-	11,455
		위생원	898	12	1	1.063	-	11,455
		보안요원	980	12	0	1.063	-	0
		소계	-	-	-	-	-	175,357
		운영비	26,405	1	-	1.063	-	28,069
소계	-	-	-	-	-	203,425		
업무추진비	-	-	-	-	-	5,956		
소계	-	-	-	-	-	209,382		
연간표준운영비	-	-	-	-	-	303,770		
1인당 보호비	-	-	-	-	-	7,594		

(2) 모형2 : 거주자 60인 아동양육시설

거주아동수가 60인인 아동양육시설의 1년간 표준운영비는 490,109천원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직접비는 157,470천원이고, 간접비 중 인건비는 284,382

천원, 운영비는 38,647천원, 업무추진비는 9,610천원으로 산출되어, 전체 간접비 합계는 332,640천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를 거주아동 수 60인으로 나눈 아동 1인당 연간 보호비용은 8,168천원으로 산출되었는데, 이 금액은 모형1에 의한 아동 1인당 보호비용(7,594천원)에 비해 574천원이 많다.

〈표 6-2-7〉 거주자 60인 아동양육시설의 표준운영비

(단위: 천원)

산출항목		2001년 단가	기간 (월/년)	인원수 (인)	물가상승 지수	가중치	2003년 최종단가	
직 접 비	생활비(운영비)	1,685	1	60	1.063	-	107,469	
	교육비	445	1	60	1.063	1.25	35,478	
	프로그램비(사업비)	207	1	60	1.063	1.1	14,523	
	소계	-	-	-	-	-	157,470	
간 접 비	인건비	시설장	1,793	12	1	1.063	-	22,872
		총무	1,333	12	1	1.063	-	17,004
		축탁의사	1,392	12	1	1.063	-	17,756
		간호(조무)사	1,114	12	1	1.063	-	14,210
		사무원	1,041	12	1	1.063	-	13,279
		영양사	1,114	12	1	1.063	-	14,210
		보육사	1,041	12	9	1.063	-	119,511
		생활복지사	1,114	12	1	1.063	-	14,210
		직업훈련교사	1,114	12	0	1.063	-	0
		상담지도원	1,114	12	1	1.063	-	14,210
		임상심리상담원	1,114	12	1	1.063	-	14,210
		조리원	898	12	1	1.063	-	11,455
		위생원	898	12	1	1.063	-	11,455
		보안요원	980	12	0	1.063	-	0
	소계	-	-	-	-	-	284,382	
	운영비	36,357	1	-	1.063	-	38,647	
	소계	-	-	-	-	-	323,030	
	업무추진비	-	-	-	-	-	9,610	
	소계	-	-	-	-	-	332,640	
	연간표준운영비	-	-	-	-	-	490,109	
1인당 보호비	-	-	-	-	-	8,168		

(3) 모형3 : 거주자 120인 아동양육시설

거주아동수가 120인인 아동양육시설의 1년간 표준운영비는 795,954천원이다.

〈표 6-2-8〉 거주자 120인 아동양육시설의 표준운영비

(단위: 천원)

산출항목		2001년 단가	기간 (월/년)	인원수 (인)	물가상승 지수	가중치	2003년 최종단가	
직 접 비	생활비(운영비)	1,563	1	120	1.063	-	199,376	
	교육비	291	1	120	1.063	1.25	46,400	
	프로그램비(사업비)	196	1	120	1.063	1.1	27,502	
	소계	-	-	-	-	-	273,278	
간 접 비	인건비	시설장	1,793	12	1	1.063	-	22,872
		총무	1,333	12	1	1.063	-	17,004
		축탁의사	1,392	12	1	1.063	-	17,756
		간호(조무)사	1,114	12	1	1.063	-	14,210
		사무원	1,041	12	1	1.063	-	13,279
		영양사	1,114	12	1	1.063	-	14,210
		보육사	1,041	12	18	1.063	-	239,022
		생활복지사	1,114	12	2	1.063	-	28,420
		직업훈련교사	1,114	12	0	1.063	-	0
		상담지도원	1,114	12	2	1.063	-	28,420
		임상심리상담원	1,114	12	1	1.063	-	14,210
		조리원	898	12	1	1.063	-	11,455
		위생원	898	12	1	1.063	-	11,455
		보안요원	980	12	0	1.063	-	0
		소계	-	-	-	-	-	432,314
		운영비	70,325	1	-	1.063	-	74,755
	소계	-	-	-	-	-	507,069	
업무추진비	-	-	-	-	-	15,607		
소계	-	-	-	-	-	522,676		
연간표준운영비	-	-	-	-	-	795,954		
1인당 보호비	-	-	-	-	-	6,633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직접비는 273,278천원, 간접비 중 인건비는 432,314천원, 운영비는 74,755천원, 업무추진비는 15,607천원으로 산출되어, 전체 간접비 합계는 522,676천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를 거주아동 수 120인으로 나눈 아동 1인당 연간 보호비용은 6,633천원으로 산출되었다.

이 금액은 모형1에 의한 아동 1인당 보호비용(7,594천원)에 비해 961천원이 적고, 모형2에 의한 보호비용(8,168천원)에 비해 1,535천원이 적은 금액이다. 즉, 각 모형별로 표준운영비를 산출한 결과, 절대적인 운영비는 시설규모에 따라 증가하지만, 이를 아동 1인당 단가로 산출한 결과에 의하면, 중규모-소규모-대규모 시설의 순으로, 일정규모 이상까지는 아동 1인당 보호비용이 증가하지만, 일정규모 이상부터는 비용이 감소하게 되는 ‘규모의 경제’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처럼 아동 수에 비례하는 정부지원방식은 시설의 대규모화를 조장할 수 있고, 규모에 따른 시설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어려우므로 일정규모 이상 시설에 가중치를 적용한 예산지원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

(4) 표준운영비 요약

이상에서 산출한 표준운영비를 산출항목에 따라 요약한 결과를 <표 6-2-9>에 제시하였다. 여기서 보면, 직접비 비율은 시설의 규모에 따라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직접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생활비의 영향으로, 나머지 직접비 즉, 교육비와 프로그램비는 규모 따른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교육비의 비율은 모형3(120인)에 의한 시설이 5.8%로서 모형1의 시설(6.0%)과 모형2의 시설(7.2%)에 비해서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간접비는 규모가 증가할수록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전체 운영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의 영향으로 보여진다. 즉, 모형1에 의한 40인 시설의 인건비 비중은 57.7%, 모형2 시설은 58.0%인 반면, 모형3에 의한 120인 시설은 54.3%로 가장 작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아동 1인당 보호비용에서 중규모에 해당하는 60인 시설이 가장 높은 금액을 보인 것도 인건비 비중이 가장 높는데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시설 규모에 따른 운영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① 시설규모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는 것과 함께 ② 시설 규모에 따른 종사자 배치기준에 대해서도 보다 과학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6-2-9〉 아동양육시설 규모(모형)별 표준운영비 항목 구성비

(단위: 천원, %)

구분		모형1(40인 시설)		모형2(60인 시설)		모형3(120인 시설)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직접비	생활비	64,418	21.2	107,469	21.9	199,376	25.0
	교육비	18,230	6.0	35,478	7.2	46,400	5.8
	프로그램비	11,740	3.9	14,523	3.0	27,502	3.5
	소계	94,388	31.1	157,470	32.1	273,278	34.3
간접비	인건비	175,357	57.7	284,382	58.0	432,314	54.3
	운영비	28,069	9.2	38,647	7.9	74,755	9.4
	업무추진비	5,956	2.0	9,610	2.0	15,607	2.0
	소계	209,382	68.9	332,639	67.9	522,676	65.7
연간표준운영비		303,770	100.0	490,109	100.0	795,954	100.0
1인당 보호비용		7,594		8,168		6,633	

나. 노인복지시설

노인시설의 표준운영비는 대표적인 노인거주시설이며 노인시설 중 가장 많은 수가 설치되어 있는 무료양로시설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추정하였다.

1) 표준 시설규모 산출

먼저 거주자 규모에 따른 표준모형 구성을 위해서 분석대상에 포함된 양로시설 거주자 수에 따른 분포를 파악하여 전체 시설을 3등분하였다. 전체 표본을 3등분한 기준은 소규모 40명 이하, 중규모 41명 이상 50명 이하, 대규모 51명 이상으로 나타났고, 이를 각각 모형1, 모형2, 모형3으로 설정하였다.

다음으로는 각 범주별로 평균 거주자 수를 구하였다. 각각 모형 1은 28.5명,

모형 2는 45.7명, 모형 3은 83.4명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하여 이들과 가장 가까운 대표성을 가진 10단위 정수로 조정하여 모형 1은 30명, 모형 2는 50명, 모형 3은 80명의 표준규모를 가진 시설로 결정하였다.

〈표 6-2-10〉 노인복지시설의 표준운영비 산출을 위한 모형 설정 기준

구분	모형 1	모형 2	모형 3
범주 구분	40인 이하	41~50인 이하	51인 이상
범주별 평균 거주자 수	28.5인	45.7인	83.4인
표준 거주자 수	30인	50인	80인
시설수	18개소	23개소	19개소

2) 표준종사자 기준 산출

앞에서 산출한 시설규모에 따른 종사자 기준을 산출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2003년 현재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제시된 법정배치기준을 적용하여 <표 6-2-11>과 같이 각 모형별로 배치해야 할 직종과 규모를 설정하였다.

〈표 6-2-11〉 노인양로시설 모형별 종사자 배치기준

(단위: 명)

법정 종사자	모형 1(30인)	모형 2(50인)	모형 3(80인)
시설장	1	1	1
총무(사무국장)	1	1	1
생활지도원	2	4	8
위생원	1	1	1
간호사	1	1	1
조리원	1	1	2
생활복지사	1	1	1
의사	1	1	1
영양사	0	1	1
총 필요종사자 수	9	12	17

주: 1) 시설장: 15호봉, 총무: 8호봉, 기타 직원: 4호봉 적용

2) 생활지도원은 2교대 인원을 포함

자료: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 시행령, 2002.

3) 운영비 단가 산출

시설모형별 표준운영비 산출을 위하여, 앞서 제시한 운영비 구성 항목별로 단가를 산출하였다. 직접비인 생활비와 프로그램비, 간접비인 운영비는 본 연구의 실태조사결과를 설정한 모형에 따른 거주자 규모별로 각각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이 때 프로그램비는 거주자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현행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2배의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인건비는 앞의 <표 6-1-3>에서 제시한 2001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급여 기준을 <표 6-2-11>에서 제시한 노인양로시설의 종사자 배치기준에 따라 모형별로 필요한 종사자수에 적용하도록 한다.

<표 6-2-12> 노인양로시설 표준운영비 산출을 위한 단가 요약

(단위: 천원)

구분		시설 규모별 단가		
		모형1(30인)	모형2(50인)	모형3(80인)
직접비	생활비(운영비)	1,649	1,400	1,405
	프로그램비(사업비)	25	24	22
간접비	인건비	표 6-1-3과 표 6-2-11 기준		
	운영비	25,210	34,171	43,984
	업무추진비	[직접비+(인건비+운영비)] × 0.02		

주: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교육비는 제외함.

4) 시설규모(모형)별 표준운영비

앞서 제시한 과정에 산출된 모형1, 모형2, 모형3의 표준운영비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모형1 : 거주자 30인 노인양로시설

거주노인 수가 30인인 노인양로시설의 1년간 표준운영비는 220,829천원으로

산출되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직접비는 54,181천원이고, 간접비 중 인건비는 135,520천원, 운영비는 26,798천원, 업무추진비는 4,330천원으로 산출되어, 전체 간접비 합계는 166,648천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를 모형에 따른 거주노인 30인으로 나눈 노인 1인당 보호비용은 7,361천원이다.

〈표 6-2-13〉 거주자 30인 노인양로시설 표준운영비

(단위: 천원)

산출항목		2001년 단가	기간 (월/년)	인원수 (인)	물가상승 지수	가중치	2003년 단가	
직 접 비	생활비(운영비)	1,649	1	30	1.063	-	52,587	
	프로그램비(사업비)	25	1	30	1.063	2	1,595	
	소계	-	-	-	-	-	54,181	
간 접 비	인건비	시설장	1,793	12	1	1.063	-	22,872
		사무국장	1,333	12	1	1.063	-	17,004
		생활지도원	1,041	12	2	1.063	-	26,558
		위생원	898	12	1	1.063	-	11,455
		간호사	1,114	12	1	1.063	-	14,210
		조리원	898	12	1	1.063	-	11,455
		영양사	1,114	12	0	1.063	-	0
		생활복지사	1,114	12	1	1.063	-	14,210
		의사	1,392	12	1	1.063	-	17,756
	소계	-	-	-	-	-	135,520	
	운영비	25,210	1	-	1.063	-	26,798	
	소계	-	-	-	-	-	162,318	
	업무추진비	-	-	-	-	-	4,330	
	소계	-	-	-	-	-	166,648	
	연간표준운영비	-	-	-	-	-	220,829	
1인당 보호비용	-	-	-	-	-	7,361		

(2) 모형2 : 거주자 50인 노인양로시설

거주노인 수가 50인인 노인양로시설의 1년간 표준운영비는 295,364천원으로 산출되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직접비는 76,961천원이고, 간접비 중 인건비

는 176,288천원, 운영비는 36,324천원, 업무추진비는 5,791천원으로 산출되어, 전체 간접비 합계는 218,403천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를 모형에 따른 거주노인 50인으로 나눈 노인 1인당 보호비용은 5,907천원이다. 이는 모형1에 의한 노인 1인당 보호비용(7,361천원)에 비해 1,454천원이 적은 금액으로서, 30인 시설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6-2-14〉 거주자 50인 노인양로시설 표준운영비

(단위: 천원)

산출항목		2001년 단가	기간 (월/년)	인원수 (인)	물가상승 지수	가중치	2003년 단가	
직 접 비	생활비(운영비)	1,400	1	50	1.063	-	74,410	
	프로그램비(사업비)	24	1	50	1.063	2	2,551	
	소계	-	-	-	-	-	76,961	
간 접 비	인 건 비	시설장	1,793	12	1	1.063	-	22,872
		사무국장	1,333	12	1	1.063	-	17,004
		생활지도원	1,041	12	4	1.063	-	53,116
		위생원	898	12	1	1.063	-	11,455
		간호사	1,114	12	1	1.063	-	14,210
		조리원	898	12	1	1.063	-	11,455
		영양사	1,114	12	1	1.063	-	14,210
		생활복지사	1,114	12	1	1.063	-	14,210
		의사	1,392	12	1	1.063	-	17,756
		소계	-	-	-	-	-	176,288
	운영비	34,171	1	-	1.063	-	36,324	
	소계	-	-	-	-	-	212,612	
	업무추진비	-	-	-	-	-	5,791	
	소계	-	-	-	-	-	218,403	
연간표준운영비	-	-	-	-	-	295,364		
1인당 보호비용	-	-	-	-	-	5,907		

(3) 모형3 : 거주자 80인 노인양로시설

거주노인 수가 80인인 노인양로시설의 1년간 표준운영비는 419,053천원으로

산출되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직접비는 123,223천원이고, 간접비 중 인건비는 240,859천원, 운영비는 46,755천원, 업무추진비는 8,217천원으로 산출되어, 전체 간접비 합계는 295,831천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를 모형에 따른 거주 노인 80인으로 나눈 노인 1인당 보호비용은 5,238천원이다. 이는 모형1에 의한 노인 1인당 보호비용(7,361천원)에 비해 2,123천원이 적은 금액으로서, 모형2에 의한 보호비용 5,907천원에 비해서는 669천원이 적은 금액이다. 즉, 노인양로시설의 경우, 50인과 80인 시설의 노인 1인당 보호비용은 큰 차이가 없지만, 30인 시설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2-15〉 거주자 80인 노인양로시설 표준운영비

산출항목		2001년 단가	기간 (월/년)	인원수 (인)	물가상승 지수	가중치	2003년 단가	
직 접 비	생활비(운영비)	1,405	1	80	1.063	-	119,481	
	프로그램비(사업비)	22	1	80	1.063	2	3,742	
	소계	-	-	-	-	-	123,223	
간 접 비	인건비	시설장	1,793	12	1	1.063	-	22,872
		사무국장	1,333	12	1	1.063	-	17,004
		생활지도원	1,041	12	8	1.063	-	106,232
		위생원	898	12	1	1.063	-	11,455
		간호사	1,114	12	1	1.063	-	14,210
		조리원	898	12	2	1.063	-	22,910
		영양사	1,114	12	1	1.063	-	14,210
		생활복지사	1,114	12	1	1.063	-	14,210
		의사	1,392	12	1	1.063	-	17,756
	소계	-	-	-	-	-	240,859	
	운영비	43,984	1	1	1.063	-	46,755	
	소계	-	-	-	-	-	287,614	
	업무추진비	-	-	-	-	-	8,217	
	소계	-	-	-	-	-	295,831	
연간표준운영비	-	-	-	-	-	419,053		
1인당 보호비용	-	-	-	-	-	5,238		

(4) 표준운영비 요약

이상에서 산출한 표준운영비를 산출항목에 따라 요약한 결과를 <표 6-2-16>에 제시하였다. 여기서 보면, 직접비 비율은 시설의 규모에 따라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직접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생활비의 영향으로, 가장 규모가 큰 모형3에서 생활비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표 6-2-16> 노인무료양로시설 규모(모형)별 표준운영비 항목 구성비

(단위: 천원, %)

구분		모형1(30인 시설)		모형2(50인 시설)		모형3(80인 시설)	
		금액	백분율	금액	백분율	금액	백분율
직접비	생활비	52,587	23.8	74,410	25.2	119,481	28.5
	프로그램비	1,595	0.7	2,551	0.9	3,742	0.9
	소계	54,181	24.5	76,961	26.1	123,223	29.4
간접비	인건비	135,520	61.4	176,288	59.7	240,936	57.5
	운영비	26,798	12.1	36,324	12.3	46,755	11.2
	업무추진비	4,330	2.0	5,791	2.0	8,217	2.0
	소계	166,648	75.5	218,403	73.9	295,831	70.6
연간표준운영비		220,829	100.0	295,364	100.0	419,053	100.0
1인당 보호비용		7,361		5,907		5,238	

다음으로 간접비는 규모가 큰 시설에서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는 모형1 61.4%, 모형2 59.7%, 모형3 57.5%로 거주자 수가 가장 작은 시설에서 그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운영비는 시설 규모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거주자 1인당 보호비용에서도 규모가 큰 시설일수록 상대적으로 비용이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의 표준운영비는 장애인시설 중 그 수가 가장 많은 시설인 정신지체인시설을 대상으로 추정하였다. 구체적인 산출과정은 다음과 같다.

1) 표준 시설규모 산출

먼저 거주자 규모에 따른 표준모형 구성을 위해서 분석대상에 포함된 정신지체인시설 거주자 수에 따른 분포를 파악하여 전체 시설을 3등분하였다. 전체 표본을 3등분한 기준은 소규모 50인, 중규모 51~100인, 대규모 150인 이상으로 나타났고, 이를 각각 모형1, 모형2, 모형3으로 설정하였다.

다음으로는 각 모형에 포함된 시설별로 평균 거주자 수를 구하였다. 그 결과 각 모형별 평균 거주자 수는 모형1은 48.9인, 모형2는 93.6인, 모형3은 154.9인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하여 이러한 수치와 가장 가까운 대표성을 가진 10단위 정수로 조정하여 모형1은 50인, 모형2는 100인, 모형3은 150인의 표준규모를 가진 시설로 결정하였다.

<표 6-2-17> 장애인복지시설의 표준운영비 산출을 위한 모형 설정 기준

구분	모형 1	모형 2	모형 3
범주 구분	50인 이하	51~100인 이하	150인 이상
범주별 평균 거주자 수	48.9인	93.6인	154.9인
표준 거주자 수	50인	100인	150인
시설수	50개소	42개소	26개소

2) 표준종사자 기준 산출

앞에서 산출한 시설규모에 따른 종사자 기준을 산출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2003년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법정배치기준을 적용하여 <표 6-2-18>과 같이 각 모형별로 배치해야 할 종사자 직종과 규모를 설정하였다.

〈표 6-2-18〉 정신지체인시설 모형별 종사자 배치기준

법정 종사자	모형1(50인)	모형2(100인)	모형3(150인)
시설장	1	1	1
총무(사무국장)	1	1	1
의사	1	1	1
사회재활교사	1	1	1
간호사	1	1	1
물리치료사	1	3	5
작업치료사	1	1	1
언어치료사	1	1	1
영양사	1	1	1
사무원	0	1	1
생활보조원	12	25	37
조리원	1	2	3
위생원	1	2	3
관리기사	1	1	1
총 필요종사자 수	24	42	58

주: 시설장 15호봉, 총무 8호봉, 기타 직원 4호봉 적용

3) 운영비 단가 산출

시설모형별 표준운영비 산출을 위하여, 앞서 제시한 운영비 구성 항목별로 단가를 산출하였다. 직접비인 생활비, 교육비, 프로그램비 그리고 간접비인 운영비는 본 연구의 실태조사결과를 설정한 모형에 따른 거주자 규모별로 각각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이 때 교육비와 프로그램비는 거주자의 삶의 질 제고와 전문적 서비스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결과에 의한 평균값에 가중치를 각각 1.25, 1.1을 적용하였다. 인건비는 앞의 <표 6-1-3>에서 제시한 2001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급여 기준을 <표 6-2-18>에서 제시한 정신지체인시설의 종사자 배치기준에 따라 모형별로 필요한 종사자 수에 적용하도록 한다.

간접비 중 운영비는 <표 6-2-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태조사결과에 따른 각 모형별 평균 거주자 수(48.9인, 93.6인, 154.9인)별 평균값을 산출하고, 이를 모형에 따른 거주자 규모(50인, 100인, 150인)에 비례하여 평균값을 조정하여

최종 운영비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산출된 간접비 중 운영비는 50인, 100인, 150인 모형별로 각각 48,322천원, 64,268천원, 78,946천원이다.

〈표 6-2-19〉 정신지체인시설의 운영비 세출 현황(현원 기준)

(단위: 천원)

구분	실태조사 평균값			모형에 따른 조정값		
	48.9인	93.6인	154.9인	50인	100인	150인
여비	1,856	3,479	3,315	1,882	3,717	3,210
수용비수수료	11,741	11,392	12,635	11,908	12,171	12,235
공공요금	12,322	12,774	19,018	12,497	13,647	18,416
제세공과금	5,134	6,530	8,027	5,207	6,976	7,773
차량비	5,039	5,704	6,614	5,111	6,094	6,405
연료비	11,553	20,276	31,916	11,717	21,662	30,906
운영비 계	47,646	60,156	81,525	48,322	64,268	78,946

〈표 6-2-20〉 정신지체인시설 표준운영비 산출을 위한 단가 요약

(단위: 천원)

구분	시설 규모별 단가			
	모형1(30인)	모형2(50인)	모형3(80인)	
직접비	생활비(운영비)	1,549	1,540	1,458
	교육비	30	30	30
	프로그램비(사업비)	369	369	369
간접비	인건비	표 6-1-3과 표 6-2-18 기준		
	운영비	48,322	64,268	78,946
	업무추진비	[직접비+(인건비+운영비)] × 0.02		

4) 시설규모(모형)별 표준운영비

앞서 제시한 과정에 산출된 정신지체인시설의 모형1, 모형2, 모형3에 따른 표준운영비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모형1 : 거주자 50인 정신지체인시설

거주자 50인(모형1) 정신지체시설의 1년간 표준운영비는 533,801천원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직접비는 105,896천원이고, 간접비 중 인건비는 366,072천원, 운영비는 51,366천원, 업무추진비는 10,467원으로 산출되어, 전체 간접비 합계는 427,905천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를 거주자 50인으로 나눈 거주자 1인당 연간 보호비용은 10,676천원으로 산출되었다.

〈표 6-2-21〉 거주자 50인 정신지체인시설 표준운영비

산출항목		2001년 단가	기간 (월/년)	인원수 (인)	물가상승 지수	가중치	2003년 단가	
직 접 비	생활비(운영비)	1,549	1	50	1.063	-	82,329	
	교육비	30	1	50	1.063	1.25	1,993	
	프로그램비(사업비)	369	1	50	1.063	1.1	21,574	
	소계	-	-	-	-	-	105,896	
간 접 비	인건비	시설장	1,793	12	1	1.063	-	22,872
		사무국장	1,333	12	1	1.063	-	17,004
		의사	1,392	12	1	1.063	-	17,756
		사회재활교사	1,114	12	1	1.063	-	14,210
		간호사	1,114	12	1	1.063	-	14,210
		물리치료사	1,114	12	3	1.063	-	42,631
		작업치료사	1,114	12	1	1.063	-	14,210
		언어치료사	1,114	12	1	1.063	-	14,210
		영양사	1,114	12	1	1.063	-	14,210
		사무원	1,041	12	0	1.063	-	0
		생활보조원	1,041	12	12	1.063	-	159,348
		조리원	898	12	1	1.063	-	11,455
		위생원	898	12	1	1.063	-	11,455
		관리기사	980	12	1	1.063	-	12,501
		소계	-	-	-	-	-	366,072
	운영비	48,322	1	1	1.063	-	51,366	
	소계	-	-	-	-	-	417,438	
	업무추진비	-	-	-	-	-	10,467	
	소계	-	-	-	-	-	427,905	
	연간표준운영비	-	-	-	-	-	533,801	
1인당 보호비용	-	-	-	-	-	10,676		

(2) 모형2 : 거주자 100인 정신지체인시설

거주자 100인 정신지체인시설의 1년간 표준운영비는 871,121천원으로 산출되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직접비는 210,835천원이고, 간접비 중 인건비는 574,887천원, 운영비는 68,317천원, 업무추진비는 17,081천원으로 산출되어, 전체 간접비 합계는 660,285천원으로 나타났다.

〈표 6-2-22〉 거주자 100인 정신지체인시설 표준운영비

산출항목		2001년 단가	기간 (월/년)	인원수 (인)	물가상승 지수	가중치	2003년 단가	
직 접 비	생활비(운영비)	1,540	1	100	1.063	-	163,702	
	교육비	30	1	100	1.063	1.25	3,986	
	프로그램비(사업비)	369	1	100	1.063	1.1	43,147	
	소계	-	-	-	-	-	210,835	
간 접 비	인건비	시설장	1,793	12	1	1.063	-	22,872
		사무국장	1,333	12	1	1.063	-	17,004
		의사	1,392	12	1	1.063	-	17,756
		사회재활교사	1,114	12	1	1.063	-	14,210
		간호사	1,114	12	1	1.063	-	14,210
		물리치료사	1,114	12	3	1.063	-	42,631
		작업치료사	1,114	12	1	1.063	-	14,210
		언어치료사	1,114	12	1	1.063	-	14,210
		영양사	1,114	12	1	1.063	-	14,210
		사무원	1,041	12	1	1.063	-	13,279
		생활보조원	1,041	12	25	1.063	-	331,975
		조리원	898	12	2	1.063	-	22,910
		위생원	898	12	2	1.063	-	22,910
	관리기사	980	12	1	1.063	-	12,501	
	소계	-	-	-	-	-	574,887	
	운영비	64,268	1	1	1.063	-	68,317	
	소계	-	-	-	-	-	643,204	
업무추진비	-	-	-	-	-	17,081		
소계	-	-	-	-	-	660,285		
연간표준운영비	-	-	-	-	-	871,121		
1인당 보호비용	-	-	-	-	-	8,711		

그리고 이를 모형에 따른 거주자 100인으로 나눈 거주자 1인당 보호비용은 8,711천원이다. 이는 모형1에 의한 거주자 1인당 보호비용(10,676천원)에 비해 1,965천원이 적은 금액으로서, 50인 시설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3) 모형3 : 거주자 150인 정신지체인시설

거주자 150인(모형3) 정신지체시설의 1년간 표준운영비는 1,196,117천원이다.

〈표 6-2-23〉 거주자 150인 정신지체인시설 표준운영비

산출항목		2001년 단가	기간 (월/년)	인원수 (인)	물가상승 지수	가중치	2003년 단가	
직 접 비	생활비(운영비)	1,458	1	150	1.063	-	232,478	
	교육비	30	1	150	1.063	1.25	5,979	
	프로그램비(사업비)	369	1	150	1.063	1.1	64,721	
	소계	-	-	-	-	-	303,178	
간 접 비	인건비	시설장	1,793	12	1	1.063	-	22,872
		사무국장	1,333	12	1	1.063	-	17,004
		의사	1,392	12	1	1.063	-	17,756
		사회재활교사	1,114	12	1	1.063	-	14,210
		간호사	1,114	12	1	1.063	-	14,210
		물리치료사	1,114	12	5	1.063	-	71,051
		작업치료사	1,114	12	1	1.063	-	14,210
		언어치료사	1,114	12	1	1.063	-	14,210
		영양사	1,114	12	1	1.063	-	14,210
		사무원	1,041	12	1	1.063	-	13,279
		생활보조원	1,041	12	37	1.063	-	491,323
		조리원	898	12	3	1.063	-	34,365
		위생원	898	12	3	1.063	-	34,365
		관리기사	980	12	1	1.063	-	12,501
		소계	-	-	-	-	-	785,566
	운영비	78,946	1	1	1.063	-	83,920	
	소계	-	-	-	-	-	869,485	
	업무추진비	-	-	-	-	-	23,453	
	소계	-	-	-	-	-	892,938	
	연간표준운영비	-	-	-	-	-	1,196,117	
	1인당 보호비용	-	-	-	-	-	7,974	

세부항목별로 보면, 직접비는 303,178천원이고, 간접비 중 인건비는 785,566천원, 운영비는 83,920천원, 업무추진비는 23,453천원으로 산출되어, 전체 간접비 합계는 892,938천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를 거주자 150인으로 나눈 거주자 1인당 연간 보호비용은 7,974천원으로 산출되었다.

(4) 표준운영비 요약

이상에서 산출한 표준운영비를 산출항목에 따라 요약한 결과를 <표 6-2-24>에 제시하였다. 여기서 보면, 직접비 비율은 시설의 규모에 따라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직접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생활비의 영향으로, 가장 규모가 큰 모형3에서 생활비 비중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특기할 것은 아동이나 노인 등의 시설과는 달리 정신지체인시설의 프로그램비의 비율이 시설규모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간접비는 시설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고 있다. 간접비의 세부항목인 인건비와 운영비에서 모두 비용이 체감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6-2-24> 정신지체인시설 규모(모형)별 표준운영비 항목 구성비

(단위: 천원, %)

구분		모형1(50인 시설)		모형2(100인 시설)		모형3(150인 시설)	
		금액	백분율	금액	백분율	금액	백분율
직접비	생활비	83,329	15.6	163,702	18.8	232,478	19.4
	교육비	1,993	0.4	3,986	0.5	5,979	0.5
	프로그램비	21,547	4.0	43,147	5.0	64,721	5.4
	소계	105,896	19.8	210,835	24.2	303,178	25.3
간접비	인건비	366,072	68.6	574,887	66.0	785,566	65.7
	운영비	51,366	9.6	68,317	7.8	83,920	7.0
	업무추진비	10,467	2.0	17,081	2.0	23,453	2.0
	소계	427,905	80.2	660,285	75.8	892,938	74.7
연간표준운영비		533,801	100.0	871,121	100.0	1,196,117	100.0
1인당 보호비용		10,676		8,711		7,974	

라. 모자복지시설

1) 표준 시설규모 산출

먼저 거주자 규모에 따른 표준모형 구성을 위해서 분석대상에 포함된 모자보호시설 거주자 수에 따른 분포를 파악하여 전체 시설을 3등분하였다. 3등분한 기준은 40인 시설(20세대 미만), 60인 시설(20세대 이상), 120인 이상 시설(40세대 이상)이고, 이를 각각 모형1, 모형2, 모형3으로 설정하였다. 원래 모자보호시설은 세대수를 기준으로 종사자를 배치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세대수가 아닌 거주자 개인수를 조사하였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하였다.

다음으로는 각 모형에 포함된 시설별로 평균 거주자 수를 구하였다. 그 결과 각 모형별 평균 거주자 수는 모형1은 46.8인, 모형2는 59.2인, 모형3은 115.0인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하여 이러한 수치와 가장 가까운 대표성을 가진 10단위 정수로 조정하여 모형1은 40인, 모형2는 60인, 모형3은 120인의 표준규모를 가진 시설로 결정하였다.

〈표 6-2-25〉 모자보호시설의 표준운영비 산출을 위한 모형 설정 기준

구분	소규모 (모형 1)	중규모 (모형 2)	대규모 (모형 3)
평균거주자수	46.8인	59.2인	115.0인
확정 시설규모	40인 (20세대 미만)	60인 (20세대 이상)	120인 (20세대 이상)
시설수(총 23 개소)	11개소	8개소	4개소

2) 표준종사자 기준 산출

종사자 배치기준은 현 법정 배치 기준에 준하였는데, 모형 1의 경우는 시설장, 상담지도원, 사무원/생활지도원 각 1인을 두도록 하였고, 모형 2와 3에서는 총무 1인과 경비원 1인을 추가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표 6-2-26> 모자보호시설 모형별 종사자 배치기준

(단위: 명)

법정 종사자	모형 1	모형 2	모형 3
	40인 (20세대 미만)	60인 (20세대 이상)	120인 (20세대 이상)
시설장	1	1	1
총무	0	1	1
상담지도원	1	1	1
사무원	1	1	1
경비원	0	1	1
총 필요종사자 수	3	5	5

주: 2001년의 경우 한 세대의 인원은 평균 2.4인이어서 이를 적용하여 세대를 계산함.

3) 운영비 단가 산출

모자복지시설의 표준운영비를 산출하기 위한 단가산출을 위한 기준은 다음의 <표 6-2-28>과 같다. 먼저 직접비(생활비, 교육비, 프로그램비)와 간접비 중 운영비는 실태조사결과에 의거하여 산출된 평균세출금액을 단가 기준으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인건비는 법정배치기준에 따라 정부의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 보조지침 기준을 적용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는 산출된 직접비와 간접비의 합계에 0.2%를 적용하였다.

<표 6-2-27> 모형별 모자보호시설 운영비(현원 기준)

(단위: 천원)

구분	실태조사 평균			모형에 따른 조정값		
	46.8인	59.2인	115.0인	40인	60인	120인
여비	953	516	427	815	523	446
수용비수수료	2,236	2,563	4,243	1,911	2,596	4,427
공공요금	4,564	5,352	7,627	3,901	5,422	7,959
계세공과금	2,031	4,697	2,318	1,736	4,758	2,419
차량비	1,514	1,452	2,133	1,294	1,471	2,226
연료비	5,596	7,957	19,453	4,783	8,060	20,299
계	16,895	22,537	36,201	14,440	22,830	37,775

이러한 기준에 의거하여 산출된 아동복지시설의 표준운영비 최종단가 중 직접비인 생활비는 모형1(40인 시설) 1,589천원, 모형2(60인 시설) 1,289천원, 모형3(120인 시설) 1,382천원이다. 그리고 교육비는 각 모형별로 121천원이며, 프로그램비는 각각 111천원, 118천원, 137천원이다. 간접비 중 인건비는 <표 6-1-3>의 직책별 단가를 <표 6-2-26>의 모형별 종사자 배치기준에 적용하여 산출한다. 운영비는 앞에서 제시한 표준운영비 산출공식(표 6-1-4)에 의거, <표 6-2-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설 규모에 따른 대, 중, 소 시설별 평균거주자 수에 따라 운영비를 산출한 후, 이를 실수로 되어 있는 표준운영비 산출을 위한 거주자 규모에 맞게 조정하였다. 그 결과 산출된 운영비 단가는 40인 시설 14,440천원, 60인 시설 22,830천원, 120인 시설 37,775천원이다.

<표 6-2-28> 모자보호시설 표준운영비 산출을 위한 단가 요약

(단위: 천원)

구 분		시설규모별 단가		
		모형1(40인)	모형2(60인)	모형3(120인)
직접비	생활비(운영비)	1,589	1,289	1,382
	교육비	121	121	121
	프로그램비(사업비)	111	118	137
간접비	인건비	표 6-1-3과 표 6-2-26 기준		
	운영비	14,440	22,830	37,775
	업무추진비	[직접비+(인건비+운영비)]×0.02		

4) 시설규모(모형)별 표준운영비

앞서 제시한 과정에 산출된 모자보호시설의 모형1, 모형2, 모형3에 따른 표준운영비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모형1 : 거주자 40인 모자보호시설

거주자 40인(모형1) 모자보호시설의 1년간 표준운영비는 147,795천원이다. 이

를 세부적으로 보면, 직접비는 79,187천원이고, 간접비 중 인건비는 50,361천원, 운영비는 15,350천원, 업무추진비는 2,898원으로 산출되어, 전체 간접비 합계는 68,607천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를 거주자 50인으로 나눈 거주자 1인당 연간 보호비용은 3,695천원으로 산출되었다.

〈표 6-2-29〉 거주자 40인 모자보호시설 표준 운영비

(단위: 천원, 명)

산출항목		2001년 단가	기간 (월/년)	인원수 (명)	물가상승 지수	가중치	2003년 최종단가	
직 접 비	생활비(운영비)	1,589	1	40	1.063	-	67,564	
	교육비	121	1	40	1.063	1.25	6,431	
	프로그램비(사업비)	111	1	40	1.063	1.1	5,192	
	소계	-	-	-	-	-	79,187	
간 접 비	인건비	시설장	1,793	12	1	1.063	-	22,872
		총무	1,333	12	0	1.063	-	0
		상담지도원	1,114	12	1	1.063	-	14,210
		사무원	1,041	12	1	1.063	-	13,279
		경비원	980	12	0	1.063	-	0
		소계	-	-	-	-	-	50,361
	운영비	14,440	1	1	1.063	-	15,350	
	소계	-	-	-	-	-	65,710	
	업무추진비	-	-	-	-	-	2,898	
	소계	-	-	-	-	-	68,607	
	연간표준운영비	-	-	-	-	-	147,795	
1인당 보호비용	-	-	-	-	-	3,695		

(2) 모형2: 거주자 60인 모자보호시설

거주자 60인(모형2) 모자보호시설의 1년간 표준운영비는 208,357천원으로 산출되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직접비는 100,138천원이고, 간접비 중 인건비는 79,865천원, 운영비는 24,268천원, 업무추진비는 4,085천원으로 산출되어, 전

체 간접비 합계는 208,357천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를 거주자 60인으로 나눈 거주자 1인당 연간 보호비용은 3,473천원으로 산출되었다.

〈표 6-2-30〉 거주자 60인 모자보호시설 표준운영비

(단위: 천원, 명)

산출항목		2001년 단가	기간 (월/년)	인원수 (명)	물가상승 지수	가중치	2003년 최종단가	
직 접 비	생활비(운영비)	1,289	1	60	1.063	-	82,212	
	교육비	121	1	60	1.063	1.25	9,647	
	프로그램비(사업비)	118	1	60	1.063	1.1	8,279	
	소계	-	-	-	-	-	100,138	
간 접 비	인건비	시설장	1,793	12	1	1.063	-	22,872
		총무	1,333	12	1	1.063	-	17,004
		상담지도원	1,114	12	1	1.063	-	14,210
		사무원	1,041	12	1	1.063	-	13,279
		경비원	980	12	1	1.063	-	12,501
		소계	-	-	-	-	-	79,865
	운영비	22,830	1	1	1.063	-	24,268	
	소계	-	-	-	-	-	104,134	
	업무추진비	-	-	-	-	-	4,085	
	소계	-	-	-	-	-	108,219	
	연간표준운영비	-	-	-	-	-	208,357	
1인당 보호비용	-	-	-	-	-	3,473		

(3) 모형3: 거주자 120인 모자보호시설

거주자 120인(모형3) 모자보호시설의 1년간 표준운영비는 341,522천원으로 산출되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직접비는 214,805천원이고, 간접비 중 인건비는 79,865천원, 운영비는 40,155천원, 업무추진비는 6,696천원으로 산출되어, 전체 간접비 합계는 126,717천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를 거주자 120인으로 나눈 거주자 1인당 연간 보호비용은 2,846천원으로 산출되었다.

<표 6-2-31> 거주자 120인 모자보호시설 표준 운영비

(단위: 천원, 명)

산출항목		2001년 단가	기간 (월/년)	인원수 (명)	물가상승 지수	가중치	2003년 최종단가	
직 접 비	생활비(운영비)	1,382	1	120	1.063	-	176,288	
	교육비	121	1	120	1.063	1.25	19,293	
	프로그램비(사업비)	137	1	120	1.063	1.1	19,223	
	소계	-	-	-	-	-	214,805	
간 접 비	인건비	시설장	1,793	12	1	1.063	-	22,872
		총무	1,333	12	1	1.063	-	17,004
		상담지도원	1,114	12	1	1.063	-	14,210
		사무원	1,041	12	1	1.063	-	13,279
		경비원	980	12	1	1.063	-	12,501
		소계	-	-	-	-	-	79,865
	운영비	37,775	1	1	1.063	-	40,155	
	소계	-	-	-	-	-	120,020	
	업무추진비	-	-	-	-	-	6,696	
	소계	-	-	-	-	-	126,717	
	연간표준운영비	-	-	-	-	-	341,522	
	1인당 보호비용	-	-	-	-	-	2,846	

(4) 표준운영비 요약

이상에서 산출한 표준운영비를 산출항목에 따라 요약한 결과를 <표 6-2-32>에 제시하였다. 여기서 보면, 직접비의 비율은 모형3(120인)에 해당하는 대규모 시설에서 62.9%로 가장 크고, 다음은 모형1(40인)의 소규모 시설(53.6%), 모형2(60인)의 중규모 시설(48.1%)의 순이다. 또한 직접비중 교육비와 프로그램비는 시설규모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 간접비는 중규모 시설의 비율(51.9%)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특히 인건비 비율에서 중규모 시설은 38.3%로 대규모 시설의 23.4%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중규모 시설과 대규모 시설의 종사자 배치기준에 차이가 없는데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6-2-32〉 모자보호시설 규모(모형)별 표준운영비 항목 구성비

(단위: 천원, %)

구분		모형1(40인 시설)		모형2(60인 시설)		모형3(120인 시설)	
		금액	백분율	금액	백분율	금액	백분율
직접비	생활비	67,564	45.7	82,212	39.5	176,288	51.6
	교육비	6,431	4.4	9,647	4.6	19,293	5.6
	프로그램비	5,192	3.5	8,279	4.0	19,223	5.6
	소계	79,187	53.6	100,138	48.1	214,805	62.9
간접비	인건비	50,361	34.1	79,865	38.3	79,865	23.4
	운영비	15,350	10.4	24,268	11.6	40,155	11.8
	업무추진비	2,898	2.0	4,085	2.0	6,696	2.0
	소계	68,608	46.4	108,219	51.9	126,717	37.1
연간표준운영비		147,795	100.0	208,357	100.0	341,522	100.0
1인당 보호비용		3,695		3,473		2,846	

마. 정신요양시설

1) 표준 시설규모 산출

거주자 규모에 따른 표준모형 구성을 위해서 분석대상에 포함된 정신요양시설 거주자 수에 따른 분포를 파악하여 전체 시설을 3등분하여, 각 모형에 포함된 시설별로 평균 거주자 수를 구하였다. 그 결과 각 모형별 평균 거주자 수는 모형1은 60.9인, 모형2는 183.5인, 모형3은 346.7인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하여 이러한 수치와 가장 가까운 대표성을 가진 10단위 정수로 조정하여 모형1은 60인, 모형2는 180인, 모형3은 350인의 표준규모를 가진 시설로 결정하였다.

〈표 6-2-33〉 정신요양시설의 표준운영비 산출을 위한 모형 설정 기준

구분	소규모 (모형 1)	중규모 (모형 2)	대규모 (모형 3)
평균 거주자수	60.9인	183.5인	346.7인
확정 시설 규모	60인	180인	350인
시설수 (총 54개소)	16개소	21개소	17개소

2) 표준종사자 규모 산출

종사자 배치기준은 현 법정 배치 기준에 준하였다. 모형별로 정신과 전문의, 간호사, 보조원, 정신보건전문요원, 취사원, 세탁원 등의 수에 있어서 차등을 보이고 있었다.

<표 6-2-34> 정신요양시설의 모형별 종사자 배치기준

(단위: 명)

법정 종사자	모형 1	모형 2	모형 3
	60인	180인	350인
시설장	1	1	1
총무	1	1	1
축탁의사	1	1	1
간호사	2	5	9
보조원	2	7	14
영양사	1	1	1
사무원	1	1	1
정신보건전문요원	1	1	1
작업지도원	1	1	1
조리원	2	2	2
위생원	1	1	1
경비원	2	2	2
총 종사자수	16	24	35

3) 운영비 단가 산출

정신요양시설의 표준운영비를 산출하기 위한 단가산출을 위한 기준은 다음의 <표 6-2-36>과 같다. 정신요양시설의 표준운영비 최종단가 중 직접비인 생활비는 모형1(60인 시설) 1,333천원, 모형2(180인 시설) 1,681천원, 모형 3(350인 시설) 1,480천원이다. 그리고 교육비는 각 모형별로 14천원이며, 프로그램비는 각각 494천원, 10천원, 25천원이다. 간접비 중 인건비는 <표 6-1-3>의 직책별 단가를 <표 6-2-34>의 모형별 종사자 배치기준에 적용하여 산출한다. 운영비는 <표

6-2-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설 규모에 따른 대, 중, 소 시설별 평균거주자 수에 따라 운영비를 산출한 후, 이를 실수로 되어 있는 표준운영비 산출을 위한 거주자 규모에 맞게 조정하였다. 그 결과 산출된 운영비는 60인 시설 31,548천원, 180인 시설 76,677천원, 350인 시설 139,614천원이다.

〈표 6-2-35〉 정신요양시설의 운영비 단가 산출

(단위: 천원)

구분	실태조사 평균			모형에 따른 조정값		
	60.9인	183.4인	346.7인	60인	180인	350인
여비	1,071	1,946	1,902	1,056	1,910	1,920
수용비수수료	5,650	13,513	16,953	5,568	13,260	17,117
공공요금	8,305	14,242	27,809	8,185	13,976	28,078
제세공과금	3,494	7,965	13,624	3,443	7,816	13,756
차량비	1,919	5,883	9,173	1,891	5,773	9,262
연료비	11,572	34,589	68,815	11,405	33,942	69,480
계	32,011	78,138	138,278	31,548	76,677	139,614

〈표 6-2-36〉 정신요양시설 사업비 단가

(단위: 천원)

구분		시설규모별 단가		
		모형1(60인)	모형2(180인)	모형3(350인)
직접비	생활비(운영비)	1,333	1,681	1,480
	교육비	14	14	14
	프로그램비(사업비)	494	10	25
간접비	인건비	표 6-1-3과 표 6-2-34 기준		
	운영비	31,548	76,677	139,614
	업무추진비	[직접비+(인건비+운영비)]×0.02		

4) 시설규모(모형)별 표준운영비

앞서 제시한 과정에 산출된 정신요양시설의 모형1, 모형2, 모형3에 따른 표준운영비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모형1 : 거주자 60인 정신요양시설

거주자 60인(모형1) 정신요양시설의 1년간 표준운영비는 389,859천원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직접비는 120,793천원, 간접비 중 인건비는 227,886천원, 운영비는 33,536천원, 업무추진비는 7,644원으로 산출되어, 전체 간접비 합계는 269,066천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 운영비를 거주자 60인으로 나눈 거주자 1인당 연간 보호비용은 6,498천원으로 산출되었다.

<표 6-2-37> 거주자 60인 정신요양시설 표준 운영비

(단위: 천원, 명)

산출항목		2001년 단가	기간 (월/년)	인원수 (명)	물가상승 지수	가중치	2003년 최종단가	
직 접 비	생활비(운영비)	1,333	1	60	1.063		85,019	
	교육비	14	1	60	1.063	1.25	1,116	
	프로그램비(사업비)	494	1	60	1.063	1.1	34,658	
	소계	-	-	-	-	-	120,793	
간 접 비	인건비	시설장	1,793	12	1	1.063	-	22,872
		총무	1,333	12	1	1.063	-	17,004
		축탁의사	1,392	12	1	1.063	-	17,756
		간호(조무)사	1,114	12	2	1.063	-	28,420
		보조원	1,041	12	2	1.063	-	26,558
		영양사	1,114	12	1	1.063	-	14,210
		사무원	1,041	12	1	1.063	-	13,279
		정신보건전문요원	1,114	12	1	1.063	-	14,210
		작업지도원	1,114	12	1	1.063	-	14,210
		조리원	898	12	2	1.063	-	22,910
		위생원	898	12	1	1.063	-	11,455
		경비원	980	12	2	1.063	-	22,002
		소계	-	-	-	-	-	227,886
		운영비	31,548	1	1	1.063	-	33,536
	소계	-	-	-	-	-	261,421	
업무추진비	-	-	-	-	-	7,644		
소계	-	-	-	-	-	269,066		
연간표준운영비		-	-	-	-	-	389,859	
1인당 보호비용		-	-	-	-	-	6,498	

(2) 모형2 : 거주자 180인 정신요양시설

거주자 180인(모형2) 정신요양시설의 1년간 표준운영비는 760,425천원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직접비는 327,096천원, 간접비 중 인건비는 336,911천원, 운영비는 81,508천원, 업무추진비는 14,910천원으로 산출되어, 전체 간접비 합계는 433,329천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 운영비를 거주자 180인으로 나눈 거주자 1인당 연간 보호비용은 4,225천원으로 산출되었다.

〈표 6-2-38〉 거주자 180인 정신요양시설 표준 운영비

(단위: 천원, 명)

산출항목		2001년 단가	기간 (월/년)	인원수 (명)	물가상승 지수	가중치	2003년 최종단가	
직 접 비	생활비(운영비)	1,681	1	180	1.063	-	321,643	
	교육비	14	1	180	1.063	1.25	3,348	
	프로그램비(사업비)	10	1	180	1.063	1.1	2,105	
	소계	-	-	-	-	-	327,096	
간 접 비	인건비	시설장	1,793	12	1	1.063	-	22,872
		총무	1,333	12	1	1.063	-	17,004
		축탁의사	1,392	12	1	1.063	-	17,756
		간호(조무)사	1,114	12	5	1.063	-	71,051
		보조원	1,041	12	7	1.063	-	92,953
		영양사	1,114	12	1	1.063	-	14,210
		사무원	1,041	12	1	1.063	-	13,279
		정신보건전문요원	1,114	12	1	1.063	-	14,210
		작업지도원	1,114	12	1	1.063	-	14,210
		조리원	898	12	2	1.063	-	22,910
		위생원	898	12	1	1.063	-	11,455
		경비원	980	12	2	1.063	-	25,002
	소계	-	-	-	-	-	336,911	
	운영비	76,677	1	1	1.063	-	81,508	
	소계	-	-	-	-	-	418,419	
업무추진비	-	-	-	-	-	14,910		
소계	-	-	-	-	-	433,329		
연간표준운영비	-	-	-	-	-	760,425		
1인당 보호비	-	-	-	-	-	4,225		

(3) 모형3 : 거주자 350인 정신요양시설

거주자 350인(모형3) 정신요양시설의 1년간 표준운영비는 1,175,974천원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직접비는 517,801천원, 간접비 중 인건비는 486,705천원, 운영비는 148,410천원, 업무추진비는 23,058천원으로 산출되어, 전체 간접비 합계는 658,173천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 운영비를 거주자 350인으로 나누어 거주자 1인당 연간 보호비용은 3,360천원으로 산출되었다.

<표 6-2-39> 거주자 350인 정신요양시설 표준 운영비

(단위: 천원, 명)

산출항목		2001년 단가	기간 (월/년)	인원수 (명)	물가상승 지수	가중치	2003년 최종단가	
직 접 비	생활비(운영비)	1,333	1	350	1.063	-	495,943	
	교육비	25	1	350	1.063	1.25	11,627	
	프로그램비(사업비)	10	1	350	1.063	1.1	10,231	
	소계	-	-	-	-	-	517,801	
간 접 비	인건비	시설장	1,793	12	1	1.063	-	22,872
		총무	1,333	12	1	1.063	-	17,004
		축탁의사	1,392	12	1	1.063	-	17,756
		간호(조무)사	1,114	12	9	1.063	-	127,892
		보조원	1,041	12	4	1.063	-	185,906
		영양사	1,114	12	1	1.063	-	14,210
		사무원	1,041	12	1	1.063	-	13,279
		정신보건전문요원	1,114	12	1	1.063	-	14,210
		작업지도원	1,114	12	1	1.063	-	14,210
		조리원	898	12	2	1.063	-	22,910
		위생원	898	12	1	1.063	-	11,455
		경비원	980	12	2	1.063	-	25,002
	소계	-	-	-	-	-	486,705	
	운영비	139,614	1	1	1.063	-	148,410	
	소계	-	-	-	-	-	635,115	
업무추진비	-	-	-	-	-	23,058		
소계	-	-	-	-	-	658,173		
연간표준운영비	-	-	-	-	-	1,175,974		
1인당 보호비용	-	-	-	-	-	3,360		

(4) 표준운영비 요약

이상에서 산출한 표준운영비를 산출항목에 따라 요약한 결과를 <표 6-2-40>에 제시하였다. 여기서 보면, 직접비 비율은 모형2(350인)에 해당하는 대규모 시설에서 44.0%로 가장 크고, 다음은 모형2(180인) 43.0%, 모형1(60인) 31.0%의 순으로 모형1과 나머지 모형2·3시설의 직접비 비율의 차이가 비교적 크다. 세부적으로 보면, 생활비는 모형1(22.7%)이 나머지 시설에 비해 작은 비율은 보인 반면, 프로그램비에서는 모형1이 8.9%로 모형2 0.3%, 모형3 0.9%에 비해 현저하게 큰 비율을 보였다. 간접비는 60인 시설에서 69.0%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또한 1인당 지원액은 시설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6-2-40> 정신요양시설 규모(모형)별 표준운영비 항목 구성비

(단위: 천원, %)

구분		모형1(60인 시설)		모형2(180인 시설)		모형3(350인 시설)	
		금액	백분율	금액	백분율	금액	백분율
직접비	생활비	85,019	21.8	321,643	42.3	495,943	42.2
	교육비	1,116	0.3	3,348	0.4	11,627	1.0
	프로그램비	34,658	8.9	2,105	0.3	10,231	0.9
	소계	120,793	31.0	327,096	43.0	517,943	44.0
간접비	인건비	227,886	58.5	336,911	44.3	486,705	41.4
	운영비	33,536	8.6	81,508	10.7	148,410	12.6
	업무추진비	7,644	2.0	14,910	2.0	23,058	2.0
	소계	269,066	69.0	433,329	57.0	658,173	56.0
연간표준운영비		389,859	100.0	760,425	100.0	1,175,974	100.0
1인당 보호비		6,478		4,225		3,360	

바. 부랑인복지시설

1) 표준 시설규모 산출

거주자 규모에 따른 표준모형 구성을 위해서 분석대상에 포함된 부랑인복지 시설 거주자 수에 따른 분포를 파악한 후, 전체 시설을 3등분하여, 각 모형에

포함된 시설별로 평균 거주자 수를 구하였다. 그 결과 각 모형별 평균 거주자 수는 모형1 64.5인, 모형2 177.1인, 모형3 1,652.0인이다. 이를 근거로 하여 이러한 수치와 가장 가까운 대표성을 가진 10단위 정수로 조정하여 모형1은 60인, 모형2는 180인, 모형3은 1,600인의 표준규모를 가진 시설로 결정하였다.

〈표 6-2-41〉 부랑인복지시설의 표준운영비 산출을 위한 모형 설정 기준

구분	소규모 (모형 1)	중규모 (모형 2)	대규모 (모형 3)
평균거주자 수	64.5인	177.1인	1,652.0인
확정 시설규모	60인	180인	1,600인
시설 수	8개소	12개소	2개소

2) 표준종사자 기준 산출

종사자 배치기준은 현 법정 배치 기준에 준하였다. 모형별로 차이를 보이는 종사자 유형은 간호(조무)사, 상담부장, 생활복지사 등에 있다.

〈표 6-2-42〉 부랑인복지시설 모형별 법정 종사자 배치수

법정 종사자	모형1(60인)	모형2(180인)	모형3(1,600인)
시설장	1	1	1
총무	1	1	1
축탁의사	1	1	1
간호사	1	1	8
상담부장	1	1	3
생활복지사	1	4	40
생활지도원	1	4	32
영양사	1	1	1
조리원	1	1	1
사무원	1	1	1
경비원	1	1	1
설비기사	1	1	1
자활지도교사	1	1	1
총 필요종사자수	13	19	92

주: 상담부장, 간호사, 생활복지사는 2003년도 지원기준을 참조함.

법정종사자 배치기준을 중심으로 부랑인시설 규모별 종사자 배치를 하였지만, 이 기준은 최소한의 필요인원만을 제시한 것이다. 예를 들어 자활지도교사의 경우 법에서는 시설의 규모를 불문하고 1명 이상이라는 기준을 설정하였는데, 이 기준이 상당히 애매하다. 본 연구에서는 1명 이상을 모든 규모의 시설에 1명으로 적용하여 시설의 종사자 배치기준의 다소 과소 책정되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현행 법정 종사자 배치기준의 적정성을 분석하고 시설 규모별로 적정인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3) 운영비 단가 산출

부랑인복지시설의 표준운영비를 산출하기 위한 단가산출을 위한 기준은 다음의 <표 6-2-44>와 같다. 부랑인복지시설의 표준운영비 최종단가 중 직접비인 생활비는 모형1(60인 시설) 1,371천원, 모형2(180인 시설) 1,236천원, 모형 3(1,600인 시설) 1,422천원이다. 그리고 교육비와 프로그램비는 각 모형별로 각각 1.25천원, 70.4천원이다.

<표 6-2-43> 부랑인복지시설의 운영비 단가 산출

(단위: 천원)

구분	실태조사 평균			모형에 따른 조정값			정원에 따른 조정값 ¹⁾		
	64.5인	177.1인	1,652.0인	60인	180인	1,600인	75인	202인	1,600인
여비	1,626	1,341	8,320	1,513	1,363	8,058	1,891	1,530	8,058
수용비수수료	7,064	14,903	222,708	6,571	15,149	215,698	8,214	17,000	215,698
공공요금	9,410	22,216	227,158	8,753	22,582	220,008	10,942	25,342	220,008
제세공과금	3,782	7,827	44,541	3,518	7,956	43,139	4,398	8,928	43,139
차량비	2,067	5,052	24,504	1,923	5,135	23,733	2,403	5,763	23,733
연료비	12,254	28,047	324,404	11,399	28,509	314,193	14,249	31,994	314,193
계	36,203	79,388	851,633	33,677	80,697	824,826	42,097	90,560	824,826

주: 1) 부랑인복지시설의 경우, 현원과 정원의 차이가 커서 정원을 기준으로 재제정함.

2) 1,600명의 경우 정원과의 현원의 수가 같아 현원 기준으로 산출하였음.

인건비는 <표 6-1-3>의 직책별 단가를 <표 6-2-42>의 모형별 종사자 배치기준에 적용한다. 운영비는 <표 6-2-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 중, 소 시설별 평균거주자 수에 따라 산출한 후, 이를 실수로 되어 있는 표준운영비 산출을 위한 거주자 규모에 맞게 조정하였다. 그 결과 산출된 운영비는 60인 시설 42,097천원, 180인 시설 90,560천원, 1,600인 시설 824,826천원이다.

<표 6-2-44> 부랑인복지시설 사업비 단가

(단위: 천원)

구 분		시설규모별 단가		
		모형1(60인)	모형2(180인)	모형3(1600인)
직접비	생활비(운영비)	1,371	1,236	1,422
	교육비	1.25	1.25	1.25
	프로그램비(사업비)	70.4	70.4	70.4
간접비	인건비	표 6-1-3과 표 6-2-18 기준		
	운영비	42,097	90,560	824,826
	업무추진비	[직접비+(인건비+운영비)]×0.02		

4) 시설규모(모형)별 표준운영비

앞서 제시한 과정에 산출된 부랑인복지시설의 모형1, 모형2, 모형3에 따른 표준운영비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모형1 : 거주자 60인 부랑인복지시설

거주자 60인(모형1) 부랑인복지시설의 1년간 표준운영비는 308,261천원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직접비는 92,481천원, 간접비 중 인건비는 164,986천원, 운영비는 44,749천원, 업무추진비는 6,044천원으로 산출되어, 전체 간접비 합계는 209,780천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를 거주자 60인으로 나눈 거주자 1인당 연간 보호비용은 5,138천원으로 산출되었다.

〈표 6-2-45〉 거주자 60인 부랑인복지시설 표준 운영비

(단위: 천원, 명)

산출항목		2001년 단가	기간 (월/년)	인원수 (명)	물가상승 지수	가중치	2003년 최종단가	
직 접 비	생활비(운영비)	1,371	1	60	1.063	-	87,442	
	교육비	1.25	1	60	1.063	1.25	100	
	프로그램비(사업비)	70.4	1	60	1.063	1.1	4,939	
	소계	-	-	-	-	-	92,481	
간 접 비	인건비	시설장	1,793	12	1	1.063	-	22,872
		총무	1,333	12	1	1.063	-	17,004
		축탁의사	1,392	12	1	1.063	-	17,756
		간호(조무)사	1,114	12	1	1.063	-	14,210
		상담부장	1,114	12	1	1.063	-	14,210
		생활복지사	1,114	12	1	1.063	-	14,210
		생활보조원	1,041	12	1	1.063	-	13,279
		영양사	1,114	12	1	1.063	-	14,210
		조리원	898	12	1	1.063	-	11,455
		사무원	1,041	12	1	1.063	-	13,279
		경비원	980	12	1	1.063	-	12,501
		설비기사	980	12	1	1.063	-	12,501
		자활교사	1,114	12	1	1.063	-	14,210
	소계	-	-	-	-	-	164,986	
	운영비	42,097	1	1	1.063	-	44,749	
	소계	-	-	-	-	-	209,735	
	업무추진비	-	-	-	-	-	6,044	
소계	-	-	-	-	-	215,780		
연간표준운영비	-	-	-	-	-	308,261		
1인당 보호비용	-	-	-	-	-	5,138		

(2) 모형2 : 거주자 180인 부랑인복지시설

거주자 180인(모형1) 부랑인복지시설의 1년간 표준운영비는 621,733천원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직접비는 251,613천원, 간접비 중 인건비는 261,664천원, 운영비는 96,265천원, 업무추진비는 12,191원으로 산출되어, 전체 간접비 합계는

357,929천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를 거주자 180인으로 나눈 거주자 1인당 연간 보호비용은 3,454천원으로 산출되었다.

〈표 6-2-46〉 거주자 180인 부랑인시설 표준 운영비

(단위: 천원, 명)

산출항목		2001년 단가	기간 (월/년)	인원수 (명)	물가상승 지수	가중치	2003년 최종단가	
직 접 비	생활비(운영비)	1,236	1	180	1.063	-	236,496	
	교육비	1.25	1	180	1.063	1.25	299	
	프로그램비(사업비)	70.4	1	180	1.063	1.1	14,817	
	소계	-	-	-	-	-	251,613	
간 접 비	인건비	시설장	1,793	12	1	1.063	-	22,872
		총무	1,333	12	1	1.063	-	17,004
		축탁의사	1,392	12	1	1.063	-	17,756
		간호(조무)사	1,114	12	1	1.063	-	14,210
		상담부장	1,114	12	1	1.063	-	14,210
		생활복지사	1,114	12	5	1.063	-	71,051
		생활보조원	1,041	12	3	1.063	-	36,837
		영양사	1,114	12	1	1.063	-	14,210
		조리원	898	12	1	1.063	-	11,455
		사무원	1,041	12	1	1.063	-	13,279
		경비원	980	12	1	1.063	-	12,501
		설비기사	980	12	1	1.063	-	12,501
		자활교사	1,114	12	1	1.063	-	14,210
	소계	-	-	-	-	-	261,664	
	운영비	90,560	1	1	1.063	-	96,265	
	소계	-	-	-	-	-	357,929	
	업무추진비	-	-	-	-	-	12,191	
소계	-	-	-	-	-	370,120		
연간표준운영비	-	-	-	-	-	621,733		
1인당 보호비용	-	-	-	-	-	3,454		

(3) 모형3 : 거주자 1,600인 부랑인복지시설

거주자 1,600인(모형1) 부랑인복지시설의 1년간 표준운영비는 4,782,187천원이다. 직접비는 2,552,905천원, 간접비 중 인건비는 1,258,724천원, 운영비는

876,790천원, 업무추진비는 93,768천원으로 산출되어, 전체 간접비 합계는 2,229,282천원으로 나타났다. 거주자 1인당 연간 보호비용은 2,989천원이었다.

〈표 6-2-47〉 거주자 1,600인 부랑인복지시설 표준 운영비

(단위: 천원, 명)

산출항목		2001년 단가	기간 (월/년)	인원수 (명)	물가상승 지수	가중치	2003년 최종단가	
직 접 비	생활비(운영비)	1,422	1	1600	1.063	-	2,418,538	
	교육비	1.25	1	1600	1.063	1.25	2,658	
	프로그램비(사업비)	70.4	1	1600	1.063	1.1	131,710	
	소계	-	-	-	-	-	2,552,905	
간 접 비	인건비	시설장	1,793	12	1	1.063	-	22,872
		총무	1,333	12	1	1.063	-	17,004
		축탁의사	1,392	12	1	1.063	-	17,756
		간호(조무)사	1,114	12	8	1.063	-	113,681
		상담부장	1,114	12	3	1.063	-	42,631
		생활복지사	1,114	12	40	1.063	-	568,407
		생활보조원	1,041	12	32	1.063	-	424,928
		영양사	1,114	12	1	1.063	-	14,210
		조리원	980	12	1	1.063	-	11,455
		사무원	1,041	12	1	1.063	-	13,279
		경비원	980	12	1	1.063	-	12,501
		설비기사	980	12	1	1.063	-	12,501
		자활지도교사	1,114	12	40	1.063	-	568,407
	소계	-	-	-	-	-	1,258,724	
	운영비	824,826	1	1	1.063	-	876,790	
	소계	-	-	-	-	-	2,135,514	
업무추진비	-	-	-	-	-	93,539		
소계	-	-	-	-	-	2,229,282		
연간표준운영비	-	-	-	-	-	4,782,187		
1인당 보호비용	-	-	-	-	-	2,989		

(4) 표준운영비 요약

이상에서 산출한 부랑인복지시설의 표준운영비를 요약한 결과를 <표 6-2-48>에 제시하였다. 직접비 비율은 모형3(1,600인)에 해당하는 대규모 시설에서 53.4%로 가장 크고, 다음은 모형2(180인) 40.5%, 모형1(60인) 30.0%의 순으로 모형3시설의 직접비 비율이 50%를 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생활비는 모형3이 50.6%로 가장 많다. 교육비는 60인 시설의 경우 매우 낮거나, 나머지 시설은 0.1%로 아주 미미한 수치이다. 간접비의 경우, 60인 시설이 70.0%로 가장 많고, 이 중 인건비는 60인 시설이 53.5%인 반면, 1,600인 시설은 26.3%로 규모에 따른 인건비 비율의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대규모 시설에서 정원에 비해 많은 거주자를 보호하고 있다. 또한 1인당 보호비용에서도 모형3 시설의 경우에는 2,989천원으로 다른 유형의 시설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금액을 보이고 있다. 1인당 보호비는 시설규모가 커질수록 체감하고 있었다.

<표 6-2-48> 부랑인복지시설 규모(모형)별 표준운영비 항목 구성비

(단위: 천원, %)

구분	모형1(60인 시설)		모형2(180인 시설)		모형3(1,600인 시설)		
	금액	백분율	금액	백분율	금액	백분율	
직접비	생활비	87,442	28.4	236,496	38.0	2,418,538	50.6
	교육비	100	0.0	299	0.0	2,658	0.1
	프로그램비	4,939	1.6	14,817	2.4	131,710	2.8
	소계	92,481	30.0	251,613	40.5	2,552,600	53.4
간접비	인건비	164,986	53.5	261,664	42.1	1,258,724	26.3
	운영비	44,749	14.5	96,265	15.5	876,790	18.3
	업무추진비	6,044	2.0	12,191	2.0	93,768	2.0
	소계	215,779	70.0	370,120	59.5	2,229,282	46.5
연간표준운영비	308,260	100.0	621,733	100.0	4,782,187	100.0	
1인당 보호비용	5,138		3,454		2,989		

사. 표준운영비 종합

이상 산출한 시설별 표준운영비를 규모별로 제시하면 <표 6-2-49>와 같다.

〈표 6-2-49〉 사회복지시설 규모별 1인당 표준운영비 비교

(단위: 천원)

시설구분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아동양육시설	7,594	8,168	6,633
무료양로시설	7,361	5,907	5,238
정신지체인시설	10,676	8,711	7,974
모자보호시설	3,695	3,473	2,846
정신요양시설	6,253	4,449	3,592
부랑인복지시설	5,138	3,454	2,989

주: 시설별 3종의 규모의 인원기준은 다름.

〈표 6-2-50〉 사회복지시설 1인당 표준운영비 단가와 정부지원단가 비교

(단위: 천원)

시설구분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정부지원단가
아동양육시설	표준운영비 계	7,594	8,168	6,633	4,829
	2003년도 생계비	1,610	1,762	1,661	
	생계비 제외금액	5,984	6,406	4,972	
무료양로시설	표준운영비 계	7,361	5,907	5,238	4,039
	2003년도 생계비	1,753	1,488	1,494	
	생계비 제외금액	5,608	4,419	3,744	
정신지체인시설	표준운영비 계	10,676	8,711	7,974	6,770
	2003년도 생계비	1,647	1,637	1,550	
	생계비 제외금액	9,029	7,074	6,424	
모자보호시설	표준운영비 계	3,695	3,473	2,846	2,185
	2003년도 생계비	1,689	1,370	1,496	
	생계비 제외금액	2,006	2,103	1,377	
정신요양시설	표준운영비 계	6,253	4,449	3,592	2,310
	2003년도 생계비	1,417	1,787	1,573	
	생계비 제외금액	4,836	2,662	2,019	
부랑인복지시설	표준운영비 계	5,138	3,354	2,989	1,843
	2003년도 생계비	1,457	1,314	1,512	
	생계비 제외금액	3,681	2,040	1,477	

주: 1) 생계비는 2003년도 물가로 환산한 것임.

2) 정부지원단가는 2003년도 수치임.

3) 정부지원단가에는 생계비가 제외되어 있어 표준운영비에서 생계비를 뺐음.

정신지체인시설이 다른 시설에 비해서 1인당 표준운영비가 가장 높고, 모자보호시설이 가장 낮았다. 대체적으로 시설의 규모가 증가할수록 표준운영비는 체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산출한 표준운영비를 정부지원단가와 비교하였다. 단, 정부지원단가는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므로 여기서도 2003년도 물가로 환산한 생계비는 제외한 1인당 표준운영비를 산출한 후, 정부지원단가와 비교하였다(표 6-2-50 참조). 그 결과 정부지원단가의 조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로써 보조금을 지원할 때 시설의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해야 할 필요성과 함께, 전반적으로 지원단가를 상향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동양육시설, 무료양로시설, 정신지체인시설(대규모시설 제외), 정신요양시설, 부랑인복지시설(대규모시설 제외)에서 모두 1인당 표준운영비가 정부지원단가보다 높았다. 특히, 소규모시설에서는 표준운영비에 비해 정부지원단가에 상당히 낮아 현행의 지원액수로는 시설을 운영하는데 많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대규모 정신지체인시설, 대규모 부랑인복지시설에서는 정부지원단가가 표준운영비 단가를 상회하고 있었다. 그리고 모자보호시설에서는 시설의 규모를 막론하고 표준운영비 단가가 정부지원단가보다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른 시설에 비해서 모자보호시설에서는 정부지원단가로 시설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해석할 수 있겠으나, 이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서 결론내려야 할 것이다. 다른 측면으로는 본 연구에서 계산한 표준운영비가 현행 지출금액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바람직한 운영비보다는 현재의 실태를 반영한 운영비가 산출되어 시설에서의 부족한 부분이 충분히 감안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전반적으로 정부의 지원단가는 상향조정되어야 하고, 향후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거주자가 최적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항목선정과 항목별 단가 계산을 통해서 정확한 운영비 산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 7 장 결론: 시설 운영비 지원제도 개선방안

본 고에서는 6개 종류의 사회복지 생활시설에서의 거주자 관련사항(거주자 수, 성, 연령), 종사자 관련(종사자수, 적정종사자수, 전공 등)과 시설관련사항(교대제, 실비거주자 유무 및 비용)과 예산지원시기 및 방식, 세입 및 세출 규모 등을 살펴보았다. 시설별 실제 세출을 기반으로 해서 시설별 표준운영비를 시설의 규모별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본 장에서는 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가. 시·군·구 단위 시설운영비 부담제도 폐지

시설운영비용의 일부를 시·군·구에서 부담함에 따라 지역 내 대형 시설이 존재하고 있는 일부 시·군·구의 경우 부담이 과중한 실정이며, 재정이 열악한 시·군·구의 경우 지역 내 시설설치의 기피 등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생활보호법 제36조 제1항 제4호를 개정하여 시·군·구에서 부담하는 시설운영비의 부담을 폐지하는 대신 동 비용을 시·도가 부담토록 한다. 다만, 시·군·구에서 프로그램 지원 등 추가지원은 할 수 있도록 한다.

나. 민간자원의 활용 확대

일정기간 동안 그리고 일정시간 이상 지속적·정기적으로 봉사한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카드를 발급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서비스 이용 시 할인혜택 및 우선권 등을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는 헌혈자 사고 시 수혈 우선권과 유사한 것이다. 사회복지 시설이 활용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의 수나 정도를 정기적인 시설평가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 지표가 고안되어야 할 것이다.

다. 정부의 재정지원 방식 변경

현행의 거주자 인원수에 비례한 정부보조금 지원방식으로 인하여, 현원이 법정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 시설유지를 위한 관리운영비 조달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소규모시설은 기본운영 경비마저 부족한 실정인 반면, 대규모 시설의 경우에는 과다하게 지급되어 낭비요인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보조금 지원이 입소인원 비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다수의 시설들이 운영비 확보를 위하여 입소자를 장기 수용하거나 입소자를 많이 확보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의 대규모화와 장기수용은 입소자들에게 대한 개별상담이나 보호 등 시설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한편, 장기수용으로 인해 입소자들이 사회복지 의욕과 능력을 상실하는 소위 ‘시설병’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시설의 소규모화를 통해 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입소자들이 건전하게 보호·육성될 수 있도록 거주자 인원 비례방식을 따르고 있는 현행 정부보조금 지원방식을 바꾸어 일정 규모이하 시설에는 기본 운영경비를 정액 지원하고, 일정 규모 이상 시설에는 체감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즉,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에 대해서는 정해진 국고보조금 기준대로 지원하고, 그러한 시설규모 이상의 경우에는 일정한 체감율을 적용하도록 한다. 체감운영비는 향후 시설의 종류 및 규모별로 산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이러한 체감운영비의 지원을 통해 소규모 시설의 운영난을 완화하고 시설의 대규모화를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라. 예산항목의 조정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부지원금의 항목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예산지원 방식을 바꾸어 수용인원 규모별로 필요경비를 산정 한 후 총액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검토한다.

따라서 향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방식은 가능한 한 예산항목을 세분화하지 말고 직접비와 간접비 혹은 인건비와 운영비 등 크게 2개 내지 3개 항목으로 하여 지원하되, 시설의 규모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이용자의 권리 보장: 바우처제도 검토

기존의 정부지원방식은 공급자 중심의 일방적인 지원방식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전통적인 재정지원 방식으로는 공급자 중심으로 시설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고, 인원수에 비례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에서는 거주자를 확보하는 데만 중점을 두고 있는 문제가 있고, 한 번 확보된 거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설에 머물게 되기 때문에 시설간의 거주자 유치를 위한 경쟁을 할 필요가 없고, 이에 따라서 거주자를 위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개선의 노력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시설에서는 전문적인 서비스보다는 거주자에 대한 ‘단순 수용보호’만을 하고 있어 거주자의 삶의 질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기존의 재정지원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재정지원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시설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바우처(voucher)제도이다. 바우처제도는 정부가 지불을 보증하는 전표로서(Gilbert et al., 1993), 대상자에게 구매력을 높여주는 소득이전의 한 형태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Bendick, 1989). 즉, 정부가 특정한 자격을 갖춘 수혜대상자에게 시설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증표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전통적인 정부의 지원방식인 공급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수혜대상자를 지원하는 것과 대조되고, 수혜대상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보다 다른 목적을 지닌다. 이러한 바우처제도의 두 가지 특성은 곧 바우처제도의 장점이기도 하다.

바우처제도의 장점은 첫째,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본인의 욕구나 선호에 맞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바우처란

이용자에게 구매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시장원리가 작용한다. 시장에서 거래행위를 하는 것처럼 이용자는 구매권을 가지고 본인이 이용하기 원하는 서비스나 시설을 구매한다. 이는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용자 중심으로 바뀌는 것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장점이 있다(최재성, 2000).

두 번째 장점은 정부가 이용자에게 지원한 금액에 대한 소비형태 통제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바우처가 아니라 현금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게 되면 이용자는 현금을 본래 지원받은 목적이 아닌 술과 담배같은 기호품을 사는데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현금이 아닌 구매권을 제공하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식품, 교육, 주택, 의료서비스, 기타 서비스의 제공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최재성, 2000).

세 번째 장점은 공급자 간에 이용자를 유치하려는 경쟁이 유발되고, 이러한 경쟁은 시설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낳고, 아울러 서비스 공급가격의 인하를 수반한다는 점에 있다. 이로써 바우처제도는 매우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시설이용에 있어서도 이러한 바우처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이용자가 본인의 욕구에 맞는 시설을 선택하게 되고 이용자와 시설공급자가 대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가능하다.

그러나, 바우처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제도의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첫째, 우리 나라에는 시설의 공급이 충분치 않고, 특히 지방의 경우 시설이 부재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용자의 선택의 폭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를 잘못 도입하게 되면 특정한 시설에 이용자가 몰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와같이 공급자 시장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바우처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인 면이 있다.

둘째, 바우처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이용자에게 시설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시설의 위치, 종사자 및 시설장 관련 정보, 서비스 종류 및 수준, 종사자의 수 등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어 이용자가 본인의 욕구

에 맞는 시설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설관련 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용자가 이에 대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러한 정보화가 구축되지 못한 상황이어서 바우처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사전 작업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이용자가 시설을 선별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 배양되어 있어야 한다. 이용자에 따라서는 어린이나 정신질환자와 같이 시설 선별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시설에 대한 정보의 미비로 제대로 선택을 할 수 없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설에 대한 정보제공과 함께 시설 이용시 일정한 시험기간을 두어 이용자로 하여금 시설을 경험한 후 거주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바우처제도는 우선 시범적으로 몇몇 시설에 적용해서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제도의 시행후 평가를 통해서 문제점을 보완한 후에 연차적으로 모든 시설에 적용할 때 보다 효과적으로 이 제도가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바. 예산지원 시기의 적정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부지원금 지원시기는 실태조사 결과 매우 늦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앙 및 지방정부로부터 사회복지시설들이 사업의 초기에 지원 받는 시설은 3분의 1 미만이었고 대부분이 사업 중기에 예산을 지원받고 있어 사업의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예산지원시기의 지연은 시설 생활인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특히 생계비, 운영비 등 시설 운영을 위해 예산 지출이 제때에 있어야 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보조금 지급시기를 가급적 사업시행초기에 하도록 한다.

사. 운영비 지원의 개선

현 시설의 관리운영비는 인원수에 비례해서 지원되고 있다. 이로 인해서 소규모 시설은 운영비가 부족하고, 대규모 시설은 운영비가 많아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다. 이는 선진국들은 시설의 규모를 소규모하여 전문화를 도모하여

거주자를 위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과 반대된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1). 본고에서 추정한 바에 의하면 운영비는 거주자의 수에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노인무료양로시설의 경우 30인시설의 운영비는 26,798천원이었는데, 50인시설은 26,324천원, 80인시설 46,755천원이었다. 장애인시설에서도 50인시설 51,366천원, 100인시설 68,317천원, 150인시설 83,920천원으로 인원의 증가에 따라 운영비도 증가하나,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는 다른 시설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따라서 운영비에 대한 지원 뿐 아니라 생계비 지원에 있어도 규모의 경제를 고려하여 적절한 비용이 산출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설유형별 및 규모별로 표준화된 운영비 모형이 개발되어야 한다. 모형의 개발을 위해서는 시설별로 적절한 종사자수와 아울러 시설에 있어서 필요한 항목에 대한 적절한 시장가에 대한 연구도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후속연구를 통해서 보다 현실을 반영한 시설의 운영비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 인건비 지원 기준 상향조정

현재 시설에서는 법정 종사자대로 고용하는 시설이 거의 없다. 그 이유는 시설에 제공되는 인건비가 충분하지 않아서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문제는 오래전부터 논란이 되어왔었다. 매우 낮은 임금으로 인해서 종사자의 이직과 퇴직 등이 빈번하고 이는 거주자의 삶의 질 저하와 직결된다. 그럼에도 비록 노동시간은 길어서 종사자의 소진이 발생한다(김미숙 외, 2000).

따라서 현행 인건비 지원단가를 현실에 맞게 제고하도록 한다. 최소한 공무원과 같은 수준 정도로 상향조정하여 종사자들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임금개선을 통해서 저임금으로 인해 남성종사자들이 사회복지직을 기피하는 문제가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자. 향간 전용의 완화

우리 나라의 국고보조금은 인건비, 운영비, 생계비로 분리하여 지급되고 있어

목간의 탄력적인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생계비의 경우는 비용이 남으나, 운영비의 경우는 모자라는 현실이다. 명목상으로 관항목간의 전용은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얻으면 가능하게 되어 있으나, 시설을 관리하는 공무원 중 16.1%는 관간 전용을 4.5%는 항간, 22.3%는 목간 전용을 허용하고 있었다. 전용을 허용하지 않는 공무원은 48.2%나 달하고 있었다.

따라서 시설에서 거주자의 삶의 질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는 추세에 있는 생계비를 모자라는 운영비로 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할 때, 거주자를 위한 시설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차. 정부의 지원단가 조정

본 실태조사 결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부지원금 수준은 매우 비현실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지원단가가 추계되는 것도 항목별로 세분화한 후 이를 일인당 단가로 계산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생계비는 인원수대로 지원하되, 운영비는 인원수가 아닌 시설 규모별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지원비용은 현실적인 수준에 맞추어 시설에서 거주자에 대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통해서 삶의 질이 보장되는 수준으로 점차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에는 관항목의 구성항목에 대한 재검토와 각 목별 실질 단가를 산출하여 시설생활인을 위한 최저생계비가 계측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시설생활인의 최저생활은 보장할 수 있는 지원액이 책정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박태영, 『장애인생활시설의 예산지원방식 개선방안』,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애인 복지시설발전위원회, 2001.
- 보건복지부, 「2003년도 아동복지사업안내」, 2003.
- _____, 「2003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2003.
- _____, 「2003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2003.
- _____, 「2001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2001.
- _____, 「2002년도 여성복지사업안내」, 2002.
- _____, 「모자복지법시행규칙」, 2002.
- _____, 「세입·세출, 예산개요」, 2002. 12.
- _____, 「2003년도 정신보건사업안내」, 2003.
- _____, 「2002년도 부랑인 시설현황」,
- _____, 「2002년도 부랑인 복지사업안내」, 2002.
- _____, 「2003년도 부랑인 복지사업안내」, 2002.
- _____, 「2003년 보건복지예산개요」, 2003.
- _____, 내부자료, 2002.
- _____, 내부자료, 2003.
- _____, 『아동복지법』
- 서동우 외,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및 사회복지시설의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200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원요한, 『사회복지시설론: 이론과 실무』, 서울: 자산출판사, 1998.
- 이태수, 『국민의 정부이후 사회복지시설정책의 변화와 향후과제』, 『제4차 한국종교계 사회복지대표자협의회 심포지엄 자료집』, 2001. 11.
- 최재성, 『사회복지서비스 교환권제도(Voucher) 도입의 가능성과 과제』, 『한국사회복지 행정학』, 2000. Vol. 2. pp.153-72.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의 보건복지지표』, 2001.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소규모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활성화를 위한 시설설비
· 인력기준과 운영개선 방안』, 2001.
- Bendick, Marc, Jr., "Privatizing Delivery of Services," in S. B. Kamerman, and A. J. Kahn
(eds), *Privatization and the Welfare State*,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 9-120,
1989.
- Department of Environment, *RO(Revenue Out-turn) Data*.
- Gilbert N., H. Specht, and P. Terrell,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Prentice-Hall,
1993.
- HMSO, *Social Trends*, No. 23, London: Central Statistical Office, 1993.
- LaFrance Association, *Statewide Survey on the Status of California Nonprofit Organizations
in the Current Economy*, 2001.
- Pepper Commission, "Call for Action, U.S. Bipartisan Commission on Comprehensive Health
Care", *Final Report*, 1990
- <http://www.mohw.go.kr>
- 小笠原祐次, 「社會福祉施設の沿革, 概況及び役割」, 『社會福祉施設運営論』, 全國
社會福祉協議會, 1998.
- 大橋謙策, 『地域福祉計劃と地域福祉實踐』, 万葉舎, 2001.
- 京極高宣, 「障害者支援施設は, 今, 何に取り組むべきか」, 『月刊福祉』, 2002. 5,
全國社會福祉協議會, 2002.
- 厚生労働省, 『平成14年版 厚生労働白書』, 2002.
- 厚生労働省 社會・援護局 障害保健福祉部, 『支援費制度 擔當科長 會議資料』, 2002.
- 厚生省社會・援護局施設人材課, 『社會福祉施設の整備及び運営について』, 1999.
- 社會福祉法研究會, 『わかりやすい社會福祉法』, 中央法規, 2001.
- 宮武 剛, 「社會福祉基礎構造改革における契約利用制度のインパクト」, 『障害
者福祉における支援費支給制度と地域生活支援の課題』, 埼玉縣立大學 保健
醫療福祉學部, 2002.
- 郡司 巧, 「新しい障害福祉サービスシステムの理念とメカニズムについて」,
『月刊福祉』, 2002. 8, 全國社會福祉協議會, 2002.

- 山崎泰彦, 『介護保険制度・ゴールドプラン21』, 東京法令出版, 2000.
- 中央社會福祉審議會 社會福祉構造改革分科會, 『社會福祉基礎構造改革の實現に向けて』, 中央法規, 1998.
- 金政玉, 「支援費制度と自立支援」, 『平成14年度 日本社會事業大學 福祉従事者 専門講座』, 2002.
- 東京都社會福祉協議會, 『障害福祉分野における支援費制度とは』, 2001.
- 障害者福祉研究會, 『支援費制度 Q&A-制度の概要から支援費事務手続きまで-』, 中央法規, 2002.

부 록

I . 시설유형별 세출 규모

II . 조사표

1. 사회복지시설 운영실태 조사표
2. 기초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담당공무원 조사표

I. 시설유형별 세출 규모

〈별표 1〉 아동복지시설 종류별 평균 세출 규모(2001년 기준)

(단위: 천원, 개소)

관	항	과목	아동 양육시설	아동직업 훈련시설	아동보호 치료시설	자립지원 시설	아동일시 보호시설	전체 평균	
		목							
사무비	인건비	급여	221,155	116,131	173,386	36,413	250,566	211,298	
		상여금	3,312	0	838	0	13,451	3,267	
		일용직급	1,199	0	1,600	0	0	1,111	
		계수당	직종별수당	2,653	1,120	6,898	0	0	2,553
			직급별수당	469	0	0	0	9,146	557
			시간외근무수당	0	6,200	0	0	0	141
			야간근무수당	184	0	2,860	0	0	229
			휴일근무수당	0	0	0	0	0	0
			기타 수당	10,041	200	19,543	1,870	22,369	10,208
			계수당 소계	20,484	7,520	29,301	1,870	39,741	20,041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19,798	21,606	11,298	2,100	20,289	18,966	
		의료보험료	4,277	1,915	3,149	376	4,458	4,055	
		국민연금등사회보험부담금	12,320	6,304	10,609	1,136	16,619	11,804	
	기타후생경비	3,482	417	4,565	0	3,998	3,314		
	인건비 소계	286,069	153,894	234,746	41,894	349,123	273,893		
	관공비	기관운영관공비	1,298	571	760	4	1,575	1,226	
		정보비	778	400	195	200	821	737	
		회의비	371	326	242	-	206	349	
		관공비 소계	2,447	1,296	1,197	204	2,603	2,312	
	운영비	여비	942	1,881	754	28	1,798	938	
		수용비 및 수수료	7,915	12,050	5,759	715	3,085	7,570	
		공공요금	13,411	10,999	5,481	2,647	8,905	12,684	
		계세공과금	5,949	1,712	3,109	566	2,218	5,518	
		차량비	4,199	4,266	3,754	346	2,461	4,002	
		연료비	15,497	6,686	9,094	2,503	13,641	14,582	
	운영비 소계	47,859	37,595	27,951	6,804	32,106	45,293		
	재산 조성비	시설비	시설비	45,832	1,394	20,095	174	14,660	41,979
자산취득비			9,018	-	2,500	225	3,214	8,240	
시설장비유지비			12,473	4,653	7,772	3352	5,146	11,712	
시설비 소계			67,324	6,048	30,367	3750	23,020	61,930	

<별표 1> 계속

(단위: 천원, 개소)

관	과목		아동 양육시설	아동직업 훈련시설	아동보호 치료시설	자립지원 시설	아동일시 보호시설	전체 평균	
	항	목							
사업비	운영비	생계비	주식비	28,811	19,763	24,726	-	12,640	26,953
			부식비	48,669	21,444	40,346	118	25,343	45,549
			특별급식비	20,971	7,176	17,518	-	5,817	18,944
			준계부식비	1,005	345	269	-	1,068	938
			김장비	754	144	1,033	-	269	708
		수용기관경비	9,833	6,256	4,196	-	2,725	9,113	
		피복비	일반의류비	9,375	3,140	6,918	-	3,148	8,702
			런닝팬티비	2,416	1,269	1,528	-	1,177	2,255
			동내의비	872	475	558	-	-	805
		의료비	의약품비	981	790	220	13	817	920
			위생재료비	732	256	10	-	-	664
			진료비	682	-	552	-	7,908	783
			수술비	158	-	167	-	3,370	213
			간병인비	52	-	-	-	6,453	176
			장의비	768	-	-	-	462	701
		의료재활비	367	-	-	-	-	330	
		직업재활비	174	16,142	35,201	-	-	1,184	
		자활사업비	1,156	0	1,637	-	-	1,073	
		기타	특별위로금	2,611	815	2,266	-	1,534	2,443
			월동대책비	1,241	456	529	-	165	1,140
	복지비		2,077	2,359	663	-	-	1,930	
		운영비 소계	133,327	74,829	138,336	130	72,897	125,720	
	교육비	수업료	14,774	668	1,712	-	-	13,335	
		학용품비	9,932	1,951	525	-	-	8,982	
		교육비 소계	25,092	2,619	2,237	-	-	22,680	
	사업비	사업비	14,537	19,111	2,923	2,439	1,630	13,654	
	전출금	전출금	법인회계전출금	1,720	-	-	-	-	1,548
	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6,473	-	-	-	-	5,826
	상환금	부채상환금	원금상환금	1,858	-	-	2,105	-	1,757
			이자지불금	43	-	-	-	-	39
			부채상환금 소계	1,902	-	-	2,105	-	1,796
	반납금	반납금	924	924	-	-	-	851	
잡지출	잡지출	잡지출	3,312	1,005	1,780	659	494	3,073	
		결연후원금	3,944	642	-	-	-	3,562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1,398	406	-	-	267	1,272	
이월금	이월금	이월금	10,463	15,449	18,807	1,400	16,149	10,481	
	세출 총계 (시설수)		606,786 (135)	313,815 (3)	458,344 (3)	59,386 (6)	498,289 (3)	573,891 (150)	

〈별표 2〉 노인복지시설 종류별 평균 세출 규모(2001년 기준)

(단위: 천원, 개소)

관	항	과목		무료 양로시설	무료 요양시설	전문 요양시설	실비 양로시설	실비 요양시설	전체	
		목	구분							
사무비	인건비	급여		110,973	233,509	368,421	72,420	119,482	199,066	
		상여금		303	6,386	1,012	400	0	2,699	
		일용잡급		543	1,508	28,305	4,055	12,920	6,214	
		계수당	직종별수당		1,448	884	13,363	0	0	3,074
			직급별수당		557	421	825	0	0	507
			시간외근무수당		154	37	1,594	0	408	357
			야간근무수당		296	467	1,986	0	3,018	786
			휴일근무수당		268	151	519	0	124	252
			기타 수당		7,059	16,217	12,505	2,517	4,015	11,148
			계수당 소계		10,462	22,965	34,329	2,517	7,565	18,769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9,823	19,763	29,818	4,571	8,237	16,654	
	의료보험료		2,185	4,482	6,171	1,132	1,941	3,670		
	국민연금등사회보험부담금		5,966	12,493	19,855	3,513	5,280	10,615		
	기타후생경비		1,010	2,917	6,922	1,190	1,138	2,707		
	인건비 소계		141,265	304,024	494,832	89,797	156,563	260,394		
	관공비	기관운영관공비		1,075	1,099	1,193	2,634	743	1,114	
		정보비		356	570	1,442	472	267	611	
		회의비		221	282	240	459	289	255	
		관공비 소계		1,652	1,950	2,875	3,565	1,298	1,981	
	운영비	여비		924	910	1,277	430	607	949	
		수용비 및 수수료		5,305	9,256	10,719	7,208	5,851	7,748	
		공공요금		9,814	13,570	19,085	9,636	14,107	12,987	
		제세공과금		4,260	4,970	6,875	4,251	5,288	5,013	
차량비			2,223	2,796	2,863	3,921	2,681	2,602		
연료비			11,910	16,820	23,163	11,558	17,364	15,905		
운영비 소계			34,436	48,323	63,982	37,004	45,898	45,205		
재산 조성비	시설비	시설비		57,867	22,142	60,873	9,868	25,130	42,119	
		자산취득비		9,516	14,086	51,912	5,964	7,299	17,981	
		시설장비유지비		5,049	5,743	6,840	5,173	9,318	5,848	
		시설비 소계		72,433	41,970	119,626	21,006	41,748	65,947	

〈별표 2〉 계속

(단위: 천원, 개소)

관	과목		무료	무료	전문	실비	실비	전체	
	항	목	양로시설	요양시설	요양시설	양로시설	요양시설		
사업비	운영비	생계비	주식비	20,579	29,216	33,261	16,823	26,489	26,176
			부식비	29,900	35,870	39,796	15,565	21,479	33,024
			특별급식비	4,787	4,187	3,371	909	2,914	4,150
			준계부식비	565	656	484	0	711	584
			김장비	446	603	578	390	611	535
		수용기관경비		3,209	3,495	6,719	426	1,396	3,736
		피복비	일반의류비	4,566	5,585	6,276	307	296	4,908
			런닝팬티비	1,281	1,333	1,572	0	739	1,294
			동내의비	578	615	693	0	103	573
		의료비	의약품비	1,198	2,943	2,541	3,334	2,150	2,170
			위생재료비	769	3,077	3,952	158	3,171	2,285
			진료비	207	255	381	0	40	240
			수술비	50	44	148	0	0	60
			간병인비	192	383	32	0	0	224
		장의비		2,878	5,613	7,929	1,353	0	4,545
		의료재활비		236	650	1,029	90	43	508
		직업재활비		103	0	48	0	0	48
		자활사업비		177	471	1,228	639	251	473
		기타	특별위로금	1,324	2,301	1,365	0	56	1,602
			월동대책비	715	785	726	0	133	697
			복지비	1,730	1,802	740	1,275	269	1,504
		운영비 소계		75,490	99,884	112,870	41,269	60,850	89,333
		교육비	수업료	44	66	103	0	11	59
학용품비	16		0	0	0	0	6		
교육비 소계	64		66	103	0	11	67		
사업비	사업비	1,198	2,404	678	0	320	1,496		
전출금	전출금	법인회계전출금	836	381	0	0	0	465	
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132	1,216	48,011	0	0	8,360	
상환금	부채상환금	원금상환금	971	3,748	9,266	0	1,731	3,400	
		이자지불금	0	0	0	132	486	30	
		부채상환금 소계	971	3,748	9,266	132	2,658	3,455	
반납금	반납금	437	487	2,279	0	0	724		
잡지출	잡지출	잡지출	2,954	2,635	6,081	89	1,475	3,207	
		결연후원금	771	461	1,603	0	0	732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633	239	2,882	0	540	835	
이월금	이월금	이월금	15,360	11,162	15,508	693	15,578	13,536	
세출 총계 (시설수)			348,635 (61)	518,950 (60)	880,595 (26)	193,555 (3)	326,939 (9)	495,738 (159)	

〈별표 3〉 장애인복지시설 종류별 평균 세출 규모(2001년 기준)

(단위: 천원, 개소)

관	항	과목		지체 장애인시설	시각청각 언어시설	정신 지체인시설	중증요양 시설	합계	
		목							
사 무 비	인건비	급여		264,064	162,817	236,356	257,650	241,180	
		상여금		115,171	68,420	87,299	106,058	96,386	
		일용잡급		606,878	414,335	584,749	621,858	585,005	
		계 수 당	직종별수당		24,087	26,399	30,062	32,362	29,538
			직급별수당		12,082	7,151	2,475	3,594	4,837
			시간외근무수당		0	0	148	0	60
			야간근무수당		482	652	687	137	464
			휴일근무수당		0	0	1,047	57	445
			기타 수당		27,588	34,726	68,634	61,962	56,603
			계수당 소계		64,239	68,928	103,053	98,112	91,947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40,617	26,155	37,143	40,305	37,750	
		의료보험료		6,276	4,553	6,498	7,208	6,521	
		국민연금 등사회보험부담금		21,227	16,272	23,449	25,803	23,220	
	기타후생경비		16,448	16,761	22,736	15,985	18,878		
	인건비 소계		528,990	364,029	517,728	552,749	517,085		
	관공비	기관운영관공비		2,045	935	2,005	2,601	2,114	
		정보비		1,487	1,148	1,602	934	1,315	
		회의비		647	222	305	723	494	
		관공비 소계		4,179	2,305	3,912	4,257	3,922	
	운영비	여비		4,626	2,308	2,883	2,401	2,947	
		수용비 및 수수료		15,017	10,038	11,923	10,924	11,907	
		공공요금		18,681	10,710	14,705	15,057	15,092	
		제세공과금		6,916	3,954	6,564	5,154	5,899	
차량비			4,940	3,676	5,786	5,823	5,465		
연료비			23,528	17,315	21,249	25,492	22,688		
운영비 소계			73,709	48,000	63,109	64,851	63,998		
재산 조성비	시설비	시설비		67,969	50,702	51,893	69,616	60,378	
		자산취득비		17,713	7,814	17,158	12,720	14,872	
		시설장비유지비		21,530	29,628	14,044	16,534	17,546	
		시설비 소계		107,213	88,144	83,095	98,870	92,796	

〈별표 3〉 계속

(단위: 천원, 개소)

관	과목		지체장애 인시설	시각청각 언어시설	정신지체인 시설	중증요양 시설	합계	
	항	목						
사업비	운영비	생계비	주식비	38,479	29,288	35,392	35,633	35,401
			부식비	38,346	29,778	58,046	51,847	51,748
			특별급식비	11,397	11,678	14,054	12,101	12,742
			춘계부식비	786	206	1,540	987	1,107
			김장비	1,686	384	1,141	634	986
		수용기관경비	4,718	3,324	4,069	6,465	4,916	
		피복비	일반의류비	7,661	4,944	8,633	6,812	7,515
			런닝팬티비	2,051	1,494	2,459	2,459	2,303
			동내의비	751	557	841	917	826
		의료비	의약품비	3,025	2,464	2,527	3,631	2,976
			위생재료비	408	234	1,596	3,863	2,046
			진료비	652	139	1,547	1,527	1,265
			수술비	226	73	110	194	154
			간병인비	163	188	767	1,999	1,033
			장의비	502	171	780	810	689
		의료재활비	3,732	1,983	3,760	3,555	3,520	
		직업재활비	1,986	35	968	796	987	
		자활사업비	3,737	1,494	5,383	2,190	3,673	
		기타	특별위로금	5,001	827	2,592	2,778	2,878
			월동대책비	1,243	605	1,122	2,450	1,544
			복지비	3,335	1,480	1,054	1,669	1,669
		운영비 소계	139,886	91,348	148,379	143,315	139,978	
		교육비	수업료	932	82	1,663	1,284	1,269
			학용품비	1,391	3,903	1,325	1,166	1,522
			교육비 소계	2,322	3,985	2,988	2,449	2,791
		사업비	사업비	12,493	4,057	24,500	10,014	15,750
		전출금	전출금	법인회계전출금	1,987	369	3,003	2,277
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779	0	615	220	450	
상환금	부채상환금	원금상환금	2,915	0	3,017	14,267	6,533	
		이자지불금	222	0	0	0	36	
		부채상환금 소계	3,137	0	3,017	14,267	6,569	
반납금	반납금	369	0	200	887	442		
잡지출	잡지출	잡지출	3,205	1,699	1,984	1,547	2,006	
		결연후원금	857	479	983	1,160	976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254	0	226	139	180	
이월금	이월금	이월금	11,587	1,724	11,461	16,583	12,310	
총계 (시설수)			890,966 (19)	606,140 (11)	865,201 (48)	913,585 (40)	861,601 (118)	

〈별표 4〉 모자복지시설 종류별 평균 세출 규모(2001년 기준)

(단위: 천원, 개소)

관	항	과목	모자보호 시설	모자자립 시설	모자일시 보호시설	미혼모시설	합계	
		목						
사무비	인건비	급여	77,019	4,470	32,438	97,090	67,168	
		상여금	339	0	8,051	3,014	960	
		일용잡금	228	0	200	230	206	
		계수당	직종별수당	411	0	230	1306(0)	518
			직급별수당	1,293	260	0	315	787
			시간외근무수당	0	0	0	0	0
			야간근무수당	0	0	0	0	0
			휴일근무수당	350	0	0	0	191
			기타 수당	3,195	0	450	7,524	3,269
			계수당 소계	5,249	260	680	9,145	4,764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6,405	372	2,624	7,609	5,493	
		의료보험료	1,499	71	919	1,840	1,352	
		국민연금등사회보험부담금	4,054	252	2,373	5,500	3,738	
	기타후생경비	845	0	438	3,287	1,172		
	인건비 소계	95,638	5,425	40,726	127,715	84,845		
	판공비	기관운영관공비	687	0	2	846	538	
		정보비	505	0	0	83	293	
		회의비	95	0	14	973	240	
		판공비 소계	1,286	0	15	1,903	1,070	
	운영비	여비	592	10	93	1,953	715	
		수용비 및 수수료	2,857	67	1,377	3,427	2,485	
		공공요금	5,675	1,162	2,672	8,334	5,287	
제세공과금		3,600	254	979	2,096	2,575		
차량비		1,613	0	1,037	3,485	1,745		
연료비		9,943	9	2,603	9,896	7,826		
운영비 소계		24,281	1,502	8,764.84	29,192	20,634		
재산 조성비	시설비	시설비	22,512	0	32,179	8,356	20,055	
		자산취득비	6,063	0	2,845	10,802	5,925	
		시설장비유지비	5,778	478	733	4,231	4,144	
		시설비 소계	34,343	478	35,787	23,419	30,124	

〈별표 4〉 계속

(단위: 천원, 개소)

관	과목		모자보호 시설	모자자립 시설	모자일시 보호시설	미혼모시설	합계		
	항	목							
사업비	운영비	생계비	주식비	23,722	0	7,518	10,903	16,499	
			부식비	37,310	0	5,564	19,501	25,206	
			특별급식비	5,598	133	827	12,633	5,639	
			준계부식비	394	126	104	194	281	
			김장비	494	344	147	243	370	
		수용기관경비	2,499	0	962	4,280	2,367		
		피복비	일반의류비	7,837	0	2,245	2,933	5,278	
			런닝팬티비	2,089	0	169	1,057	1,377	
			동내의비	734	0	225	360	514	
		의료비	의약품비	1,205	0	235	1,065	907	
			위생재료비	0	0	0	442	84	
			진료비	268	0	34	20,493	4,057	
			수술비	0	0	0	10,649	2,028	
			간병인비	0	0	0	881	168	
			장의비	386	0	0	0	211	
		의료재활비	0	0	0	1,880	358		
		직업재활비	0	0	0	4,270	813		
		자활사업비	2,348	0	0	0	1,286		
		기타	특별위로금	2,048	954	399	1,081	1,471	
			월동대책비	889	0	232	647	655	
			복지비	6,823	0	210	2,306	4,216	
		운영비 소계			94,644	1,558	18,873	95,818	73,786
		교육비	수업료	6,305	0	42	322	3,522	
학용품비	2,994		0	160	888	1,839			
교육비 소계	9,299		0	204	1,210	5,361			
사업비	사업비	7,180	0	517	11,564	6,233			
전출금	전출금	법인회계전출금	417	0	1,859	0	583		
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2,045	0	0	12,619	3,524		
상환금	부채 상환금	원금상환금	1,495	0	3,117	166	1,444		
		이자지불금	0	0	190	0	36		
		부채상환금 소계	1,495	0	3,307	166	1,480		
반납금	반납금	256	0	0	1,986	519			
잡지출	잡지출	잡지출	1,110	0	331	2,169	1,083		
		결연후원금	1,563	0	0	0	856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597	114	0	277	388		
이월금	이월금	이월금	685	0	1,363	12,971	3,105		
세출 총계 (시설수)			274,851 (23)	9,077 (3)	111,744 (8)	321,009 (8)	233,591 (42)		

〈별표 5〉 정신요양시설 종류별 평균 세출 규모(2001년 기준)

(단위: 천원, 개소)

관	항	과목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합계	
		목					
사무비	인건비	급여		284,027	93,224	252,227	
		상여금		1,364	5,008	1,971	
		일용잡금		3,116	728	2,718	
		계수당	직종별수당		13,674	773	11,524
			직급별수당		2,672	7,171	3,422
			시간외근무수당		307	0	256
			야간근무수당		2,710	29	2,263
			휴일근무수당		388	0	323
			기타 수당		16,223	4,337	14,242
			계수당 소계		35,973	12,310	32,029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27,288	9,032	24,246	
		의료보험료		4,962	1,710	4,420	
		국민연금등 사회보험부담금		15,565	6,071	13,983	
	기타후생경비		5,130	496	4,358		
	인건비 소계		377,425	128,581	335,951		
	관공비	기관운영관공비		3,138	1,865	2,926	
		정보비		3,298	654	2,857	
회의비		450	434	447			
관공비 소계		6,886	2,953	6,230			
운영비	여비		1,790	1,089	1,673		
	수용비 및 수수료		13,641	5,393	12,266		
	공공요금		18,896	6,044	16,754		
	계세공과금		9,930	881	8,422		
	차량비		6,601	1,458	5,744		
	연료비		44,463	8,952	38,544		
	운영비 소계		95,321	23,816	83,404		
재산 조성비	시설비	시설비		152,269	25,548	131,148	
		자산취득비		15,239	2,333	13,088	
		시설장비유지비		19,247	630	16,144	
		시설비 소계		186,754	28,510	160,380	

〈별표 5〉 계속

(단위: 천원, 개소)

관	과목		정신요양시설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합계		
	항	목					
사업비	운영비	생계비	주식비	88,828	5,160	74,883	
			부식비	142,603	7,338	120,059	
			특별급식비	10,143	113	8,471	
			준계부식비	1,315	7	1,097	
			김장비	2,094	35	1,751	
		수용기관경비			13,811	1,045	11,684
		피복비	일반의류비	18,599	624	15,603	
			런닝팬티비	7,231	195	6,059	
			동내의비	3,017	62	2,525	
		의료비	의약품비	35,107	5	29,257	
			위생재료비	599	0	499	
			진료비	1,362	47	1,143	
			수술비	29	0	25	
			간병인비	21	0	18	
			장의비	1,156	56	972	
		의료재활비			983	0	819
		직업재활비			5,900	8,208	6,285
		자활사업비			10,297	1,333	8,803
		기타	특별위로금	6,568	244	5,514	
			월동대책비	3,944	133	3,309	
			복지비	3,395	329	2,884	
		운영비 소계			357,004	24,932	301,659
		교육비	수업료	66	1,001	221	
학용품비	0		428	71			
교육비 소계	66		1,429	293			
사업비	사업비	5,037	18,100	7,214			
전출금	전출금	법인회계 전출금	2,074	153	1,754		
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5,847	0	4,872		
상환금	부채상환금	원금상환금	3,629	1,833	3,330		
		이자지불금	53	0	44		
	부채상환금 소계		3,682	1,833	3,374		
반납금	반납금	572	491	559			
잡지출	잡지출	잡지출	2,586	1,081	2,335		
		결연후원금	0	114	19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91	270	121		
이월금	이월금	이월금	17,463	9,773	16,181		
세출 총계 (시설수)			1,060,808 (45)	242,036 (9)	924,346 (54)		

〈별표 6〉 부랑인복지시설 종류별 평균 세출 규모(2001년 기준)

(단위: 천원, 개소)

관	과목		금액	
	항	목		
사무비	인건비	급여	276,268	
		상여금	19,136	
		일용잡급	1,413	
		계수당	직종별수당	3,751
			직급별수당	1,260
			시간외근무수당	39
			야간근무수당	1,640
			휴일근무수당	0
			기타 수당	17,200
			계수당 소계	23,889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24,199	
		의료보험료	5,022	
		국민연금등 사회보험부담금	16,944	
		기타후생경비	6,509	
		인건비 소계	373,381	
	판공비	기관운영판공비	1,073	
		정보비	1,764	
		회의비	162	
		판공비 소계	2,998	
	운영비	여비	2,079	
		수용비 및 수수료	30,944	
		공공요금	36,190	
		계세공과금	9,694	
차량비		5,735		
연료비		49,246		
운영비 소계		133,888		
재산조성비	시설비	시설비	53,725	
		자산취득비	19,850	
		시설장비유지비	30,365	
		시설비 소계	103,940	

〈별표 6〉 계속

(단위: 천원, 개소)

관		과목		금액
항	목	항	목	
사업비	운영비	생계비	주식비	94,037
			부식비	162,073
			특별급식비	14,750
			준계부식비	1,307
			김장비	1,563
		수용기관경비		9,653
		피복비	일반의류비	23,984
			런닝팬티비	9,074
			동내의비	3,028
		의료비	의약품비	11,659
			위생재료비	1,447
			진료비	4,243
			수술비	31
			간병인비	298
		장의비		2,570
		의료재활비		576
		직업재활비		1,101
		자활사업비		7,440
		기타	특별위로금	8,474
			월동대책비	4,098
			복지비	1,224
운영비 소계			362,629	
교육비		수업료	94	
		학용품비	0	
		교육비 소계	94	
사업비	사업비	12,815		
전출금	전출금	법인회계전출금	146	
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과년도지출	24	
상환금	부채상환금	원금상환금	5,705	
		이자지불금	15	
		부채상환금 소계	5,720	
반납금	반납금	1,608		
잡지출	잡지출	잡지출	1,224	
		결연후원금	1,530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3,761	
이월금	이월금	이월금	4,323	
세출 총계 (시설수)			1,008,082 (22)	